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무역보험기금

**【특허청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

2025.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Ⅰ. 결산 총괄 ····· 1

1.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개요 ····· 1

(1) 세 입 ····· 1

(2) 세 출 ····· 2

(3) 기 금 ····· 3

(4) 예비비 ····· 4

(5) 재무제표 ····· 5

2. 총괄 검토의견 ····· 14

(1)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총괄 현황 ····· 14

(2)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내용 ····· 19

Ⅱ. 일반회계 ····· 30

1. 세입결산 ····· 30

(1) 세입징수 결정 ····· 30

(2) 세입징수 현황 ····· 31

2. 세출결산 ····· 32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32

(2) 예산변경 내역 ····· 35

(3) 예비비 ····· 38

(4) 다음연도 이월내역 ····· 38

(5) 불용내역 ····· 39

3. 재무제표 ····· 40
4. 검토의견 ····· 47
(1) 무역보험기금 출연: 기금 자체수입 전망 정확도 제고 및 적정 출연금 반영 필요 · 47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실적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52
(3) 해외플랜트진출확대: 기획평가관리비 사전 편성 및 사용용도에 따른 적정 비목 편성 필요 ····· 57
(4)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및 계획변경 필요 ····· 62
(5) 세계엑스포참가지원: 물가급등·현지여건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 ····· 69
(6)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제기구분담금 등 미납액 지속적 누적 방지 필요 ····· 75
(7)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연말 계약 체결 비율 개선 필요 ····· 82
(8)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기반 조성: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및 체계적인 예산편성 필요 ····· 88
(9)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무 이행 필요 ····· 92
(10) 산업혁신기반구축(R&D): 개정된 장비구축 절차의 적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97
(11) 산업기술국제협력(R&D): 예산의 적시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철저한 과제 관리 필요 ····· 104
(12)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연구과제 수행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 109
(13)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지연발주에 따른 예산이월과 차년도 예산요구 미반영 ····· 115
(14)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중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성과 관리 필요 ····· 119
(15)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전반적인 집행 부진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편중 지원 문제 ····· 124
(16) 로봇산업기술개발(R&D) 등: 제조산업정책관 소관 R&D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부진 ····· 130
(17)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등 22개 산업기술 R&D: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지연 방지 및 정산 미반납액의 철저한 징수 관리 필요 ····· 138
(18) R&D 사업의 성과평가제도 개선필요 ····· 146

(19) 국제표준활동지원: 일반연구비 전액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 159
(20)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 필요 ····· 169
(2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 R&D 사업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등 추진 지양 필요 ····· 176
(22)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사업 사업방식 개선 필요 등 ····· 182
(23)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192
(24) 유통물류기반조성: 연례적 연구용역 예산 이월 및 집행계획 없는 보조금 교부 관행 방지 필요 ····· 199
(25) 본부기본경비 등: 전용·세목조정을 통한 국내여비 추가집행 과다 ····· 205
(26) 마산무역원기본경비 등: 자유무역지역관리원(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연말 집중집행 ·· 209
(27)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연례적 증액편성 및 이월·불용 ····· 213

**Ⅲ.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22**

**1. 세입결산 ····· 222**

(1) 세입징수 결정 ····· 222
(2) 세입징수 현황 ····· 223

**2. 세출결산 ····· 225**

(1)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 225
(2) 예산변경 내역 ····· 229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230
(4) 불용내역 ····· 230

**3. 재무제표 ····· 231**

**4. 검토의견 ····· 237**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면밀한 수요파악을 통한 예산 불용 최소화 및 에너지 절감 실효성 제고 필요 ····· 237
(2) 에너지바우처: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243

(3)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실제 ODA 사업 선정 성과 저조 ····· 249
(4)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수소 수급전망 수립 예산 이월 재발 방지 필요 ····· 254
(5)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 그린 암모니아 생산·도입의 신속한 추진 필요 등 ····· 257
(6)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지방비 적기 집행을 통한 센터 구축 지연 방지 필요 ·· 264
(7)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석유공사 출자율 관리 강화 필요 등 ····· 270
(8)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출자 필요액을 고려한 출자금 교부 필요 ····· 279
(9)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 286
(10) 수소생산기지 구축: 추가적인 구축 지연 최소화 필요 ····· 292

**Ⅳ.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97**

**1. 세입결산 ····· 297**

(1) 세입징수 결정 ····· 297
(2) 세입징수 현황 ····· 298

**2. 세출결산 ····· 299**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299
(2) 예산변경 내역 ····· 301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302
(4) 불용내역 ····· 303

**3. 재무제표 ····· 305**

**4. 검토의견 ····· 309**

(1)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일반연구비 이월 집행 주의 필요 ····· 309
(2)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연내 수행 필요 ·· 315
(3) 투자유치기반조성: 현금지원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관리강화 및 지급방식 유연화 필요 ····· 320

Ⅴ.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326
1. 세입결산 ····· 326
(1) 세입징수 결정 ····· 326
(2) 세입징수 현황 ····· 327
2. 세출결산 ····· 328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328
(2) 예산변경 내역 ····· 328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329
(4) 불용내역 ····· 330
3. 재무제표 ····· 331
4. 검토의견 ····· 335
(1) 소재부품기술개발(R&D) 신규과제 추진일정 개선필요 ····· 335
(2)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341

Ⅵ.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45
1. 세입결산 ····· 345
2. 세출결산 ····· 346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346
(2) 예산변경 내역 ····· 347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347
(4) 불용내역 ····· 347
3. 재무제표 ····· 348

Ⅶ. 전력산업기반기금 ····· 351
1. 수입결산 ····· 351
(1) 기금수입 현황표 ····· 351
2. 지출결산 ····· 354

3. 재무제표 ····· 356
4. 검토의견 ····· 359
(1)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문제 및 사업수행 기관 선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 359
(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의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368
(3)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체계 이행 등 ····· 373
(4) 해상풍력산업지원: 해상풍력지원센터 구축 지연 및 예산 이월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79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비 교부기준 강화 필요 ····· 382
(6) 농어촌전기공급: 과도한 자체변경으로 인한 불용 재발 방지 필요 등 ····· 387
(7) 표준가스복합발전모델및테스트베드구축기술개발사업(R&D): 사업기간 내 과제완료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93
(8) 원전수출보증: 실제 보증 수요를 고려한 출연금 규모 조정 필요 ····· 398
(9)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원전 기자재 업체 선금 보증보험 지원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405

Ⅷ.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412
1. 수입결산 ····· 412
(1) 기금수입 현황표 ····· 412
2. 지출결산 ····· 414
3. 재무제표 ····· 416
4. 검토의견 ····· 420
(1)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고준위방폐물 인력양성사업의 운영현황 및 과제 ·· 420

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424
1. 수입결산 ····· 424
(1) 기금수입 현황표 ····· 424
2. 지출결산 ····· 426
3. 재무제표 ····· 428
4. 검토의견 ····· 431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술료 등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재정안전성 제고 필요 ····· 431
Ⅹ. 무역보험기금 ····· 437
1. 수입결산 ····· 437
(1) 기금수입 현황표 ····· 437
2. 지출결산 ····· 439
3. 재무제표 ····· 440
4. 검토의견 ····· 446
(1) 무역보험환급금등: 환급수요 예측 방식 고도화 필요 ····· 446
(2) 기타경비: 이월결손금 소진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지방소득세 편성 필요 ····· 452

# 【 특 허 청 소관 】


Ⅰ. 특허청 결산 개요 ····· 461

1. 총 괄 ····· 461

(1) 세 입 ····· 461

(2) 세 출 ····· 462

2. 세입 결산 ····· 463

(1) 세입징수 결정 ····· 463

(2) 세입징수 현황 ····· 464

3. 세출 결산 ····· 465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 465

(2) 예산변경 내역 ····· 467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469

(4) 불용내역 ····· 470

4. 재무제표 ····· 471

(1) 재정상태표 ····· 471

5. 검토의견 ····· 478

(1) 기타재산이자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적기 수입조치 필요 ····· 478

(2)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 484

(3) 심판처리지원: 일반용역비 계획적 편성·집행 필요 ····· 488

(4)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발명교원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등 ····· 494

(5)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 특정업무경비 현실화 필요 등 ····· 507

(6)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및 사회복무요원운용: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519

(7) 일반회계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위탁: 여유재원의 규모 축소 및 활용방안 강구 필요 ····· 525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Ⅰ. 결산 총괄

## 1.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개요

### (1) 세 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불납결손액 (D) | 미수납액 (B-C-D) | 증감 (C-A) |
|---|---|---|---|---|---|---|
| 일반회계 | 157,872 | 168,545 | 155,387 | - | 13,158 | △2,485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6,216,101 | 5,201,992 | 5,198,910 | - | 3,081 | △1,017,191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70,818 | 87,219 | 86,656 | - | 563 | 15,838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2,165,543 | 2,196,929 | 2,196,929 | - | - | 31,386 |
| **합 계** | **8,610,334** | **7,654,684** | **7,637,881** | **-** | **16,803** | **△972,452**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입예산현액 총액은 8조 6,103억 3,400만원이며, 7조 6,546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조 6,378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168억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 세 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예 산 변 경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 | 불용액 |
|---|---|---|---|---|---|---|---|---|---|---|
| | | 전년이월 | 이체 | 전용 | 초과지출승인액 | 예비비 | | | | |
| 일반회계 | 5,545,535 | 20,998 | △15,293 | ±1,447 | - | - | 5,551,240 | 5,508,722 | 1,813 | 40,705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807,514 | 913 | - | ±228 | - | - | 2,808,427 | 2,576,933 | 260 | 231,235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225,970 | 444 | - | ±50 | - | - | 1,226,414 | 1,219,418 | 4,392 | 2,604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1,738,998 | 28 | - | ±20 | - | - | 1,739,026 | 1,739,022 | - | 4 |
|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15,926 | - | - | - | - | - | 15,926 | 15,926 | - | - |
| **합 계** | **11,333,943** | **22,384** | **△15,293** | **1,745** | **-** | **-** | **11,341,034** | **11,060,021** | **6,465** | **274,548**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11조 3,339억 4,300만원이었으나, 예산변경을 통한 예산현액은 11조 3,410억 3,400만원이었고, 이 중 11조 600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억 6,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2,745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 (3) 기 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 '23년 실적 | '24년 | | | 증 감(△) | |
|---|---|---|---|---|---|---|
| | | 당초 (A) | 변경1) (B) | 실적2) (C) | (C-B)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5,518,114 | 4,501,041 | 4,501,041 | 5,256,786 | 755,745 | 16.8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7,958,269 | 9,290,658 | 9,290,658 | 8,970,616 | △320,042 | △3.4 |
|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 140,916 | 202,350 | 202,350 | 192,237 | △10,113 | △5.0 |
| 무역보험기금 | 4,581,389 | 5,550,985 | 5,550,985 | 5,166,654 | △384,331 | △6.9 |
| **합 계** | **18,198,688** | **19,545,034** | **19,545,034** | **19,586,293** | **41,259** | **0.2** |

주1) 최종변경
주2) 순계기준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무역보험기금이며, 각 기금별 운용규모는 전력산업기반기금 5조 2,567억 8,600만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조 9,706억 1,600만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922억 3,700만원, 무역보험기금 5조 1,666억 5,400만원 등 총 19조 5,862억원 9,300만원임.

### (4) 예비비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음.

# (5) 재무제표

# 제1장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원)

| | 2024 | | 2023 | |
|---|---|---|---|---|
| **자산** | | | | |
| **Ⅰ.유동자산** | | **19,107,500,619,502** | | **16,444,368,876,194**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1,514,279,012,979 | | 1,559,475,344,600 |
| 2. 단기금융상품 | | 2,580,000,000,000 | | 2,390,000,000,000 |
| 3. 단기투자증권 | | 8,705,357,209,400 | | 6,637,338,288,646 |
| 4. 미수채권 | 1,627,959,659,361 | | 1,592,011,160,852 | |
|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 14,712,164,677 | | 14,097,513,106 | |
| 미수채권대손충당금 | 16,402,318,613 | 1,596,845,176,071 | 15,405,352,862 | 1,562,508,294,884 |
| 5. 단기대여금 | 4,633,519,843,537 | | 4,250,326,275,971 | |
|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7,301,602,276 | 4,626,218,241,261 | 6,330,651,083 | 4,243,995,624,888 |
| 6. 기타유동자산 | | 84,800,979,791 | | 51,051,323,176 |
| **Ⅱ.투자자산** | | **5,785,700,840,556** | | **5,855,045,865,965** |
| 1. 장기금융상품 | | - | | 90,000,000,000 |
| 2. 장기투자증권 | | 1,518,557,683,615 | | 1,822,854,353,434 |
| 3. 장기대여금 | 6,050,229,360,610 | | 5,560,690,474,792 | |
|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787,128,654,647 | 4,263,100,705,963 | 1,620,545,158,305 | 3,940,145,316,487 |
| 4. 기타투자자산 | | 4,042,450,978 | | 2,046,196,044 |
| **Ⅲ.일반유형자산** | | **3,878,919,197,935** | | **3,828,414,132,047** |
| 1. 토지 | | 3,489,870,444,846 | | 3,459,829,548,076 |
| 2. 건물 | 361,152,866,725 | | 358,712,291,556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38,386,862,308 | 322,766,004,417 | 28,512,193,681 | 330,200,097,875 |
| 3. 구축물 | 20,774,611,195 | | 16,720,151,913 |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5,336,608,144 | 15,438,003,051 | 3,855,766,239 | 12,864,385,674 |
| 4. 기계장치 | 15,890,144,882 | | 22,171,012,637 |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15,193,033,243 | 697,111,639 | 21,455,806,191 | 715,206,446 |
|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60,368,574,200 | | 56,939,939,079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49,819,413,509 | 10,549,160,691 | 46,785,452,569 | 10,154,486,510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원)

| | 2024 | | 2023 | |
|---|---|---|---|---|
| 6. 기타일반유형자산 | 5,899,939,607 | | 5,959,147,497 | |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4,099,717,285 | 1,800,222,322 | 4,078,770,343 | 1,880,377,154 |
|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 37,798,250,969 | | 12,770,030,312 |
| **Ⅳ.사회기반시설** | | - | | - |
| **Ⅴ.무형자산** | | **23,791,459,872** | | **27,362,320,656** |
| 1. 소프트웨어 | | 11,637,832,297 | | 13,567,991,558 |
| 2. 기타무형자산 | | 12,153,627,575 | | 13,794,329,098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1,135,563,244,354** | | **1,427,362,867,997** |
| 1. 장기미수채권 | 1,287,593,591,490 | | 1,647,760,059,633 | |
|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 138,873,666,382 | | 209,975,883,483 | |
|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 134,449,506,158 | 1,014,270,418,950 | 143,909,021,365 | 1,293,875,154,785 |
|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 121,292,825,404 | | 133,487,713,212 |
| **자산계** | | **29,931,475,362,219** | | **27,582,554,062,859** |
| **부채** | | | | |
| **Ⅰ.유동부채** | | **165,175,013,309** | | **107,268,486,643** |
| 1. 기타유동부채 | | 165,175,013,309 | | 107,268,486,643 |
| **Ⅱ.장기차입부채** | | **3,487,202,000,000** | | **1,720,109,000,000** |
| 1. 장기차입금 | | 3,487,202,000,000 | | 1,720,109,000,000 |
| **Ⅲ.장기충당부채** | | **619,875,655,858** | | **759,148,476,531**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 29,358,252,002 | | 27,086,282,021 |
| 2. 보험충당부채 | | 560,299,392,749 | | 641,884,704,310 |
| 3. 기타장기충당부채 | | 30,218,011,107 | | 90,177,490,200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2,224,595,311,546** | | **1,983,740,161,605** |
|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 | 2,224,595,311,546 | | 1,983,740,161,605 |
| **부채계** | | **6,496,847,980,713** | | **4,570,266,124,779** |
| **순자산** | | | | |
| **Ⅰ.기본순자산** | | **17,802,314,622,442** | | **17,802,314,622,442**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 **4,509,140,592,728** | | **4,230,961,979,016** |
| **Ⅲ.순자산조정** | | **1,123,172,166,336** | | **979,011,336,622** |
| **순자산계** | | **23,434,627,381,506** | | **23,012,287,938,080** |
| **부채와순자산계** | | **29,931,475,362,219** | | **27,582,554,062,859**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총자산은 29조 9,315억원으로, 전기 27조 5,826억원 대비 2조 3,489억원(8.5%) 증가하였음.

#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 자 산 | 부 채 | 비 고 |
|---|---|---|---|
| □ 총 계 | 29,931,475 | 6,496,848 | |
| ① 일반회계 | 3,238,366 | 515 | |
|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869,506 | 3,331,440 | |
|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32,217 | 16,809 | |
| ④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440,029 | - | |
| 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⑥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149,129 | 176,994 | |
| ⑦ 전력산업기반기금 | 4,246,873 | - | |
| ⑧ 무역보험기금 | 7,746,651 | 2,971,091 | |
| ⑨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0,408,705 | - | |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11,139,660,967,779** | **(2,157,757,401,572)** | **8,981,903,566,207** | **11,671,800,015,802** | **(2,062,103,896,222)** | **9,609,696,119,580** |
| 1.무역진흥 | 512,809,018,496 | - | 512,809,018,496 | 507,790,689,516 | - | 507,790,689,516 |
| 2.무역구제 | 1,818,464,310 | - | 1,818,464,310 | 1,755,453,041 | - | 1,755,453,041 |
| 3.무역보험지원 | 1,042,752,842,493 | (1,461,370,902,235) | (418,618,059,742) | 1,261,498,730,482 | (1,478,012,456,008) | (216,513,725,526) |
| 4.통상협력지원 | 122,319,175,944 | - | 122,319,175,944 | 97,673,702,377 | - | 97,673,702,377 |
| 5.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 - | - | - | 186,400,000,000 | (5,968,572,500) | 180,431,427,500 |
| 6.에너지자원정책 | 1,208,722,636,606 | (116,147,535,844) | 1,092,575,100,762 | 857,254,973,695 | (79,212,823,791) | 778,042,149,904 |
| 7.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 423,406,563,890 | (145,578,940,074) | 277,827,623,816 | 706,859,038,332 | (81,398,271,608) | 625,460,766,724 |
| 8.에너지공급체계구축 | 1,295,057,319,902 | (187,386,317,387) | 1,107,671,002,515 | 1,282,787,223,612 | (117,274,034,238) | 1,165,513,189,374 |
| 9.방사성폐기물관리 | 216,703,636,640 | (68,890,573,843) | 147,813,062,797 | 174,483,076,736 | (57,087,616,573) | 117,395,460,163 |
| 10.에너지기술개발 | 767,222,969,600 | (31,728,618,082) | 735,494,351,518 | 839,873,666,340 | (51,456,887,388) | 788,416,778,952 |
| 11.에너지기술기반확충 | 157,861,920,040 | (13,025,167,258) | 144,836,752,782 | 212,669,028,030 | (12,115,536,342) | 200,553,491,688 |
| 12.전력산업경쟁력강화 | 41,977,215,646 | (2,159,148,415) | 39,818,067,231 | 27,027,776,960 | (310,955,380) | 26,716,821,580 |
| 13.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 5,376,000,000 | (4,938,606,319) | 437,393,681 | 7,918,000,000 | (4,611,826,536) | 3,306,173,464 |
| 14.산업경쟁력기반구축 | 965,327,062,112 | - | 965,327,062,112 | 1,081,607,605,105 | - | 1,081,607,605,105 |
| 15.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 1,739,094,287,242 | (47,377,208,195) | 1,691,717,079,047 | 1,509,279,004,578 | (95,838,149,950) | 1,413,440,854,628 |
| 16.지역경제활성화 | 650,683,099,608 | (65,478,515,615) | 585,204,583,993 | 827,431,659,424 | (46,408,089,932) | 781,023,569,492 |
| 17.주력산업진흥 | 960,157,741,430 | (76,894,701) | 960,080,846,729 | 1,127,919,758,190 | (273,067,869) | 1,127,646,690,321 |
| 18.신산업진흥 | 487,020,000,000 | - | 487,020,000,000 | 480,311,000,000 | - | 480,311,000,000 |
| 19.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 99,977,531,650 | - | 99,977,531,650 | 143,613,556,923 | - | 143,613,556,923 |
| 20.중견기업육성 | 48,270,077,240 | - | 48,270,077,240 | 88,207,857,360 | - | 88,207,857,360 |
| 21.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 310,276,324,320 | (4,425,103,964) | 305,851,220,356 | 144,958,525,314 | (23,473,441,781) | 121,485,083,533 |
| 2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 29,523,972,669 | (3,045,911,876) | 26,478,060,793 | 38,390,000,000 | (1,316,764,570) | 37,073,235,430 |
| 23.포항지진 피해관리 | 7,544,000,000 | - | 7,544,000,000 | 899,550,000 | - | 899,550,000 |
| 24.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 45,759,107,941 | (6,127,957,764) | 39,631,150,177 | 65,190,139,787 | (7,345,401,756) | 57,844,738,031 |
| **Ⅱ.관리운영비** | | | **257,452,117,685** | | | **244,299,574,768**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1.인건비 | | | 163,248,532,592 | | | 158,864,010,418 |
| 2.경비 | | | 94,203,585,093 | | | 85,435,564,350 |
| (1)복리후생비 | | | 27,869,904,586 | | | 27,391,850,930 |
| (2)소모품비 | | | 3,545,480,895 | | | 3,257,227,793 |
| (3)인쇄비 | | | 2,155,814,477 | | | 1,576,235,516 |
| (4)광고선전비 | | | 548,549,087 | | | 514,503,205 |
| (5)지급수수료 | | | 2,213,188,048 | | | 2,083,068,803 |
| (6)세금과공과 | | | 2,681,333,881 | | | 2,472,890,641 |
| (7)수도광열비 | | | 1,250,922,972 | | | 1,184,527,472 |
| (8)지급보험료 | | | 317,187,866 | | | 312,581,805 |
| (9)피복비와급량비 | | | 89,859,354 | | | 81,693,598 |
| (10)교육훈련비 | | | 953,943,141 | | | 1,036,017,110 |
| (11)지급임차료 | | | 3,325,643,655 | | | 3,191,472,126 |
| (12)유류비 | | | 109,639,854 | | | 116,178,245 |
| (13)수선유지비 | | | 5,122,652,986 | | | 4,466,669,296 |
| (14)여비교통비 | | | 6,666,259,290 | | | 5,704,993,781 |
| (15)업무추진비 | | | 3,355,217,843 | | | 3,061,564,792 |
| (16)외주용역비 | | | 13,610,339,373 | | | 12,313,857,099 |
| (17)보전비 | | | 5,000,000 | | | 5,000,000 |
| (18)보조비 | | | 3,047,886,790 | | | 59,408,690 |
| (19)감가상각비 | | | 15,394,527,990 | | | 15,015,460,343 |
| (20)대손상각비 | | | - | | | 235,350 |
| (21)연구개발비 | | | 1,545,612,690 | | | 1,528,304,800 |
| (22)기타비용 | | | 394,620,315 | | | 61,822,955 |
| **Ⅲ.비배분비용** | | | **146,573,950,568** | | | **88,638,017,473** |
| 1.기타이전비용 | | | 217,197,045 | | | 128,917,134 |
| 2.대손상각비 | | | 822,055,610 | | | 1,952,509,150 |
| 3.이자비용 | | | 77,616,762,289 | | | 24,693,285,006 |
| 4.평가손실 | | | 2,803,759,849 | | | 185,420,085 |
| 5.자산처분손실 | | | 11,211,282,006 | | | 35,827,196,039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6.기타비용 | | | 53,902,893,769 | | | 25,850,690,059 |
| **IV.비배분수익** | | | **1,113,943,388,339** | | | **767,742,221,908** |
|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 | | 84,469,592,367 | | | 87,974,664,457 |
| 2.이자수익 | | | 628,037,383,298 | | | 405,261,780,307 |
| 3.평가이익 | | | 272,552,794 | | | - |
| 4.자산처분이익 | | | 240,449,159,626 | | | 136,158,628,132 |
| 5.기타수익 | | | 160,714,700,254 | | | 138,347,149,012 |
| **V.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8,271,986,246,121** | | | **9,174,891,489,913** |
| **VI비교환수익 등** | | | **3,315,742,562,485** | | | **3,243,040,087,673** |
| 1.부담금수익 | | | 3,515,207,377,805 | | | 3,440,618,428,983 |
| 2.제재금수익 | | | 2,493,590,060 | | | 2,421,658,690 |
| 3.기타재원조달및이전 | | | (201,958,405,380) | | | (200,000,000,000) |
| **VII재정운영결과(V-VI)** | | | **4,956,243,683,636** | | | **5,931,851,402,240**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11조 7,456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6조 7,894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4조 9,562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전기 기초순자산** | **17,802,314,622,442** | **4,905,310,220,728** | **556,191,545,271** | **23,263,816,388,441** |
| 1. 보고금액 | 17,802,314,622,442 | 4,905,310,220,728 | 556,191,545,271 | 23,263,816,388,441 |
| **Ⅱ.재정운영결과** | | **5,931,851,402,240** | | **5,931,851,402,240** |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5,253,503,160,528** | | **5,253,503,160,528** |
| 1. 재원의조달 | | 12,320,208,617,518 | | 12,320,208,617,518 |
| (1) 국고수입 | | 11,004,092,388,930 | | 11,004,092,388,930 |
| (2) 부담금수익 | | 1,215,497,693,170 | | 1,215,497,693,170 |
| (3) 제재금수익 | | 3,169,575,590 | | 3,169,575,590 |
| (4) 무상이전수입 | | 77,062,947,978 | | 77,062,947,978 |
| (5) 기타재원조달 | | 20,386,011,850 | | 20,386,011,850 |
| 2. 재원의이전 | | 7,066,705,456,990 | | 7,066,705,456,990 |
| (1) 국고이전지출 | | 7,065,029,209,710 | | 7,065,029,209,710 |
| (2) 무상이전지출 | | 1,676,247,280 | | 1,676,247,280 |
| **Ⅳ.조정항목** | - | **4,000,000,000** | **422,819,791,351** | **426,819,791,351** |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416,358,526,151 | 416,358,526,151 |
| 2. 자산재평가이익 | - | - | 6,461,265,200 | 6,461,265,200 |
| 3. 기타순자산의증감 | - | 4,000,000,000 | - | 4,000,000,000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17,802,314,622,442** | **4,230,961,979,016** | **979,011,336,622** | **23,012,287,938,080**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17,802,314,622,442** | **4,230,961,979,016** | **979,011,336,622** | **23,012,287,938,080** |
| 1. 보고금액 | 17,802,314,622,442 | 4,230,961,979,016 | 979,011,336,622 | 23,012,287,938,080 |
| **Ⅶ.재정운영결과** | | **4,956,243,683,636** | | **4,956,243,683,636** |
|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 **5,171,222,297,348** | | **5,171,222,297,348** |
| 1. 재원의조달 | | 12,499,848,962,858 | | 12,499,848,962,858 |
| (1) 국고수입 | | 11,060,021,323,430 | | 11,060,021,323,430 |
| (2) 부담금수익 | | 1,395,988,823,310 | | 1,395,988,823,310 |
| (3) 제재금수익 | | 1,878,018,530 | | 1,878,018,530 |
| (4) 무상이전수입 | | 20,750,484,848 | | 20,750,484,848 |
| (5) 기타재원조달 | | 21,210,312,740 | | 21,210,312,740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2. 재원의이전 | | 7,328,626,665,510 | | 7,328,626,665,510 |
| (1) 국고이전지출 | | 7,328,626,665,510 | | 7,328,626,665,510 |
| **IX.조정항목** | - | **63,200,000,000** | **144,160,829,714** | **207,360,829,714** |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146,447,165,577 | 146,447,165,577 |
| 2. 자산재평가이익 | - | - | (2,286,335,863) | (2,286,335,863) |
| 3. 기타순자산의증감 | - | 63,200,000,000 | - | 63,200,000,000 |
| **X.당기 기말순자산 (VI-VII+VIII+IX)** | **17,802,314,622,442** | **4,509,140,592,728** | **1,123,172,166,336** | **23,434,627,381,506**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23조 4,346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23조 123억원 대비 4,223억원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4조 9,562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7조 3,286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부담금수입·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12조 4,998억원 및 조정항목 2,073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
|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19,394,887** | **-** |
| 1. 국가채권현재액 | 10,157,890 | - |
| 2. 국유재산현재액 | 9,228,220 | - |
| 3. 물품현재액 | 8,777 | - |
| 4. 국가채무합계 | - | -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 **29,931,475** | **6,496,848** |
|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 **10,536,588** | **6,496,848**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7,746,651 | 2,971,091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3,999,700 | 3,487,202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1,605,744) | 38,108 |
| 4. 대상차이(D) | 395,981 | 447 |
| 5. 기타차이(E) | - |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무역보험기금 자산 7,746,651백만원 및 무역보험기금 부채 2,971,091백만원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정부내대여금 3,999,700백만원, 정부내차입금 13,487,202백만원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
- 선급금 2,410백만원, 선급비용 73백만원, 미수채권 354,793백만원, 대손충당금 및 융자보조원가충당금 (-)1,810,157백만원, 현재가치할인차금 (-)153,585백만원, 유형자산 783백만원, 임차보증금 (-)61백원
- 미지급금 27,932백만원, 선수수익 6백만원, 미지급비용 10,034백만원, 충당부채 136백만원

④ 대상차이 :
- 한국은행예치금 337,461백만원, 미수제재금수익 7,443백만원, 건설중인자산 37,797백만원, 저장품 22,876백만원, 정부미술품 343백만원, 기타의투자자산 94백만원, 일반유형자산 348백만원, 대여금 (-)10,381백만원
- 기타예수금 447백만원

⑤ 기타차이 : 해당없음

## 2. 총괄 검토의견

### (1)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총괄 현황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의 세입 예산 규모는 8조 6,103억원, 징수결정액은 7조 6,546억원, 수납액은 7조 6,379억원이며, 전체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은 88.7%로, 2023년도(94.2%)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회계별 세입 결산 실적**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예 산(A) | 징수결정 | 수 납(B) | 불납결손 | 미수납 | 예산 대비 수납률 (B/A*100) |
|---|---|---|---|---|---|---|---|
| 합 계 | '23 | 8,300,418 | 7,845,229 | 7,816,584 | 2,575 | 26,070 | 94.2 |
| | '24 | 8,610,334 | 7,654,684 | 7,637,881 | - | 16,803 | 88.7 |
| | 차이 | 309,916 | △190,545 | △178,703 | △2,575 | △9,267 | |
| 일 반 | '23 | 182,944 | 167,333 | 154,749 | - | 12,584 | 84.6 |
| | '24 | 157,872 | 168,545 | 155,387 | - | 13,158 | 98.4 |
| | 차이 | △25,072 | 1,212 | 638 | - | 574 | |
| 에 특 | '23 | 5,648,484 | 5,202,389 | 5,194,696 | 2,575 | 5,118 | 92.0 |
| | '24 | 6,216,101 | 5,201,992 | 5,198,910 | - | 3,081 | 83.6 |
| | 차이 | 567,617 | △397 | 4,214 | △2,575 | △2,037 | |
| 지 특 | '23 | 122,796 | 65,590 | 57,222 | - | 8,369 | 46.6 |
| | '24 | 70,818 | 87,219 | 86,656 | - | 563 | 122.4 |
| | 차이 | △51,978 | 21,629 | 29,434 | - | △7,806 | |
| 소 특 | '23 | 2,346,194 | 2,409,918 | 2,409,918 | - | - | 102.7 |
| | '24 | 2,165,543 | 2,196,929 | 2,196,929 | - | - | 101.4 |
| | 차이 | △180,651 | △212,989 | △212,989 | - | - | |

일반회계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3년도 84.6%에서 2024년도 98.4%로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규모는 1,547억원에서 1,554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3년도 92.0%에서 2024년도 83.6%로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규모는 5조 1,947억원에서 5조 1,989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3년도 46.6%에서 2024년도 122.4%로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규모는 572억원에서 867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함.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2023년도 102.7%에서 2024년도 101.4%로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규모는 2조 4,099억원에서 2조 1,969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입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감소에 기인함.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의 세출 예산 규모는 11조 3,33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24억원, 우주항공청 이체 예산 △153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11조 3,410억원 중 11조 600억원을 지출하고 6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745억원을 불용하였음.

전년대비 차년도 이월 규모는 감소하였고 불용규모는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41억원) 지자체 매칭 지방비 미확보,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사업(7.8억원) 계약금액 이월 등이 있고, 주요 불용 사유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997억원) 수요 부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족으로 인해 투자계정 전출 미집행(849억원),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200억) 사업 지연 등이 있음.

## 회계별 세출 결산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 예 산 | 전년 이월 | 변 경 | | | 예산현액 | 지 출 | 차년 이월 | 불용 |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계** | **'23** | **10,873,023** | **6,620** | **-** | **±12,857** | **365,095** | **11,244,738** | **11,004,092** | **22,384** | **218,262** |
| | **'24** | **11,333,943** | **22,384** | **△15,293** | **±1,745** | **-** | **11,341,034** | **11,060,021** | **6,465** | **274,548** |
| 일반 | '23 | 6,334,299 | 5,024 | - | ±8,059 | 183,680 | 6,523,003 | 6,445,281 | 20,998 | 56,724 |
| | '24 | 5,545,535 | 20,998 | △15,293 | ±1,447 | - | 5,551,240 | 5,508,722 | 1,813 | 40,705 |
| 에특 | '23 | 2,003,669 | 569 | - | ±3,483 | 181,415 | 2,185,653 | 2,026,004 | 913 | 158,737 |
| | '24 | 2,807,514 | 913 | - | ±228 | - | 2,808,427 | 2,576,933 | 260 | 231,235 |
| 지특 | '23 | 839,389 | 990 | - | ±1,255 | - | 840,379 | 837,154 | 444 | 2,781 |
| | '24 | 1,225,970 | 444 | - | ±50 | - | 1,226,414 | 1,219,418 | 4,392 | 2,604 |
| 소특 | '23 | 1,695,666 | 37 | - | ±60 | - | 1,695,703 | 1,695,653 | 28 | 21 |
| | '24 | 1,738,998 | 28 | - | ±20 | - | 1,739,026 | 1,739,022 | - | 4 |
| 고특 | '23 | - | - | - | - | - | - | - | - | - |
| | '24 | 15,926 | - | - | - | - | 15,926 | 15,926 | - | - |

특히, 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97.5%로 전년(97.9%) 대비 0.4%p 감소하였으며, 집행률 감소의 주요 사유로는 전년도에 비해 무역보험금지급 사업의 거액 보험금 지급 감소로 불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회계별 집행률**

(단위: %)

| 구 분 | | 예산 대비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
|---|---|---|---|
| 전 체 | '23 | 101.2 | 97.9 |
| | '24 | 97.6 | 97.5 |
| 일반회계 | '23 | 101.8 | 98.8 |
| | '24 | 99.3 | 99.2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3 | 101.1 | 92.7 |
| | '24 | 91.8 | 91.8 |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23 | 99.7 | 99.6 |
| | '24 | 99.5 | 99.4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23 | 100.0 | 100.0 |
| | '24 | 100.0 | 100.0 |
|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23 | - | - |
| | '24 | 100.0 | 100.0 |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개 기금[1]까지 포함한 총지출[2] 기준 결산을 보면, 2024년도 총지출 결산액은 11조 3,704억 4,400만원으로 2023년도 총지출 예산액 11조 5,473억 3,400만원 대비 98.5%가 지출되었음.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3 결산(A) | '24 예산 | '24 결산(B) | 증 감 | |
|---|---|---|---|---|---|
| | | | | B-A | (B-A)/A |
| 일반회계 | 4,046,866 | 3,523,191 | 3,486,378 | △560,488 | △13.8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994,817 | 2,561,139 | 2,446,270 | 451,453 | 22.6 |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837,154 | 1,225,888 | 1,219,358 | 382,204 | 45.7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1,695,653 | 1,738,998 | 1,739,022 | 43,369 | 2.6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15,926 | 15,926 | 15,926 | 순증 |
|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 41,500 | 112,913 | 112,913 | 71,413 | 172.1 |
| 전력산업기반기금 | 2,461,286 | 2,140,962 | 2,122,260 | △339,026 | △13.8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85,292 | 228,317 | 228,317 | 43,025 | 23.2 |
| 합 계 | 11,262,568 | 11,547,334 | 11,370,444 | 107,876 | 1.0 |

2023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078억 7,600만원(약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전체 예산액 규모가 11조 1,713억원에서 11조 5,473억원으로 3,761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1) 금융성 기금인 무역보험기금을 제외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의미함.

2) 총지출이란 예산과 기금(금융성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계에서 회계·기금·계정 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지출 등을 제외한 지출규모로서, 중앙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모두 지출로 보는 재정지표임.

## (2)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내용

### ① 일반회계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1,578억 7,200만원)의 98.4%, 징수결정액(1,685억 4,500만원)의 92.2%인 1,553억 8,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5조 5,455억 3,500만원)의 97.5%인 5조 4,087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음.

‘무역보험기금출연’은 2024년 편성된 450억원이 전액 출연되었으나, 편성 당시 전망보다 무역보험기금의 자체수입이 초과수납되고 유효계약이 과소체결된 결과 기금배수는 당초 전망한 28.5배보다 낮은 21.7배로 나타났음. 향후 자체수입 및 기금총액 전망을 고도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금배수 컨설팅 연구용역 등을 기반으로 출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국제기구분담금’ 등 8개 세부사업 국제부담금은 2024년도 예산현액 83억 4,600만원 중 83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편성시 예상환율(1,300원/달러)보다 집행시 환율이 상승한 결과 29개 분담금 중 7개 분담금에서 상당 금액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2025년에도 편성시 예상환율(1,350~1,360원/달러)에 비해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어 미납액 발생 및 누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은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연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R&D연구기획사업 추진 시 신규 수요발굴, 사업심의 등 신규과제 협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로봇산업기술개발(R&D)’ 등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수행한 181개 R&D 내역사업은 연구과제 중 97.5%에 성공판정을 내리고, 성공과제 중 98.1%에 보통판정을 내리는 등[3] 절대다수의 연구과제에 대해 성공 및 보통평가를 하고 있음. 평가결과가 예산 및 정책결정에 실효성 있게 환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통물류기반조성’은 정책연구용역이 연말에 체결되어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집행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의 경우 완료 연구과제 중 83.7%에 대해 보통판정・16.3%에 대해 우수판정

### 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6조 2,161억 100만원) 대비 83.6%, 징수결정액(5조 2,019억 9,200만원) 대비 99.9%인 5조 1,989억원 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2조 8,084억 2,700만원) 대비 91.7%인 2조 5,769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음.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 25억 7,500만원이 3년 연속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이차보전 사업 도입·확대시 금리 경쟁력 확보, 수요자 선호도, 금융기관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에너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에너지바우처의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소득수준과 주거환경 등 수요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의 내역사업인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투자계획 변경승인으로 신규 추진·출자되었으나, 생산원료 가격변동,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023년, 2024년 모두 추진되지 못하였음. 연도별·단계별 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재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비축확대 품목의 가격변동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자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예산안 편성지침은 출자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출자규모를 적정 규모로 결정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유전개발사업출자’는 매년 예산편성 시 설정된 정부 출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결과 유전개발사업의 전체 출자율이 당초 계획(40%)과 달리 46%로 증가하였음. 향후 정부 출자율을 준수하고 적정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2024년 수소생산기지 5개소 구축이 모두 지연되어 정부의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 지연상황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연차별 예산배분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708억 1,800만원) 대비 122.3%, 징수결정액(872억 1,800만원) 대비 99.3%인 866억 5,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1조 2,259억 7,000만원) 대비 99.4%인 1조 2,194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음.

‘지방시대위원회지원’은 2024년 13개 연구용역 과제 중 12개 과제에서 이월이 발생하였고 특히 이 중 6개 과제의 계약체결이 11월 이후에 이루어져 계약체결 시점부터 이월이 불가피하였음. 사업수행체계 정비를 통해 일반연구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투자유치기반조성’의 내역사업인 ‘현금지원’ 사업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2024년 예산액 및 집행실적은 2,000억원에 달함. 이에 따라 향후 도착해야 할 약정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지급방식 유연화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계약이행 실효성 제고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④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2조 1,655억 4,300만원) 대비 101.4%, 징수결정액(2조 1,969억 2,800만원) 대비 100.0%인 2조 1,969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1조 7,389억 9,800만원) 대비 100.0%인 1조 7,390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음.

'소재부품기술개발(R&D)'은 2024년 전년 대비 4.3배 증가한 4,273억 6,600만원의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과제 700건 모두를 하반기 협약과제로 지정·집행하였음. 소재부품사업이 다른 산업분야에 미치는 중대성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 타 R&D 사업과의 관계[4] 등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전부를 하반기 체결과제로 지정·집행하는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음.

### 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159억 2,600만원) 대비 100%인 159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음.

4)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외 R&D 신규사업 하반기 체약과제 편성율: 1.4%

### ⑥ 전력산업기반기금

202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조 2,567억 8,600만원으로, 지출사업비는 운용규모의 40.4%인 2조 1,222억 6,000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에 각 1조 3,073억 7,600만원 및 2,000억원을 전출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0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1조 5,271억원 5,000만원은 여유자금(사업성 대기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의 내역사업인 ‘생산 및 시설자금’은 시공지연, 인·허가 및 계통연계 지체 등에 따라 발생한 융자 이월액 153억원 중 124억원이 산업시설 태양광에서 발생하였음. 지원분야별 사전점검 강화・계통연계에 따른 조기대응체계 구축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의 내역사업인 ‘단지개발지원’은 지방비가 1차년도에 확보되지 않고 2~3차년도에 집중 편성되는 경향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과 지방비 확보 상황을 점검하여 국비 교부액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상풍력산업지원’의 내역사업인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은 연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설계 및 착공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60억원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15억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전기공급’은 연료비 부족을 이유로 연말에 예산을 증액하는 자체변경을 하였으나 불용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소편성과 자체변경이 반복되고 있음. 향후 기준연료비 산정 시 합리적 단가 예측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음.

‘원전수출보증’은 원전 기자재·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수출보증보험 지원사업으로 2024년 신규 편성되었으나 실제 보증 실적은 없었음. 향후 발생할 보증수요와 사고율 추이를 반영하여 출연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은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공급계약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신규 편성되었으나, 대기업·해외기업의 높은 수주 비중과 중소·중견기업의 낮은 선금 신청률 등으로 집행이 저조하였음. 유사한 융자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질적인 수요와 집행 현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⑦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 총 규모는 8조 9,706억 1,600만원으로, 지출사업비는 운용규모의 2.5%인 2,269억 1,300만원이며, 기금운영비는 14억 400만원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조 8,887억원을 예탁하였고, 4조 8,535억 9,900만원의 여유자금(사업성 대기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중 ‘대학지원’ 사업은 산업·정책 분야 기여도 측정이 어렵다는 성과관리 상 한계가 있고, ‘종사자 마스터 양성’ 사업은 산업현장 중심이라는 취지와 달리 대학 참여 비율이 높고 수료율도 70%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성과관리 체계 강화, 참여대상 적정성 확보, 교육방식 개선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⑧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24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2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운용규모의 58.7%인 1,129억 1,300만원이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16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으로 38억 1,600만원 등 311억 1,600만원을 전출하였고, 482억 800만원은 여유자금(사업성 대기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기술료수입은 2021년부터 기술료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 수입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산촉기금을 통한 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기술료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그 외 추가적인 자체수입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⑨ 무역보험기금

2024년도 무역보험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당초 계획액 5조 5,509억 8,500만원 대비 6.9% 감소한 5조 1,666억 5,359만원으로,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4,768억 1,700만원이 무역보험지원운영, 무역보험환급금, 기금운영비로 지출되었음.

‘무역보험환급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 전망에 최근 5년간 누적 환급률을 곱하여 산정되고 있음. 각기 다른 보험종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확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환급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비’는 그동안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되어 왔음. 2024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244억 2,800만원을 자체변경하였고 2025년에도 총 605억 2,8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지방소득세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 수입·지출전망을 고도화하고 납세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이를 기타경비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Ⅱ.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 과 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증 감 (B-A) | 증 감 사 유 |
|---|---|---|---|---|
| 합 계 | 157,872 | 168,545 | 10,673 | |
| 재산수입 | 35,851 | 69,548 | 33,697 | |
| - 토지대여료 | 18,162 | 25,931 | 7,769 | 외투지역, 자유무역지역 토지대여료 |
| - 건물대여료 | 4,915 | 5,488 | 573 | 자유무역지역 건물대여료 |
| - 기타민간이자수입 | - | 2 | △2 | 행정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12,774 | 38,127 | 25,353 | 출연·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 | - | - | 행정소송 수수료 수익 |
| 경상이전수입 | 121,128 | 97,797 | △23,331 | |
| - 벌금및과료 | - | 73 | 73 | 법령 위반 과태료, 제재부가금 등 |
| - 과태료 | 150 | 433 | 283 | 법령 위반 과태료 |
| - 과징금 | 670 | 8,459 | 7,789 |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등 |
| - 변상금 | - | 332 | 332 | 무단 점유 변상금 |
| - 가산금 | 6 | 256 | 250 | 과태료, 과징금 등 미납부 가산금 |
| - 징계부과금 | - | 36 | 36 | 징계 등에 의한 환수금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20,302 | 88,244 | △32,058 | 출연·보조금의 정산·환수금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26 | 8 | △18 | |
| - 기타잡수입 | 26 | 8 | △18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과금 등 |
| 수입대체경비수입 | 867 | 1,134 | △267 | |
| - 기타잡수입 | 867 | 1,134 | △267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동부담금 |
| 기타자산매각대 | - | 21 | 21 | |
| - 기타자산매각대 | - | 21 | 21 |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578억 7,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85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106억 7,300만원(6.8%) 증액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며,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882억원), 기타재산이자수입(381억원), 토지대여료(259억원) 등이 있음.

##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불납결손 및 미수납 사유 |
|---|---|---|---|---|---|
| 합 계 | 168,545 | 155,387 | - | 13,158 | |
| 재산수입 | 69,548 | 65,974 | - | 3,574 | |
| - 토지대여료 | 25,931 | 23,260 | - | 2,671 | 업체 폐업, 파산, 경영악화 등 |
| - 건물대여료 | 5,488 | 4,595 | - | 893 | 업체 폐업, 파산, 경영악화 등 |
| - 기타민간이자수입 | 2 | 0 | - | 2 | 납부자 재력부족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38,127 | 38,119 | - | 8 | 업체 폐업, 파산, 경영악화 등 |
| - 기타재산이자와수입 | - | - | - | - | |
| 경상이전수입 | 97,797 | 88,474 | - | 9,323 | |
| - 벌금및과료 | 73 | 0 | - | 73 |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 - 과태료 | 433 | 191 | - | 242 |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 - 과징금 | 8,459 | 1,348 | - | 7,111 |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 - 변상금 | 332 | 5 | - | 327 |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 - 가산금 | 256 | 1 | - | 255 |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 - 징계부과금 | 36 | 2 | - | 34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88,244 | 86,927 | - | 1,317 |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8 | 6 | - | 2 | |
| - 기타잡수입 | 8 | 6 | - | 2 |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 수입대체경비수입 | 1,134 | 910 | - | 224 | |
| - 기타잡수입 | 1,134 | 910 | - | 224 | 업체 폐업, 도산, 경영악화 |
| 기타자산매각대 | 21 | 21 | - | 0 | |
| - 기타자산매각대 | 21 | 21 | - | 0 |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1,553억 8,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85억 4,500만원 대비 92.2%가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31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음. 주요 미수납과목으로는 과징금(71억원), 토지대여료(26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13억원) 등이 있으며 주로 연말 징수결정분 납기 미도래 및 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음.

## 2. 세출결산

###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4년도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5조 5,455억 3,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209억 9,800만원) 및 이체액(△152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5,512억 3,800만원 중 5조 5,087억 2,600만원이 지출되고 18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07억 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단위: 백만원)

|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 예산 | 전년이월 | 변경 | | | 예산현액 | 지출 | 차년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 계 | 5,545,535 | 20,998 | △15,293 | ±1,447 | - | 5,551,238 | 5,508,726 | 1,813 | 40,702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 5,545,535 | 20,998 | △15,293 | ±1,447 | - | 5,551,238 | 5,508,726 | 1,813 | 40,702 |
| □무역및투자유치(113) | 679,844 | 14,921 | - | 511 | - | 694,765 | 691,591 | 204 | 2,971 |
| ○무역진흥(1100) | 553,872 | 14,500 | - | - | - | 568,372 | 567,489 | - | 883 |
| ·대한상사중재원지원(1136) | 826 | - | - | - | - | 826 | 826 | - | - |
| ·무역금융지원(1138) | 45,000 | - | - | - | - | 45,000 | 45,000 | - | - |
| ·수출역량강화(1139) | 498,993 | 14,500 | - | - | - | 513,493 | 512,610 | - | 883 |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1133) | 9,053 | - | - | - | - | 9,053 | 9,053 | - | - |
| ○무역구제(1200) | 1,793 | - | - | - | - | 1,793 | 1,749 | - | 44 |
| ·무역구제지원(1233) | 1,793 | - | - | - | - | 1,793 | 1,749 | - | 44 |
| ○통상협력지원(1900) | 124,179 | 421 | - | 511 | - | 124,600 | 122,353 | 204 | 2,044 |
| ·다자간통상협력지원(1932) | 5,519 | 71 | - | - | - | 5,590 | 5,368 | 65 | 157 |
| ·양자간통상협력지원(1931) | 79,095 | 20 | - | 341 | - | 79,115 | 77,776 | - | 1,339 |
| ·자유무역협정체결(1937) | 5,327 | 54 | - | - | - | 5,381 | 5,034 | 52 | 296 |
| ·통상분쟁대응(1936) | 21,411 | 170 | - | 170 | - | 21,581 | 21,395 | 68 | 118 |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1935) | 12,827 | 106 | - | - | - | 12,933 | 12,780 | 19 | 134 |
| □에너지및자원개발(115) | 6,350 | 60 | - | - | - | 6,410 | 6,403 | - | 6 |
|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5200) | 6,350 | 60 | - | - | - | 6,410 | 6,403 | - | 6 |
| ·에너지신산업(5201) | 6,350 | 60 | - | - | - | 6,410 | 6,403 | - | 6 |
| □산업·중소기업일반(116) | 186,475 | 484 | △146 | 887 | - | 186,811 | 177,592 | 359 | 8,865 |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7100) | 186,475 | 484 | △146 | 887 | - | 186,811 | 177,592 | 359 | 8,865 |
| ·공동시설관리수입대체경비(7136) | 916 | - | - | - | - | 916 | 790 | - | 126 |

|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 예산 | 전년이월 | 변경 | | | 예산현액 | 지출 | 차년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7134) | 2,651 | - | - | - | - | 2,651 | 2,544 | - | 107 |
| · 본부기본경비(7111) | 20,488 | - | - | 825 | - | 20,486 | 20,038 | - | 452 |
| · 본부인건비(7101) | 99,839 | - | △146 | - | - | 99,693 | 95,972 | - | 3,722 |
| · 본부정책수립운영(7133) | 1,393 | - | - | - | - | 1,393 | 1,324 | - | 69 |
| ·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7142) | 1,884 | - | - | - | - | 1,884 | 1,825 | - | 59 |
|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7131) | 2,749 | 100 | - | - | - | 2,849 | 2,730 | 109 | 10 |
| · 소속기관기본경비(7118) | 6,799 | - | - | 62 | - | 6,799 | 6,455 | - | 344 |
| · 소속기관기타행정지원(7135) | 12,366 | 268 | - | - | - | 12,634 | 11,600 | 39 | 995 |
| · 소속기관인건비(7102) | 35,014 | - | - | - | - | 35,014 | 32,397 | - | 2,617 |
| ·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7132) | 2,376 | 116 | - | - | - | 2,492 | 1,917 | 211 | 364 |
| □산업혁신지원(117) | 4,672,866 | 5,533 | △15,147 | 49 | - | 4,663,252 | 4,633,140 | 1,250 | 28,860 |
| ○산업경쟁력기반구축(3100) | 994,855 | 268 | △3,050 | 9 | - | 992,073 | 965,295 | 207 | 26,571 |
| · 공공기술개발(3173) | 14,225 | - | - | - | - | 14,225 | 14,225 | - | - |
| ·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기반구축(3147) | 16,070 | - | - | - | - | 16,070 | 16,070 | - | - |
| ·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3162) | 2,377 | - | - | - | - | 2,377 | 2,377 | - | - |
| · 미래성장동력(3175) | - | - | - | - | - | - | - | - | - |
| · 산업경쟁력분석(3133) | 3,091 | 165 | - | 9 | - | 3,256 | 3,068 | 110 | 78 |
| · 산업기술기반구축(3171) | 632,878 | 103 | △3,050 | - | - | 629,931 | 609,774 | 97 | 20,060 |
| · 생산성향상지원(3160) | 6,393 | - | - | - | - | 6,393 | 6,393 | - | - |
| · 우수기술역량강화(3174) | 109,209 | - | - | - | - | 109,209 | 102,776 | - | 6,433 |
| · 인력양성(일반회계)(3161) | 210,612 | - | - | - | - | 210,612 | 210,612 | - | - |
| ○지역경제활성화(3300) | 41,266 | 5,172 | - | - | - | 46,438 | 44,161 | 777 | 1,500 |
| · 기업입지환경개선(3333) | 17,587 | - | - | - | - | 17,587 | 16,424 | - | 1,163 |
| · 자유무역지역조성(3331) | 15,779 | 5,172 | - | - | - | 20,951 | 19,837 | 777 | 337 |
| · 지방시대위원회운영(3334) | - | - | - | - | - | - | - | - | - |
| · 지역환경개선(3335) | 7,900 | - | - | - | - | 7,900 | 7,900 | - | - |
| ○주력산업진흥(3500) | 970,171 | - | △12,097 | - | - | 958,074 | 957,929 | - | 145 |
|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운영(3544) | 1,399 | - | - | - | - | 1,399 | 1,399 | - | - |
| · 뿌리산업육성지원(3574) | 16,634 | - | - | - | - | 16,634 | 16,634 | - | - |
| ·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3535) | 23,610 | - | - | - | - | 23,610 | 23,571 | - | 39 |
| · 수송기기기술개발(3551) | 535,188 | - | △12,097 | - | - | 523,091 | 522,985 | - | 106 |
| · 스마트전자기술개발(3561) | 162,165 | - | - | - | - | 162,165 | 162,165 | - | - |
| · 시스템산업기술개발(3571) | 1,295 | - | - | - | - | 1,295 | 1,295 | - | - |
| · 제조기반기술개발(3541) | 229,742 | - | - | - | - | 229,742 | 229,742 | - | - |
| · 주력산업국제협력(3534) | 138 | - | - | - | - | 138 | 138 | - | - |
| ○신산업진흥(3600) | 487,020 | - | - | - | - | 487,020 | 487,020 | - | - |
| · 로봇산업진흥(3672) | 70,766 | - | - | - | - | 70,766 | 70,766 | - | - |
| · 바이오산업육성(3649) | 59,230 | - | - | - | - | 59,230 | 59,230 | - | - |

|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 예산 | 전년 이월 | 변경 | | | 예산 현액 | 지출 | 차년 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 바이오헬스기술개발(3651) | 263,456 | - | - | - | - | 263,456 | 263,456 | - | - |
| · 산업융합및창의산업진흥(3688) | 43,114 | - | - | - | - | 43,114 | 43,114 | - | - |
| · 창의산업기술개발(3691) | 1,800 | - | - | - | - | 1,800 | 1,800 | - | - |
| · 탄소산업진흥(3637) | 48,654 | - | - | - | - | 48,654 | 48,654 | - | - |
|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3700) | 101,342 | 15 | - | 40 | - | 101,357 | 100,754 | - | 602 |
| ·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3731) | 73,143 | - | - | - | - | 73,143 | 72,763 | - | 380 |
| ·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3736) | 11,318 | 15 | - | 40 | - | 11,333 | 11,175 | - | 157 |
|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3732) | 16,881 | - | - | - | - | 16,881 | 16,816 | - | 65 |
| ○중견기업육성(4300) | 48,324 | 78 | - | - | - | 48,402 | 48,093 | 266 | 42 |
| · 유통물류기반조성(일반)(4302) | 2,533 | - | - | - | - | 2,533 | 2,533 | - | - |
| · 중견기업역량강화(4301) | 45,791 | 78 | - | - | - | 45,869 | 45,560 | 266 | 42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5000) | - | - | - | - | - | - | - | - | - |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5076) | - | - | - | - | - | - | - | - | - |
| ○포항지진 피해관리(6000) | 7,544 | - | - | - | - | 7,544 | 7,544 | - | - |
| · 포항지진 피해구제(6031) | 7,544 | - | - | - | - | 7,544 | 7,544 | - | - |
| ○회계기금간거래(8000) | - | - | - | - | - | - | - | - | - |
| · 회계기금간거래(8001) | - | - | - | - | - | - | - | - | - |
| ○회계간거래(8100) | 2,022,344 | - | - | - | - | 2,022,344 | 2,022,344 | - | - |
| · 회계간거래(8101) | 2,022,344 | - | - | - | - | 2,022,344 | 2,022,344 | - | - |

## (2) 예산변경 내역

### ① 전년도 이월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전년이월 | 20,998 | ○ 용역 관련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기간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 | 20,601 |
| | |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이월 | 397 |
| **합 계** | **20,998** | | **20,998** |

2024년도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은 209억 9,800만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용역 관련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정산 시점 미도래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206억 100만원,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3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음.

### ② 이 용 : 해당없음

### ③ 이 체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이체 | △15,293 | ○ 우주항공청 이체 인력 인건비 예산<br>- 본부인건비 | △146 |
| | | ○ 우주항공청 이관 사업 예산 집행잔액 이체<br>-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br>-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br>-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 개발사업(R&D)<br>-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순수주익(CleanWing)모듈개발(R&D)<br>- 터보팬항공엔진인코넬718초내열합금주단조품개발(R&D)<br>-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 △50<br>△3,000<br>△2,573<br>△4,282<br>△3,242<br>△2,000 |
| **합 계** | **△15,293** | | **△15,293** |

2024년도 일반회계 이체액은 △152억 9,300만원이며,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에 관한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1억 4,600만원) 및 우주항공 관련 사업비 예산 집행잔액(△152억 9,300만원)을 이체하였음.

## ④ 전 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전 용 | ±1,447 |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전용<br>-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 ±887 |
| | | ○ 사업계획 변경, 업무량 증가 대응 등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전용 | ±560 |
| **합 계** | **±1,447** | | **±1,447** |

2024년도 일반회계 전용액은 14억 4,700만원으로, 주요 전용요인 및 전용규모를 살펴보면,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에서 8억 8,7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5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3) 예비비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음.

### (4)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다음연도 이 월 | 1,813 | ○ 용역 관련 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 | 1,761 |
| |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월 | 52 |
| 합 계 | 1,813 | | |

2024년도의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300만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용역 관련 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사업비 17억 6,100만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5,200만원을 이월하였음.

## (5)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불 용 | 40,702 | ○ 낙찰차액, 수요부족,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 33,567 |
| | | ○ 사업계획 및 설계지연으로 공사비 미집행 | 20,000 |
| | | ○ 본부·소속기관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 7,135 |
| 합 계 | 40,702 | | 40,702 |

202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407억 2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수요부족,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335억 6,700만원, 사업계획 및 설계 지연으로 공사비 미집행 200억원,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71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3. 재무제표

## 제1장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 | 2024 | | 2023 | |
|---|---|---|---|---|
| **자산** | | | | |
| **Ⅰ.유동자산** | | **67,145,395,877** | | **59,565,248,074**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5,653 | | 8,230,545 |
| 2. 미수채권 | 76,120,630,493 | | 67,856,439,330 | |
| 미수채권대손충당금 | 12,634,558,790 | 63,486,071,703 | 11,833,585,180 | 56,022,854,150 |
| 3. 기타유동자산 | | 3,659,318,521 | | 3,534,163,379 |
| **Ⅱ.투자자산** | | **268,770,393,105** | | **268,729,698,696** |
| 1. 장기투자증권 | | 268,676,837,000 | | 268,676,837,000 |
| 2. 기타투자자산 | | 93,556,105 | | 52,861,696 |
| **Ⅲ.일반유형자산** | | **2,889,295,929,650** | | **2,881,453,636,174** |
| 1. 토지 | | 2,535,211,009,015 | | 2,545,783,491,055 |
| 2. 건물 | 322,238,918,020 | | 321,868,406,760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28,305,413,567 | 293,933,504,453 | 19,422,046,271 | 302,446,360,489 |
| 3. 구축물 | 20,774,561,195 | | 16,720,101,913 |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5,336,608,144 | 15,437,953,051 | 3,855,766,239 | 12,864,335,674 |
| 4. 기계장치 | 15,852,318,072 | | 22,133,185,827 |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15,159,826,289 | 692,491,783 | 21,425,011,019 | 708,174,808 |
|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24,186,679,755 | | 23,785,787,556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9,376,065,062 | 4,810,614,693 | 18,341,910,516 | 5,443,877,040 |
| 6. 기타일반유형자산 | 3,649,337,853 | | 3,696,123,373 | |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2,237,232,167 | 1,412,105,686 | 2,258,756,577 | 1,437,366,796 |
|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 37,798,250,969 | | 12,770,030,312 |
| **Ⅳ.사회기반시설** | | - | | - |
| **Ⅴ.무형자산** | | **11,414,976,060** | | **13,265,680,079** |
| 1. 소프트웨어 | | 11,414,974,060 | | 13,265,678,079 |
| 2. 기타무형자산 | | 2,000 | | 2,000 |

(단위: 원)

| | 2024 | 2023 |
|---|---|---|
| **Ⅵ.기타비유동자산** | **1,739,298,400** | **2,324,384,696** |
|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1,739,298,400 | 2,324,384,696 |
| **자산계** | **3,238,365,993,092** | **3,225,338,647,719** |
| **부채** | | |
| **Ⅰ.유동부채** | **468,657,535** | **14,808,956,999** |
| 1. 기타유동부채 | 468,657,535 | 14,808,956,999 |
| **Ⅱ.장기차입부채** | - | - |
| **Ⅲ.장기충당부채** | **46,055,084** | -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8,255,084 | - |
| 2. 기타장기충당부채 | 37,800,000 | -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 - |
| **부채계** | **514,712,619** | **14,808,956,999** |
| **순자산** | | |
| **Ⅰ.기본순자산** | **1,233,661,602,819** | **1,233,661,602,819**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717,311,025,224** | **686,573,145,157** |
| **Ⅲ.순자산조정** | **1,286,878,652,430** | **1,290,294,942,744** |
| **순자산계** | **3,237,851,280,473** | **3,210,529,690,720** |
| **부채와순자산계** | **3,238,365,993,092** | **3,225,338,647,719** |

일반회계의 2024년도 총자산은 3조 2,384억원으로 전기 3조 2,253억원 대비 131억원(0.4%) 증가하였음.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3,232,687,154,452** | **-** | **3,232,687,154,452** | **3,760,690,064,697** | **-** | **3,760,690,064,697** |
| 1.무역진흥 | 510,127,018,496 | - | 510,127,018,496 | 507,790,689,516 | - | 507,790,689,516 |
| 2.무역구제 | 1,818,464,310 | - | 1,818,464,310 | 1,755,453,041 | - | 1,755,453,041 |
| 3.통상협력지원 | 122,319,175,944 | - | 122,319,175,944 | 97,673,702,377 | - | 97,673,702,377 |
| 4.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 6,541,655,902 | - | 6,541,655,902 | 5,205,000,000 | - | 5,205,000,000 |
| 5.산업경쟁력기반구축 | 965,327,062,112 | - | 965,327,062,112 | 1,081,607,605,105 | - | 1,081,607,605,105 |
| 6.지역경제활성화 | 25,812,427,368 | - | 25,812,427,368 | 229,373,892,185 | - | 229,373,892,185 |
| 7.주력산업진흥 | 957,929,741,430 | - | 957,929,741,430 | 1,124,251,758,190 | - | 1,124,251,758,190 |
| 8.신산업진흥 | 487,020,000,000 | - | 487,020,000,000 | 480,311,000,000 | - | 480,311,000,000 |
| 9.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 99,977,531,650 | - | 99,977,531,650 | 143,613,556,923 | - | 143,613,556,923 |
| 10.중견기업육성 | 48,270,077,240 | - | 48,270,077,240 | 88,207,857,360 | - | 88,207,857,360 |
| 11.포항지진 피해관리 | 7,544,000,000 | - | 7,544,000,000 | 899,550,000 | - | 899,550,000 |
| **Ⅱ.관리운영비** | | | **205,007,161,932** | | | **192,794,348,156** |
| 1.인건비 | | | 135,329,085,254 | | | 131,780,752,103 |
| 2.경비 | | | 69,678,076,678 | | | 61,013,596,053 |
| (1)복리후생비 | | | 24,157,567,450 | | | 23,256,410,342 |
| (2)소모품비 | | | 3,112,110,444 | | | 2,814,818,785 |
| (3)인쇄비 | | | 2,016,666,570 | | | 1,429,095,930 |
| (4)광고선전비 | | | 220,345,000 | | | 191,451,000 |
| (5)지급수수료 | | | 1,194,730,277 | | | 1,112,330,067 |
| (6)세금과공과 | | | 1,093,246,976 | | | 947,725,266 |
| (7)수도광열비 | | | 988,704,170 | | | 920,247,519 |
| (8)지급보험료 | | | 150,706,142 | | | 153,818,841 |
| (9)피복비와급량비 | | | 86,839,980 | | | 78,668,870 |
| (10)교육훈련비 | | | 314,266,150 | | | 348,353,590 |
| (11)지급임차료 | | | 1,507,473,194 | | | 1,335,532,519 |

(단위: 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12)유류비 | | | 55,504,226 | | | 58,955,197 |
| (13)수선유지비 | | | 2,382,919,425 | | | 1,468,298,524 |
| (14)여비교통비 | | | 5,997,180,694 | | | 5,064,044,295 |
| (15)업무추진비 | | | 2,896,068,386 | | | 2,642,221,049 |
| (16)외주용역비 | | | 5,863,960,041 | | | 5,153,961,910 |
| (17)보전비 | | | 5,000,000 | | | 5,000,000 |
| (18)보조비 | | | 3,047,886,790 | | | 59,408,690 |
| (19)감가상각비 | | | 12,869,649,348 | | | 12,584,710,994 |
| (20)연구개발비 | | | 1,322,631,100 | | | 1,326,719,710 |
| (21)기타비용 | | | 394,620,315 | | | 61,822,955 |
| **Ⅲ.비배분비용** | | | **901,368,500** | | | **1,544,259,470** |
| 1.대손상각비 | | | 800,973,610 | | | 1,539,807,730 |
| 2.기타비용 | | | 100,394,890 | | | 4,451,740 |
| **Ⅳ.비배분수익** | | | **154,980,544,833** | | | **159,373,067,189** |
|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 | | 29,130,729,534 | | | 22,183,760,261 |
| 2.이자수익 | | | 104,999,082 | | | 31,084,957 |
| 3.자산처분이익 | | | 1,185,766,300 | | | 7,923,669,180 |
| 4.기타수익 | | | 124,559,049,917 | | | 129,234,552,791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3,283,615,140,051** | | | **3,795,655,605,134**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 **3,283,615,140,051** | | | **3,795,655,605,134** |

일반회계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3조 4,386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1,5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3조 2,836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전기 기초순자산** | **1,233,661,602,819** | **560,859,340,640** | **1,283,542,277,529** | **3,078,063,220,988** |
| 1. 보고금액 | 1,233,661,602,819 | 560,859,340,640 | 1,283,542,277,529 | 3,078,063,220,988 |
| **Ⅱ.재정운영결과** | | **3,795,655,605,134** | | **3,795,655,605,134** |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3,921,369,409,651** | | **3,921,369,409,651** |
| 1. 재원의조달 | | 6,526,294,151,869 | | 6,526,294,151,869 |
| (1) 국고수입 | | 6,445,281,324,360 | | 6,445,281,324,360 |
| (2) 제재금수익 | | 1,145,455,460 | | 1,145,455,460 |
| (3) 무상이전수입 | | 59,367,539,952 | | 59,367,539,952 |
| (4) 기타재원조달 | | 20,499,832,097 | | 20,499,832,097 |
| 2. 재원의이전 | | 2,604,924,742,218 | | 2,604,924,742,218 |
| (1) 국고이전지출 | | 154,748,772,890 | | 154,748,772,890 |
| (2) 무상이전지출 | | 2,450,175,969,328 | | 2,450,175,969,328 |
| **Ⅳ.조정항목** | - | - | **6,752,665,215** | **6,752,665,215** |
| 1. 자산재평가이익 | - | - | 6,752,665,215 | 6,752,665,215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1,233,661,602,819** | **686,573,145,157** | **1,290,294,942,744** | **3,210,529,690,720** |
| | | | |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1,233,661,602,819** | **686,573,145,157** | **1,290,294,942,744** | **3,210,529,690,720** |
| 1. 보고금액 | 1,233,661,602,819 | 686,573,145,157 | 1,290,294,942,744 | 3,210,529,690,720 |
| **Ⅶ.재정운영결과** | | **3,283,615,140,051** | | **3,283,615,140,051** |
|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 **3,314,353,020,118** | | **3,314,353,020,118** |
| 1. 재원의조달 | | 5,537,083,604,088 | | 5,537,083,604,088 |
| (1) 국고수입 | | 5,508,722,285,940 | | 5,508,722,285,940 |
| (2) 제재금수익 | | 1,803,436,880 | | 1,803,436,880 |
| (3) 무상이전수입 | | 5,350,484,848 | | 5,350,484,848 |
| (4) 기타재원조달 | | 21,207,396,420 | | 21,207,396,420 |
| 2. 재원의이전 | | 2,222,730,583,970 | | 2,222,730,583,970 |
| (1) 국고이전지출 | | 155,386,583,970 | | 155,386,583,970 |
| (2) 무상이전지출 | | 2,067,344,000,000 | | 2,067,344,000,000 |
| **Ⅸ.조정항목** | - | - | **(3,416,290,314)** | **(3,416,290,314)** |
| 1. 자산재평가이익 | - | - | (3,416,290,314) | (3,416,290,314)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1,233,661,602,819** | **717,311,025,224** | **1,286,878,652,430** | **3,237,851,280,473** |

일반회계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3조 2,379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3조 2,105억원 대비 274억원이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3조 2,836억원,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조 2,227억원 및 조정항목 34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조 5,371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자산 | 부채 |
|---|---|---|
|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3,140,786,965,141** | - |
| 1. 국가채권현재액 | 5,698,695,000 | - |
| 2. 국유재산현재액 | 3,126,701,013,612 | - |
| 3. 물품현재액 | 8,387,256,529 | - |
| 4. 국가채무합계 | - | -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 **3,238,365,993,092** | **514,712,619** |
|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 **97,579,027,951** | **514,712,619**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 -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 -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51,957,552,974 | 70,832,073 |
| 4. 대상차이(D) | 45,621,474,977 | 443,880,546 |
| 5. 기타차이(E) | - | - |

< 주요내역 >

① 결산조정항목차이 :

- 선급금 1,544,379,990원, 선급비용 73,458,531원, 미수채권 63,035,273,243원, 대손충당금 (-)12,634,558,790원, 임차보증금 (-)61,000,000원
- 미지급비용 1,641,190원, 선수수익 2,661,069원, 미지급금 20,474,730원, 충당부채 46,055,084원

② 대상차이 :

- 국고예금 5,653원, 건설중인자산 37,798,250,969원, 정부미술품 343,000,000원, 기타투자자산 93,556,105원, 미수제재금수익 7,386,662,250원
- 예수금 443,880,546원

# 4. 검토의견

## (1) 무역보험기금 출연: 기금 자체수입 전망 정확도 제고 및 적정 출연금 반영 필요

### ① 결산 현황

‘무역보험기금 출연’(1138-881)은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50억원을 전액 집행함.

’24년도 무역보험기금 출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추경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무역보험기금 출연 | 45,000 | 45,000 | - | - | - | 45,000 | 45,000 | - | - | 380,000 |

주: 2025년 본예산은 800억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시 3,000억원 증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기금 자체수입 전망 정확도 제고 및 적정 출연금 반영 필요

「무역보험법」[5]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5) 「무역보험법」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보험·보증사업의 지원 목표액 및 운용배수를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편성해오고 있음.

2024년에는 'RG 특례보증'을 위한 400억원,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50억원, 총 450억원을 출연했고, 결산 결과 각각 계획했던 지원목표 이상으로 보험을 공급하였음.

**'24년도 무역보험기금 출연 지원목표 및 실적**

(단위: 억원)

| 지원사업 | 예산 | 지원목표(운용배수) | 지원실적(실제 운용배수) |
|---|---|---|---|
| RG 특례보증 | 400 | 2,000(5배) | 2,000*(5배) |
|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 | 50 | 625(12.5배) | 22,260(445.2배) |
| 합 계 | 450 | 2,625 | 24,260 |

주: * 기존 RG특례보증에 따른 누적 출연금(2019년 400억원 포함)은 총 800억원이고, 2024년말 기준 누적 보험공급액은 4,000억원으로, 지원한도 모두 소진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은 대규모 플랜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시 중장기수출보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계획안에는 550억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기금 총액 및 기금배수를 고려하여 50억원으로 감액되었음.

'RG특례보증'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존 출연금만을 바탕으로 RG 특례보증보험을 공급[6]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안을 그대로 의결했지만,

6) 2011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RG 특례보증보험 인수한도 특례 책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RG 특례보증보험 목적으로 출연된 자본만을 바탕으로 운용하고 있음.

그 외 보험·보증 종목은 기금 순자산을 바탕으로 인수여력을 산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반드시 별도 출연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출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3월에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수출보험을 2건[7] 제공하였으며, 해당 수출보험 2건 및 2024년도 출연금만을 고려하면 운용배수는 당초 계획과 달리 445.2배로 나타남.

그러나 이후로도 기금 순자산을 바탕으로 각종 플랜트,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수출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무역보험기금 전체의 경영실적을 고려하면 기금배수는 21.7배이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특히 무역보험기금 경영실적과 2024년 계획안 수립 당시 전망을 비교하면 유효계약액은 전망(113조 5,524억원) 대비 △8.9%(10조 966억원) 적은 103조 4,558억원[8]이고, 기금총액은 전망(3조 9,878억원) 대비 19.8%(7,878억원) 많은 4조 7,756억원으로 나타남.

7)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 사업에 따른 보험계약 현황

| 계약명 | 계약기간 | 보험료수입 | 보험공급액 |
|---|---|---|---|
| 사우디 A 프로젝트 | 2024. 3. ~ 2039. 12. (16년) | 350억원 | 1조 8,386억원 |
| 베트남 N 프로젝트 | 2024. 3. ~ 2037. 1. (12년 10개월) | 269억원 | 3,873억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8) 2024년 유효계약액 전망시에는 폴란드 방산 2차 수출 등 거액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폴란드 방산 2차수출 계약(수출계약액 약 65억$)은 2025년 8월 1일에 체결됨에 따라 2024년도 유효계약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무역보험기금 경영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배, %)

| 사업명 | 2021 | 2022 | 2023 | 2024 | | 2025 |
|---|---|---|---|---|---|---|
| | | | | 전망* | 실적 | 전망** |
| 기금총액(A) | 30,385 | 34,118 | 39,187 | 39,878 | 47,756 | 54,360 |
| 정부출연금 | 3,500 | 912 | 500 | 1,200 | 700 | 3,800 |
| 자체수입 | 7,456 | 8,668 | 11,927 | 10,092 | 14,747 | 14,220 |
| 유효계약액(B) | 803,900 | 865,524 | 1,009,241 | 1,135,524 | 1,034,558 | 1,191,060 |
| **기금배수(B/A)** | **26.5** | **25.4** | **25.8** | **28.5** | **21.7** | **21.9** |

주: 1. 기금총액: 기금의 순 자산
2. 유효계약액: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책임이 남아있는 책임잔액
3. 기금배수: 기금총액 대비 유효계약액 비율
* 2023년 9월말('24년 정부출연금, 보험공급액 전망은 국회에 제출한 '24년 계획안 및 계약 체결한도 기준)
** 2025년 4월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기금총액 증가에 따라 당초 예상(28.5배)과 달리 기금배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수입이 당초 전망에 비해 4,655억원 초과수납되었음.

이는 주로 금융기관 예치·유가증권 운용에 따른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이 2,629억 3,400만원, 보험료수입·환헷지 거래이익 등에 따른 기타잡수입(69-691)은 770억 3,400만원 초과수납되었기 때문임.

즉, 최근 여유자금 운용성과 제고와 보험료 수입 증대 등에 힘입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 및 기금배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2024년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안은 기획재정부로 5월말에 제출되면서 당시 수입·유효계약 전망치를 기반으로 편성되는데 국회에서 예산 의결·확정시에는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이고 12월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의결하기 전에 자체수입 및 기금총액 등을 재전망하게 되므로, 관련 수치가 크게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출연금을 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향후 자체수입 및 기금총액 전망을 고도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무역보험기금 적정 기금배수 컨설팅' 연구용역[9]을 기반으로 목표 기금배수를 설정하여 출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 (과제명) 무역보험기금 적정 기금배수 컨설팅 용역
- (과업목적) 무역보험기금의 적정 기금배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국회 및 정부와의 업무협의시 활용 필요 ※ 국회는 정부의 기금출연금 산정 관련 무역보험기금 총액 및 적정 기금배수를 기반으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계약자) 삼일회계법인
- (계약기간) 2025. 7. 7. ~ 2025. 10. 6.(3개월)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실적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① 결산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직망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212억 7,500만원 중 3,208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300만원을 불용함.

’24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321,275 | 321,275 | - | - | - | 321,275 | 320,892 | - | 383 | 329,29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실적 및 효율성 제고 필요

사업비 중 ‘해외전문인력유치’ 사업은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 전문인력 발굴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해외전문인력 DB구축[10], 인재발굴 및 채용, 국내기업과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간 채용상담 주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10) 해외 현지 구인 플랫폼, 링크드인 활용을 통한 해외전문인력 DB 구축

특히 동 사업은 종전에 'Contact Korea' 사업으로도 불리며 해외전문인력을 발굴해왔으나, 2025년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시행[11]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공사가 해외인재유치센터[12]를 개소하고 신규 제도·사업을 추가로 운영[13]하게 되면서 2024년부터 미리 예산액 및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음.

**2020~2025년간 해외전문인력 유치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6월말 |
|---|---|---|---|---|---|---|
| 예산액(백만원) | 338 | 338 | 338 | 338 | 538 | 977 |
| 인재발굴 신청(건) | 249 | 310 | 273 | 297 | 305 | 189<br>글로벌 180<br>첨단 9 |
| 이력서 전달 인원(명) | 1,220 | 1,276 | 1,157 | 719 | 660 | 540<br>글로벌 336<br>첨단 204 |
| 글로벌인재 발굴(명) (채용실적) | 93 | 80 | 103 | 99 | 105 | 글로벌 40 |
| 고용추천서(건) | 119 | 108 | 159 | 140 | 87 | 글로벌 45 |
| 박람회 채용실적(건) | 22 | 31 | 35 | 37 | 31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11) 2023. 12. 20. 본회의 의결,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

1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①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안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해외인재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13) [ 해외인재유치센터 지정 전·후 변경사항 비교 ]

| 구분 | | 센터 지정 전 | 센터 지정 후 |
|---|---|---|---|
| 지원사업 | 계속 | 글로벌인재 발굴 서비스<br>고용추천서 발급(E-7-1/S2)<br>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서울 1회) | 글로벌인재 발굴 서비스<br>고용추천서 발급(E-7-1/S2/T新)<br>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부울경, 대전충남) |
| | 신규 | - | 글로벌인재 발굴 프리미엄 서비스<br>국내외 홍보 사업(연간 8회 이상)<br>K-Tech Pass 발급<br>컨시어지 서비스* 등 |

* K-Tech Pass 발급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초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정보 제공, 통역 지원 등)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데 비해 실제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인재발굴 신청(297→305건) 및 글로벌인재 발굴(99→105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이력서 전달 인원(719→660명, △8.2%), 고용추천서(140→87건, △37.9%), 박람회 채용실적(37→31건, △16.2%)은 오히려 일부 감소하였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14] 및 각종 신규 사업·제도가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준비되면서 2024년에는 특별법 시행령 등 법령 및 제도마련, 기반 구축과 관련된 대응 업무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인재발굴 프리미엄 서비스[15], 외국인유학생 박람회 첨단산업 전용관 신설 등을 통해 인재유치 사업을 질적으로 제고하였으며,

2025년 4월부터는 정부의 핵심인재유치 프로그램인 'K-Tech Pass'[16]가 시행되어 다양한 국내외 홍보, 유치활동을 전개[17]할 예정이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임.

---

14) 기존 Contact Korea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 등

15)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제적으로 접촉·발굴

16) K-Tech Pass: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2·§28·§30 및 동법 시행령 §36에 따라 국내 첨단산업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 리더급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증서이며, 이를 통해 특별비자 발급과 정착 지원 등의 혜택 부여

□ (발급대상)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우수 해외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에 근거

□ (신청주체) 발급대상의 우수 해외인재를 고용한 국내 첨단기업

자료: https://www.kotra.or.kr/gtc_kor/subList/41000058003

17) 2024년에 해외홍보사업은 시범적으로 1회하였으나, 2025년 해외홍보사업을 8회 실시할 예정

다만, 2024년 예산부터 이미 DB 구축비용은 1.6배, 채용박람회 예산은 1.9배씩 증액되었는데, 제도·기반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투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 효율성은 떨어진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일부 사업실적은 감소하였음.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기존 예산(2020~2023년)보다 큰 금액인 4억 5,800만원을 집행했지만, 인재발굴 신청, 글로벌인재 발굴 등의 사업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20~2025년간 해외전문인력 유치사업 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 | | | | | | 예산 | 집행* |
| 해외전문인력 유치 | 338 | 338 | 338 | 338 | 538 | 977 | 458 |
| - DB이용 | 140 | 140 | 150 | 150 | 240 | 271 | 108 |
| -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 | 110 | 110 | 100 | 100 | 190 | 180 | 133 |
| - 홍보·운영** | 88 | 88 | 88 | 88 | 108 | 526 | 217 |

주: * 2025. 6. 30. 기준
** 2025년 홍보·운영 비용은 첨단인재 거점무역관 4개소 신규 지정 및 현지 채용박람회 등 사업비를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K-Tech Pass' 등 신규 사업·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구축되는데 시일이 소요되면서 홍보효과 및 실제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정책시차에 따라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 제정

및 사업 증액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홍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K-tech Pass, 컨시어지 서비스(정착초기 밀착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설계·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동 사업 효율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3) 해외플랜트진출확대: 기획평가관리비 사전 편성 및 사용용도에 따른 적정 비목 편성 필요

#### ① 결산 현황

‘해외플랜트진출확대’(1139-311)는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력 강화 및 수주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 플랫폼 및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89억 7,400만원이 모두 교부됨.

’24년도 해외플랜트진출확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 8,974 | 8,974 | - | - | - | 8,974 | 8,974 | - | - | 8,2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기획평가관리비 사전 편성 및 사용용도에 따른 적정 비목 편성 필요

동 사업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이하 “플랜트 개척지원”),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플랜트수주 지원센터 운영’, ‘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이하 “기자재 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 개척지원’(이하 “기자재 개척지원”)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그 중 플랫폼·센터 운영사업을 제외한 ‘플랜트 개척지원’, ‘기자재 수출지원’, ‘기자재 개척지원’, 총 3개 내역사업은 전담기관이 각각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수당, 회의운영비, 국외여비 등의 평가비와 사업공고·현장점검 및 관리인원 인건비 등의 사업관리비 등 기획평가관리비[18](이하 “기평비”)가 소요되고 있음.

2020년 이후 내역사업별로 기평비 산출근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플랜트 개척지원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기평비가 편성되어왔고, 2024년 신규 내역사업인 기자재 개척지원[19]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3.2% 수준으로 기평비가 산정되고 있음.

**사업별 기획평가관리비 산출 및 집행현황**

| 연도 | 산출근거 | 집행액 |
|---|---|---|
|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한국플랜트산업협회)** | | |
| 2020 | 316백만원 (전체사업비 3,840백만원의 10% 이내) | 297백만원 |
| 2021 | 306백만원 (전체사업비 3,170백만원의 10% 이내) | 306백만원 |
| 2022 | 316백만원 (전체사업비 3,170백만원의 10% 이내) | 316백만원 |
| 2023 | 316백만원 (전체사업비 3,170백만원의 10% 이내) | 316백만원 |
| 2024 | 316백만원 (전체사업비 3,170백만원의 10% 이내) | 315.9백만원 |
| 2025 | 316백만원 (전체사업비 3,170백만원의 10% 이내) | - |
| **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한국기계산업진흥회)** | | |
| 2020 | - | |
| 2021 | - | |
| 2022 | - | |

18) 기획평가관리비란 ① 사업 및 과제기획 등에 소요되는 기획비, ② 공모·선정·협약체결 등의 단계에서 소요되는 평가비, ③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비, ④ 사업을 수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간접비로 구성됨.

19) 2023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기존 내역사업들을 통폐합

| 연도 | 산출근거 | 집행액 |
|---|---|---|
| 2023 | - | |
| 2024 | (전체사업비 250백만원의 10% 이내,<br>'24. 7. 사업변경으로 20백만원 확보) | 16.7백만원 |
| 2025 | 25백만원 (전체사업비 200백만원의 12.5%) | - |
|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 개척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2024 (신규) | 140백만원 (전체사업비 4,416백만원의 3.2%) | 103백만원 |
| 2025 | 118백만원 (전체사업비 3,753백만원의 3.2%)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기자재 수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기평비 예산 없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자체인력 및 운영비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2024년 해당 기관이 “더 이상 인건비 지원 없이 사업 운영이 불가”하다고 건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30일에 2,000만원을 업무추진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기평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중 1,67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기자재 수출지원 사업의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목 | 당초 | 변경후 | 증감 |
|---|---|---|---|
| 일반수용비(210-01) | 34 | 15 | △19 |
| 일반용역비(210-14) | 0 | 55 | 55 |
| 국외여비(220-02) | 16 | 0 | △16 |
| 사업추진비(240-01) | 0 | 20 | 20 |
| 민간경상보조(320-01) | 200 | 160 | △40 |
| 합 계 | 250 | 250 | 0 |

주: 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시장개척단 오프라인 개최 등 세부추진 내용 변동으로 인한 보조세목간 내역 변경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재 수출지원 사업 역시 다른 지원사업처럼 선정·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비, 사업관리인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데 이는 보조사업 목적에 본질적으로 포함되는 활동이므로 국비로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2025년 기자재 수출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

| |
|---|
| [벤더등록 및 국제인증 획득 지원] 150백만원 (≒ 10개사 × 20백만원 × 70%(보조율)) |
| [시장개척단 및 수출상담회] 25백만원 |
| [기획평가비] 25백만원 |

다만, 2024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기평비를 전액 업무추진비(240-01) 비목으로 변경·정산하였는데 해당 비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평가위원 수당에 따른 일반수용비(210-01) 비목, 관리인력을 위한 인건비 보수(110-01) 비목 등 다양한 비목이 소요될 필요가 있었고, 당초 해당 기관이 요청한 항목도 인건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평비 사용용도에 따라 적정한 비목으로 변경·정산할 필요가 있었음.

그리고 기자재 수출지원 사업은 2024년 전체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8%인 2,000만원을 기평비로 확보하여 6.7%인 1,67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5년에는 전체 사업비 2억원 중 12.5%인 2,500만원으로 기평비를 편성하여 기평비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함.

소규모 사업은 특성상 기평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사업비 대비 기평비 비율이 12.5%인 것은 다른 내역사업 등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동 사업 예산안 편성시 기평비 비목, 내용 및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평비 비목 및 금액을 사전에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 (4)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및 계획 변경 필요

#### ① 결산 현황

‘킨텍스 3단계 건립’(1139-314)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킨텍스 건립사업 중 마무리 3단계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90억원이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킨텍스 3단계 건립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킨텍스 3단계 건립 | 14,500 | 14,500 | 14,500 | - | - | 29,000 | 29,000 | - | - | 11,6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및 계획변경 필요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은 2021~2027년간 총사업비 6,726억원(국비 2,222억원, 지방비 4,50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가는 설계비의 100%, 공사비의 30%를 지원하고 지자체(경기도, 고양시)는 공사비의 35%를 각각 지원할 예정임[20].

20)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경기도·고양시·코트라)(1999)」
· 국 비 : 설계비 전액 + 건축비의 30% 분담
· 지방비 : 건축비의 70%(경기도, 고양시 각 35%씩 분담)
* 부지는 고양시 무상제공

국비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보조금(민간자본보조)을 교부하면 KOTRA가 사업시행주체인 ㈜킨텍스에 출자하고, 지방비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킨텍스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킨텍스 3단계 건립 개요**

| |
|---|
| ○ (주요내용)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98)」에 따른 킨텍스 건립사업 중 마무리 3단계 사업(전시면적 10.8만㎡ → 17.8만㎡로 확장)<br>- 킨텍스 제1전시장('05, 5.4만㎡), 제2전시장('11, 5.4만㎡) + 제3전시장(7만㎡) 건립 추진<br>○ (사업기간) '21～'23년(당초*) → '21～'27년(현재**)<br>* 2021. 4. 기본계획 수립시 기준, ** 2024. 8. 자율조정후 기준<br>○ (사업규모) 연면적 293,735㎡ → 217,958㎡<br>- 제3전시장, 제1～3전시장 연결통로, 주차장 등<br>○ (총사업비) 4,853억원 (당초)(국비 1,641억원, 지방비 3,212억원)<br>→ 6,726억원(국비 2,222억원, 지방비 4,504억원)<br>- 용지보상비 제외<br>○ (지원내용) 설계비 100%, 공사비 30% 지원 (민간자본보조)<br>- 지자체(경기도, 고양시)는 공사비의 각 35%씩 분담(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 '99년)<br>○ (시행체계) 산업부(예산교부) → KOTRA(출자) → ㈜킨텍스(시행주체)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당초 2021～2023년간 총사업비 4,853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며, 그 중 국비는 1,641억원으로 계획되었음. 이에 따라 2021년 예산액은 200억원으로 편성·교부되어 ㈜킨텍스에 출자되고 2021년 11월 기본설계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선금 87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킨텍스 3단계 건립 추진경과

○ ('20.1.)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B/C : 시나리오1(킨텍스 단독) 1.11, 시나리오2(잠실 제2코엑스 건립) 1.01
○ ('20.1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3단계 기본계획 수립
**○ ('21.1.~4.)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총사업비 4,853억원, '21~'23)**
○ ('21.6.~7.) 조달청-킨텍스 업무협약, 기본설계 용역 공모안 적정성 검토
○ ('21.8.~11.) 기본설계 사업자 등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진행(조달청)
○ ('21.11.)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해안 컨소시엄, '21.11) 및 설계 착수
**○ ('22.9.~12.) 건설원가 급등에 따른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 ('23.1.) 총사업비 재심의 요청(산업부 → 기재부 총사업비과)
○ ('23.4.)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KDI 설계적정성 검토 결정)
**○ ('23.9.) 기재부 총사업비 재심의 결과 확정**

총사업비 조정(억원) : 당초4,853 → 조달청 설적6,869 → 최종6,544 (당초 대비 +1,691억원)
※ 공사비 조정(억원) : 당초4,453 → 조달청 설적6,298 → 최종5,998 (당초 대비 +1,545억원)

○ ('23.11.24.) 실시설계 및 공사사업 공고(1차) → PQ서류접수 무응찰로 유찰(12.13.)
○ ('23.12.19.) 실시설계 및 공사사업 재공고(2차) → PQ서류접수 무응찰로 유찰('24.1.10.)
○ ('23.12.~'24.2.) 건설업계 대상 사업설명회·간담회(3차례)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사업성 확보
**○ ('24.2) 공사비 물가변동 등 총사업비 자율조정**
**(총사업비 6,544억→6,718억)(공사비 5,998억원→6,164억원)**
○ ('24.3.8.) 조달청 입찰안내서 재심의
○ ('24.3.25.) 실시설계 및 공사사업 수정공고(3차)
  → PQ서류접수 단일응찰로 유찰('24.4.16.)
○ ('24.5.9.) 실시설계 및 공사사업 재공고(4차)
  → PQ서류접수 단일응찰로 유찰('24.5.27.)
○ ('24.8.2.) 계약방법 변경 : 경쟁입찰 → 수의계약
**○ ('24.8.) 감리비 물가변동 등 총사업비 자율조정**
**(총사업비 6,718→6,726억원)(감리비 141.9억원→149.9억원)**
○ ('24.8.5.~11.4.) 입찰참여 시공사(DL)* 대상 기술제안서 작성
○ ('24.11.14.) 조달청 주관 기술제안서 심의 (적격 통과)
○ ('24.12.27.) 우선시공분 계약 - DL이앤씨 컨소시엄(총 7개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기본설계 진행과정에서 원자재가격 인상 등 건설원가 급등으로 공사비가 2배(4,453→8,478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22.9.~12.) 절차[21]가 추가되었고,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22]에 따라 기재부 총사업비 재심의('23.1.~4.)를 진행하였으며 기재부는 추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계적정성 검토[23]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함('23.9.).

그러나 재설계 및 재심의를 거친 총사업비 기준으로도 실시설계 및 공사사업 공고('23. 11.(1차), 12.(2차))에 대한 응찰기업이 없어 2024년 2월에 자율조정을 거쳐 총사업비를 인상(6,718억원)함.

이후 3차 공고('24.3.) 및 4차 공고('24. 5.)에 계속 단일 컨소시엄[24]이 응찰하면서 해당 컨소시엄과 2024년 8월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 계약체결후 조달청 기술제안서 심의를 거쳤고, 보다 빠르게 착공하고자 2024년 12월 27일에 우선시공분 계약부터 체결하여 기초굴착(터파기) 등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해당 컨소시엄에 12월 26일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도 하여 실시설계도 수행 중임.

---

21)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설계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 타당성,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사업계획에 지장없는 회의실·로비 등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설계(공사비 6,298억원)
23) 회의실·로비·연결통로 등을 추가 축소하여 재설계(공사비 5,998억)
24) DL이앤씨 컨소시엄(총 7개사)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우선시공분 감리비 기성금 5억 7,4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25년 5월부터는 매월 시공사가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우선시공분 계약금액 268억 5,000만원 전액 지급할 계획임.

## 사업비(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4월말 |
|---|---|---|---|---|---|---|
|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액 | 20,000<br>(기본설계 11,415)<br>(실시설계 8,585) | 14,500<br>(실시설계 827)<br>(공사비 13,673) | 14,500<br>(실시설계 827)<br>(공사비 13,673) | 14,500<br>(실시설계 5,683)<br>(공사비 8,817) | 11,600<br>(실시설계 2,659)<br>(공사비 8,941) |
| | 예산현액 | 20,000<br>(기본설계 11,415)<br>(실시설계 8,585) | 7,100 (전용)*<br>7,400 (불용)**<br>(실시설계 827)<br>(공사비 13,673) | 14,500<br>(이월)***<br>(실시설계 827)<br>(공사비 13,673) | 29,000<br>(실시설계 6,510)<br>(공사비 22,490) | 11,600<br>(실시설계 2,659)<br>(공사비 8,941) |
| | **교부액** | **20,000** | - | - | **29,000** | - |
| 킨텍스 실실 집행액 | **기본설계** | **8,791** | **1,152** | - | **1,472** | - |
| | 실시설계 | - | - | - | - | (본계약시 15,095 지급) |
| | **공사비** | - | - | - | **574** | (우선시공 26,850)<br>(본계약 선금 미정) |
| 킨텍스 보유액 (실실 집행 잔액) | 기본설계 | 2,624 | 1,472 | 1,472 | - | - |
| | 실시설계 | 8,585 | 8,585 | 8,585 | 15,095 | 15,095 |
| | 공사비 | - | - | - | 21,916 | 21,916 |

* 세부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로 5,100백만원 전용, 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로 2,000백만원 전용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 지원)

** 건설원가 급등으로 총사업비 증가 예상됨에 따라 기재부 협의 거쳐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22.9~12월)' 절차 추가, 이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하여 불용 처리

*** 2023년 14,500백만원 부처이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후 2025년 9~10월에 수의시담을 거쳐 본공사 및 실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계약체결시 킨텍스가 보유하고 있는 실시설계비 잔액 150억 9,500만원과 2025년도 예산액 26억 5,900만원, 총 177억 5,400만원을 모두 집행할 계획이며,

2025년 11월부터는 본공사를 착공하면서 공사비 선금, 중도금 등을 최대한 집행하고, 연내에 도비·시비를 포함한 공사비 1,384억원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설명임.

그런데 공사기간은 공고문 기준으로 약 42개월(착공일로부터 1,260일)이고, 이는 우선시공분 착공일(2025.3.)부터 기산하므로 2028년 12월에 공사가 종료되어야 하지만, 실제 수의시담 및 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될 것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2029년 1분기에 완공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2027년까지 사업을 수행·완료할 예정인 현재의 사업계획상 사업기간 및 연차별 예산배분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25].

25)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공사 계약('25.10월 예정) 이후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와 총사업비 사업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 연차별 예산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원)

| 내 용 | 합 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계획) | 2027년 (계획) |
|---|---|---|---|---|---|---|---|---|
| 국비 | 222,213.6 | 20,000 | 0 | 0 | 29,000 | 11,600 | 72,000 | 89,613.6 |
| 설계비 (국비) | 29,169.0 | 20,000 | - | - | 6,510 | 2,659 | - | - |
| 공사비 (국비) | 193,044.6 | - | - | - | 22,490 | 8,941 | 72,000 | 89,613.6 |
| 경기도비 | 225,218.7 | 0 | 19,500 | 3,000 | 3,000 | 43,000 | 84,000 | 72,718.7 |
| 고양시비 | 225,218.7 | 2,000 | 17,452 | 3,000 | 3,000 | 43,000 | 84,000 | 72,766.7 |
| 합 계 | 672,651.0 | 22,000 | 36,952 | 6,000 | 35,000 | 97,600 | 240,000 | 235,09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총사업비 조정 및 계약체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액 290억원은 2024년 11월 18일에 ㈜킨텍스에 출자되었지만 ㈜킨텍스에서는 이를 5억 7,400만원만 집행하여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금액이 재이월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우선시공 공사 및 실시설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사업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차별 예산 배분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 세계엑스포참가지원: 물가급등·현지여건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

#### ① 결산 현황

‘세계엑스포참가지원’(1139-318)은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등록엑스포 및 인정엑스포 참가를 위해 한국관을 조성하고 각종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72억 8,300만원 중 16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7,800만원을 불용함.

’24년도 세계엑스포참가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세계엑스포 참가지원 | 17,283 | 17,283 | - | - | - | 17,283 | 16,705 | - | 578 | 10,39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물가급등·현지여건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계엑스포참가지원’[26] 사업은 당초 2021년 12월에 4년(2022~2025년)간 총사업비 391억 5,9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보조사업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기간은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26) 그 외 ‘2030부산엑스포 유치 후속지원’ 내역사업(’24년 예산액 5억원 전액 불용)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철거기간을 반영하여 5년(2022~2026년)으로 연장되고, 총사업비는 당초 2020 두바이 엑스포 사업비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과 달리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조직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재추계하여 이를 변경하게 됨.

변경계획에 따르면 건축비는 31억 3,400만원(17%), 운영비는 12억 5,800만원(13.5%) 증액되었으나 전시·영상비는 2억 4,700만원(△1.9%), 국내외지원은 △2억 1,600만원(△11.8%) 감액되었고, 행사·공연·홍보비용[27]은 그대로 유지됨.

**오사카엑스포 총사업비 계획(2021. 12월말)**

| 당 초 | 총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합 계 | 39,159 | 941 | 10,574 | 21,237 | 6,407 | - |
| 건축 | 18,406 | 941 | 5,512 | 10,105 | 1,848 | - |
| 전시·영상 | 12,818 | - | 3,845 | 7,691 | 1,282 | - |
| 운영 | 3,997 | - | 897 | 1,550 | 1,550 | - |
| 행사·공연·홍보 | 2,104 | - | - | 1,052 | 1,052 | - |
| 국내외지원 | 1,834 | - | 320 | 839 | 675 | - |

⇩

**오사카엑스포 총사업비 계획(2023. 12월말)**

| 비 목 | 합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합 계 | 43,087 | 941 | 10,574 | 16,783 | 9,447 | 5,342 |
| 건축 | 21,540 | 941 | 5,530 | 7,764 | 4,945 | 2,360 |
| 전시·영상 | 12,571 | - | 3,845 | 7,191 | 727 | 808 |
| 운영 | 5,255 | - | 897 | 876 | 2,699 | 783 |
| 행사·공연·홍보 | 2,104 | - | - | 552 | 300 | 1,252 |
| 국내외지원 | 1,618 | - | 302 | 400 | 776 | 13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7) 비용 항목간 구분
- (운영) 한국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안내요원, 청소·보안인력 등), 유틸리티(전기, 수도, 통신 등), 운영물자(관람객 소모품, 기념품, 보고서, 안내책자) 제작비 등으로 구성
- (행사·공연·홍보) 한국관 개관식, 한국의 날 공식 기념식, 한국주간 행사, 자체행사,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외지원) 한국관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주제선정, 자문위원회·지원협의회 구성 등), 법률자문, 계약·사업추진 관련 연구용역, 한국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해당

그런데 동 사업의 총사업비 당초 계획이 수립된 2021년말과 달리 엔데믹·엔저에 따른 건설업계 활황, 원자재가격 급등, 노동력 수급 부족 등으로 오사카 엑스포 전체적으로 시공단가가 크게 상승함. 이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3년 6월에 일본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시공여건 급변상황을 공식서한으로 통보[28]받았으며,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건축 설계용역'에 따른 기존 설계도면으로는 예정가격의 4배 수준의 시공 가견적을 수령하고, 시공입찰은 2번 유찰(1차 무응찰, 2차 1개사 응찰)됨[29].

그리고 개막일정상 설계 재공모는 불가하여 2023년 12월~2024년 3월동안 기존 업체와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용역비용이 5억 9,850만원 발생하게 됨.

한편, 설계변경 결과 당초 설계컨셉만 유지한 간소한 설계가 채택되어 디자인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총괄 자문위원회('24. 7.) 등에서는 한국적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추가하기 위해 전시운영용역에서도 추가과업 및 비용이 17억 5,320만원 발생[30]하게 됨.

---

28) 이후 2023년 9월에는 국가관을 엑스포 조직위에서 건설하는 방식(Type X)으로 변경제안하는 엑스포조직위측 서한을 수령·검토했으나, 면적 축소로 인해 전시 컨셉 구현이 어렵고, 내·외장 공사비 합산 시 건축예산 과다 소요로 불가 결정

29) * 타국 유사사례

○ (일) 이벤트홀 : 2차 유찰, 예정가 1.5배 인상, 3차 재입찰 통해 낙찰, 테마관 생명의 연마: 1차 유찰, 1.8배 인상 재입찰 실시,

○ (미) 현지 2위 건설사와 협상 결렬

○ (UAE) 시공사 선정 불가

30) 전시·운영 용역 계약기간: 2023.3.~2026.6.

이 같은 물가상승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에서 건축비 및 행사·공연·홍보비가 증액[31]되면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음(43,087 → 43,950백만원). 다만, 집행과정에서 한국관 전시구조물(한산모시) 설치를 위한 시공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2억원 증액되었던 행사·공연·홍보비가 3억원 다시 감액됨(2,304 → 2,004백만원).

**오사카엑스포 총사업비 현황(2025년)**

| 비 목 | 합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합 계 | 43,950 | 941 | 10,574 | 16,783 | 10,310* | 5,342 |
| 건축 | 22,527 | 941 | 5,530 | 7,776 | 5,920 | 2,360 |
| 전시·영상 | 12,571 | - | 3,845 | 7,191 | 727 | 808 |
| 운영 | 5,243 | - | 897 | 876 | 2,687 | 783 |
| 행사·공연·홍보 | 2,004 | - | - | 552 | 200 | 1,252 |
| 국내외지원 | 1,605 | - | 302 | 388 | 776 | 139 |

* 2025년도 예산액은 베오그라드 기획비용 8,000만원을 포함한 103억 9,000만원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즉, 물가급등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 설계면적 축소, 설계구조 변경 및 행사·공연·홍보비용을 당초 계획보다 1억원 감액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음.

기존 엑스포 한국관에 비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면적은 절반 이하로 적은 편이며, 이에 따라 한국관 관람객 목표도 280만명으로 설정하여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면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됨.

31) 건축: 건설자재비 상승, 노동법 개정 및 공사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건설노무비 상승→+675백만원
행사·공연·홍보: 엑스포 테마위크주제 관련 타부처·기관과 협력사업 기획→+200백만원
국내외지원:→△12백만원 절감

## 2010년 이후 등록엑스포 한국관 규모 및 관람객 수

| 연 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2025년 |
|---|---|---|---|---|
| 엑스포명 | 상하이 | 밀라노 | 두바이 | 오사카 |
| 사업비(억원) | 377 | 329 | 471 | 431 |
| 한국관 면적($m^2$) | 7,683 | 3,990 | 6,559 | 1,994 |
| 한국관<br>관람객(A, 만명) | 725 | 230 | 345<br>(오프라인 110.5,<br>VR한국관 234.5) | 목표: 280<br>→ (7월말) 147 |
| 엑스포 전체<br>방문객(B, 만명) | 7,308 | 2,150 | 2,410<br>(오프라인) | 목표: 2,820<br>→ (7월말) 1,223 |
| 한국관 방문비율<br>(A/B, %) | 9.9 | 10.7 | 4.6<br>(오프라인) | 목표: 10.0<br>→ (7월말) 12.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 관람객 목표는 오사카 엑스포 방문객 목표에 한국관 방문비율 10.0%를 전제로 산정하였는데, 7월말 현재 개최기간(4.13.~10.13.) 중 기간이 60% 경과한 데 비해 전체 방문객 수는 1,223만명으로 목표 대비 43.4%, 한국관 관람객 수는 147만명으로 목표 대비 52.5% 수준으로 나타남. 즉, 오사카 엑스포 전체 관람객이 목표(2,820만명) 대비 달성 부진할 것으로 예상[32]되면서 한국관 관람객 목표(280만명)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또한 2025년 예산안 편성시와 달리 행사·홍보·공연·비용이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집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행사 완성도가 저해되거나 홍보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2) 최종 2,000~2,100만명 예상

그리고 관람객 수나 홍보성과가 정량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홍보, 국제협력 강화 등 엑스포 참가의 전략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지 건축비 급등 등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해 오사카 엑스포 참가 관련 각종 용역에서 추가과업 및 비용이 연쇄적으로 발생·증액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행사·홍보·공연 등 실제 행사 개최와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전략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6)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제기구분담금 등 미납액 지속적 누적 방지 필요

#### ① 결산 현황

‘국제부담금’(340-02목)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등[33]으로,

2024년에는 국제기구분담금,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 국제부담금 등 8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84억 4,600만원 중 83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국제부담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일반 | 국제기구분담금 (1932-302) | 1,109 | 1,109 | - | - | - | 1,109 | 1,107 | - | 2 | 925 |
| 일반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ODA)(1932-303) | 59 | 59 | - | - | - | 59 | 59 | - | - | 60 |
| 일반 | 국제부담금 (1932-304) | 2,072 | 2,072 | - | - | - | 2,072 | 2,072 | - | - | 2,242 |
| 일반 | 통상분쟁대응(1936-401)[1)] | - | - | - | 170 | - | 170 | 170 | - | - | 125 |
| 일반 | 통상협정체결 및 후속조치(1937-401)[1)] | 360 | 360 | - | - | - | 360 | 349 | - | 11 | 150 |

33) 국제부담금 유형
○ UN 산하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사업 및 운영비
○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파견경비 등 기타 국제부담금

| 회계·기금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일반 | 아시아생산성기구 분담금(ODA)(3160-303) | 1,723 | 1,723 | - | - | - | 1,723 | 1,723 | - | - | 1,824 |
| 에특 | 에너지국제기구 분담금(5131-301) | 2,625 | 2,625 | - | - | - | 2,625 | 2,625 | - | - | 2,857 |
| 에특 | 에너지국제협력(5131-308)[1] | - | - | - | 228 | - | 228 | 227 | - | 1 | 100 |
| 합 계 | | 7,948 | 7,948 | - | 398 | - | 8,346 | 8,332 | - | 14 | 8,283 |

주: 1) WTO 개도국 지원펀드 기여금, RCEP 분담금,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자발적 기여금 결산내역만 작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국제기구분담금 등 미납액 지속적 누적 방지 필요

‘국제기구분담금’(1932-302)은 국제기구 가입 및 회원국 유지를 위한 분담금 납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사업비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8개 세부사업에 29개 분담금 및 부담금 등(이하 “분담금사업”)이 국제부담금(340-02목) 비목으로 집행되었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기구분담금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 사업명 | 연번 | 분담금명 | ’24 예산액 | ’24 집행액 |
|---|---|---|---|---|---|
| 일반 | 국제기구분담금[1] (1932-302) | 1 | 국제법정계량기구분담금 | 94 | 94 |
| | | 2 | 국제도량형국분담금 | 855 | 855 |
| | | 3 | OECD조선작업반분담금 | 160 | 158 |
| 일반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ODA)(1932-303) | 4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 59 | 59 |
| 일반 | 국제부담금 (1932-304) | 5 | 신재생에너지적합성평가시스템분담금 | 19 | 12 |
| | | 6 | 국제표준화기구분담금 | 700 | 697 |
| | | 7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분담금 | 19 | 21 |
| | | 8 | 국제전기기술위원회분담금 | 200 | 256 |

| 회계·기금 | 사업명 | 연번 | 분담금명 | '24 예산액 | '24 집행액 |
|---|---|---|---|---|---|
| | | 9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분담금 | 3 | 4 |
| | | 10 | 아·태인정협력체분담금-KOLAS | 34 | 24 |
| | | 11 | 국제인정기구포럼분담금 | 6 | 10 |
| | | 12 | 아태법정계량포럼분담금 | 8 | 8.5 |
| | | 13 | 국제전기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분담금 | 7 | 8 |
| | | 14 | 국제방폭기기인증제도분담금 | 4 | 5 |
| | | 15 | 국제표준화기구 개도국역량강화 지원 | 396 | 393 |
| | | 16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글로별영향기금 | 338 | 307 |
| | | 17 | 철강글로벌포럼분담금 | 62 | 28 |
| | | 18 | 국제납아연연구그룹분담금 | 45 | 67.6[2] |
| | | 19 | 해외파견자부담금 | (격년부담) | (격년부담) |
| | | 20 | 국제냉동기구분담금 | 74 | 74 |
| | | 21 |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분담금 | 183 | 159 |
| 일반 | 통상분쟁대응 (1936-401)[3] | 22 | WTO 개도국 지원펀드 분담금 | - | 170 |
| 일반 | 통상협정체결 및 후속조치(1937-401) | 23 | RCEP 임시사무국 분담금 | 360 | 349 |
| 일반 | 아시아생산성기구 분담금(ODA)(3160-303) | 24 |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 | 1,723 | 1,723 |
| 에특 | 에너지국제기구 분담금(5131-301) | 25 |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 CCOP | 78 | 82.7 |
| | | 26 | 국제에너지기구 IEA | 1,624 | 1,576 |
| | | 27 | 국제에너지포럼 IEF | 162 | 178.4 |
| | | 28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 761 | 787.6 |
| 에특 | 에너지국제협력 (5131-308)[4] | 29 | 청정에너지장관회의 CEM 자발적 기여금 | - | 228 |
| 합 계 | | | | 7,974 | 8,334.8 |

주: 1) 무역위원회 분담금은 2025년 신설
2) ('23미납액) 21.1백만원, ('24분담금) 46.5백만원
3) WTO 인턴십 개설 추진과정에서 분담금 납부 합의되어 관련 예산(2억원) 중 일부 전용
4) 비목 오편성(사업출연금)을 정정하기 위해 전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국제부담금은 대부분 USD, 유로화, 스위스프랑, AUD 등 외화로 납부하므로[34], 목표금액에 환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이하 원/달러(USD) 기준으로 검토하면 2023년 5월 전망을 기준으로 약 1,300원/달러로 예상하여 2024년도 국제부담금 예

34) 국제부담금(1932-304) 사업 중 국제표준화기구 개도국역량강화 지원만 원화기준으로 납부

산이 확정됨.

그러나 2024년에는 환율이 전반적으로 예상환율보다 3~4%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말에 납부한 경우 환율이 급등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했던 목표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납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발생하였음.

특히 분담금사업별로 예상환율 대비 집행환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예상환율이 과소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납액이 1,000달러 이상 크게 발생한 분담금은 아래 표와 같은 7가지임.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담금사업별 예상·집행환율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번 | 분담금사업명 | 통화 | 예상환율 (A) | 집행환율 (B) | (B-A)/A | 미납액 |
|---|---|---|---|---|---|---|
| 1 | 국제법정계량기구분담금 | € | 1,419 | 1,489 | 4.9 | 2,900€ |
| 2 | 국제도량형국분담금 | € | 1,419 | 1,502 | 5.8 | 31,637 |
| 3 | OECD조선작업반분담금 | € | 1,419 | 1,440 | 1.5 | 1,300 |
| 4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 $ | 1,301 | 1,341 | 3.1 | 20,925 |
| 5 | 신재생에너지적합성평가시스템분담금 | CHF | 1,427 | 1,536 | 7.6 | - |
| 6 | 국제표준화기구분담금 | CHF | 1,427 | 1,538 | 7.8 | 140,295.68 (CHF) |
| 7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분담금 | AUD | 874 | 873 | △0.1 | - |
| 8 | 국제전기기술위원회분담금 | CHF | 1,427 | 1,536 | 7.6 | - |
| 9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분담금 | CHF | 1,427 | 1,520 | 6.5 | - |
| 10 | 아·태인정협력체분담금-KOLAS | AUD | 874 | 873 | △0.1 | - |
| 11 | 국제인정기구포럼분담금 | $ | 1,303 | 1,444 | 10.8 | - |
| 12 | 아태법정계량포럼분담금 | $ | 1,303 | 1,345 | 3.2 | - |

| 연번 | 분담금사업명 | 통화 | 예상환율 (A) | 집행환율 (B) | (B-A)/A | 미납액 |
|---|---|---|---|---|---|---|
| 13 | 국제전기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분담금 | CHF | 1,427 | 1,524 | 6.8 | - |
| 14 | 국제방폭기기인증제도분담금 | CHF | 1,427 | 1,555 | 9.0 | - |
| 15 | 국제표준화기구 개도국역량강화 지원 | - | (원화기준) | (원화기준) | - | - |
| 16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글로벌영향기금 | CHF | 1,427 | 1,536 | 7.6 | - |
| 17 | 철강글로벌포럼분담금 | € | 1,456 | 1,449 | △0.5 | - |
| 18 | 국제납아연연구그룹분담금 | € | 1,456 | (1차) 1,489<br>(2차) 1,479 | 2.3<br>1.6 | - |
| 19 | 해외파견자부담금 | $ | (격년부담) | (격년부담) | - | - |
| 20 | 국제냉동기구분담금 | € | 1,490 | 1,473 | △1.1 | - |
| 21 |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분담금 | $ | 1,301 | 1,397 | 9.7 | - |
| 22 | WTO 개도국 지원펀드 기여금[1)] | - | - | - | - | - |
| 23 | RCEP 임시사무국 분담금 | $ | 1,304 | 1,395 | 7.0 | - |
| 24 |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 | $ | 1,301 | 1,338 | 2.8 | 432,385.08<br>(USD) |
| 25 |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 CCOP | $ | 1,301 | 1,378 | 5.9 | - |
| 26 | 국제에너지기구 IEA | €<br>£<br>$ | 1,419(원/€)<br>1,559(원/£)<br>1,301(원/USD) | 1,471(원/€)<br>1,502(원/€)<br>1,801(원/£)<br>1,342(원/USD) | 3.7<br>5.8<br>15.5<br>3.2 | 210,096.64<br>(EUR) |
| 27 | 국제에너지포럼 IEF | $ | 1,301 | 1,352 | 5.8 | |
| 28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 $ | 1,301 | 1,354 | 3.9 | |
| 29 |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자발적 기여금 | € | 1,419 | 1,495 | 5.4 | - |

주: $는 USD 의미
1) 2024년도에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어 예상환율 없이 집행, 미납액 0원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예산의 경우에는 2024년 5월 전망을 기반으로 약 1,350~1,360원/달러로 예상하여 이를 편성·확정하였음. 그러나 2024년에 이어 2025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고환율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제부담금 미납액 발생 및 누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예를 들어 2025년 4월말 현재 국제에너지기구 분담금은 2024년 미납액을 이미 납부했는데, 2025년 예산 확정시 예상환율은 1,469.2원/€인데 비해 집행시 환율은 1,514원/€로 나타나 2025년 분담금 중 미납액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35]됨.

2023~2025년 7월말 현재까지 월별 평균 환율(원/달러)

| 연/월 | 원/달러 | 연/월 | 원/달러 | 연/월 | 원/달러 |
|---|---|---|---|---|---|
| 2023/01 | 1,245.34 | 2024/01 | 1,325.67 | 2025/01 | 1,455.50 |
| 2023/02 | 1,276.54 | 2024/02 | 1,331.37 | 2025/02 | 1,445.58 |
| 2023/03 | 1,305.40 | 2024/03 | 1,331.63 | 2025/03 | 1,457.92 |
| 2023/04 | 1,322.05 | 2024/04 | 1,369.25 | 2025/04 | 1,441.92 |
| 2023/05 | 1,327.93 | 2024/05 | 1,365.05 | 2025/05 | 1,390.70 |
| 2023/06 | 1,296.55 | 2024/06 | 1,379.95 | 2025/06 | 1,365.15 |
| 2023/07 | 1,283.22 | 2024/07 | 1,383.37 | 2025/07 | 1,376.92 |
| 2023/08 | 1,321.54 | 2024/08 | 1,352.87 | - | - |
| 2023/09 | 1,331.73 | 2024/09 | 1,332.76 | - | - |
| 2023/10 | 1,351.11 | 2024/10 | 1,365.37 | - | - |
| 2023/11 | 1,308.01 | 2024/11 | 1,394.32 | - | - |
| 2023/12 | 1,305.12 | 2024/12 | 1,436.78 | - | - |

주: 종가(15:30) 기준 월별 평균 환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동 사업의 분담금은 모두 협정에 분담금 납부 의무가 명시된 의무분담금이고, 이 중 대부분은 미납이 장기화되는 경우 회원자격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협정상 권한상실 등의 규정을 고려

35) 5월말 현재 국제표준화기구분담금 인보이스(통보금액)는 미정

하여 의무분담금은 가급적 연체되지 않도록 편성[36]하도록 함.

그러나 2024년 예산 편성·확정시와 달리 환율이 높게 나타나 일부 분담금에서 미납금이 과다발생하였는데, 2025년도에도 예산 편성·확정시 환율보다 실제 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미납금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미납금 발생이 장기화·심화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환율전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적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36)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협정상의 권한상실 등 규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체되지 않도록 편성
  ○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조정·반영
□ 자발적 분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 분담금 납부를 통한 성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

### (7)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연말 계약 체결 비율 개선 필요

#### ① 결산 현황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3133-304)은 산업·통상·경제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중장기 기획, 긴급 현안대응, 법령 제·개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반의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8억 7,9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1억 6,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0억 4,400만원 중 8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을 이월, 7,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4년도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 879 | 879 | 165 | - | - | 1,044 | 857 | 110 | 77 | 1,19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연말 계약 체결 비율 개선 필요

동 사업은 산업통상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되어 있고 산업통상분야가 광범위하다는 특성상 첨단전략, 산업구조, 탄소중립, 생활소비재, 인공지능, 해외전문인력, 외국과의 산업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그런데 2022, 2023년도 결산 결과 연례적으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37)38)39)]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계약체결률을 높이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B) | 다음연도 이월액(D) | 이월율 (D/B) | 불용액 (E) | 불용률 (E/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20 | 1,999 | 1,999 | 487 | 2,486 | 2,103 | 84.6 | 301 | 12.1 | 82 | 3.3% |
| 2021 | 1,899 | 1,899 | 301 | 2,200 | 1,596 | 72.5 | 521 | 23.7 | 82 | 3.7% |
| 2022 | 1,899 | 1,795 | 521 | 2,316 | 1,283 | 55.4 | 935 | **40.4** | 98 | **4.2%** |
| 2023 | 1,757 | 1,757 | 935 | 2,692 | 2,371 | 88.1 | 165 | **6.1** | 156 | **5.8%** |
| 2024 | 879 | 879 | 165 | 1,044 | 857 | 82.0 | 110 | **10.5** | 77 | **7.4%** |
| 2025 | 1,199 | 1,199 | 110 | 1,309 | - | - | -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은 2022년에 40.4%로 정점에 달했다가 2023년에 6.1% 이하로 개선된 바 있음. 그러나 2024년

---

37) 2022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정요구명: 용역과제의 공고시기 변경을 통한 정책연구비 이월집행 최소화 필요
❑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상반기 공고 비중을 확대하여 정책연구비의 이월집행을 최소화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상반기 공고 비중을 확대하여 정책연구비 이월집행을 최소화하는 한편, 계약 체결 후 연도 내에 착수하기 어려운 과제는 차년도 예산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8) 2023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정요구명: 상반기 용역 조기 발주를 통한 연례적 이월집행 개선 필요
❑ 시정요구사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과제 공고를 확대하고,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높임으로써 용역 조기 발주를 유도하여 이월 집행을 최소화할 것

39) 「2023회계연도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
Ⅱ. 일반회계 - 4. 검토의견
(7)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R&D) : 예산의 불용 최소화 및 운영 개선 필요

에는 다시 10.5%로 이월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도 2024년 7.4%로 함께 증가함. 이는 2024년 4분기에 정책연구가 체결된 비율은 46.2%(12건/26건), 12월에 정책연구가 체결된 비율이 38.5%(10건/26건)로 높았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연간·4분기간·12월 계약체결 현황**

(건수,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과제 건수(A) | 28 | 28 | 41 | 40 | 26 |
| 수의계약(B)<br>(B/A) | 16<br>(57.1) | 22<br>(78.6) | 34<br>(82.9) | 28<br>(70.0) | 17<br>(65.4) |
| 10월 계약 건수 | 1 | 1 | 6 | 3 | 1* |
| 수의계약 | - | 1 | 6 | 3 | - |
| 11월 계약 건수 | 4 | 1 | 3 | 1 | 1** |
| 수의계약 | 4 | 1 | 1 | 1 | 1 |
| **12월 계약 건수** | **1** | **6** | **3** | **2** | **10** |
| | (3.6) | (21.4) | (7.3) | (5.0) | (38.5) |
| **수의계약** | **1** | **6** | **2** | **2** | **7** |
| 4분기(10~12월) 계약 건수(C)<br>(C/A) | 6<br>(21.4) | 8<br>(28.6) | 12<br>(29.3) | 6<br>(15.0) | 12<br>(46.2) |
| 수의계약 | 5 | 8 | 9 | 6 | 8 |

주: * 10. 30. 계약체결, ** 11. 27. 계약체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말 계약비율 증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신속 집행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2024년부터는 전년도(2023년 12월말)에 미리 부처 내 정책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첫번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2월에 개최하여 1차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비교적 조속히 결정하였다고 함.

그리고 제2차 심의위를 4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5월초 AI산업정책위원회[40] 운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41]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화두로 부상하고 관련 정책연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에 하반기 수요조사(9.26.~10.11.) 및 제2차 심의위(10.28.)를 다소 늦게 개최하였고 제2차 심의위에서 결정된 과제 11건은 공고 등 계약 일정이 함께 늦어졌기 때문에 연말 계약 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AI 정책연구과제 수요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심의위에서 결정된 11건 중 AI 관련 주제는 5건, 나머지 6건은 AI와 무관한 주제[42]임에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AI와 무관한 주제까지 4월이 아닌 10월 28일에 심의한 것은 심의가 과도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AI 관련 주제 5건[43]도 모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및 「국가 AI전략 정책방향」[44] 등이

---

40) AI산업정책위원회: 산업부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
- 민간전문가로 기술동향, 미래산업,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 구성·운영

41) 2024. 8. 6.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787호) 제정·시행

42) ① 주요 다배출 업종별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②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국내 제도화 연구, ③ 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현황 조사, ④ 일본 석유화학산업 주요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 ⑤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⑥ 산업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43) ① 산업 AI 확산을 위한 민간 활용도 조사 및 정책제언 연구, ② AI 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분야 발굴 및 정책화 연구, ③ AI 기술의 제조기업 생산성 파급효과 실태분석, ④ AI 기반 미래형 에듀테크 산업 발전 전략 연구, ⑤ 산업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업계 수요 파악

확정된 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45].

그리고 제2차 심의위(10.28.)에서 결정된 과제 11건은 11월부터 계약 절차가 시작되었고 대부분(8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수의계약 8건 중 2건은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1인만 응찰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46]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경우이고, 나머지 6건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47]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으로 발주·계약되었음.

즉, 연말에 소액으로 발주된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

44)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9.26.)
< 주요 내용 >
① 민·관 합작투자를 바탕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
② '24년부터 4년간('24~'27) 민간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 투자 단행
③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에 이르는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
④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 설립
⑤ 국가 AI혁신을 뒷받침할 기초체력 확충을 위해 AI 스타트업·인재 육성
⑥ AI핵심·원천기술 확충 및 AI인프라 혁신 추진
⑦ 지속 가능한 AI발전·확산 기반 조성
⑧ AI시대의 新질서 정립 및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주도 등임.

45)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12월말 산업부 내에 산업인공지능혁신과가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 해당 과 신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요가 연말 이후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 2025.5.8일 출범한 AI산업정책위원회는 당해연도 연말까지 활동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동 위원회 활동의 후반기 즈음에 다양한 정책수요와 과제들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어 2차 과제선정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임.

46) 시행령 제27조제3항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7) 시행령 제26조제1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따라 입찰자간 경쟁을 거쳐 선정되기 보다는 주로 기존에 유사한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했던 기관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 측면이 있음.

수의계약이 많을수록 연구용역의 계약 과정, 연구자 선정, 결과물 공개 등에서 투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연말에 계약이 과다하게 체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8)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기반 조성: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및 체계적인 예산편성 필요

### ① 결산 현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기반 조성’(3133-307)은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운영 및 특화단지 기반확충, 세액공제심의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억 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4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기반 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기반 조성 | 1,608 | 1,608 | - | - | - | 1,608 | 1,608 | - | - | 1,61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및 체계적인 예산편성 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2024년 6월 2차례에 걸쳐 지정되었으며, 특화단지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여야 하나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초기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02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

| |
|---|
| ❍ ('23.7.20.)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천안·아산)<br>❍ ('24.6.27.) 바이오(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춘천·홍천, 화순, 안동·포항) |

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각종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이하 "특화단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성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반 조성'(3133-307)의 내역사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충'(이하 "기반시설 확충")도 신설하여 특화단지 지원 사업의 국비집행 관리, 회계정산 등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그런데 2024년 예산액 2억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전액 출연되었으나 그 중 6,596만원(32.9%)만 실집행되었음. 당초 2024년 예산액은 3년(2024~2026년)간 특화단지지원 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계상한 것이나, 실제로는 2024년 1개년도에 필요한 금액만 집행되었기 때문임.

##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2024년도 예산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 편성근거 | 집행내역 |
|---|---|
| ○ 200백만원<br>-총사업비 검증위원회: 30백만원<br>＊ 3백만원×10회<br>-회계정산 검증용역: 66백만원<br>＊ 22백만원×3회<br>-기반시설 확충사업 운영경비: 104백만원<br>＊ 年34.6백만원×3년 | ○ 65.9백만원<br>- 총사업비 검증위원회: 3.4백만원<br>＊ 1.13백만원×3회<br>- 회계정산 검증용역: 11.5백만원<br>＊ 11.5백만원×1회<br>- 운영경비: 51백만원<br>＊ 年51백만원×1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예산액부터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3171-364) 사업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면서 각종 특화단지지원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포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2025년도 기획평가관리비(2억 8,000만원)를 해당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편성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기획평가관리비는 매년 해당 내역사업으로 편성될 예정이므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미 확보한 2025년, 2026년 기획평가관리비는 집행이 불필요하게 됨.

특화단지지원사업 수행시 사업기획비, 관리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전담기관에게 기획평가관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48]을 규정하여 예산이 연도 구분없이 집행되고 불필요하게 재정을 조기확보·배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3개년도 소요분이 일시에 편성되었고 해당 사업이 집행 중인 2024년 9월에는

4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내역사업 구조가 변경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음. 즉, 사업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없이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 특화단지지원 사업 중에서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인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비 5억원, 기획평가관리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도 예산사업구조는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24년 각종 특화단지지원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편성내역 | 예산액 |
|---|---|---|
| (3171-425)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 | 공사·설계·감리비 등<br>※ 영일만 산단 용수공급시설 | 15,406 |
| (3171-431) 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 | 공사·설계·감리비 등<br>※ High Tech Valley 산단 전력공급시설 | 3,750 |
| (3171-433)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 | 용역비(35억원(건설사업관리 5억원 포함), 공사비(160억원), 기획평가관리비(5억원) | 20,0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9)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무 이행 필요

#### ① 결산 현황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3162-302)은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련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3억 7,7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지속가능경영확산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 2,377 | 2,377 | - | - | - | 2,377 | 2,377 | - | - | 2,02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무 이행 필요

동 사업은 「산업발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K-ESG 기반조성’, ‘K-ESG 역량강화’, ‘K-ESG 인센티브’, ‘ESG 공급망 실사 대응력 강화’ 등 4개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근거조문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종합시책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 근거조문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2020.12.)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결정하였으나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음.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 중 "Ⅴ.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과제의 일정을 일부 명시한 수준이고 잠정적인 가안이므로, 법률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의 추진계획*

| 구 분 | 주요 후속조치 | 일정 |
|---|---|---|
| 1. 한국형 평가지표 정립 | | |
| | · 한국형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 기본지표 정립 | '21년 |
| | · 한국형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 혁신지표 정립 | '22년 |
| | · K-ESG 인증기준 마련 | '22년 |
| | · K-ESG 인증평가기관 지정 | '22년 |
| 2. 대응역량 제고 | | |
| | · 기업 CEO 대상 포럼·강연 | 계속 |
| | · 기업 지속가능경영 임직원 대상 ESG 기획 교육 | 〃 |
| |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 '21년 |
| | · 지속가능경영 현황 진단 및 컨설팅 | 계속 |
| | · 지속가능경영 모범 사례집 발간 | '21년 |
| | · 친환경 혁신, 사업장 안전강화 활동 사업재편 | 수시 |
| 3. 인센티브 부여 | | |
| | · 지속가능경영 포상 정비·확대 | '21년 |
| |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대상 R&D 우대 | '22년 |
| |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대상 혁신기업 국가대표 추천 | '22년 |
| | · K-ESG 평가결과 및 기업 주요활동 공개 | '22년 |
| 4. 확산기반 구축 | | |
| | · 업종별 지속가능경영 연대·협력 추진 | '21년 |
| | · 글로벌 연대·협력 및 국제논의 참여 | 중장기 |

* **위 계획은 잠정안으로 향후 상황·정책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자료: 「지속가능경영 추진대책」(2020. 12.)

동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종합시책상으로는 2021년에 수립·추진예정이던 가이드라인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포럼·교육 등 대부분 상시·계속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중장기 과제로 제시되었던 '글로벌 연대·협력 및 국제논의 참여'과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집행내역

| 내역사업명 | 결산액 |
|---|---|
| K-ESG 기반조성 | ○ 554백만원<br>- K-ESG 가이드라인 개발 (360백만원)<br>· 1식 × 360백만원 = 360백만원<br>- ESG 네트워크 구축 (113백만원)<br>· 1식 × 113백만원(포럼 개최 등 운영비) = 113백만원<br>- 온라인플랫폼 운영관리 (81백만원)<br>· 1식 × 81백만원(시스템 고도화) = 81백만원 |
| K-ESG 역량강화 | ○ 413백만원<br>- 사내전문가 육성 (204백만원)<br>· 1식 × 204백만원(장소·전문가 섭외 등) = 204백만원<br>- 찾아가는 ESG 교육 (83백만원)<br>· 1식 × 83백만원(장소·전문가 섭외 등) = 83백만원<br>- 정책 연구 (126백만원)<br>· 2개 × 63백만원 = 126백만원 |
| K-ESG 인센티브 | ○ 85백만원<br>- 기업정신주간행사 및 정부포상 시상식 (85백만원)<br>· 1식 × 85백만원 = 85백만원 |
| ESG 공급망 실사 대응력 강화 | ○ 1,325백만원<br>- 공급망 실사·컨설팅 (1325백만원)<br>· 500개사 × 5.3백만원 ×50% = 1,325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은 종합시책과 아울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시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환류하여 계획을 재수립하며 이행내용 및 시기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여 계획의 구속력·실효성을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2024년 현재에도 가이드라인 개발·정비가 지속되는 등 종합시책과 일부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항이 환류되지 않

고 있고, 상시·계속과제 위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종합시책과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한 「산업발전법」 취지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제2차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5년 현재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K-ESG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전연구용역을 수행[49]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설명함.

다만, 제2차 종합시책 마련과는 별개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종합시책과 정합성 있게 연계·환류되고 사업 추진 방식이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49) 사전연구 용역 개요
- ㅇ 과 제 명: 2025년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5개년 계획 수립
- ㅇ 계약기간: 2025.7.1. ~ 2025.12.31. (6개월)
- ㅇ 계약금액: 60백만원(VAT포함)
- ㅇ 수행기관: 사단법인 이컨슈머

## (10) 산업혁신기반구축(R&D): 개정된 장비구축 절차의 적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① 결산 현황

‘산업혁신기반구축(R&D)’(3171-302)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공동 R&D 인프라를 연구소·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도 예산액 1,909억 9,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산업혁신기반구축 | 190,992 | 190,992 | - | - | - | 190,992 | 190,992 | - | - | 240,845 |
| (내역)산업혁신기반구축 | 181,392 | 181,392 | - | - | - | 181,392 | 181,392 | - | - | 235,445 |
|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 | 4,320 | 4,320 | - | - | - | 4,320 | 4,320 | - | - | 5,400 |
| 대학혁신지원센터(UIC) | 5,280 | 5,280 | - | - | - | 5,280 | 5,280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개정된 장비구축 절차의 적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업혁신기반구축’은 개별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연구장비를 연구기관·대학·테크노파크(TP)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48개 신규과제와 63개 계속과제 지원을 위해 총 1,81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 중 계속과제를 제외한 48개 신규과제의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48개 신규과제 중 10개 과제에서 그 실집행률[50]이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실집행률이 50~80%에 불과한 신규과제의 경우도 13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총 연구비의 실집행률이 7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과제 집행률 현황

(단위: 건)

| 구분 | 총 과제수 | 실집행률 50%미만 과제건수 | 실집행률 50~80%미만 과제건수 | 실집행률 80%이상 과제건수 |
|---|---|---|---|---|
| 신규과제 | 48 | 10 | 13 | 2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과제 실집행률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총 연구비(A) (국비+지방비+민간) | 실집행 (B) | 실집행률 (B/A×100) |
|---|---|---|---|
| 신규과제 | 127,639 | 92,963 | 72.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0) 실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기관에 출연하는 것을 집행, 전담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에 집행하는 것을 실집행,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실제 연구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것을 실실집행으로 지칭하나, 이하에서는 보고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실제 연구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것을 실집행으로 표현함.

이처럼 신규과제의 실집행이 저조한 원인은 전체 48개 신규과제 중 16개 과제의 경우는 장비심의 및 조달구매 절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장비구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5개 과제의 경우는 설계 및 공사 일정 변경 등 건축 일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하고 있음.

## 2024년 신규과제별 실집행 현황 및 실집행 부진 사유

| 부진사유 | 연번 | 과제명 | 실집행률 | 비고 |
|---|---|---|---|---|
| 장비 구축 절차 지연 | 1 | 비행시험장 안전성 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7.2% | -고가 제작 장비의 구입 기획 용역 선행 및 장비 상시심의 단계 중 보완 절차 발생으로 일정 지연 |
| | 2 |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구축 | 42.4% | -다년도 구축 장비의 구축 계획 변경으로 변경심의 절차 추가 발생 |
| | 3 | 가상·증강·혼합 현실 영상제공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구축 | 53.3% | -고가 연구 장비 관련 조달청 절차 중 미선정 업체의 이의제기 신청으로 인한 재공고 진행 중 |
| | 4 | 건설기계용 수소연소 파워트레인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 71.4% | -당해연도 주요 장비 2종의 심의 과정에서 보완절차 발생 |
| | 5 |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 72.4% | -장비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축 계획 변경 절차 발생 |
| | 6 |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 75.0% | -자체 추진 중인 장비의 조달 지연으로 본 사업 구축 장비인 대면적 슬리터 사양 확정 동반 지연 |
| | 7 | 골대체 융합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 77.1% | -고가 장비 관련 조달 절차 중 유찰 발생으로 인한 집행 지연 |
| | 8 | 핵심 희소금속 원료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구축 | 78.7% | -주요 장비 조달 과정에서 유찰 발생 및 장비의 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 발생으로 인한 재심의 |
| | 9 | 첨단 방위산업용 고성능/고신뢰성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 67.5% | -지자체 지방비 확보 일정 지연으로 인한 주요 장비 구축 순연 |
| | 10 |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XR융합산업 시험기반 구축 | 75.9% | -고가 장비 심의 과정에서 보완 절차 발생으로 집행 지연 |
| | 11 |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 개발지원 센터 구축 | 41.0% | -기심의 완료한 장비의 추가 사양 변경 발생으로 인한 재심의, 센터 개념설계 일정 지연 등 |

| 부진사유 | 연번 | 과제명 | 실집행률 | 비고 |
|---|---|---|---|---|
| | 12 | 모빌리티모터혁신기술육성 | 42.8% | -장비 심의를 모두 통과하였으나 조달구매 과정에서의 행정적 소요로 집행 지연 |
| | 13 | 미래 선도를 위한 차세대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연구기반 고도화 | 35.6% | -장비 중앙조달 과정에서 유찰 발생, 장비 제작에 장기간 소요로 주요장비 도입 지연 발생 |
| | 14 |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 36.0% | -고가 장비 도입 지연(사양 재검토, 커스터마이징 절차에 장기 소요) |
| | 15 |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 | 69.5% | -주요 장비의 장비 심의 보완 발생으로 인한 추가 절차 소요 |
| | 16 | 마이크로전자제조 대응 정밀분석기반 고도화 | 77.4% | -외자장비 계약 지연, 장비 제작에 장기간 소요로 주요장비 도입 지연 |
| 건축 일정 지연 | 17 | 인공바이러스 벡터 개량 및 유전자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구축 | 46.3% | -지자체 토지사용 허가 및 필지 분할 계획 지연으로 인한 건축 공정 및 장비 도입 지연 |
| | 18 | Stand-alone 고출력 EUV 검사기 장비 기술 및 EUV 검사기 인프라 구축 | 75.3% | -EUV 실험실 구축 과정에서 전용 공간의 전기 시설 설계 변경 등 추가 절차 발생 |
| | 19 |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 64.8% | -지자체의 토지구매 조례개정으로 토지구매 및 건축 일정 지연, 지자체의 경관 심의 일정 소요로 설계기간 추가 연장 |
| | 20 | 수소 전주기 (생산-운송-활용) 계량 신뢰성 강화를 위한 소급성 기반 구축 | 31.5% | -센터 건립 부지내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부지 변경 및 건축 지연 |
| | 21 |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사업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 76.3% | -건축설계 업체 선정 절차 소요, 과업 수행 종료 후 설계비를 일괄 집행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지연 |
| 기타 | 22 | 에너지 저장장치(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 60.5% |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조정 요구를 반영한 건축설계 변경 등에 추가 절차 소요 |
| | 23 | 전기·전자 및 반도체 산업 소부장 기업 전후방 가치사슬 DX 혁신 라이브러리형 지원 플랫폼 구축 | 75.2% | -DX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혜기업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계획 수립 후 기술지원 추진으로 사업비 집행 지연 |

주1: 연말 기준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과제 23개 대상
주2: 2개 이상 사유(예: 장비구축 + 건축지연)에 해당시 주요 사유 1건으로 분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특히 장비구축 지연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신규과제 실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는데[51], 이는 장비심의 및 조달청을 통한 장비 구매 계약절차가 복잡하고, 장비 재심의나 유찰로 인한 재공고 등이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일정 전체가 순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하반기부터 중소형 장비[52]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절차를 기존 중앙장비심의위원회(KIAT)에서 → 각 전문기관(KIAT, KEIT, KETEP)의 연구과제평가단으로 이관하고,

장비 구매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중앙조달 방식에서 → 각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개정[53]한 바 있음.

51) 최근 3년간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과제 실집행 부진 사유

(단위: 건)

| 연도 | 신규 과제수 | 실집행 부진 과제수* | 부진 사유 | | |
|---|---|---|---|---|---|
| | | | 장비구축 지연 | 건축 지연 | 기타 |
| 2022년 | 23 | 20 | 16 | 4 | - |
| 2023년 | 19 | 19 | 12 | 7 | - |
| 2024년 | 48 | 23 | 16 | 5 | 2 |
| 총 계 | 90 | 62(100%) | 44(71.0%) | 16(25.8%) | 2(3.2%) |

* 연말 기준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과제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52) 중소형 장비: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

53)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3호, 2024.6.13.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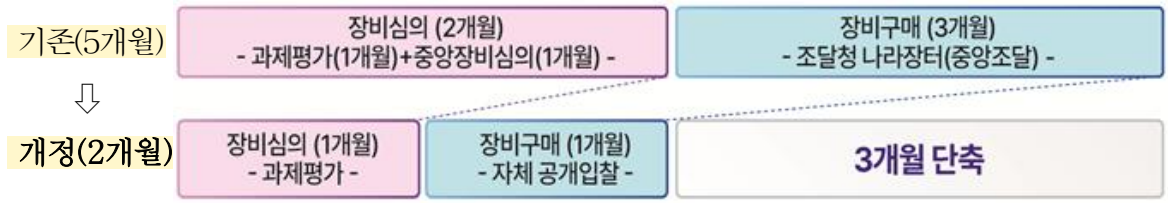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주요 개정(2024.6.) 내용

**(중소형장비* 심의주체 변경)** 중앙장비심의위원회(KIAT) → 연구과제평가단(R&D전문기관)

-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 후 중앙장비심의위(KIAT)에서 별도 장비도입 심의

* 중소형 장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구매방식 변경)** 조달청 나라장터 → 연구기관 자체 공개입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동 개정규정에 따르면 장비심의 주체의 변경으로 1개월이 단축되고, 구매방식의 변경으로 2개월이 단축되는 등 최대 3개월의 장비구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실제 장비구축 지연 사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개정 전인 2024년 상반기의 경우 부진과제 12건 중 10건(83.3%)에서 장비구축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개정 후인 하반기에는 전체 11건에서 6건(54.5%)으로 장비구축 지연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구축절차 변경에 따른 기간 단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과제 실집행 부진 현황

| 협약시기 (과제수) | 실집행 부진(실집행률 80% 미만) 과제수(건) | | | |
|---|---|---|---|---|
| | 과제수 | 장비구축 지연 | 건축 지연 | 기타 |
| 상반기 협약과제(30) | 12 | 10 | 2 | - |
| 하반기 협약과제(18) | 11 | 6 | 3 | 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다만, 개정된 장비구축 절차에 따라 총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자체입찰을 통한 장비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54],

2024년 동 사업의 과제를 수행 중인 총 28개 비영리기관 중 자체규정에서 장비구매시 자체입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46.4%인 13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동 사업 주관연구기관(비영리기관)의 장비구매 자체규정 현황**

| 구 분 | 자체입찰 | 중앙조달 | 금액에 따라 병행 | 합 계 |
|---|---|---|---|---|
| 기관수 | 13개 (46.4%) | 7개 (25.0%) | 8개 (28.6%) | 28개 (10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신규과제의 추진 시 개정된 장비구축 절차의 적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규과제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54)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연구장비를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해당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기관의 자체규정(자체입찰/중앙조달 등)에 따라 장비구매를 위한 공개입찰이 이루어짐.

### (11) 산업기술국제협력(R&D): 예산의 적시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철저한 과제 관리 필요

#### ① 결산 현황

‘산업기술국제협력(R&D)’(3171-320)은 국내 산·학·연과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658억 1,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산업기술국제협력(R&D) | 165,819 | 165,819 | - | - | - | - | 165,819 | - | - | 208,832 |
| 국제기술공동개발 | 103,594 | 103,594 | - | - | - | - | 103,594 | - | - | 94,224 |
| 국제협력기반구축 | 4,725 | 4,725 | - | - | - | - | 4,725 | - | - | 5,908 |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57,500 | 57,500 | - | - | - | - | 57,500 | - | - | 105,200 |
| 글로벌기술산업기술연계 | - | - | - | - | - | - | | - | - | 3,5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예산의 적시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철저한 과제 관리 필요

동 사업은 국제기술공동개발, 국제협력기반구축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의 경우 국제기술공동개발사업은 1,305억 9,400만원, 국제협력기반구축사업은 47억 2,500만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7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4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R&D) 예산 편성상세

| |
|---|
| · 국제공동기술개발 : 103,594백만원<br>- (신규과제) 71개 과제 × 692백만원 × 6/12개월 = 24,562백만원<br>- (계속과제) 166개 과제 × 476백만원 × 12/12개월 = 79,032백만원<br><br>· 국제협력기반구축 : 4,725백만원<br>- 해외기술협력거점 : 1개 과제 × 1,520백만원 × 12/12개월 = 1,520백만원<br>- 기술협력플랫폼 : 1개 과제 × 3,205백만원 × 12/12개월 = 3,205백만원<br><br>·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57,500백만원 (2024년 신규)<br>- (신규과제) 48개 과제 × 2,000백만원 × 5/12개월 = 39,500백만원<br>- 협력센터 : 18,000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중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기관에 협력센터를 설치[55]하고, 이와 연계한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협력센터 플랫폼 구축에 180억원, 해외국가와의 공동R&D 신규 연구과제 수행에 395억원을 편성하였음.

55) 2024년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치 현황

그런데, 동 내역사업 중 신규 연구과제의 2024년 말 총연구비 실집행 실적은 총 70억 7,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전체 금액의 17.6%에 불과하였고, 연구과제별 실집행률의 경우에도 전체 48개 신규과제 중 46개[56] 과제(95.8%)에서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이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24년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실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내역사업 | 구분 | 정부출연금 | 총연구비(A)<br>(정부+민간) | 실집행액<br>(B) | 실집행률<br>(B/A·100) | 실집행률<br>50% 미만<br>과제수 |
|---|---|---|---|---|---|---|
| 글로벌<br>산업기술<br>협력센터 | 신규과제(48) | 39,500 | 40,277 | 7,079 | 17.6% | 46 |
| | 협력센터<br>플랫폼 구축 | 18,000 | 18,000 | 18,000 | 100% | - |

주: 2024. 12. 31.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와 같이 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당초 7~8월 중 협약체결을 목표[57]로 했던 48건의 신규과제 모두가 11~12월 연말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 국가 | 해외기관명 | 중점 분야* |
|---|---|---|
| 독일 | 프라운호퍼 | 모빌리티, 배터리, 반도체 |
| 미국 | MIT | 로봇·AI, 디스플레이, 바이오 |
| 미국 | Yale University | 반도체, 로봇·AI |
| 미국 | Purdue University | 배터리, 모빌리티 |
| 미국 | Johns Hopkins University | 바이오(신약개발, 헬스케어 등) |
| 미국 | Georgia Tech | 반도체 |

* 상기 중점분야는 동사업 접수시 센터 소속 기관에서 강점으로 선택한 분야로 우리기업과 협력센터간 협력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6) 이 중 13개 과제에서는 연내 실집행 실적이 전무하였음.
57) 신규과제의 경우 하반기 과제협약을 전제로 5~6개월분의 연구비를 편성하였음.

2024년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신규과제 협약체결 현황

| 과제 공고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 | 협약일 | 과제수 |
|---|---|---|---|
| 2024.01.18. ~ 2024.06.13 | 2024.08.16 | 2024.11. | 6개(12.5%) |
| | 2024.08.16 | 2024.12. | 38개(79.2%) |
| | 2024.12.23 | 2024.12. | 4개(8.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약체결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동 내역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정부의 R&D 규정 준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해외기관과 최초로 체결함에 따라 해외기관 측의 면밀한 법적 검토와 이에 따르는 후속 협의 등으로 인해 협약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58]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한 협약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59]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 지침」[60]에 따르면 협약서의 수정·보완 등의 검토기간을 제외하고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58) (공고)1월→(접수)6월→(평가)7월→(선정결과 통보)8월→(법률검토)8월~11월→(협약)11~12월

59)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60)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 지침」 제25조(협약의 준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기간 또는 협약 전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 일자에서 제외하며, 국제계약서의 제출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연구과제 선정 이후 원활한 협약체결이 이루어져 적시에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제 선정 이후 협약체결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신규과제 예산 편성 시 실제 협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편성 등 확보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협약체결이 지연된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 과제 관리 및 평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12)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연구과제 수행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 ① 결산 현황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3171-321)은 초격차 경쟁력, 경제안보 필수기술 확보 등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에 맞는 신규 R&D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7억 3,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R&D) | 1,732 | 1,732 | - | - | - | - | 1,732 | - | - | 1,64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연구과제 수행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동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기술분야 11개 과제에 14억 4,000만원, 에너지기술분야 2개 과제에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의 목적이 신규 R&D 사업(예타/비예타)을 발굴하기 위한 사전기획연구임을 감안하여 각각의 과제는 단년도 사업[61]으로 추진·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1) 예타사업 기획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9개월이고, 비예타사업 기획연구과제의 경우 6개월임.

## 2024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예산 편성 상세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1,670백만원
  - 산업기술분야 : (예타) 6개×200백만원=1,200백만원
    (비예타) 5개×48백만원=240백만원
  - 에너지기술분야 : (예타) 1개×200백만=200백만원
    (비예타) 1개×30백만원=30백만원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62백만원
  - 산업기술분야 : 11개×4.3백만원=47백만원
  - 에너지기술분야 : 2개×7.3백만원=15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의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제 수요조사를 상·하반기(2~3월/8~9월)로 나누어 진행하고, 이후 제출된 수요에 따라 사업 공고(4월/9~10월) 절차를 거쳐 과제별로 협약을 체결(6월/11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62].

## 2024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사업 추진 절차

| 연번 | 구 분 | 내 용 | 주 체 | 시 기 |
|---|---|---|---|---|
| 1 | 부내 수요조사 | 수요조사서(RFP 포함) 제출 요청 | 산업부 | [상] 2~3월<br>[하] 8~9월 |
| 2 | 사업심의위원회 | 수요조사서 기반 지원과제 심의 및 확정 | 산업부 | [상] 4월<br>[하] 9월 |
| 3 | 공고 | 사업심의를 통과한 확정과제를 공고 | 전문기관 | [상] 4월<br>[하] 9~10월 |

62)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 수요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이후 제출된 수요에 따라 예타/비예타사업 기획연구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과제를 확정한 후, 분야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을 통해 공고 절차를 거쳐 과제별로 협약을 체결(6월/11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연번 | 구 분 | 내 용 | 주 체 | 시 기 |
|---|---|---|---|---|
| 4 | 신청서류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br>(주관기관→전문기관) | 주관기관 | [상] 4~5월<br>[하] 10~11월 |
| 5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주관·수행기관 확정을 위한<br>연구 개발계획서 평가 | 전문기관 | [상] 5월<br>[하] 10월 |
| 6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br>최종결과 통보 | 전문기관 | [상] 5월<br>[하] 11월 |
| **7** | **협약체결 및 지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br>연구비 지원** | **전문기관** | **[상] 6월<br>[하] 11월**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 협약체결이 연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6월)·하반기(11월)로 나누어 체결되는 구조임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 예산액도 과제별 협약체결 시기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액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예산 편성은 1개 과제당 전체 연구기간[63]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이로 인해 2024년도의 경우 예산 실집행률이 4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9월에 공고(3차 공고)되어 협약이 체결된 과제의 경우 그 실집행률이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 예산 실집행률 저조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64].

63) 예타사업 기획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9개월이고, 비예타사업 기획연구과제의 경우 6개월임.

64)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산업기술 분야 과제 공고는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고, 에너지기술 분야 공고는 연중 1번만 실시함에 따라 2024년도의 경우에는 4월(산업), 6월(에너지), 9월(산업) 3차례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024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연구비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 과제수 | 예산액 (A) | 실집행액 (B) | 실집행률 (B/A·100) |
|---|---|---|---|---|
| 1차공고(4월) (산업기술) | 10개 | 820 | 552 | 67.3% |
| 2차공고(6월) (에너지기술) | 6개 | 230 | 124 | 53.9% |
| 3차공고(9월) (산업기술) | 10개 | 620 | 112 | 18.1% |
| **전체** | **26개** | **1,670** | **788** | **47.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2024. 12. 기준)

아울러,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4월 이후 3회 이상의 분할공고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당해연도 내로 종료된 과제는 전체 과제(138건)의 약 30%(4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 종료가 차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제 수행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추진 현황

(단위: 건)

| 연도 | 공고 횟수 | 공고 시기 | 공고 과제수 | 당해연도 종료과제 | 차년도 종료과제 |
|---|---|---|---|---|---|
| 2020 | 3회 | 4/8/8월 | 22 | 8 | 14 |
| 2021 | 5회 (재공고 2회 포함) | 4/9/9/10/11월 | 26 | 4 | 22 |
| 2022 | 4회 (재공고 1회 포함) | 4/5/6/10월 | 39 | 16 | 23 |

| 연도 | 공고 횟수 | 공고 시기 | 공고 과제수 | 당해연도 종료과제 | 차년도 종료과제 |
|---|---|---|---|---|---|
| 2023 | 3회 | 4/10/10월 | 25 | 7 | 18 |
| 2024 | 3회 | 4/6/9월 | 26 | 7 | 19 |
| **총 계** | | | **138** | **42** | **9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는 원칙적으로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과제형 R&D 예산 편성 기준**

| 상반기 협약과제 | 하반기 협약과제 |
|---|---|
| 9개월분<br>(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 6개월분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R&D 연구기획사업 추진 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규 수요발굴 및 사업심의 등의 신규과제 협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구과제 수행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3)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지연발주에 따른 예산이월과 차년도 예산요구 미반영

### ① 결산 현황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3171-441)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제조공정·장비 등 실습실과 특성화고생·대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실을 구비한 개방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종합교육관 조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2024년 예산 3억원 중 2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년도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개방형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 300 | 300 | - | - | - | 300 | 203 | 97 | - | 9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지연발주에 따른 사업 이월

동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예산액이 배정되었음에도, 사업계획 구체화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확정과 입찰절차 준비가 지연된 결과 2024년 5월 28일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적격자 없음으로 유찰된 후 2024년 6월 19일 재입찰을 진행하여 2024년 7월 25일 타당성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7월 25일 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 시행도 지연되었고, 회계연도 완료 후인 25년 2월 23일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어, 24년도 예산 3억원 중 1/3에 달하는 9,700만원이 이월되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책무[65]가 있고, 미국 발 관세갈등과 반도체특별법 개정 논의 등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기반산업인 반도체 인력양성과 직접 관련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5)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 ③ 차년도·차차년도 예산요구 시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미반영

위의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연간 1,784명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 설립이 고용창출은 물론 산업생태계 혁신과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66].

그러나 예산이월집행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이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2025년 2월 23일에 마무리된 결과 2025년도 예산요구 시에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조성 기본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였고, 2026년도 예산요구 시에도 관련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반도체 산업 매출액 및 인력수요 전망**

(단위 : 10억원, 명)

| 연도 | 매출액 | 성장률 | 종사자수 | 증가율 |
|---|---|---|---|---|
| 2024년 | 105,424 | 5.7% | 219,065 | 2.0% |
| 2025년 | 107,644 | 2.1% | 223,358 | 2.0% |
| 2026년 | 110,338 | 2.5% | 227,592 | 1.9% |
| 2027년 | 113,253 | 2.6% | 231,812 | 1.9% |
| 2028년 | 115,952 | 2.4% | 236,020 | 1.8% |
| 2029년 | 118,251 | 2.0% | 240,208 | 1.8% |
| 2030년 | 119,994 | 1.5% | 244,177 | 1.7% |
| 2031년 | 121,169 | 1.0% | 247,865 | 1.5% |
| 2032년 | 122,232 | 0.9% | 251,221 | 1.4% |
| 2033년 | 122,951 | 0.6% | 254,172 | 1.2% |

주1) 실질부가가치액 기준
주2) 성장률 및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6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2025.3.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속되는 본사업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성 조사용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본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4)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중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성과 관리 필요

### ① 결산 현황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3173-326)은 경제성 문제로 해외에 저가로 유출되거나 매립·폐기되는 3개 상태(고품위 고상, 저품위 고상, 저품위 액상[67])별 순환자원으로부터 금속회수공정의 공통활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소재산업의 원료 공급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3억 5,300만원을 전액 집행함.

’24년도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 | 3,353 | 3,353 | - | - | - | 3,353 | 3,353 | - | - | 6,34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중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성과 관리 필요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개 상태(고품위 고상, 저품위 고상, 저품위 액상)별 순환자원으로부터 희소금속 회수기술을 개

67) 상태별 구분
* 고품위 고상: 기술력 부족으로 해외로 대량 유출 중인 금속 순환자원(고가의 금속함유 스크랩: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등)
* 저품위 고상: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매립되는 금속 순환자원(백금족, 주석, 희토류 등)
* 저품위 액상: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매립·소각되는 액상형태 순환자원(폐액, 슬러지등)

발하려는 R&D 사업으로, 경제성 문제로 저가에 해외유출되거나 매립·폐기되는 순환자원을 재활용하고 공통활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소재 산업계에 원료 공급력을 강화하고자 함.

그런데 2024년 R&D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동 사업 예산도 감액되어 과제별[68] 2024년 예산액은 당초 사업계획 및 협약보다 55.0% 감소하고 총사업비는 과제별로 13.6~15.3%씩 감소하였음.

**당초 계획(2021년) 대비 2024년 예산액 및 총사업비 감소 현황**

(단위: 백만원, %)

| 과제명 | 당초 '24 예산액(A) | 실제 '24 예산액(B) | (B-A)/A | 당초 총사업비(C) | '24 총사업비(D) | (D-C)/C |
|---|---|---|---|---|---|---|
| 저품위액상 | 2,705 | 1,218 | △55.0 | 9,750 | 8,263 | △15.3 |
| 고품위고상 | 2,318 | 1,044 | △55.0 | 9,400 | 8,126 | △13.6 |
| 저품위고상 | 2,424 | 1,091 | △55.0 | 9,800 | 8,467 | △13.6 |

주: 총사업비는 국비기준 작성, 자부담률은 과제마다 상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2024년 3월 협약을 변경하면서 과제별 목표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됨. Nd 침출률, NdOxide 순도 등 목표수준이 얼마나 하향되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지만, 일부 주요 항목은 목표수준이 절반 이상 감소하기도 하였음.

---

68) 과제명 및 약칭
1) 저품위 공정 폐액으로부터 희소금속 회수 공통 핵심(농축, 분리회수)공정 플랫폼 구축 및 소재화 기술 개발, 이하 "저품위 액상"
2) 국내 미활용 고품위 고상 스크랩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오픈 플랫폼형 소재화(상용소재품위>99%) 기반 자원회수 기술 개발, 이하 "고품위 고상"
3) 저품위 고상 복합자원의 자원순환 오픈 플랫폼 구축을 위한 희소금속 농축회수(처리량 200kg/일) 원천기술개발, 이하 "저품위 고상"

예를 들어 저품위 액상 과제의 ‘폐액처리규모’는 당초 목표 대비 △50%, 저품위 고상 과제의 ‘사이클론고속전해조용량’은 △60%로 각각 절반 이상 감소하였음.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 개발에 따른 처리규모·용량은 동 기술의 경제성 및 생산성과 직결되므로 향후 사업성과 확산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고품위 고상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는 시험건수가 10건에서 6건으로 △40% 감소하였으므로 동 사업의 성과 활용 및 확산이 저하될 가능성이 우려됨.

**과제별·목표별 목표수준 변경**

| 과제구분 | 과제목표 | 당초 목표수준 | ’24 목표수준 | ’25 목표수준 |
|---|---|---|---|---|
| 저품위 액상 | ○폐액처리규모 | 1,000kg/day | 500kg/day | 1,000kg/day |
| | ○몰리브덴잉곳순도 | 99.99%이상 | 99.95%이상 | 99.99%이상 |
| | ○오픈플랫폼구축 | 2건 | 1건 | 2건 |
| 고품위 고상 | ○텅스텐 분말 조성 비율 | 99% | 98% | 98% |
| | ○Nd침출율 | *95% (bench스케일)* | *95% (lab스케일)* | *95% (lab스케일)* |
| | ○NdOxide순도 | *99.5% (bench스케일)* | *99.5% (lab스케일)* | *99.5% (lab스케일)* |
| | ○현장시험건수 | 10건 | 6건 | 10건 |
| 저품위 고상 | ○Ni/Co 포집율 | *98%* | *95%* | *97%* |
| | ○Ni/Co농축회수율(건식) | *97%* | *85%* | *92%* |
| | ○사이클론고속전해조용량 | 500L/day | 200L/day | 500L/day |
| | ○국외특허등록 | 1건 | 0건 | 3건 |

주: 기울임 표시는 2025년 예산액 복구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준이 회복되지 못한 항목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같은 2024년도 협약변경 및 목표수준 하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상 한계로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워져 과제목표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임. 저품위 액상 과제의 경우에는 원심분리형 추출공정 플랫폼 설비를 추가로 구축하지 못해 폐처리규모를 하향할 수밖에 없었고, 고품위 고상 과제의 경우에는 재료 구매 비용이 부족하여 현장시험건수 목표를 하향하였으며, 저품위 고상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부족으로 습식공정 시작품 용량을 축소하여 전해조용량이 감소하였다고 함.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을 다시 증액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유사한 수준(98.3~98.4%)으로 복구하였고, 이에 따라 협약을 재변경하면서 목표수준 역시 회복하고자 하였음.

**당초 계획(2021년) 대비 2025년 예산액 및 총사업비 복구현황**

(단위: 백만원, %)

| 과제명 | 당초 '25 예산액(A) | 실제 '25 예산액(B) | (B-A) /A | 당초 총사업비(C) | '25 총사업비(D) | (D-C) /C |
|---|---|---|---|---|---|---|
| 저품위 액상 | 1,210 | 2,910 | 140.5 | 9,750 | 9,594 | △1.6 |
| 고품위 고상 | 1,103 | 2,018 | 83.0 | 9,400 | 9,244 | △1.7 |
| 저품위 고상 | 1,179 | 2,046 | 73.5 | 9,800 | 9,643 | △1.6 |

주: 총사업비는 국비기준 작성, 자부담률은 과제마다 상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2025년 일부 목표수준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품위 고상 과제의 경우 'Ni/Co농축 회수율'(97%→92%) 등 2개 항목에서 당초 2021년 목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고품위 고상 과제의 경우

bench scale이 lab scale[69]에서 ‘Nd침출율’, ‘NdOxide순도’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수준이 하향되었는데, 2025년 협약 재변경 이후에도 lab scale로만 이를 검증하기로 하여 향후 성과확산 및 활용에 있어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70].

또한 세 과제 모두 2025년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4월에 협약을 재변경하면서 저품위 액상 및 고품위 고상 과제는 2026년 5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연구기간이 5개월 가량 연장되었음.

즉, 총사업비를 복구하면서 과제별 목표수준은 상당 부분 당초 목표수준과 비슷하게 재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목표수준은 당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성과확산 및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개 과제의 사업 종료 시점은 지연되었음. 따라서 2024년 예산액만 일시적으로 감소되면서 총사업비 재정절감은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사업 효율성 및 확산속도만 지연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당국과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적용 및 확산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및 생산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을 개발하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69) ※ 일반적인 Lab 규모 : 수백 ml 수준, bench 규모 : ml ~ 수십 L 수준
다만, 해당 과제 목표에서의 Lab Scale은 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 Bench Scale은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70) 이에 대해 사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종료 시점에는 lab scale로 검증하되, 이후 추가 장비 구매를 통해 bench scale로 완성하여 성과확산 및 활용성을 보완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 (15)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전반적인 집행 부진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편중 지원 문제

### ① 결산 현황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3174-412)는 2024년도 R&D 수행기업 중 계속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사업화를 위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71]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30억원 중 65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64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 13,000 | 13,000 | - | - | - | - | 6,575 | - | 6,425 | 11,25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전반적인 집행 부진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편중 지원 문제

동 사업은 2024년도부터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기존에 정부지원 R&D를 수행하는 기업 중 계속과제 사업비가 2024년도에 감액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72] 전 부처)으로 하는 사업

71) 이차보전: 이자 차액(대출금리-보전금리=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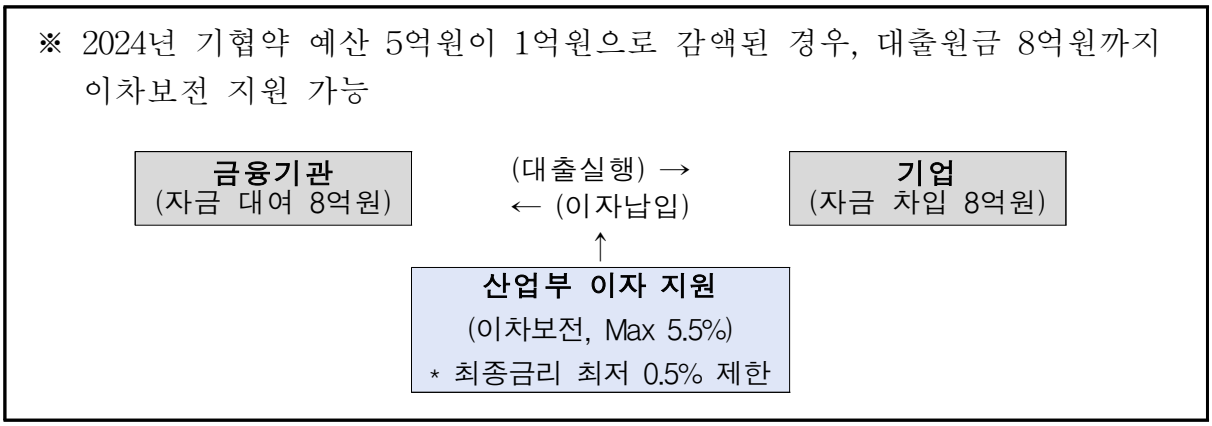
으로, 당초 협약에 따른 R&D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분의 200%이내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최대 5년간(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5%p(최저 0.5%)까지 지원하여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기업의 R&D 과제 수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진행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이차보전 예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계속사업비 감액분에 대한 대출 실행 예상액을 4,500억원으로 산출하여 이에 대한 이차보전(5.5%p)지원금 6개월분을 편성하여 2024년 예산액 총 130억원을 편성하였음.

7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이차보전)'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하였고, 동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수행 기업은 제외됨.

##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예산 편성 상세

| |
|---|
| ·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12,500백만원)<br>-대출원금 4,500억원 × 5.5%p(보전금리) × 6/12개월<br><br>· 기획평가관리비 (500백만원)<br>-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검증, 취급금융기관 실태조사, 컨택센터 운영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도 총 예산액 130억원 중 65억 7,500만원(50.6%)만 집행되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대출 실행액 4,500억원 대비 실제 대출 실행액이 2,220억 3,500만원(49.3%)에 불과하여 이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동 사업의 R&D 수행과제의 소관 부처별 대출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업을 제외한 전 부처의 정부 지원 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수행과제에 대한 대출액이 전체 2,220억원 중 81%인 1,798억원을 차지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4억원(7.0%), 국토교통부 69억원(3.1%), 방위사업청 61억원(2.7%) 등 타 부처 소관 R&D 수행과제 대출액은 전체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의 R&D 수행과제 소관 부처별 대출 실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소관 부처 | 과제수 | 대출액 | 대출액 비중(%) |
|---|---|---|---|
| **산업통상자원부** | **700** | **179,819** | **81.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9 | 15,447 | 7.0% |
| 국토교통부 | 18 | 6,947 | 3.1% |
| 방위사업청 | 15 | 6,098 | 2.7% |
| 문화체육관광부 | 12 | 4,095 | 1.8% |
| 환경부 | 11 | 3,502 | 1.6% |
| 해양수산부 | 11 | 3,164 | 1.4% |
| 보건복지부 | 10 | 1,281 | 0.6% |
| 기타* | 16 | 1,682 | 0.8% |
| **합계** | **852** | **222,035** | **100%** |

* 소관 과제수가 10건 미만인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는 기타로 합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부처별 대출 실적은 동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바, 이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타 부처 소관 R&D 수행기업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SNS 홍보 등과 같은 일반적인 홍보 방식과 함께 상담센터운영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홍보 현황

| 구분 | 내용 |
|---|---|
| 언론홍보 | ・사업 예비공고 개시 보도자료 배포(1.19)<br>・언론사(전자신문, 이투데이) 홈페이지 홍보배너 게시(3월) |
| SNS 홍보 | ・KIAT 인스타그램(3.27, 4.25, 8.2), 페이스북(8.20)에 홍보 |
| 부처·전문기관 협조요청 | ・전문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공동(산업부・중기부) 개최 (2..20, 3.6)<br>・산업부가 14개 부처, 24개 R&D전문기관에 사업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3.18, 8.6) |
| 관련기관 협조요청 | ・KIAT가 취급은행(13개), 기술보증기금에 온・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요청(4.24, 8.2)<br>・KIAT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홈페이지 게시, 뉴스레터 발송 등 요청(5.14)<br>・KIAT가 테크노파크진흥회에 홈페이지 게시,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등 요청(5.21) |
| 상담센터 운영 | ・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KIAT 컨택센터(1899-2247) 운영(5,425건 상담 수행) |

그러나 대국민 홍보 효과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언론 홍보는 사업 시행 초기인 1월과 3월에 시행되어 단발성 홍보에 그쳤고,

타 부처에 대해서는 3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사업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이후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재차 독려하거나 피드백을 요청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특히, 동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전반기(3월~5월 초순)

동안 접수된 대출 신청은 445건(1차: 183건, 2차: 139건, 3차: 123건)으로 집계된 반면, 후반기(5월 중순~9월)에 접수된 대출 신청은 123건(4차: 78건, 5차: 29건, 6차: 22건)으로 전반기 대비 대폭 감소(72.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가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추진 현황

| 차수 | 접수기간 | 적격성 평가 | 추천서 발급 | 추천기업수 (비율) | 대출실행 |
|---|---|---|---|---|---|
| 1차 | 3.25. ~ 3. 27. | 4.5. | 4.12. | 183개(31.9%) | 4.16. ~ 7.17. |
| 2차 | 3.28. ~ 4.15. | 4.26. | 5.14. | 139개(24.2%) | 5.17. ~ 8.14. |
| 3차 | 4.15. ~ 5.12. | 6.11. | 6.25. | 123개(21.4%) | 6.25. ~ 10.25. |
| 4차 | **5.13. ~ 6.27.** | 7.19. | 7.30. | **78개(13.6%)** | 8.5. ~ 10.30. |
| 5차 | **6.28. ~ 8.12.** | 8.20. | 8.28. | **29개(5.1%)** | 8.29. ~ 11.27. |
| 6차 | **8.13. ~ 9.30.** | 10.10. | 10.21. | **22개(3.8%)** | 10.24. ~ 12.20. |
| **총 계** | | | | 574개(100%) |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타 부처 관련 사업의 추진 시 부처 간 협조 및 관리체계를 통해 특정 부처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일부 산업만의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16) 로봇산업기술개발(R&D) 등:
## 제조산업정책관 소관 R&D 연구시설/장비비 집행부진

### ① 결산 현황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산업정책관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3개 세부사업 8,038억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제조산업정책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 5,600 | 5,600 | - | - | - | 5,600 | 5,600 | - | - | 38,131 |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158,854 | 158,854 | - | - | - | 158,854 | 158,854 | - | - | 158,244 |
| 로봇산업기술개발 | 117,442 | 117,442 | - | - | - | 117,442 | 117,442 | - | - | 148,612 |
|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 2,555 | 2,555 | - | - | - | 2,555 | 2,555 | - | - | 2,560 |
|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 | 1,320 | 1,320 | - | - | - | 1,320 | 1,320 | - | - | 2,270 |
|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및기술실증 | 1,673 | 1,673 | - | - | - | 1,673 | 1,673 | - | - | - |
|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 2,132 | 2,132 | - | - | - | 2,132 | 2,132 | - | - | 2,068 |
|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 | 1,208 | 1,208 | - | - | - | 1,208 | 1,208 | - | - | -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수요기반형 고신뢰성자동차 반도체핵심기술 개발 | 6,798 | 6,798 | - | - | - | 6,798 | 6,798 | - | - | 7,798 |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기술개발 | 3,068 | 3,068 | - | - | - | 3,068 | 3,068 | - | - | 3,068 |
| 자동차보안취약점 기반위협분석 시스템개발 | 4,000 | 4,000 | - | - | - | 4,000 | 4,000 | - | - | 5,350 |
| 자동차산업기술 개발 | 348,493 | 348,493 | - | - | - | 348,493 | 348,493 | - | - | 390,424 |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 | 1,646 | 1,646 | - | - | - | 1,646 | 1,646 | - | - | - |
| 전기차고출력 배터리및충전 시스템기술개발 | 4,620 | 4,620 | - | - | - | 4,620 | 4,620 | - | - | - |
| 전기차플랫폼 공용화기반수소 차용비정형수소 저장장치개발 | 4,740 | 4,740 | - | - | - | 4,740 | 4,740 | - | - | - |
| 해외수출형 고출력전기기관차 구동변환플랫폼 핵심기술개발및실증 | 2,774 | 2,774 | - | - | - | 2,774 | 2,774 | - | - | 2,774 |
| 안전기반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및실증 | 1,295 | 1,295 | - | - | - | 1,295 | 1,295 | - | - | 3,083 |
| 조선해양산업기 술개발 | 77,225 | 77,225 | - | - | - | 77,225 | 77,225 | - | - | 119,165 |
|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친환경 (LNG-수소) 선박개발및실증 | 1,378 | 1,378 | - | - | - | 1,378 | 1,378 | - | - | 1,378 |
| 디자인산업기술 개발 | 26,193 | 26,193 | - | - | - | 26,193 | 26,193 | - | - | 31,702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 | 24,077 | 24,077 | - | - | - | 24,077 | 24,077 | - | - | 13,950 |
| 탄소저감모델 연계디지털 엔지니어링 설계기술개발 | 1,944 | 1,944 | - | - | - | 1,944 | 1,944 | - | - | - |
| 첨단민군융합 기술개발 | 4,800 | 4,800 | - | - | - | 4,800 | 4,800 | - | - | 4,8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비 집행부진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집행한 다음,

전문기관이 사업공모 및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수행자인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선정하여 실제 연구수행기관인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각 연구비 등을 실집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R&D 사업 집행구조**

| 부처 | | 피출연기관 | | 연구수행기관 |
|---|---|---|---|---|
| 산업통상자원부 | → |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등 | →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소관 R&D 사업 중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등 8개 내역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시설/장비비 151억 5,200만원 중 62.2%에 해당하는 94억 3,000만원을 집행하는 한편,

인건비 936억 8,000만원 중 97.1%에 해당하는 909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간접비 226억 1,500만원 중 95.4%에 해당하는 21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제조산업정책관 소관 R&D 내역사업(발췌)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연구시설/장비비 | | | 인건비 | | | 간접비 | | |
|---|---|---|---|---|---|---|---|---|---|---|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 로봇산업기술개발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5,035 | 3,815 | 75.8% | 44,079 | 42,652 | 96.8% | 11,044 | 10,699 | 96.9% |
| |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 44 | 21 | 47.7% | 1,260 | 1,255 | 99.6% | 241 | 237 | 98.3% |
| | 빅데이터활용마이스터 로봇화기반구축 | 600 | 431 | 71.8% | 1,777 | 1,777 | 100.0% | 290 | 290 | 100.0% |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그린카 | 6,160 | 3,728 | 60.5% | 38,719 | 37,802 | 97.6% | 9,438 | 8,801 | 93.3% |
| |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 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 213 | 133 | 62.4% | 2,748 | 2,510 | 91.3% | 744 | 721 | 96.9% |
| |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 1,328 | 648 | 48.8% | 423 | 415 | 98.1% | 93 | 93 | 100.0% |
| |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 1,514 | 541 | 35.7% | 3,021 | 2,954 | 97.8% | 502 | 485 | 96.6% |
| 조선해양 산업기술개발 | 해양모빌리티스마트 페인팅시스템기술개발 | 258 | 113 | 43.8% | 1,653 | 1,567 | 94.8% | 263 | 251 | 95.4% |
| 계 | | 15,152 | 9,430 | 62.2% | 93,680 | 90,932 | 97.1% | 22,615 | 21,577 | 95.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중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25.2% 미집행)·“빅데이터활용마이스터로봇화기반구축”(28.2% 미집행)·“그린카”(39.5% 미집행) 사업 등은 장비도입 지연 등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집행이 부진하였고,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52.3% 미집행) 사업과 “해양모빌리티스마트페인팅시스템기술개발”(56.2% 미집행)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입찰공고 지연 등 행정절차 상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한 등 8개 내역사업에서 총 57억 2,200만원의 연구시설/장비비를 미집행하였음.

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 중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개발성과와 직결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나 인프라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인 한편,

인건비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성 경비이고, 간접비는 행정업무 및 연구기관 운영을 위한 회의비·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구개발성과에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비에 해당함.

연구과제 운영을 위한 행정상 경비라고 볼 수 있는 인건비와 간접비에 대해서는 각 97.1%와 95.4%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사업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의 35.7%만을 집행하는 등 4개 이상의 사업에서 연구성과와 직접 관계되는 연구시설/장비비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구개발 및 장비 등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및 적기도입 여부는 연구개발성과와 직결되므로, 사업 기획단계에서 구체적인 연구시설·장비품목의 구입가능성 여부·재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구계획 및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집행단계에서 조기발주를 위해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산업기술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요

| 구분 | 단계 | 업무내용 |
|---|---|---|
| 전략수립 (OSP) | 산업기술혁신계획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 |
| | R&BD 투자전략 | ○ 전략투자 분야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전체 산업기술 R&D에 대한 종합투자계획 수립 |
| 과제 기획 (PD) | 기술수요조사<br>(Top-Down) 정책수요 및 상위정책 / (Bottom-up) 기술수요조사 | ○ 지원분야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br>○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을 통한 연중 및 집중수요조사(6~7월) |
| | 과제기획 | ○ 과제 상세기획 통한 기획과제 도출<br>○ 기획과제에 대한 RFP(안) 작성<br>○ RFP(안) 작성을 위한 위원회·자문단· 실무작업반 등은 사업별 자율시행 |
| | 공청회 및 공시 | ○ 공청회/인터넷공시 추진 및 의견 수렴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신규사업 공고· 접수 | ○ 사업별 시행계획 및 지원대상과제 공고<br>○ 온라인을 통한 연구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구성 | ○ 평가위원 후보단을 통한 평가위원회 구성<br>○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
| | 평가위원회 평가 | ○ 신청기관의 기술개발능력 등 종합적 검토<br>○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 |
| 과제관리·환류 (전문기관) | 진도점검 | ○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 진도점검 개최 |
| | 단계·최종평가 | ○ 단계 기간 종료시 단계보고서 및 차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단계평가 실시<br>○ 연구개발과제 종료시 최종보고서에 대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 부여 |
| | 기술료 징수 등 성과관리 | ○ 연구개발성과 관련매출에 따라 기술료 징수<br>○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조사 및 분석 |

## (17)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등 22개 산업기술 R&D: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지연 방지 및 정산 미반납액의 철저한 징수 관리 필요

### ① 결산 현황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3551-301) 등 22개의 산업기술 R&D의 2024년도 예산액 7,760억 8,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산업기술 R&D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산업기술국제협력(3171-320) | 165,819 | 165,819 | - | - | - | 165,819 | 165,819 | - | - | 208,832 |
| 산업기술R&D연구기획(3171-321) | 1,732 | 1,732 | - | - | - | 1,732 | 1,732 | - | - | 1,645 |
| 수요기반조달연계혁신제품사업화(3174-343) | 3,074 | 3,074 | - | - | - | 3,074 | 3,074 | - | - | - |
|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3231-316) | 988 | 988 | - | - | - | 988 | 988 | - | - | 603 |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3362-301) | 36,189 | 36,189 | - | - | - | 36,189 | 36,189 | - | - | 36,935 |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3362-301) | 13,244 | 13,244 | - | - | - | 13,244 | 13,244 | - | - | 3,286 |
| 로봇산업기술개발(3541-301) | 117,442 | 117,442 | - | - | - | 117,442 | 117,442 | - | - | 148,612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지식서비스산업기술 개발(3541-302) | 24,077 | 24,077 | - | - | - | 24,077 | 24,077 | - | - | 13,950 |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3551-301) | 348,493 | 348,493 | - | - | - | 348,493 | 348,493 | - | - | 390,424 |
| 무인자율주행기술의 언택트서비스실용화 기술개발및기술실증 (3551-341) | 1,673 | 1,673 | - | - | - | 1,673 | 1,673 | - | - | - |
| 시장선도를위한한국 주도형K-Sensor기술 개발(3561-305) | 30,410 | 30,410 | - | - | - | 30,410 | 30,410 | - | - | 30,239 |
|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 의료기기기술개발 (3651-429) | 2,500 | 2,500 | - | - | - | 2,500 | 2,500 | - | - | 1,700 |
| 중견기업재도약지원 (4301-302) | 3,550 | 3,550 | - | - | - | 3,550 | 3,550 | - | - | 1,700 |
|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4301-313) | 15,984 | 15,984 | - | - | - | 15,984 | 15,984 | - | - | 28,433 |
|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 전환핵심기술개발 (6431-540) | 5,983 | 5,983 | - | - | - | 5,983 | 5,983 | - | - | 3,123 |
| 탄소중립대응사업재편 기술개발(6431-570) | 4,928 | 4,928 | - | - | - | 4,928 | 4,928 | - | - | - |
| 공공혁신수요기반신 기술사업화* (3174-314) | - | - | - | - | - | - | - | - | - | - |
| 범부처연계형기술 사업화이어달리기* (3174-324) | - | - | - | - | - | - | - | - | - | - |
|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3231-306)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 고도화기술개발* (3651-404) | - | - | - | - | - | - | - | - | - | - |
| 이차전지소재부품시험 평가센터구축* (5203-327) | - | - | - | - | - | - | - | - | - | - |
| 수소트럭개조기술개발 및실증*(5701-401) | - | - | - | - | - | - | - | - | - | - |

*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 등 6개 사업은 연구비 예산 집행이 2023년에 완료되었으나, 연구과제 수행이 2024년에 종료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이 0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지연 방지 및 정산 미반납액의 철저한 징수 관리 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73]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4].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75],

정산업무는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

---

7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4) **R&D 연구과제 정산 절차**

| 업무 내용 | 비 고 |
|---|---|
|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기관 → 전문기관 |
| 연구개발비 정산 | 전문기관(회계법인) |
| 정산결과 통보 | 전문기관 → 연구기관 |
| 이의 신청 접수 | 연구기관 → 전문기관 |
| 이의 신청 검토 | 전문기관 |
| 정산잔액 납부 | 연구기관 → 전문기관 |
| 국고 납입 | 전문기관 → 산업부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76].

이러한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R&D 종료과제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여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미정산 과제 수는 0건으로 나타났고, 2023년도 및 2024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5년간 R&D 종료과제 정산 현황**

(단위: 건)

| 과제 종료연도 | 정산확정 과제수 | 미정산과제수 |
|---|---|---|
| 2020년 | 3,185 | - |
| 2021년 | 2,874 | - |
| 2022년 | 1,692 | - |
| 2023년 | 1,277 | 5 |
| 2024년 | 1,856 | 1,407 |
| **합계** | **10,884** | **1,41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5. 6. 기준)

그러나 2024년에 종료된 22개 산업기술 R&D 사업의 일부 과제에서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해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77]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76)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2024년 종료과제 중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사례

(단위: 개)

| 세부사업명<br>(세부사업코드) | 과제수 | 보고서 제출 | | |
|---|---|---|---|---|
| | | 기한 내 제출 | 제출 지연 | 제출 지연 비율 |
| 산업기술국제협력(R&D)(3171-320) | 89 | 60 | 29 | 32.6% |
| 산업기술R&D연구기획(3171-321) | 19 | 15 | 4 | 21.1% |
| 수요기반조달연계혁신제품사업화(3174-343) | 4 | 3 | 1 | 25.0% |
|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3231-316) | 4 | 2 | 2 | 50.0% |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3362-301) | 32 | 25 | 7 | 21.9% |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3362-301) | 13 | 9 | 4 | 30.8% |
| 로봇산업기술개발(3541-301) | 22 | 17 | 5 | 22.7% |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3541-302) | 27 | 20 | 7 | 25.9% |
|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3551-301) | 15 | 9 | 6 | 40.0% |
|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 기술개발및기술실증(3551-341) | 5 | 3 | 2 | 40.0% |
|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3561-305) | 4 | 3 | 1 | 25.0% |
|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의료기기기술개발(3651-429) | 1 | 0 | 1 | 100.0% |
| 중견기업재도약지원(4301-302) | 8 | 5 | 3 | 37.5% |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4301-313) | 13 | 8 | 5 | 38.5% |
|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6431-540) | 4 | 3 | 1 | 25.0% |
| 탄소중립대응사업재편기술개발(6431-570) | 11 | 8 | 3 | 27.3% |
|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화(3174-314) | 4 | 2 | 2 | 50.0% |
| 범부처연계형기술사업화이어달리기(3174-324) | 17 | 7 | 10 | 58.8% |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3231-306) | 2 | 1 | 1 | 50.0% |
|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3651-404) | 6 | 4 | 2 | 33.3% |
| 이차전지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구축(5203-327) | 1 | 0 | 1 | 100.0% |
| 수소트럭개조기술개발및실증(5701-401) | 4 | 3 | 1 | 25.0% |
| 합 계 | 305 | 207 | 98 | 32.1% |

주: 제출기한(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준 제출이 지연된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77)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제출

이에 따라 R&D 종료과제 정산의 착수 시점이 미뤄지게 되면 이후 원활한 정산업무 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한편, 과제별 정산이 완료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국고로 지원된 출연금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정산 결과에 따라 적정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64억 3,000만원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정산금 회수 실적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R&D 종료과제 정산금 반납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과제 종료연도 | 정산확정 과제수 | 미정산 과제수 | 정산확정 과제 | | |
|---|---|---|---|---|---|
| | | | 국고반납 대상액 | 국고반납액 | 국고 미반납액 |
| 2020년 | 3,185 | - | 112,859 | 112,848 | **11** |
| 2021년 | 2,874 | - | 106,035 | 105,787 | **248** |
| 2022년 | 1,692 | - | 70,356 | 69,820 | **536** |
| 2023년 | 1,277 | 5 | 58,557 | 53,922 | **4,635** |
| 2024년 | 1,856 | 1,407 | 11,865 | 10,865 | **1,000** |
| 합계 | 10,884 | 1,412 | 359,672 | 353,242 | **6,43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5. 6. 기준)

특히 정산금의 국고 반납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2020~2022년 종료과제(23건)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경영악화나 폐업 등으로 인해 미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산금의 미반납이 장기화될수록 업체의 경영상태에 따라 사실상 정산금 회수가 어려워져 국고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경영악화 및 폐업 등을 이유로 국고 미반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제수행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결국 정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020~2022년 종료과제 정산금 국고 미반납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협약종료일 | 정산일자 | 반납 대상액 | 반납액 | 미반납액 | 미반납 사유 |
|---|---|---|---|---|---|---|
| 2020 | 2020.12.31 | 2021.08.19 | 3 | - | 3 | 경영악화 |
| | 2020.05.31 | 2021.05.17 | 1 | - | 1 | 폐업 |
| | 2020.12.31 | 2021.06.16 | 1 | - | 1 | 경영악화 |
| | 2020.12.31 | 2021.06.16 | 1 | - | 1 | 경영악화 |
| | 2020.12.31 | 2021.12.21 | 5 | - | 5 | 폐업 |
| 2021 | 2021.12.31 | 2022.10.11 | 9 | - | 9 | 기업회생 |
| | 2021.01.31 | 2021.11.11 | 29 | - | 29 | 경영악화 |
| | 2021.04.30 | 2022.01.21 | 3 | - | 3 | 경영악화 |
| | 2021.11.30 | 2021.04.21 | 4 | - | 4 | 경영악화 |
| | 2021.12.31 | 2021.06.24 | 0.4 | - | 0.4 | 경영악화 |
| | 2021.01.31 | 2021.10.18 | 12 | - | 12 | 경영악화 |
| | 2021.11.30 | 2022.07.21 | 74 | - | 74 | 경영악화 |
| | 2021.09.30 | 2022.10.24 | 4 | - | 4 | 기업회생 |
| | 2021.09.30 | 2022.10.24 | 4 | - | 4 | 경영악화 |
| | 2021.12.31 | 2022.12.15 | 81 | - | 81 | 경영악화 |
| | 2021.12.31 | 2022.11.09 | 15 | - | 15 | 경영악화 |
| | 2021.12.31 | 2022.12.22 | 13 | - | 13 | 경영악화 |

| 연도 | 협약종료일 | 정산일자 | 반납 대상액 | 반납액 | 미반납액 | 미반납 사유 |
|---|---|---|---|---|---|---|
| 2022 | 2022.12.31 | 2024.08.23 | 3 | - | 3 | 기업회생 |
| | 2022.12.31 | 2024.11.08 | 5 | - | 5 | 징수절차 진행중 |
| | 2022.12.31 | 2024.10.09 | 2 | - | 2 | 폐업 |
| | 2022.12.31 | 2024.06.21 | 477 | - | 477 | 형사소송 진행중 |
| | 2022.12.31 | 2021.07.05 | 9 | - | 9 | 경영악화 |
| | 2022.03.31 | 2022.12.27 | 40 | - | 40 | 경영악화 |
| 합 계 | | | 795.4 | | 795.4 |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R&D 종료과제 연구개발비의 정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산금의 국고 반납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산금 징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8) R&D 사업의 성과평가제도 개선필요

### ① 결산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을 통해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산하여, 계속과제 관련 146개 내역사업에 대해 2조 6,583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집행하였고, 신규과제 관련 35개 내역사업에 대해 1,628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집행하는 등 총 2조 8,21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수행내역

(단위: 개, 백만원)

| 사업구분 | 내역사업 수 | 예산액 | 집행액 |
|---|---|---|---|
| 종료과제 | 119 | - | - |
| 계속과제 | 146 | 2,658,322 | 2,658,322 |
| 신규과제 | 35 | 162,848 | 162,848 |
| 합 계 | 300 | 2,821,170 | 2,821,17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024년도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집행 R&D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5G기반이동형유연 의료플랫폼기술개발 | 2,072 | 2,072 | - | - | - | 2,072 | 2,072 | - | - | 4,140 |
| K-Carbon플래그십 기술개발 | 12,420 | 12,420 | - | - | - | 12,420 | 12,420 | - | - | 17,300 |
|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 18,360 | 18,360 | - | - | - | 18,360 | 18,360 | - | - | 17,900 |
| R&D관리기관지원 | 23,060 | 23,060 | - | - | - | 23,060 | 23,060 | - | - | 25,557 |
| 고성능탄소나노복합 섬유제조기술개발 | 2,340 | 2,340 | - | - | - | 2,340 | 2,340 | - | - | 2,740 |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 5,600 | 5,600 | - | - | - | 5,600 | 5,600 | - | - | 38,131 |
| 국가신약개발 | 38,784 | 38,784 | - | - | - | 38,784 | 38,784 | - | - | 41,161 |
| 국가표준기술개발 및보급 | 42,187 | 42,187 | - | - | - | 42,187 | 42,187 | - | - | 53,100 |
| 국가필수전략기술 고도화를위한 고부가정밀화학 소재개발 | 4,045 | 4,045 | - | - | - | 4,045 | 4,045 | - | - | 4,045 |
| 국방무인기초내열 엔진소재개발 | 988 | 988 | - | - | - | 988 | 988 | - | - | 603 |
|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 | 521 | 521 | - | - | - | 521 | 521 | - | - | 450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규제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인증기술개발 | 352 | 352 | - | - | - | 352 | 352 | - | - | - |
| 글로벌주력산업품질 대응뿌리기술개발 | 1,983 | 1,983 | - | - | - | 1,983 | 1,983 | - | - | - |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158,854 | 158,854 | - | - | - | 158,854 | 158,854 | - | - | 158,244 |
| 기판실장용산화물계 초소형적층전고체전지 (MLCB)개발 | 4,521 | 4,521 | - | - | - | 4,521 | 4,521 | - | - | 6,670 |
| 나노융합혁신제품 기술개발 | 13,486 | 13,486 | - | - | - | 13,486 | 13,486 | - | - | 13,506 |
| 나노융합현장수요 기반실증지원 | 520 | 520 | - | - | - | 520 | 520 | - | - | 1,200 |
| 나노인프라공정 서비스역량고도화 | 1,800 | 1,800 | - | - | - | 1,800 | 1,800 | - | - | 1,800 |
|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 기술개발및기업지원 | 2,052 | 2,052 | - | - | - | 2,052 | 2,052 | - | - | 1,160 |
| 난접근성특수화재 진화를위한고기능성 소화탄및무인능동 진압기술개발 | 960 | 960 | - | - | - | 960 | 960 | - | - | 2,000 |
| 도시철도회생 전력유휴에너지 활용방안기술실증 | 1,320 | 1,320 | - | - | - | 1,320 | 1,320 | - | - | 2,270 |
| 디자인산업기술개발 | 26,193 | 26,193 | - | - | - | 26,193 | 26,193 | - | - | 31,702 |
| 디지털유통물류기 술개발및실증지원 | 980 | 980 | - | - | - | 980 | 980 | - | - | -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디지털전환기반 의약품지능형 공정혁신기술개발 | 3,600 | 3,600 | - | - | - | 3,600 | 3,600 | - | - | 4,800 |
| 로봇산업기술개발 | 117,442 | 117,442 | - | - | - | 117,442 | 117,442 | - | - | 148,612 |
| 마그네슘(Mg)계 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시범 | 2,000 | 2,000 | - | - | - | 2,000 | 2,000 | - | - | 2,500 |
| 멀티오믹스기반 난치암맞춤형진단 치료상용화기술개발 | 4,500 | 4,500 | - | - | - | 4,500 | 4,500 | - | - | 5,400 |
| 무인자율주행기술 의언택트서비스실 용화기술개발및기 술실증 | 1,673 | 1,673 | - | - | - | 1,673 | 1,673 | - | - | - |
|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 | 11,974 | 11,974 | - | - | - | 11,974 | 11,974 | - | - | 16,529 |
| 바이오매스기반비 건레더개발및실증 클러스터구축 | 3,420 | 3,420 | - | - | - | 3,420 | 3,420 | - | - | 4,920 |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 116,261 | 116,261 | - | - | - | 116,261 | 116,261 | - | - | 128,291 |
| 백신원부자재생산 고도화기술개발 | 6,743 | 6,743 | - | - | - | 6,743 | 6,743 | - | - | 8,177 |
|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 59,127 | 59,127 | - | - | - | 59,127 | 59,127 | - | - | 31,044 |
| 병원-기업협력 공동사업화기반수 요연계형기술개발 | 3,070 | 3,070 | - | - | - | 3,070 | 3,070 | - | - | 1,332 |
| 산업기술R&D 연구기획 | 1,732 | 1,732 | - | - | - | 1,732 | 1,732 | - | - | 1,645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시범 | 1,500 | 1,500 | - | - | - | 1,500 | 1,500 | - | - | 2,250 |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프로젝트 | 28,158 | 28,158 | - | - | - | 28,158 | 28,158 | - | - | 48,120 |
| 산업일자리 고도화기술개발 | 1,000 | 1,000 | - | - | - | 1,000 | 1,000 | - | - | 1,000 |
| 세라믹분야스마트그린제조혁신지원 | 1,233 | 1,233 | - | - | - | 1,233 | 1,233 | - | - | 1,233 |
| 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제조및실증플랫폼기술개발 | 1,215 | 1,215 | - | - | - | 1,215 | 1,215 | - | - | 3,200 |
| 소재부품기술개발 | 1,141,045 | 1,141,045 | - | - | - | 1,141,045 | 1,141,045 | - | - | 1,177,993 |
|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 2,132 | 2,132 | - | - | - | 2,132 | 2,132 | - | - | 2,068 |
|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 | 1,208 | 1,208 | - | - | - | 1,208 | 1,208 | - | - | - |
|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 핵심기술개발 | 6,798 | 6,798 | - | - | - | 6,798 | 6,798 | - | - | 7,798 |
|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기(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 | 4,341 | 4,341 | - | - | - | 4,341 | 4,341 | - | - | 5,592 |
| 수요맞춤형 바이오원부자재 제조경쟁력강화 | 5,495 | 5,495 | - | - | - | 5,495 | 5,495 | - | - | 6,594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 | 336 | 336 | - | - | - | 336 | 336 | - | - | - |
| 시스템반도체IP Bank플랫폼구축 | 5,482 | 5,482 | - | - | - | 5,482 | 5,482 | - | - | 6,212 |
|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 | 3,000 | 3,000 | - | - | - | 3,000 | 3,000 | - | - | 2,400 |
|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 9,625 | 9,625 | - | - | - | 9,625 | 9,625 | - | - | 8,670 |
|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온라인플랫폼지원 | 8,050 | 8,050 | - | - | - | 8,050 | 8,050 | - | - | 11,150 |
|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 1,122 | 1,122 | - | - | - | 1,122 | 1,122 | - | - | - |
| 시장선도를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기술개발 | 30,410 | 30,410 | - | - | - | 30,410 | 30,410 | - | - | 30,239 |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및신뢰성제고 | 4,760 | 4,760 | - | - | - | 4,760 | 4,760 | - | - | 3,818 |
| 신시장창출을위한 수요연계시스템 반도체기술개발 | 10,500 | 10,500 | - | - | - | 10,500 | 10,500 | - | - | 10,500 |
| 실리콘고함량 음극극판및셀적용 기술개발 | 3,500 | 3,500 | - | - | - | 3,500 | 3,500 | - | - | 5,850 |
|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 선박기술개발및실증 | 1,295 | 1,295 | - | - | - | 1,295 | 1,295 | - | - | 3,083 |
|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 역량강화 | 1,606 | 1,606 | - | - | - | 1,606 | 1,606 | - | - | -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 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 | 1,681 | 1,681 | - | - | - | 1,681 | 1,681 | - | - | - |
| 열계면용방폭/방열 세라믹갭필러소재개발 | 2,500 | 2,500 | - | - | - | 2,500 | 2,500 | - | - | 4,000 |
| 영상진단의료기기 탑재용AI기반영상 분석솔루션개발 | 5,180 | 5,180 | - | - | - | 5,180 | 5,180 | - | - | - |
| 온실가스감축을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기술개발 | 3,068 | 3,068 | - | - | - | 3,068 | 3,068 | - | - | 3,068 |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 | 37,400 | 37,400 | - | - | - | 37,400 | 37,400 | - | - | 46,888 |
|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기술지원 | 2,788 | 2,788 | - | - | - | 2,788 | 2,788 | - | - | 4,425 |
| 이차전지첨단전략 산업글로벌협력지원 | 2,000 | 2,000 | - | - | - | 2,000 | 2,000 | - | - | 2,000 |
| 자동차보안취약점 기반위협분석 시스템개발 | 4,000 | 4,000 | - | - | - | 4,000 | 4,000 | - | - | 5,350 |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348,493 | 348,493 | - | - | - | 348,493 | 348,493 | - | - | 390,424 |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기술 개발및서비스실증 | 1,646 | 1,646 | - | - | - | 1,646 | 1,646 | - | - | - |
| 저가격·장수명 나트륨이차전지 핵심소재및셀제조 기술개발 | 2,600 | 2,600 | - | - | - | 2,600 | 2,600 | - | - | 5,850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고효율조업기술개발 | 2,584 | 2,584 | - | - | - | 2,584 | 2,584 | - | - | 2,584 |
|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 | 4,620 | 4,620 | - | - | - | 4,620 | 4,620 | - | - | - |
| 전기차플랫폼공용화기반수소차용비정형수소저장장치개발 | 4,740 | 4,740 | - | - | - | 4,740 | 4,740 | - | - | - |
|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 | 3,328 | 3,328 | - | - | - | 3,328 | 3,328 | - | - | 3,631 |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164,473 | 164,473 | - | - | - | 164,473 | 164,473 | - | - | 162,613 |
|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 | 13,545 | 13,545 | - | - | - | 13,545 | 13,545 | - | - | 6,773 |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 77,225 | 77,225 | - | - | - | 77,225 | 77,225 | - | - | 119,165 |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 24,077 | 24,077 | - | - | - | 24,077 | 24,077 | - | - | 13,950 |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 62,907 | 62,907 | - | - | - | 62,907 | 62,907 | - | - | 46,310 |
|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 | 12,917 | 12,917 | - | - | - | 12,917 | 12,917 | - | - | 11,625 |
|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 | 4,800 | 4,800 | - | - | - | 4,800 | 4,800 | - | - | 4,800 |
|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의료기기기술개발 | 2,500 | 2,500 | - | - | - | 2,500 | 2,500 | - | - | 1,700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탄소산업기반조성 | 6,820 | 6,820 | - | - | - | 6,820 | 6,820 | - | - | 3,955 |
|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 | 3,438 | 3,438 | - | - | - | 3,438 | 3,438 | - | - | 2,500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소특) | 38,003 | 38,003 | - | - | - | 38,003 | 38,003 | - | - | 39,396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일반) | 41,827 | 41,827 | - | - | - | 41,827 | 41,827 | - | - | 44,445 |
|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 선박개발및실증 | 1,378 | 1,378 | - | - | - | 1,378 | 1,378 | - | - | 1,378 |
| 해외수출형고출력 전기기관차구동 변환플랫폼 핵심기술개발및실증 | 2,774 | 2,774 | - | - | - | 2,774 | 2,774 | - | - | 2,774 |
| 해외인증지원체계 기반구축 | 1,860 | 1,860 | - | - | - | 1,860 | 1,860 | - | - | 1,070 |
| 핵심전략산업대응 탄성소재재도약 | 4,000 | 4,000 | - | - | - | 4,000 | 4,000 | - | - | 4,000 |
| 혁신형융복합바이오 의료제품기술개발 및실증 | 3,700 | 3,700 | - | - | - | 3,700 | 3,700 | - | - | 4,440 |
| 화합물소재기반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술개발 | 7,393 | 7,393 | - | - | - | 7,393 | 7,393 | - | - | 6,654 |
| 화합물전력반도체 고도화기술개발 | 14,000 | 14,000 | - | - | - | 14,000 | 14,000 | - | - | 21,17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R&D 수행결과 평가체계 개편필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상 R&D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시 최종결과에 대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보통·미흡·불성실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 중 우수와 보통에 대해 성공판정을 부여하게 하고 있음[78].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술개발사업 수행결과

(단위: 개)

| 연도 | 계 | 성공 | | | 미흡 | 불성실 |
|---|---|---|---|---|---|---|
| | | 소계 | 우수 | 보통 | | |
| 2021년 | 684 | 681<br>(99.6%) | 19<br>(2.8%) | 662<br>(97.2%) | - | 3<br>(0.4%) |
| 2022년 | 673 | 670<br>(99.6%) | 11<br>(1.6%) | 659<br>(98.4%) | - | 3<br>(0.4%) |
| 2023년 | 772 | 769<br>(99.6%) | 18<br>(2.3%) | 751<br>(97.7%) | - | 3<br>(0.4%) |
| **2024년** | **816** | **796<br>(97.5%)** | **15<br>(1.9%)** | **781<br>(98.1%)** | **20<br>(2.5%)** | - |
| 평균 | 736.3 | 729.0<br>(99.0%) | 15.8<br>(2.2%) | 713.3<br>(97.8%) | 5.0<br>(0.7%) | 2.3<br>(0.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78)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조(최종평가)
⑦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 과정이 성실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
3. 미흡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등
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그런데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2024년 종료・계속・신규과제 총 816건 중 2.5%에 해당하는 20건에 대해서만 미흡판정을 내리고 97.5%에 해당하는 796건에 대해서는 성공판정을 부여하였으며,

성공판정을 받은 796개 R&D 사업 중 1.9%에 해당하는 15건에 대해서만 우수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98.1%에 해당하는 781건에 대해서는 보통판정을 내림.

이는 연례적인 관례로, 지난 4년간 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평균 736.3건의 R&D 사업 중 99.0%에 해당하는 729.0건에 대해 성공판정을 부여하였으며,

성공판정을 내린 평균 729.0건의 R&D 사업 중 2.2%에 해당하는 15.8건에 대해서만 우수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97.8%에 해당하는 713.3건에 대해서는 보통판정을 내림.

R&D 사업 평가제도는 R&D 사업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투자에 환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로,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불성실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수당의 50%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도록 하고[79],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음[80].

---

79)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5(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

8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

나아가 평가결과가 우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R&D 자율성 트랙[81]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연구개발비 자체정산[82]을 허용하는 등,

법령과 내규 등을 통하여 미흡·불성실 과제에 대한 페널티와 우수과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99.0%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성공판정이 내려지는 한편, 그 중 98.1%가 보통판정을 받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R&D 평가체계가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측면이 있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완료사업 결과

| 구 분 | 완료사업 | 우수평가 | 보통평가 |
|---|---|---|---|
| 산업통상자원부 | 796건 | 15건 | 781건 |
| | | **1.9%** | **98.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38건 | 134건 | 687건 |
| | | **16.3%** | **83.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81)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라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사용,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간 예산 변경,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등에 대한 특례 제공

8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의 경우 완료과제 796건 중 1.9%에 해당하는 15건에 대해서만 우수평가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의 경우 완료과제 838건 중 16.3%에 해당하는 134건에 대해 우수평가를 부여함으로써 R&D 사업 관련 평가체계를 실질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R&D 사업 평가는 단순행정절차가 아닌 성과 중심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장치로서, 절대다수(97.5%)의 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를 인정하고, 그 중 절대다수(98.1%)의 사업에 대해 보통평가를 부여하는 현 상황 하에서는 연구자들의 성과 유인 효과가 약화되고, 평가결과가 R&D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집행에 실질적인 환류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보통・미흡・불성실 평가 별 비중의 적정한 수준으로의 조정과 부분적인 상대평가 제도도입,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 등 R&D 수행결과 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9) 국제표준활동지원: 일반연구비 전액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 ① 결산 현황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사업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및 참가,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 활동 지원,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등을 통해 국제표준시장을 선점하고 국가표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2억 3,200만원 중 31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고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4년도 국제표준활동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국제표준활동지원 | 3,232 | 3,232 | - | - | - | 3,232 | 3,177 | - | 55 | 3,558 |
| 국제표준화 회의개최 | 655 | 655 | - | - | - | 655 | 655 | - | - | 1,040 |
| 국제표준화 회의참가 | 184 | 184 | - | - | - | 184 | 182 | - | 2 | 184 |
| 사실상표준 포럼지원 | 534 | 534 | - | - | - | 534 | 525 | - | 9 | 500 |
| 국제표준화 선도정책연구 | 100 | 100 | - | - | - | 100 | 95 | - | 5 | 100 |
| 국제의장간사 활동지원 | 1,159 | 1,159 | - | - | - | 1,159 | 1,139 | - | 20 | 1,234 |
| 한-아세안 표준협력 | 600 | 600 | - | - | - | 600 | 581 | - | 19 | 5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일반연구비 전액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동 사업은 ① ‘국제표준화회의개최’, ② ‘국제표준화회의참가’, ③ ‘사실상표준포럼지원’, ④ ‘국제표준화선도정책연구’, ⑤ ‘국제의장간사활동지원’, ⑥ ‘한-아세안 표준협력’ 등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사실상표준포럼지원’은 사실상 표준화 기구별 포럼·컨소시엄 구성,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의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 주력사업 관련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및 국내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억 3,400만원 중 5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내역사업인 ‘국제표준화선도정책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신산업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등 국제표준 동향 및 국제표준화 협력방안을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원 중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내역사업인 ‘한-아세안 표준협력’은 한-아세안 공동 표준 개발 및 전략적 표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표준을 아세안으로 보급확산하여 각 국가 간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기술장벽을 사전에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아세안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 중 ‘사실상표준포럼지원’(5억 3,400만원), ‘국제표준화선도정책연구’(1억원), ‘한-아세안 표준협력’(6억원) 등 3개 내역사업은 전액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되어 있음.

2024년도 기능·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사실상표준포럼지원 | 534 | 534 | - | - | - | 534 | 525 | - | 9 | 500 |
| - 일반연구비 (260-01) | 534 | 534 | - | - | - | 534 | 525 | - | 9 | 500 |
| 국제표준화선도정책연구 | 100 | 100 | - | - | - | 100 | 95 | - | 5 | 100 |
| - 일반연구비 (260-01) | 100 | 100 | - | - | - | 100 | 95 | - | 5 | 100 |
| 한-아세안 표준협력 | 600 | 600 | - | - | - | 600 | 581 | - | 19 | 500 |
| - 일반연구비 (260-01) | 600 | 600 | - | - | - | 600 | 581 | - | 19 | 5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83]에 따르면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함.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따르면 연구용역비(260목)는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동 사업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추진한 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2022년도 계약이 체결된 연구용역 3건 중 수의계약은 3건, 2023년도 연구용역 4건 중 수의계약은 4건, 2024년도 연구용역 5건 중 수의계약은 5건으로 매년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일반연구비(260-01) 계약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내역사업명 | 계약 내역 | | | | | 계약 유형 | 수의 계약 사유 |
|---|---|---|---|---|---|---|---|---|
| | | 계약명 | 발주 금액 | 낙찰액 (계약 금액) | 수탁 기관 | 계약 기간 | | |
| 2022 | 사실상표준 포럼지원 | **사실상국제표준화 포럼사업** | 397 | **396** | 한국표준 협회 | 4.11. ~12.15.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 국제표준화 선도정책연구 | 국내 표준전문가 세대 교체를 위한 차세대 표준 인력의 국제표준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30 | 27 | 한국표준 협회 | 5.2. ~12.20.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 | 기술국가주의 시대의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 연구 | 40 | 40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5.2. ~12.20.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2023 | 사실상표준 포럼지원 | **2023년 사실상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및 동향조사** | 534 | **525** |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7.4. ~12.15.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연도 | 내역사업명 | 계약 내역 | | | | | 계약 유형 | 수의 계약 사유 |
|---|---|---|---|---|---|---|---|---|
| | | 계약명 | 발주 금액 | 낙찰액 (계약 금액) | 수탁 기관 | 계약 기간 | | |
| | 국제표준화 선도정책연구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의 경제성 평가 및 단계적 진출 전략 연구 | 40 | 40 | 현대경제 연구원 | 6.9. ~11.8.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 | 지역표준화기구 동향 조사를 통한 국가별 협력전략 연구 | 30 | 30 | 에코플러스 디앤알 | 6.9. ~12.8.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 | 표준전문가 역량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단계별 가이드 개발 | 30 | 27 | 한국표준 협회 | 10.23. ~12.20.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2024 | 사실상표준 포럼지원 | **2024년 사실상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및 동향조사** | 534 | **525** |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6.5. ~12.13.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 국제표준화 선도정책연구 | 개도국표준체계보급 지원 사업 성과분석 | 40 | 40 | 한국정책 연구 네트워크 | 4.15. ~12.13.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 | 국제표준화기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30 | 27 | 한국표준 협회 | 4.17. ~12.16.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 | 차세대 표준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전략 연구 | 30 | 27 | 한국표준 협회 | 4.17. ~12.16.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 | 한-아세안 표준협력 | **한-아세안 간 표준 협력 강화를 위한 총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600 | **581** | 한국표준 협회 | 5.14. ~12.13. | **수의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은 2천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 계약 등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2건의 연구용역 모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3억원 이상의 계약도 2022년 1건(3억 9,600만원), 2023년 1건(5억 2,500만원), 2024년 2건(5억 2,500만원, 5억 8,100만원)으로 총 4건에 달함.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 7) (생 략)

제27조제3항[85]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지명경쟁,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추진한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해당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사실상표준포럼지원’ 사업 성격을 고려한 비목 편성·집행 필요

내역사업인 ‘사실상표준포럼지원’ 사업은 사실상 표준화 기구별 포럼·컨소시엄 구성,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의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 주력사업 관련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및 국내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억 3,400만원 중 5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98.3%),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사실상표준포럼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천원)

| 2024년 | | |
|---|---|---|
| 예산액 | 집행액 | 집 행 내 역 |
| 534,000 | 524,900 | - 인건비: 32,902<br>- 경비: 422,173<br>· 국내여비: 2,006<br>· 회의비: 21,600<br>· 임차료 : 36,039<br>· 유인물비: 38,228<br>· 외주용역비: 324,300<br>- 일반관리비: 22,125<br>- 이윤 및 부가가치세: 47,72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실상표준은 시장 요구와 기술 발전에 따른 공적 표준 개발의 시간 소요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개발 기관(SDO) 또는 포럼·컨소시엄에서 개발된 글로벌 표준, 특정 분야에서 지배력을 가진 표준을 의미함.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공적 표준보다 민간

표준(사실상 표준)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표준화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실상표준포럼지원’ 사업은 전액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임.

‘사실상표준포럼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포럼총회 등 회의 개최, 홍보컨텐츠 제작 및 대외 홍보 등으로, 조사·연구 등 관련 용역 수행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4년 사실상표준화포럼 실적

| 구분 | 실적 | 세부 내용 |
|---|---|---|
| 운영위원회 개최 | 6 | 포럼 사업 분석 및 평가, 사실상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정책 제안 등 |
| 월례회의 개최 | 7 | 각 분야별 전략위원회 사업성과 관리 및 사업비 집행 감독 * 정기 월간업무보고 실시 |
| 포럼총회 개최 | 1 | 사실상표준화포럼 총회 및 컨퍼런스<br>* 일시 : '24.12.04 / 장소 : 루나미엘레 여의도 약 120명 참석 |
| 온라인 SNS 채널 컨텐츠 제작 | 57 | 네이버 블로그 운영 , LinkedIn 영문 운영 , 페이스북 국문 운영<br>* 홍보 콘텐츠 57건 제작 |
| 대외 홍보 (E-뉴스레터, 언론보도, 언론기고 등) | 7 | e-뉴스레터 6건 발행, 홍보영상 1건, 국제협력워크샵 3건 개최, 국내 세미나 1건 |
| 산업계 동향 보고서 발간 | 1 | 분야별 기술 및 동향보고서, 인물인터뷰, 출장보고서, 등 원고 |
| 신규 후속 지원 대상 발굴 | 4 | 신규분야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소재, 공급망관리 발굴 |

출처: 2024년도 사실상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및 동향조사 학술용역사업 최종보고서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표준포럼지원' 사업의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또는 일반용역비(210-14목) 등으로 변경하여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 필요

### ① 결산 현황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3731-312) 사업은 시험인증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을 방지하여 적합성평가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7억 6,000만원 중 47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음.

’24년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 4,760 | 4,760 | - | - | - | 4,760 | 4,755 | - | - | 3,818 |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300 | 300 | - | - | - | 300 | 295 | - | - | 400 |
| 유망시험서비스개발 | 1,125 | 1,125 | - | - | - | 1,125 | 1,125 | - | - | 1,100 |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2,785 | 2,785 | - | - | - | 2,785 | 2,785 | - | - | 1,718 |
|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 550 | 550 | - | - | - | 550 | 550 | - | - | 6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 필요

동 사업은 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②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③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④ ‘한 제품 다수 인증 원스톱처리플랫폼 구축·운영’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미래 유망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사업출연금(350-02)으로 편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관리 전문기관[86]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과제 공고를 통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제형 연구개발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도에는 7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수행비 11억 300만원과 사업관리비 2,200만원 등 총 11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음.

86)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의 기획·관리·평가를 대행하는 기관

## ’24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 집행내역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1,125백만원
- 과제수행비 : 1,103백만원
  • 7개 과제 × 157.6백만원 = 1,103백만원
- 사업관리비 : 22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동 사업은 7개 과제 모두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2024년 2월에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4월에 기획위원회 및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4~5월에 과제를 공고하여 5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기획위원회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지연 등으로 5.10.~6.10.에 과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말에 선정평가를 거쳐 8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7개 과제 모두 연구개발기간이 ‘2024.7.1. ~ 2025.6.30.’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고 있음.

## ’24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 과제별 실시현황

| 연번 | 과제명 | 협약 체결일 | 연구개발기간 | 실집행액 (단위:백만원) |
|---|---|---|---|---|
| 1 | 차세대 방산용 나노소재의 차폐 및 전기적 물성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 ’24.08.07 | ’24.07.01~’25.06.30 (12개월) | 162 |
| 2 | 해양 생분해성 소재 부품의 글로벌 시험인증 기반 조성 | ’24.08.02 | ’24.07.01~’25.06.30 (12개월) | 151 |

| 연번 | 과제명 | 협약 체결일 | 연구개발기간 | 실집행액 (단위:백만원) |
|---|---|---|---|---|
| 3 | CO2 가압 챔버 활용 CO2 양생 시멘트 품질 평가방법 개발 | '24.08.02 | '24.07.01～'25.06.30 (12개월) | 152 |
| 4 | 자동차용 3차원 증강 헤드업 디스플레이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 '24.08.08 | '24.07.01～'25.06.30 (12개월) | 162 |
| 5 | 첨단 시스템 반도체 on chip IC 기반 전자기적합성 시험인증 서비스 | '24.08.07 | '24.07.01～'25.06.30 (12개월) | 162 |
| 6 | 중소형 무인항공기의 전기에너지시스템 안전 및 성능 시험인증 기반조성 | '24.08.02 | '24.07.01～'25.06.30 (12개월) | 152 |
| 7 | LED 조명 모듈과 통신 디바이스 호환접속 시험인증 서비스 | '24.08.07 | '24.07.01～'25.06.30 (12개월) | 16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 문제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2년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은 7개 과제 중 연도 내에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0건이고, 2023년의 경우에도 총 7개 과제 중 연도 내에 연구가 종료된 과제는 0건임.

'22년, '23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 과제별 실시현황

| 연도 | 과제명 | 협약 체결일 | 연구개발기간 | 실집행액 (단위:백만원) |
|---|---|---|---|---|
| 2022 | 척추용 임플란트의 성능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 '22.06.09. | '22.05.～'23.04. | 178 |
| | 국제상호인정이 가능한 항만안전시설 시험인증 서비스 | '22.06.09. | '22.05.～'23.04. | 179 |
| | 텍스타일 기반 인체 착용형 IoT 융합 소재 및 제품의 사용 환경 내구성 시험 서비스 개발 | '22.06.09. | '22.05.～'23.04. | 179 |
| | 태양광 경보등의 안전 및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 '22.06.14. | '22.05.～'23.04. | 179 |

| 연도 | 과제명 | 협약 체결일 | 연구개발기간 | 실집행액 (단위:백만원) |
|---|---|---|---|---|
| | 테스트 해머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압축강도 추정 시험인증 서비스 | ’22.06.09. | ’22.05.~**’23.10.** | 179 |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안전인증 절차서와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 ’22.06.14. | ’22.05.~**’23.07.** | 178 |
| | 정온유통 (콜드체인) 설비 시험인증 서비스 | ’22.06.14. | ‘22.05.~**’23.07.** | 178 |
| 2023 |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전자파 적합성 검증요건 시험인증 서비스 | ’23.08.02. | ’23.06.~’24.05. | 175 |
|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 ’23.07.20. | ’23.06.~**’24.11.** | 175 |
| |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시험인증 서비스 | ’23.07.24. | ’23.06.~’24.05. | 175 |
| | 인공지능(AI) 신뢰성 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 ’23.07.17. | ’23.06.~**’24.11.** | 175 |
| | 산업용 로봇 적용 현장 안전 및 성능레벨 시험인증 서비스 | ’23.07.17. | ’23.06.~**’24.09.** | 175 |
| | 대량의 폭발성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고 및 냉동기기류에 대한 방폭 시험인증 서비스 | ’23.07.19. | ’23.06.~**’24.08.** | 175 |
| | 의료기기의 광대역 자기장 내성 성능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 ’23.07.19. | ’23.06.~24.05. | 17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위원회 및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과제 선정과 사업 공고를 위한 단계별 일정이 지연되면서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3조[87]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8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과제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수행가능한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신규 단년도 과제의 경우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적어도 1월 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이에 대한 사업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연도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분기 내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사업은 연도말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 정산 시기에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완료보고서도 제출되지 않는 등 국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과제 수행기간을 회계연도에 수행이 가능한 기간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직전년도 사업 준비를 통해 조기에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 사업의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2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 R&D 사업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등 추진 지양 필요

### ① 결산 현황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3731-320) 사업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 및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제품안전성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7억 8,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4년도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 | 2,788 | 2,788 | - | - | - | 2,788 | 2,788 | - | - | 4,425 |
|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1,668 | 1,668 | - | - | - | 1,668 | 1,668 | - | - | 2,545 |
|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 1,120 | 1,120 | - | - | - | 1,120 | 1,120 | - | - | 1,88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R&D 사업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등 추진 지양 필요

동 사업은 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②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으로, 전문기관[88]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자금이 교부된 후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학·연 등에 자금이 교부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내역사업인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사업은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안전성 시험·평가,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신규과제 3개와 계속과제 6개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1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음.

**’24년도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사업 집행내역**

○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 1,120백만원
- 신규과제
  · 3개 × 133.3백만 × 9/12개월 = 400백만원
- 계속과제
  · 6개 × 120백만 × 12/12개월 = 72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

8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의 기획·관리·평가를 대행하는 기관

르면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임.

그런데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내역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 과제는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안전확인 신고·변경, 행정처분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과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7개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변경 및 행정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것이고,

‘표준제품분류체계의 범부처 확대 도입을 위한 표준제품분류시스템 고도화’ 과제는 기 구축된 제품분류표준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시스템의 고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통합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과제는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제품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R&D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

| 과제명 | 안전확인 신고·변경, 행정처분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표준제품분류체계의 범부처 확대 도입을 위한 표준제품분류시스템 고도화 |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통합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
|---|---|---|---|
| **사업 목적** | 안전확인 신고 대상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변경 및 행정처분 업무관리 고도화 | 제품분류표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 이용자의 활용도 제고 및 범부처 표준제품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표준제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제품안전정보의 상호연계 및 범부처 공동 사용 통합정보연계시스템 기반 구축 |
| **사업 내용** | -안전확인 신고·변경 및 행정처리 **업무 분석 및 DB 분석**<br>-안전확인 신고·변경 및 **행정처리 업무관리 모듈 개**발<br>-안전확인 신고·변경 및 **행정처리 시스템 테스트서버 구축** | -표준제품분류 DB의 정확성 및 정합성 확보 방안 도출<br>**-제품분류표준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개선**<br>-표준제품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품분류 표준시스템 고도화**<br>-범부처 소관품목의 표준제품분류체계 DB 구축 및 시스템 활용 지원 | -표준제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인증정보, 리콜정보, 위해정보, 수입제품안전관리정보 등 제품안전정보 연계방안 도출<br>**-정보연계시스템 AS-IS 분석 및 로드맵 제시**<br>-부처 간 분산된 정보 공유 및 기업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정보연계시스템 기반 구축** |
| **사업 기간** | 2024.4.~2025.12 | 2024.4.~2025.12 | 2023.4.~2024.12 |
| **2024년도 예산** | 1억 6,000만원<br>* 2년간 총 2억 8,000만원 | 1억 3,000만원<br>* 2년간 총 3억원 | 9,300만원<br>* 2년간 총 2억 4,300만원 |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공동연구개발기관** | ㈜네오플러스 |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br>㈜가온시스템 |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br>㈜피앤디테크놀로지 |

출처: 연차보고서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개발한 표준제품분류체계를 활용·검증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3개 과제의 주요 사업내용은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으로, 연구개발 활동 수행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 구축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아닌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출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규정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연금은 사용 용도가 포괄적이고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출연의 법적 근거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은 출연기관의 전문성보다 민간 IT 업체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분야이므로 정보화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사업 운영비 절감에 효과적일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2)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사업 사업방식 개선 필요 등

### ① 결산 현황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사업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억 4,300만원 중 15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24년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1,543 | 1,543 | - | - | - | 1,543 | 1,530 | - | - | 1,247 |
| 어린이제품안전확보 역량강화 | 468 | 468 | - | - | - | 468 | 468 | - | - | 358 |
| 어린이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88 | 288 | - | - | - | 288 | 288 | - | - | 288 |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787 | 787 | - | - | - | 787 | 774 | - | - | 60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사업 사업방식 개선 필요

동 사업은 ①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②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은 어린이제품의 유해성 검증 및 분석을 통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6,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4년도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468 | 468 | - | - | - | 468 | - | - | - | 35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내역사업은 ①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유해성 검증·분석’, ② 어린이제품 제조·유통·판매 사업자에게 어린이제품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이슈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③ 어린이제품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 관련 ‘전문교육’ 참여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사업 예산 전액을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보조사업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동 내역사업의 상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외부용역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총 2억 7,000만원으로 동 내역사업의 전체 집행액 4억 6,800만원의 57.7%에 해당하여 외부용역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음.

**'24년도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항목 | 집행액 | 비중 | 비고 |
|---|---|---|---|---|
| 1 | 인건비 | 153 | 32.7% | 인건비 |
| 2 | 운영비 | 43 | 9.2% | 일반수용비, 임차료, 기타운영비 |
| 3 | **연구개발비** | **270** | **57.7%** | **시험용역비** |
| 4 | 여비 | 2 | 0.4% | 출장비 |
| 계 | | 468 | 100%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동 내역사업은 국내외 동향분석 및 안전기준 검토시험 등을 통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유해성 검증·분석'이 주요 사업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2024년에 '유해성 검증·분석'을 통해 수행한 6개 연구과제 중 보조사업자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한 과제는 한 건도 없으며, 6건 모두 외부 시험인증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24년도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과제명 | 주요내용 | 집행액 | 용역 수행업체 |
|---|---|---|---|---|
| 1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 -국내외 유해물질 관련 안전관리체계 분석비교<br>-환경부의 유해물질 관리법과 소관 부처별 개별 관리품목 관계 분석 | 50 | 카트리 시험연구원 |
| 2 | 어린이제품 실태조사를 통한 학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 -국내외 표준 및 기술규제 자료 조사<br>-실사용 제조공정상 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기준 개정안 도출<br>-최신 규격 반영 필요성 검토 후 안전기준 개정안 도출 | 50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3 | 어린이제품 국민신문고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 -국민신문고 답변 결과를 취합하여 품목 유형화 및 판별기준 마련<br>-품목 유형화 토대로 답변 및 판단 근거 이력 정리 | 40 | 카트리 시험연구원 |
| 4 |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품목별 통관관리 기반 마련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카테고리 분류체계 파악을 통해 관련 제품 수입시장 규모 확인<br>-해외직구 시장규모 파악 및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구매규모 조사 | 40 | KOTITI 시험연구원 |
| 5 | 유아용 침대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기준 분석 및 연구 | -국내외 표준 및 기술규제 자료 조사<br>-최신 규격을 적용한 안전기준 개선안 도출 | 3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6 |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기초연구 |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25~'27)안 마련<br>-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관련 로드맵안 연구<br>-제3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실적 및 성과 정리 | 42 | KOTITI 시험연구원 |
| 7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정책 실행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 검토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과제 실행방안 검토 | 18 | KOTITI 시험연구원 |
| 합계 | | | 270 | |

출처: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 결과보고서 및 용역계약서

또한 2024년도 동 내역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는 내역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과제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24년도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과제명 | 주요내용 | 집행액 | 용역 수행업체 |
|---|---|---|---|---|
| 1 | **어린이제품 국민신문고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 -국민신문고 답변 결과를 취합하여 품목 유형화 및 판별기준 마련<br>-품목 유형화 토대로 답변 및 판단 근거 이력 정리 | 40 | 카트리 시험연구원 |
| 2 |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기초연구** |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25~’27)안 마련<br>-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관련 로드맵안 연구<br>-제3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실적 및 성과 정리 | 42 | KOTITI 시험연구원 |
| 3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정책 실행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 검토**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과제 실행방안 검토 | 18 | KOTITI 시험연구원 |

출처: 안전확보 역량강화 결과보고서 및 용역계약서

예를 들어 ‘어린이제품 국민신문고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과제는 국민신문고 답변 결과를 취합하여 품목 유형화 및 판별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기초연구’는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안[89]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8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 사례집 발간, 기본계획안 마련 등은 어린이제품의 유해성 검증 및 분석을 통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내역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임.

동 내역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계약 체결을 통한 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권역별 균형 있는 설치 필요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다양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국민적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① 안전교육 선도학교, ② 찾아가는 안전교육, ③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등 3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사업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90] 내에 제품안전분야 체험관을 구축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신규 체험관 1개소의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현액 1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동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부터는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음.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예산액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집행액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집행률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개소수 | 2 | 2 | 1 | 1 | 1 | 1 | 1 | 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0) 안전체험관은 교통, 재난 등을 위주로 체험시설을 운영 중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9개 지역에 설치가 완료되었음. 연도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서울 송파와 전북 임실, 2018년에 충북 진천과 경기 부천, 2019년에 대구, 2020년에 울산, 2021년 강원 태백, 2022년 부산, 2023년 충북 청주, 2024년 경상남도 합천에 설치되었으며, 이 중 2017년에 구축된 전북 임실의 안전체험관의 경우 시설 노후화 등의 사유로 2022년 운영이 종료되었음.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설치현황**

| 구축연도 | 체험관명 | 소재지 | 운영주체 | 예산 | 권역 |
|---|---|---|---|---|---|
| 2017 |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 서울 송파구 | 송파구<br>(한국어린이안전재단) | 0.5억 | 수도권 |
| 2018 |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 충북 진천군 | 진천군청 | 0.5억 | 충청권 |
| | 부천 오정119안전센터 | 경기 부천시 | 부천<br>오정소방서 | 0.5억 | 수도권 |
| 2019 |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 대구 동구 | 대구소방안전본부 | 1억 | 영남권 |
| 2020 | 울산 안전체험관 | 울산 북구 | 울산소방본부 | 1.5억<br>(지자체 예산 0.5억 포함) | 영남권 |
| 2021 | 강원 한국안전체험관 | 강원 태백시 | 태백시청 | 1억 | 강원권 |
| 2022 | 부산119안전체험관 | 부산 동래구 | 부산소방재난본부 | 1억 | 영남권 |
| 2023 | 충북 안전체험관 | 충북 청주시 | 충북 소방본부 | 1억 | 충청권 |
| 2024 |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 경남 합천군 | 경상남도 | 1억 | 영남권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의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2개소, 충청권에 2개소, 영남권에 4개소, 강원권에 1개소가 구축되어 호남권,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지역별 설치현황**

| 권역 | 설치 개소수 | 체험관명 |
|---|---|---|
| **수도권** | **2개소** |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
| | | 부천 오정119안전센터 |
| **충청권** | **2개소** |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
| | | 충북 안전체험관 |
| **영남권** | **4개소** |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
| | | 울산 안전체험관 |
| | | 부산119안전체험관 |
| | |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
| **강원권** | **1개소** | 강원 한국안전체험관 |
| **호남권** | - | **미설치** |
| **제주권** | - | **미설치** |
| 합계 | 9개소 | |

2024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신규 안전체험관을 구축할 계획이었음.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경남, 전북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선정평가 결과 경상남도가 최종 선정되어 영남권에 추가적으로 안전체험관을 구축하게 되었음.

참고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선정평가 시 광역자치단체 기준 어

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총 득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미구축 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절대적 점수가 아닌 총 득점의 10%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평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선정평가 항목**

| 평 가 항 목 | | 배점 |
|---|---|---|
| 정량평가 | ○ 전문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 5 |
| | ○ 체험관 규모 | 5 |
|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5 |
| | ○ 자체 추가 펀딩 가능 여부 | 5 |
| 정성평가 | ○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20 |
| | ○ 당해 과제에 대한 적극성 | 20 |
| | ○ 수행 일정의 합리성 | 20 |
| | ○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 | 10 |
| | ○ 교육 활성화 노력 | 10 |
| □ 총 점 | | 100 |

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미구축 지역은 총 평가점수의 10% 가점 부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소외지역, 안전체험관 미설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3)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① 결산 현황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4301-301)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도와 중견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로의 기여를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77억 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77억 8,300만원 중 7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글로벌중견기업 육성인프라구축 | 7,706 | 7,706 | 77 | - | - | 7,783 | 7,475 | 266 | 42 | 6,550 |
|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 2,235 | 2,235 | 77 | - | - | 2,312 | 2,004 | 266 | 42 | 1,875 |
|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 3,671 | 3,671 | - | - | - | 3,671 | 3,671 | - | - | 3,145 |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 1,800 | 1,800 | - | - | - | 1,800 | 1,800 | - | - | 1,53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① 신형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을 위한 중견 정책대상기업 등의 선정·관리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혁신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와 ②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과 인식제고를 위한 통계 작성, 정기 실태조사 실시, 종합정보시스템, 인재유입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는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③ 중국산 솔루션 기반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확산시키기 위한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등의 내역사업(3개)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예산 편성 상세**

| |
|---|
| ·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2,235백만원)<br>- 혁신형 중견기업 성장지원 1,080백만원<br>- 중견기업 사업다각화 모색 705백만원<br>-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 450백만원(8개x56.25백만원)<br><br>·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3,671백만원)<br>-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2,359백만원<br>- 중견기업 인식개선 지원 1,312백만원<br><br>·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1,800백만원)<br>-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지원 290백만원<br>- 디지털 솔루션 도입·적용 1,440백만원<br>- 사업관리비 70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사업은 ‘혁신형 중견기업 성장지원’, ‘중견기업 사업다각화 모색’ 및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사업은 시의적절한 중견기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국내·외 중견기업 관련 주요 이슈, 지원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700만원이고, 이 중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6,600만원은 이월, 4,200만원은 불용[91]하였음.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2024 | 527 | 219 | 266 | 4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내내역사업의 2024년도 상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8건의 연구용역 중 6건의 정책연구비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 정책연구비 집행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연번 | 과제명 | 수행기관 | 계약기간 | 계약금 | 집행액 | 이월액 |
|---|---|---|---|---|---|---|
| 1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4.05.07 ~ 2024.09.03 | 50 | 31* | - |
| 2 | 중견기업 성장지향형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중견학회 | 2024.10.02 ~ 2025.02.28 | 50 | 50** | - |
| 3 |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KDI) | 2024.12.09 ~ 2025.05.30 | 107 | 21 | 86 |

91) 낙찰차액(23백만원) 및 정책연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19백만원) 등의 발생으로 인한 불용

| 연번 | 과제명 | 수행기관 | 계약기간 | 계약금 | 집행액 | 이월액 |
|---|---|---|---|---|---|---|
| 4 | 중견기업 수요 기반 직무 맞춤형 인재확보 지원방안 연구 | ㈜케이엔랩 | 2024.12.09 ~ 2025.05.08 | 50 | 40 | 10 |
| 5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중견기업 지원방안 연구 | 산업연구원 | 2024.12.20 ~ 2025.05.19 | 45 | - | 45 |
| 6 | 서비스 중견기업 고속성장 사례분석 및 유형별 육성전략 수립 | ㈜위드혜윰 | 2024.12.20 ~ 2025.05.19 | 49 | - | 49 |
| 7 | 중견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설계 연구용역 |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2024.12.23 ~ 2025.05.22 | 36 | - | 36 |
| 8 | 중견기업 AI 도입현황 및 활용지원 방안 연구 | (사)한국산업 지능화협회 | 2024.12.23 ~ 2025.05.22 | 40 | - | 40 |
| - | 2023년 착수 연구과제 잔액 지급(전년도 이월액) | | | 77 | 77 | |
| **합 계** | | | | **504** | **219** | **266** |

* 정책연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19백만원) 제외

** 기재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선금지급한도가 확대(기존 100분의 70 → 100분의 100)됨에 따라 전액 선금으로 지급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용역에서 정책연구비가 이월된 이유는 연구용역 계약체결이 대부분 10월 또는 12월인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수립된 정책·제도 변화[92]나 시범사업[93] 등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주로 하반기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92)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6월, 관계부처 합동), 「2024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24.7월 심의, '24.8월 발표) 등이 수립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

93) '중견기업 해외 우수인재 확보지원 시범사업('24.5월~12월)'의 후속조치로 2026년도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중견기업 수요 기반 직무 맞춤형 인재확보 지원방안 연구) 진행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년도 예산편성은 사용 목적 및 대상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맞추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예산은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한 사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라는 광범위한 사업 목적하에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단순히 금액만을 계상[94]한 후 편의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도에 연말에 발주되어 이월된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주제[95]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제라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주제로 보이는바,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96]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예산집행으로 보임.

---

94)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 예산편성 상세 내역: 450백만원(8개x56.25백만원)

95) '중견기업 성장지향형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96)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9 발췌)

|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br>-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여야 한다. |

아울러, 최근 5년간 동 내내역사업 내 정책연구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차년도 종료과제의 비중이 2021년 18%에서 2023년 75%, 2024년 8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97]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월을 허용하는 예산의 이월 규정[98]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해온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계약 현황**

(단위: 건)

| 연도 | 전체 계약 과제 수(A) | 당해연도 종료과제 수 | 차년도 종료과제 수(B) | 차년도 종료과제 비율(B/A) |
|---|---|---|---|---|
| 2020 | 6 | 6 | - | - |
| 2021 | 11 | 9 | 2 | 18% |
| 2022 | 11 | 5 | 6 | 55% |
| 2023 | 8 | 2 | 6 | 75% |
| 2024 | 8 | 1 | 7 | 8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9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98)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최근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99]에서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 집행 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불용처리 하지 않고 연도 내에 다른 연구용역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제도 변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용예산을 활용하거나 정책연구비 중 일부를 사전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9)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3 발췌)

| |
|---|
|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br>3. 비목별 지침<br>□ (일반용역비·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불용원칙 삭제 |

## (24) 유통물류기반조성: 연례적 연구용역 예산 이월 및 집행계획 없는 보조금 교부 관행 방지 필요

### ① 결산 현황

‘유통물류기반조성’(4302-302)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을 위한 포상,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유통산업 실태조사 실시,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개선·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5억 3,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유통물류기반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유통물류기반조성 | 2,533 | 2,533 | - | - | - | 2,533 | 2,533 [2,273] | - | - | 2,153 |
|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조성 | 228 | 228 | - | - | - | 228 | 228 [157] | | | 194 |
| 유통산업 실태조사 | 350 | 350 | - | - | - | 350 | 350 [201] | - | - | 297 |
| 코리아세일페스타 | 1,862 | 1,862 | - | - | - | 1,862 | 1,862 [1,822] | - | - | 1,583 |
| 가맹사업 선진화 기반 구축 | 93 | 93 | | | | 93 | 93 [93] | | | 7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연례적 예산 이월 및 집행계획 없는 보조금 교부 관행 방지 필요

동 사업 내 4개의 내역사업 중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

성’과 ‘유통산업 실태조사’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024년도 각 예산액 2억 2,800만원과 3억 5,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2024년도 유통물류기반조성 내역사업 예산 편성 상세**

·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228백만원)
  - 유통산업 상생협력 75백만원
  -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 90백만원
  - 유통법 개정 및 운용 63백만원

· **유통산업 실태조사**(350백만원)
  - 유통물류산업 실태조사 258백만원
  -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80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백만원

동 내역사업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내역사업[100]으로 집행한 2024년도 연구용역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유통법 표준관리규정 개정 연구’ 등 총 14건의 연구용역 계약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런데, 연구용역 사업의 세부 수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용역 14건 중 7건(50%)이 2024년 11~12월에 착수되어 2025년 2월에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용역 사업 예산 3억 6,400만원 중 48.7%인 1억 7,73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100)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역사업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의 내내역사업인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유통법 개정 및 운용’ 사업과 내역사업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내내역사업인 ‘유통물류산업 실태조사’ 및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연구용역 계약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4년도 '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 내 연구용역 계약 내역

(단위: 천원)

| 내역사업명 | 연번 | 과제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월금액 |
|---|---|---|---|---|---|
|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 | 1 |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 2024.07.02.~ 2024.09.23. | 29,700 | - |
| | 2 | 유통법 표준관리규정 개정 연구 | 2024.06.27.~ 2024.12.20. | 20,000 | - |
| | 3 | 이동식 소매점포 활성화를 위한 유통법 및 관련법 연구 | 2024.12.02.~ 2025.02.28. | 21,700 | 21,700 |
| | 4 | 유통산업 AI활용 표준모델 개발 연구 | 2024.11.02.~ 2025.02.28. | 28,700 | 28,700 |
| 유통산업 실태조사 | 1 |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 | 2024.03.19.~ 2024.04.18. | 20,000 | - |
| | 2 | 지역 유통 상생협력 모델 구축 보고서 | 2024.04.03.~ 2024.05.31. | 20,000 | - |
| | 3 | 유통산업 AI 활용방안 연구 | 2024.06.25.~ 2024.08.30. | 20,000 | - |
| | 4 | 유통산업 발전방안 연구 | 2024.07.02.~ 2024.09.23 | 15,000 | - |
| | 5 | 공동집배송센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 2024.07.29.~ 2024.11.28. | 15,000 | - |
| | 6 | 오프라인 소매점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 2024.11.27.~ 2025.02.14. | 20,000 | 20,000 |
| | 7 | 가맹사업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 연구 | 2024.12.10.~ 2025.02.21. | 74,300 | 37,100 |
| | 8 | 유통산업 제도 개선 연구 | 2024.12.24.~ 2025.02.25. | 40,000 | 40,000 |
| | 9 | 인플루언서산업 발전방안 연구 | 2024.12.25.~ 2025.02.20. | 19,600 | 9,800 |
| | 10 | 유통 전자문서 활성화방안 연구 | 2025.01.06.~ 2025.02.24. | 20,000 | 20,000 |
| 합 계 | | | | 364,000 | 177,3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또한, 최근 5년간 동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2020년 총 6건 중 3건, 2022년 총 6건 중 4건, 2024년 총 14건 중 7건 등의 연구용역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어 차년도에 종료되는 등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 내 연구용역 계약 현황**

(단위: 건)

| 내역사업명 | 연도 | 전체 계약 건수 | 당해연도 종료계약 | 차년도 종료계약 (이월집행 건수) |
|---|---|---|---|---|
|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 / 유통산업 실태조사 | 2020 | 6 | 3 | 3 |
| | 2021 | 6 | 5 | 1 |
| | 2022 | 6 | 2 | 4 |
| | 2023 | 10 | 8 | 2 |
| | 2024 | 14 | 7 | 7 |
| 합 계 | | 42 | 25 | 1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아울러,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01]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02]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

101)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02)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95 발췌)

>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

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연내로 집행 가능한 교부금만을 교부하여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전체 연구용역의 14건(3억 6,400만원) 중 50%인 7건의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어 차년도로 이월(1억 7,730만원)되었음에도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103] 2024년 6월 일괄적으로 보조금 잔액 전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교부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내역사업별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천원)

| 내역사업명 | 회차 | 교부일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
|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 | 1 | '24.3.21. | 228,000 | 0 | 45,600 | 45,600 | 182,400 |
| | 2 | '24.5.23. | 228,000 | 45,600 | 68,400 | 68,400 | 114,000 |
| | **3** | **'24.6.19.** | **228,000** | **114,000** | **114,000** | **114,000** | **0** |
| 유통산업 실태조사 | 1 | '24.3.19. | 350,000 | 0 | 70,000 | 70,000 | 280,000 |
| | **2** | **'24.6.19.** | **350,000** | **70,000** | **280,000** | **280,000** | **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더욱이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결산심사 지적사항[104]에서 이러한 사업 운영과 보조금 교부 방식에 대해 이미

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3)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발전기반 조성'과 '유통산업 실태조사' 두 내역사업 모두 최종 보조금 교부 당시(2024. 6. 19.) 차년도 이월액 각 5,040만원과 1억 2,69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 집행계획이 미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잔액을 전액 교부하였음.

104)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소관 결산예비심사검토보고서' (p. 210 발췌)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약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온 관행을 중지하고, 보조금 교부 시 그간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 내에서 교부하여야 할 것임.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를 조속히 시정하는 한편,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5) 본부기본경비 등: 전용·세목조정을 통한 국내여비 추가집행 과다

### ① 결산 현황

‘기본경비’는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됨.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본부기본경비’, ‘본부전산운영경비’, ‘산업정책실기본경비’ 등 부서·기능별로 14개 세부사업 163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160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본부기본경비 | 6,810 | 6,810 | - | △1,566 | - | 5,244 | 5,098 | - | 145 | 7,278 |
| 본부전산운영경비 | 1,119 | 1,119 | - | 42 | - | 1,161 | 1,157 | - | 4 | 1,119 |
| 무역투자실기본경비 | 757 | 757 | - | △24 | - | 733 | 726 | - | 7 | 827 |
| 산업정책실기본경비 | 1,053 | 1,053 | - | 369 | - | 1,422 | 1,399 | - | 23 | 1,113 |
| 산업기반실기본경비 | 799 | 799 | - | △17 | - | 782 | 772 | - | 9 | 849 |
|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 | 1,082 | 1,082 | - | 447 | - | 1,529 | 1,522 | - | 7 | 1,292 |
| 무역위원회기본경비 | 387 | 387 | - | △200 | - | 187 | 186 | - | 1 | 407 |
| 전기위원회기본경비 | 208 | 208 | - | 303 | - | 511 | 510 | - | 1 | 218 |
| 통상정책국기본경비 | 1,405 | 1,405 | - | 207 | - | 1,612 | 1,605 | - | 6 | 1,605 |
| 자원산업정책국기본경비 | 548 | 548 | - | 414 | - | 962 | 954 | - | 8 | 718 |
|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 549 | 549 | - | 450 | - | 999 | 994 | - | 5 | 749 |
| 통상협력국기본경비 | 637 | 637 | - | △153 | - | 484 | 483 | - | 1 | 687 |
| 통상교섭실기본경비 | 1,024 | 1,024 | - | △273 | - | 751 | 638 | - | 113 | 1,064 |
| 계 | 16,378 | 16,378 | - | △1 | - | 16,377 | 16,044 | - | 330 | 17,92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예산조정을 통한 연례적 국내여비 추가집행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1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실제로 25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37.6%에 해당하는 6억 8,6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14개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예산액 | 예산조정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본부기본경비 | 793 | △326 | 467 | 451 | 16 |
| 본부전산운영경비 | 13 | - | 13 | 13 | - |
| 무역투자실기본경비 | 128 | +92 | 220 | 216 | 3 |
| 산업정책실기본경비 | 164 | +318 | 482 | 470 | 11 |
| 산업기반실기본경비 | 180 | +100 | 280 | 273 | 8 |
|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 | 259 | +216 | 475 | 470 | 6 |
| 무역위원회기본경비 | 42 | +19 | 61 | 59 | 1 |
| 전기위원회기본경비 | 11 | +10 | 21 | 21 | 1 |
| 통상정책국기본경비 | 65 | +63 | 128 | 127 | 1 |
| 자원산업정책국기본경비 | 67 | +90 | 157 | 152 | 5 |
|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 73 | +61 | 134 | 129 | 5 |
| 통상협력국기본경비 | 18 | +44 | 62 | 62 | - |
| 통상교섭실기본경비 | 10 | +60 | 70 | 66 | 4 |
| 계 | 1,824 | +747 | 2,571 | 2,510 | 6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같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초과집행은 연례적인 현상으로 2020년 15.4%의 초과집행하던 것을 2021년에는 28.2%, 2022년에는 예산액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51.4%까지 상승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초과집행액 | 초과집행률 |
|---|---|---|---|---|
| 2020년 | 1,313 | 1,515 | +202 | 15.4% |
| 2021년 | (+31) 1,344 | 1,723 | +379 | 28.2% |
| 2022년 | (△8) 1,336 | 2,023 | +687 | 51.4% |
| 2023년 | (+30) 1,366 | 2,041 | +675 | 49.4% |
| 2024년 | (+458) 1,824 | 2,510 | +686 | 37.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800만원 감액, 2023년 3,100만원 증액 수준 조정만 있던 것을 2023년 출장단가가 증액된 것[105]을 반영하여 2024년 전년 예산액 대비 33.5%에 해당하는 4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음에도, 여전히 예산액 대비 37.6%에 달하는 6억 8,600만원을 초과집행하였음.

105) 근무지 외 출장단가 조정 ('22) 일·식비 각 20,000원 → ('23) 각 25,000원

예산집행지침 상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 등 여비 비목은 온라인·영상 등 비대면 회의 등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여 여비를 절감하게 하고 있는 점,

세목조정·전용 등 예산변경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하게 하고 있는 점[106]을 고려할 때, 국내여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증액조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장소요를 재산출하여 산출된 규모·범위에 따라 적정한 국내여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화상회의·온라인회의 우수활용부서를 포상하거나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내여비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06)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 (26) 마산무역원기본경비 등: 자유무역지역관리원(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연말 집중집행

### ① 결산 현황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각 기본경비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기본경비’(7118-261),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기본경비’(7118-36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기본경비’(7118-2800) 등 7개 세부사업을 운영 중임.

2024년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단위: 백만원)

| 사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 344 | 344 | - | △27 | - | 317 | 281 | - | 36 | 344 |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 258 | 258 | - | - | - | 258 | 237 | - | 21 | 258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 246 | 246 | - | - | - | 246 | 232 | - | 14 | 246 |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 162 | 162 | - | △5 | - | 157 | 135 | - | 22 | 162 |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 184 | 184 | - | △3 | - | 181 | 175 | - | 6 | 147 |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 250 | 250 | - | 15 | - | 265 | 261 | - | 4 | 240 |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 197 | 197 | - | - | - | 197 | 183 | - | 14 | 197 |
| 계 | 1,641 | 1,641 | - | △20 | - | 1,621 | 1,504 | - | 117 | 1,59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자산취득비의 연말집중 집행

2024년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액 1억 3,244만원 중 예산조정 등을 통해 조정한 예산현액 1억 3,024만원에 대해 1억 1,889만원을 집행하였음.

자산취득비는 가구·비품 등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및 집기류 등에 소요되는 경상성 경비로, 잔여예산의 불요불급한 낭비성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집행지침 상 중앙관서의 장에게는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중집행을 막을 책무가 부여됨[107].

그런데 2024년 김제무역원은 전체 집행액 중 98.4%에 해당하는 1,400만원을 12월 중 집행하고, 율촌무역원은 전체집행액 중 84.6%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12월 중 집행하는 등,

전체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의 35.6%가 12월 중 집행되었으며, 절반을 넘는 51.7%가 11월과 12월에 집중집행되었음.

107)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 집행액 | 11월 집행액 | 12월 집행액 | 11월+12월 집행액 | 11월 집행비율 | 12월 집행비율 | 11월+12월 집행비율 |
|---|---|---|---|---|---|---|---|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16,982 | 4,340 | - | 4,340 | 25.6% | - | 25.6% |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7,917 | - | - | - | - | - | -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 15,248 | 5,400 | 5,077 | 10,477 | 35.4% | 33.3% | 68.7% |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26,570 | 2,441 | 3,155 | 5,596 | 9.2% | 11.9% | 21.1% |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 7,880 | - | 6,670 | 6,670 | - | 84.6% | 84.6% |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29,940 | 7,001 | 13,289 | 20,290 | 23.4% | 44.4% | 67.8% |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 14,351 | - | 14,121 | 14,121 | - | 98.4% | 98.4% |
| 계 | 118,888 | 19,182 | 42,312 | 61,494 | 16.1% | 35.6% | 51.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구체적인 집행물품을 보면, 내용상 연말에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 아닌, 신규 컴퓨터, 냉난방비, 가습기와 금고, 사무용 의자와 빔프로젝터 등 일반행정 및 사무 소요 경상물품이 11월과 12월에 집중 구매되었음.

## 자유무역지역관리원 11월과 12월 자산취득비 구매물품

(단위: 천원)

| 세부사업 | 집행액 | 11월+12월 집행액 | 11월+12월 집행비율 | 집행품목 |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 15,248 | 10,477 | 68.7% | 냉방기・난방기 등 |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 7,880 | 6,670 | 84.6% | 사무의자・빔프로젝터 등 |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29,940 | 20,290 | 67.8% | 자동차 진입금지 말뚝 등 |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 14,351 | 14,121 | 98.4% | 사무소요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2024년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집행 사례와 같이 자산취득비 등 경상성 기본경비를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체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잔여예산 소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무소요 용품 등을 구매하게 되어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7)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연례적 증액편성 및 이월·불용

### ① 결산 현황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7132-303)은 내부교육, 정책연구, 평가업무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3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4억 9,200만원 중 76.9%에 해당하는 19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1%에 해당하는 2억 1,100만원과 3억 6,4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하였음.

’24년도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결산

(단위: 백만원)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다음년도 이월액(D) | 불용액 (E) | 예산액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376 | 2,376 | 116 | | - | 2,492 | 1,917 | 211 | 364 | 1,89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경상성 경비의 연례적 증액편성 및 이월·불용

동 세부사업은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③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④ 정책지원 연구, ⑤ 자체평가 지원, ⑥ 적극행정 지원, ⑦ 청년인턴 운영, ⑧ 2030자문단 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 관련 사업으로 구성됨.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A)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B) | 불용액 (C) | 이월+불용 (D) | 이월불용률 (D/A) |
|---|---|---|---|---|---|---|---|
| 2021 | 965 | 993 | 870 | 120 | 3 | 123 | 12.7% |
| 2022 | 847 | 967 | 826 | 100 | 40 | 140 | 16.5% |
| 2023 | 1,333 | 1,433 | 1,287 | 115 | 31 | 146 | 10.9% |
| **2024** | **2,376** | **2,492** | **1,917** | **211** | **364** | **575** | **24.2%** |

동 사업은 지난 3년 간 연례적으로 평균 예산현액의 13.3%에 해당하는 1억 3,600만원을 이월하거나 불용해왔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4%에 해당하는 4억 8,6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2024년에는 청년인턴사업 등 사업신설을 통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2%에 해당하는 10억 4,300만원을 증액시켜 2년 사이에 2.8배 규모로 예산을 증액편성함.

이에 따라 종전 1억원 남짓 발생하고 있던 이월·불용액이 2024년에는 종전 평균 이월·불용액의 4.2배에 달하는 5억 7,500만원으로 급증하였음.

예산안편성세부지침과 예산집행지침은 어려운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하고[108], 편성된 경비의 경우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109].

만성적으로 예산불용과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시키고 다시 이월 및 불용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내역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불용·이월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예산을 매년 추가증액할 것이 아니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을 수요에 맞도록 구조조정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5.

109)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2024.1.

### ③ 사업별 검토

동 세부사업 내 8개 내역사업 중 2030자문단 운영내역사업을 제외한 7개 내역사업에서 16.7%에서 39.2%에 달하는 이월 및 불용률을 보임.

**내역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예산 현액 | 집행액 (집행률) | 이월액 (이월률) | 불용액 (불용률) | 이월액+불용액 (이월및불용률) |
|---|---|---|---|---|---|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382 | 269 (70.4%) | 90 (23.6%) | 22 (5.8%) | 112 (29.4%) |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99 | 66 (66.7%) | - | 33 (33.3%) | 33 (33.3%) |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 106 | 82 (77.4%) | 6 (5.7%) | 18 (17.0%) | 24 (22.6%) |
| 정책지원 연구 | 393 | 327 (83.2%) | 46 (11.7%) | 19.7 (5%) | 65.7 (16.7%) |
| 자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309 | 227 (73.4%) | 69 (22.3%) | 12.8 (4.1%) | 82 (26.4%) |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28 | 17 (60.7%) | - | 11 (39.2%) | 11 (39.2%) |
| 청년인턴 운영 | 1,109 | 862 (77.7%) | - | 247 (22.2%) | 247 (22.2%) |
| 2030자문단 운영 | 67 | 67 (100%) | - | - | - |
| **합 계** | **2,492** | **1,917 (76.9%)** | **211 (8.5%)** | **364 (14.6%)** | **575 (23.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예산 이월은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9,000만원,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6,860만원, 정책지원 연구 4,6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음.

2024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이월내역

| 이월사업 | 사업내용 | 계약기간 | 금액 |
|---|---|---|---|
|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 우수직원 국외출장 프로그램<br>(독일 하노버 5인 / 일본 동경 14인) | '24.11.~'25.4. | 7,000만원 |
| 산업부 굿즈 기획 및 제작 | 소속감 제고를 위한 캐릭터·물품 개발<br>(부내설문조사를 통해 캐릭터디자인->상품 제작(1,800개 예정) | '24.11~'25.2. | 2,000만원 |
| 정책지원연구 | 해외 주요국가(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외 정책 연구 | '24.12~'25.4. | 4,600만원 |
| 자체평가 등 | 부처 내 자체평가 시행 | '24.7.~'25.5. | 6,860만원 |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부처 내 우수직원 대상 격려 및 역량개발 목적의 국외출장 사업이고 산업부 굿즈 기획 및 제작 사업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소속감·자긍심 제고를 위한 캐릭터·물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정책지원연구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 대선결과 등 해외 주요국가의 대외 정책을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고, 부처 자체평가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산업부 각 실국의 업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사업에 해당함.

예산집행지침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성 경비를 연말에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집행이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부 굿즈 제작·국외출장·자체연구 등 경상성 사업을 11월 또는 12월에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월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법령상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처 자체평가 사업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7월에서 차년도 5월까지 실시하여 예산이월을 연례화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약 및 집행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인턴 운영 사업에서 2억 4,600만원,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3,300만원,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1,800만원이 발생하는 등 3개 사업에서 총 2억 9,7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2024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불용내역

| 이월사업 | 사업내용 | 금액 |
|---|---|---|
| 청년인턴 운영 | 청년층 대상 공공업무 실무경험 제공 프로그램 | 2억 4,600만원 |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부처 소관 법령 및 내규 등 제·개정 소요사업 | 3,300만원 |
|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 |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관련 용역 | 1,800만원 |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층에게 공공업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이고,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 및 내규 등 제·개정과 관련된 지출이며,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데이터 중 AI 기반 분석 및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기 위한 용역사업에 해당함.

이 중 청년인턴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 92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11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채용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본부 채용 1회와 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9차례 선발에서는 짧은 경우 2개월, 긴 경우 3~4개월을 채용기간으로 하여 청년인턴을 채용한 결과, 전체 92명의 인턴 중 20명(21.7%)만이 6개월 근무를 보장받고 나머지 72명(78.3%)은 2개월 또는 3~4개월 수준의 단기간 근로로 근무가 종료되게 됨.

그 결과 예산액 11억 9백만원 대비 77.8%에 불과한 8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22.2%에 해당하는 2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청년인턴 선발 현황**

| 차수 | 공고일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지원자수 | 채용인원 |
|---|---|---|---|---|---|
| 본부 1차 | 2024. 2.16. | 20명 | 6개월 | 32명 | 10명 |
| 국표원 1차 | 2024. 3.26. | 10명 | 3개월 | 1명 | 1명 |
| 본부 2차 | 2024. 4. 3. | 30명 | 6개월 | 19명 | 10명 |
| 국표원 2차 | 2024. 5.22. | 9명 | 3개월 | 1명 | 1명 |
| 본부 3차 | 2024. 6.18. | 8명 | 3개월 | 19명 | 8명 |
| 본부 4차 | 2024. 7.10. | 31명 | 3~4개월 | 45명 | 18명 |
| 본부 5차 | 2024. 7.23. | 9명 | 3개월 | 10명 | 3명 |
| 본부 6차 | 2024. 8. 8. | 17명 | 3개월 | 26명 | 12명 |
| 본부 7차 | 2024. 9.19. | 28명 | 2개월 | 73명 | 25명 |
| 본부 8차 | 2024.10.11. | 4명 | 2개월 | 24명 | 3명 |
| 본부 9차 | 2024.11. 8. | 1명 | 2개월 | 14명 | 1명 |
| 합계 | | 167명 | 2~6개월 | 264명 | 92명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부처 입장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인턴에게 공문열람·상신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고, 업무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의 이유로 청년인턴이 공직을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직무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입장에서 제대로 된 공직경험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등[110]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청년인턴”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업무경험이 가능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인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해당 사업이 부처와 청년인턴에게 상호 유의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0) 아시아경제, "시킬 일 없다는 유령인턴 뭐하러 해"…200명 중도퇴직한 청년인턴”(2024. 1. 14.)기사

# Ⅲ.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 과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증감 (B-A) | 증감사유 |
|---|---|---|---|---|
| **합계** | **6,216,101** | **5,201,992** | **△1,014,109** | |
| **투자계정** | **5,729,176** | **4,783,759** | **△945,417** | |
| 재산수입 | 11,548 | 14,981 | 3,433 | |
| ▪ 토지대여료 | 13 | 13 | - | |
| ▪ 정부출자수입 | 9,208 | 3,721 | △5,487 | 출자기관 경영악화로 인한 배당금 수입 감소 |
| ▪ 기타재산수입 | 2,327 | 11,247 | 8,920 | 세출사업 발생이자 반납률 제고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
| 경상이전수입 | 1,941,322 | 1,453,220 | △488,102 | |
| ▪ 과태료 | 105 | 89 | △16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사례 감소 |
| ▪ 가산금 | 75 | 288 | 213 | 폐업 등에 의한 체납업체의 과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 |
| ▪ 법정부담금 | 1,894,449 | 1,411,635 | △482,814 | |
| - 석유수입부과금 | 1,560,069 | 1,073,515 | △486,554 | 부과금 환급신청 증가로 인한 부과금 수입 감소 |
| - 석유판매부과금 | 186,779 | 186,131 | △648 | 부과금 환급신청 증가로 인한 부과금 수입 감소 |
| - 가스안전관리부담금 | 141,400 | 133,223 | △8,177 | LNG 수요감소로 부담금 수입 감소 |
| - 광해방지부담금 | 6,201 | 18,766 | 12,565 | 가행광산 사업비 승인 금액 증가에 따른 징수결정액 증가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46,693 | 41,208 | △5,485 | 과년도 출연금 및 보조금 잔액 반납건 및 반납금액 감소 |
| 세계잉여금 | 117,672 | 237,812 | 120,140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117,672 | 237,812 | 120,140 | 연말 세입 발생 및 타부처 등 세출 불용으로 인한 '23년 결산 세계잉여금 증가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3,658,634 | 3,077,747 | △580,887 | |

| 과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증감 (B-A) | 증감사유 |
|---|---|---|---|---|
| ▪ 기금전입금 | 1,307,376 | 1,307,376 | - | |
| ▪ 계정간전입금 | 148,165 | 63,278 | △84,887 | 예산 대비 융자계정 세입 감소 (486,925백만원→418,232백만원)에 따른 전입금 감소 |
| ▪ 기금예수금 | 2,203,093 | 1,707,093 | △496,000 | 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른 예수금액 조정 |
| **융자계정** | **486,925** | **418,232** | **△68,693** | |
| 기타민간이자수입 | 23,762 | 28,727 | 4,965 | 환율 상승으로 해외융자금 이자수익 증가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463,163 | 389,506 | △73,657 | 융자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정기상환원금 감소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5조 2,019억 9,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조 2,161억 100만원 대비 1조 141억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법정부담금 4,828억 1,400만원 감소, 기금예수금 4,960억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불납결손및 미수납사유 |
|---|---|---|---|---|---|
| **합계** | **5,201,992** | **5,198,910** | **-** | **3,081** | |
| **투자계정** | **4,783,759** | **4,780,678** | **-** | **3,081** | |
| 재산수입 | 14,981 | 14,726 | - | 256 | |
| ▪ 토지대여료 | 13 | 13 | - | - | |
| ▪ 정부출자수입 | 3,721 | 3,721 | - | - | |
| ▪ 기타재산수입 | 11,247 | 10,991 | - | 256 |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수납 |
| 경상이전수입 | 1,453,220 | 1,450,394 | - | 2,826 | |
| ▪ 과태료 | 89 | 33 | - | 56 | 업체 폐업에 따른 미수납 |

| 과목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불납결손및 미수납사유 |
|---|---|---|---|---|---|
| ▪ 가산금 | 288 | 27 | - | 260 | 업체 폐업에 따른 미수납 |
| ▪ 법정부담금 | 1,411,635 | 1,409,209 | - | 2,427 | |
| -석유수입부과금 | 1,073,515 | 1,072,658 | - | 857 | 업체 폐업에 따른 미수납 |
| -석유판매부과금 | 186,131 | 186,131 | - | - | |
| -가스안전관리부담금 | 133,223 | 133,223 | - | - | |
| -광해방지부담금 | 18,766 | 17,197 | - | 1,570 | 광업권자 재정악화(파산, 부도)에 따른 미수납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41,208 | 41,125 | - | 83 |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수납 |
| 세계잉여금 | 237,812 | 237,812 | - |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237,812 | 237,812 | - |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3,077,747 | 3,077,747 | - | - | |
| ▪ 기금전입금 | 1,307,376 | 1,307,376 | - | - | |
| ▪ 계정간전입금 | 63,278 | 63,278 | - | - | |
| ▪ 기금예수금 | 1,707,093 | 1,707,093 | - | - | |
| **융자계정** | **418,232** | **418,232** | **-** | **-** | |
| 기타민간이자수입 | 28,727 | 28,727 | - | - |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389,506 | 389,506 | - | - | |

2024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5조 1,989억 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0억 8,100만원임. 주요 미수납액은 사업자 재정악화 및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부담금 미납분 24억 2,700만원, 가산금, 과태료, 과징금 등 미납분 3억 1,600만원, 납기미도래로 인한 기타경상이전수입 미납분 8,3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음.

## 2. 세출결산

### (1)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2024년도 에특회계의 예산액은 투자계정 2조 2,985억 7,500만원, 융자계정 5,089억 3,900만원인 총 2조 8,07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8,084억 2,700만원 중 2조 5,769억 3,3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12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①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이체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①에너지자원정책** | **902,901** | **301** | **-** | **-** | **903,202** | **803,519** | **-** | **99,683** |
| ○에너지자원정책지원 | 10,839 | 301 | - | - | 11,140 | 11,137 | - | 3 |
|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 2,625 | - | - | - | 2,625 | 2,625 | - | 0 |
| -에너지정책홍보 | - | 301 | - | - | 301 | 301 | - | - |
|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 179 | - | - | - | 179 | 179 | - | 0 |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 2,724 | - | - | - | 2,724 | 2,724 | - | - |
| -에너지센서스 | 2,003 | - | - | - | 2,003 | 2,003 | - | - |
| -에너지국제협력 | 2,990 | - | - | - | 2,990 | 2,989 | - | 1 |
| -회계위탁관리비 | 279 | - | - | - | 279 | 279 | - | - |
| -회계관리비 | 39 | - | - | - | 39 | 37 | - | 2 |
| ○에너지이용합리화 | 93,506 | - | - | - | 93,506 | 93,506 | - | - |
| -지역에너지절약 | 10,000 | - | - | - | 10,000 | 10,000 | - | - |
| -한국에너지공단지원 | 83,506 | - | - | - | 83,506 | 83,506 | - | - |
| ○가스안전관리 | 112,950 | - | - | - | 112,950 | 112,950 | - | 1 |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 89,374 | - | - | - | 89,374 | 89,374 | - | - |
|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 14,533 | - | - | - | 14,533 | 14,533 | - | - |
|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 | 4,388 | - | - | - | 4,388 | 4,388 | - | 1 |
| -수소안전기반구축및안전관리강화 | 4,655 | - | - | - | 4,655 | 4,655 | - | - |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이체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에너지복지지원 | 685,606 | - | - | - | 685,606 | 585,927 | - | 99,679 |
| -에너지바우처 | 685,606 | - | - | - | 685,606 | 585,927 | - | 99,679 |
| **②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 **56,859** | **-** | **-** | **-** | **56,859** | **51,623** | **160** | **5,076** |
| ○기후변화협약대응 | 12,745 | - | - | - | 12,745 | 12,745 | - | - |
|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 | 2,498 | - | - | - | 2,498 | 2,498 | - | - |
| -탄소포집활용(CCU)실증지원센터구축 | 8,872 | - | - | - | 8,872 | 8,872 | - | - |
| -폐광도를활용한이산화탄소육상저장시범사업 | 300 | - | - | - | 300 | 300 | - | - |
|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 | 1,075 | - | - | - | 1,075 | 1,075 | - | - |
| ○에너지신산업 | 44,114 | - | - | - | 44,114 | 38,878 | 160 | 5,076 |
|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 7,571 | - | - | - | 7,571 | 7,411 | 160 | - |
| -수소유통기반구축 | 9,834 | - | - | - | 9,834 | 9,834 | - | - |
| -저탄소암모니아유통구조구축사범연구사업 | 5,500 | - | - | - | 5,500 | 5,024 | - | 476 |
|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 | 6,000 | - | - | - | 6,000 | 1,400 | - | 4,600 |
|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구축 | 6,500 | - | - | - | 6,500 | 6,500 | - | - |
|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 | 1,209 | - | - | - | 1,209 | 1,209 | - | - |
| -CCUS클러스터구축타당성조사용역 | 500 | - | - | - | 500 | 500 | - | - |
|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 7,000 | - | - | - | 7,000 | 7,000 | - | - |
| **③에너지공급체계구축** | **872,957** | **-** | **-** | **-** | **872,957** | **864,800** | **-** | **8,157** |
| ○석유안정공급 | 83,451 | - | - | - | 83,451 | 83,451 | - | - |
| -석유비축사업출자 | 66,595 | - | - | - | 66,595 | 66,595 | - | -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 15,842 | - | - | - | 15,842 | 15,842 | - | - |
| -석유유통구조개선 | 1,014 | - | - | - | 1,014 | 1,014 | - | - |
| ○석탄수급안정및지역지원 | 44,128 | - | - | - | 44,128 | 44,128 | - | - |
| -석탄비축자산구입비 | 2,066 | - | - | - | 2,066 | 2,066 | - | - |
| -대한석탄공사출자 | 40,223 | - | - | - | 40,223 | 40,223 | - | - |
| -석탄비축자산관리비 | 1,839 | - | - | - | 1,839 | 1,839 | - | - |
| ○광산지역진흥 | 223,589 | - | - | - | 223,589 | 219,109 | - | 4,480 |
| -폐광대책비 | 223,589 | - | - | - | 223,589 | 219,109 | - | 4,480 |
| ○광해관리공단 | 404,053 | - | - | - | 404,053 | 404,053 | - | - |
| -광해방지사업 | 88,000 | - | - | - | 88,000 | 88,000 | - | - |
| -탄가안정대책보조 | 64,291 | - | - | - | 64,291 | 64,291 |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 251,762 | - | - | - | 251,762 | 251,762 | - | - |
| ○가스수급안정 | 39,061 | - | - | - | 39,061 | 35,411 | - | 3,650 |
| -LPG소형저장탱크보급 | 7,635 | - | - | - | 7,635 | 7,635 | - | - |
|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구축사업 | 31,426 | - | - | - | 31,426 | 27,776 | - | 3,650 |
| ○국내외유전개발 | 48,140 | - | - | - | 48,140 | 48,140 | - | - |
| -유전개발사업출자 | 48,140 | - | - | - | 48,140 | 48,140 | - | - |
| ○광물안정공급 | 30,535 | - | - | - | 30,535 | 30,508 | - | 27 |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이체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일반광업육성지원 | 25,709 | - | - | - | 25,709 | 25,709 | - | - |
| -해외자원개발조사 | 3,291 | - | - | - | 3,291 | 3,291 | - | - |
| -자원협력기반구축 | 483 | - | - | - | 483 | 456 | - | 27 |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 1,052 | - | - | - | 1,052 | 1,052 | - | - |
| **④에너지기술개발** | **294,940** | **-** | **-** | **-** | **294,940** | **294,940** | **-** | **-** |
| ○에너지수요기술 | 276,700 | - | - | - | 276,700 | 276,700 | - | -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 234,354 | - | - | - | 234,354 | 234,354 | - | - |
|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 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 5,861 | - | - | - | 5,861 | 5,861 | - | - |
|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광소자시스템기술개발(R&D) | 1,681 | - | - | - | 1,681 | 1,681 | - | - |
| -그린수소생산및저장시스템 기술개발(R&D) | 2,743 | - | - | - | 2,743 | 2,743 | - | - |
|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 심기술개발(R&D) | 4,897 | - | - | - | 4,897 | 4,897 | - | - |
| -다중이용에너지시설안전진단및 위험예측안전기술개발(R&D) | 4,256 | - | - | - | 4,256 | 4,256 | - | - |
|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 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 실증(R&D) | 4,600 | - | - | - | 4,600 | 4,600 | - | - |
|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 스템기술개발(R&D) | 1,208 | - | - | - | 1,208 | 1,208 | - | - |
| -전기차플랫폼공용화기반수소차용 비정형수소저장장치개발(R&D) | 4,740 | - | - | - | 4,740 | 4,740 | - | - |
| -전기차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R&D) | 240 | - | - | - | 240 | 240 | - | - |
|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 시스템기술개발(R&D) | 4,620 | - | - | - | 4,620 | 4,620 | - | - |
| -천연가스배관망수소혼입안전 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 7,500 | - | - | - | 7,500 | 7,500 | - | - |
| ○에너지공급기술 | 18,240 | - | - | - | 18,240 | 18,240 | - | - |
| -중소규모가스전및희소광물탐사 | 820 | - | - | - | 820 | 820 | - | - |
|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 활용기술개발(R&D) | 6,319 | - | - | - | 6,319 | 6,319 | - | - |
| -공급망안정화를위한국내타 이타늄최적화기술개발(R&D) | 3,075 | - | - | - | 3,075 | 3,075 | - | - |
| -차세대친환경바이오연료생 산기술개발(R&D) | 3,626 | - | - | - | 3,626 | 3,626 | - | - |
|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및 소재화기술개발(R&D) | 4,400 | - | - | - | 4,400 | 4,400 | - | - |
| **⑤에너지기술기반확충** | **72,708** | **612** | **-** | **-** | **73,320** | **73,189** | **100** | **32** |
| ○국제협력 | 28,540 | - | - | - | 28,540 | 28,540 | - | - |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R&D) | 28,540 | - | - | - | 28,540 | 28,540 | - | - |
| ○기술정책 | 1,140 | 612 | - | - | 1,752 | 1,621 | 100 | 32 |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이체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 540 | - | - | - | 540 | 540 | - | - |
| -에너지자원정책연구(R&D) | 600 | 612 | - | - | 1,212 | 1,081 | 100 | 32 |
| ○기반구축 | 43,028 | - | - | - | 43,028 | 43,028 | - | - |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 1,542 | - | - | - | 1,542 | 1,542 | - | - |
| -3D/4D물리탐사연구선건조사업 | 22,289 | - | - | - | 22,289 | 22,289 | - | - |
| -수소생산기지구축 | 8,120 | - | - | - | 8,120 | 8,120 | - |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R&D) | 10,898 | - | - | - | 10,898 | 10,898 | - | - |
|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R&D) | 179 | - | - | - | 179 | 179 | - | - |
| **⑥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98,210** | **-** | **-** | **-** | **98,210** | **67,385** | **-** | **30,825** |
| ○회계기금간거래 | 98,210 | - | - | - | 98,210 | 67,385 | - | 30,825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 98,210 | - | - | - | 98,210 | 67,385 | - | 30,825 |
| 계 | 2,298,575 | 913 | - | - | 2,299,488 | 2,155,456 | 260 | 143,772 |

## ② 융자계정

(단위: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이체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①에너지자원정책** | **301,517** | **-** | **-** | **-** | **301,517** | **298,942** | **-** | **2,575** |
| ○에너지이용합리화 | 294,575 | - | - | - | 294,575 | 292,000 | - | 2,575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294,575 | - | - | - | 294,575 | 292,000 | - | 2,575 |
| ○가스안전관리 | 6,942 | - | - | - | 6,942 | 6,942 | - | - |
| -가스안전관리(융자) | 4,726 | - | - | - | 4,726 | 4,726 | - | - |
| -장기사용석유저장시설안전관리(융자) | 2,216 | - | - | - | 2,216 | 2,216 | - | - |
| **②에너지공급체계구축** | **59,257** | **-** | **-** | **-** | **59,257** | **59,257** | **-** | **-** |
| ○가스수급안정 | 19,440 | - | - | - | 19,440 | 19,440 | - | - |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 19,440 | - | - | - | 19,440 | 19,440 | - | - |
| ○광물자원개발융자 | 39,817 | - | - | - | 39,817 | 39,817 | - | - |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 39,817 | - | - | - | 39,817 | 39,817 | - | - |
| **③계정간거래(전출금)** | **148,165** | **-** | **-** | **-** | **148,165** | **63,278** | **-** | **84,887** |
| ○타계정전출금 | 148,165 | - | - | - | 148,165 | 63,278 | - | 84,887 |
| -투자계정전출 | 148,165 | - | - | - | 148,165 | 63,278 | - | 84,887 |
| 계 | 508,939 | - | - | - | 508,939 | 421,477 | - | 87,462 |
| 합계(투자+융자) | 2,807,514 | 913 | - | - | 2,808,427 | 2,576,933 | 260 | 231,235 |

## (2) 예산변경 내역

### ① 전년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전년이월 | 612 |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612 |
| | 301 | ○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 301 |
| **합 계** | **913** | | **913** |

2024년도의 전년도 이월액은 9억 1,300만원으로 연구용역사업의 계약만료 미도래로 인한 계약잔금(6억 1,200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3억 100만원)에 따른 것임.

### ② 전 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전 용 | ±228 | ○ 예산의 집행목적상에 맞는 비목정정<br>- 에너지국제협력 | ±228<br>±228 |
| **합 계** | **±228** | | **±228** |

### ③ 이 체 : 해당사항 없음

### ④ 예비비 사용액 : 해당사항 없음

### (3)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다음연도<br>이 월 | 260 |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260 |
| **합 계** | **260** | | **260** |

2024년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000만원으로 연구용역 과제 계약기간 미도래로 발생한 미지급금으로 인한 것임.

### (4)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불 용 | 146,347 | ○ 기타 집행잔액 등 | 146,347 |
| | 84,887 | ○ 융자계정 세입부족에 따른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미집행 | 84,887 |
| **합 계** | **231,235** | | **231,235** |

2024년도 불용액은 2,312억 3,5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융자계정 세입 부족으로 인한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미집행(848억 8,700만원), 기타 집행 잔액(1,463억 4,7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3. 재무제표

## 제1장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 | 주석 | 2024 | | 2023 | |
|---|---|---|---|---|---|
| **자산** | | | | | |
| **Ⅰ.유동자산** | | | **558,975,588,774** | | **561,834,702,441**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3 | | 16 |
| 2. 미수채권 | | 8,660,315,630 | | 16,602,461,350 | |
| 미수채권대손충당금 | | 2,739,967,940 | 5,920,347,690 | 2,718,885,940 | 13,883,575,410 |
| 3. 단기대여금 | 8.4) | 535,767,770,260 | | 532,038,211,409 | |
|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8.4) | 6,170,678,804 | 529,597,091,456 | 5,593,623,213 | 526,444,588,196 |
| 4. 기타유동자산 | | | 23,458,149,595 | | 21,506,538,819 |
| **Ⅱ.투자자산** | | | **2,156,908,803,718** | | **2,116,728,355,976** |
| 1. 장기투자증권 | | | 199,332,962,150 | | 199,332,962,150 |
| 2. 장기대여금 | 8.4) | 3,322,940,011,939 | | 3,153,869,590,473 | |
|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8.4) | 1,365,364,170,371 | 1,957,575,841,568 | 1,236,474,196,647 | 1,917,395,393,826 |
| **Ⅲ.일반유형자산** | | | **153,448,575,822** | | **153,453,742,086** |
| 1. 토지 | 8.3) | | 153,379,954,200 | | 153,372,852,100 |
| 2. 건물 | 8.3) | 96,150,013 | | 96,150,013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 31,409,674 | 64,740,339 | 20,939,783 | 75,210,230 |
| 3. 구축물 | 8.3) | | 50,000 | | 50,000 |
|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8.3) | 72,893,000 | | 72,893,000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 69,061,717 | 3,831,283 | 67,263,244 | 5,629,756 |
| **Ⅳ.사회기반시설** | | | - | | - |
| **Ⅴ.무형자산** | | | **173,079,333** | | **227,735,333** |
| 1. 소프트웨어 | | | 173,079,333 | | 227,735,333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 - | | **56,000,000** |
|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 | - | | 56,000,000 |
| **자산계** | | | **2,869,506,047,647** | | **2,832,300,535,836** |
| **부채** | | | | | |
| **Ⅰ.유동부채** | | | **20,960,710,417** | | **3,695,180,272** |
| 1. 기타유동부채 | | | 20,960,710,417 | | 3,695,180,272 |
| **Ⅱ.장기차입부채** | | | **3,310,479,000,000** | | **1,603,386,000,000** |
| 1. 장기차입금 | 2 | | 3,310,479,000,000 | | 1,603,386,000,000 |

| | | | |
|---|---|---|---|
| Ⅲ.장기충당부채 | | - | -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 | - |
| 부채계 | | 3,331,439,710,417 | 1,607,081,180,272 |
| 순자산 | | | |
| Ⅰ.기본순자산 | | 14,701,391,053,533 | 14,701,391,053,533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 (14,587,489,444,159) | (12,900,337,271,621) |
| Ⅲ.순자산조정 | 7 | (575,835,272,144) | (575,834,426,348) |
| 순자산계 | | (461,933,662,770) | 1,225,219,355,564 |
| 부채와순자산계 | | 2,869,506,047,647 | 2,832,300,535,836 |

에특회계의 2024년도 총자산은 2조 8,695억원으로 전기 2조 8,323억원 대비 372억원(1.3%)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장기차입금 증가에 따른 부채 1조 7,244억원 증가 등에 기인함.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 | 주석 | 2024 | | | 2023 |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 **2,181,212,905,888** | **(244,601,308,417)** | **1,936,611,597,471** | **1,873,688,688,137** | **(173,811,718,573)** | **1,699,876,969,564** |
| 1.에너지자원정책 | | 866,211,773,216 | (54,509,291,984) | 811,702,481,232 | 577,009,367,715 | (73,388,751,431) | 503,620,616,284 |
| 2.재생에너지보급에너지산업활성화 | | 51,287,566,160 | (690,277,246) | 50,597,288,914 | 34,536,000,000 | (1,753,654,394) | 32,782,345,606 |
| 3.에너지공급체계구축 | | 895,666,623,722 | (169,701,965,227) | 725,964,658,495 | 854,411,971,412 | (77,963,906,318) | 776,448,065,094 |
| 4.에너지기술개발 | | 294,940,000,000 | (10,792,013,102) | 284,147,986,898 | 313,652,000,000 | (17,962,142,898) | 295,689,857,102 |
| 5.에너지기술기반확충 | | 73,106,942,790 | (8,907,760,858) | 64,199,181,932 | 94,079,349,010 | (2,743,263,532) | 91,336,085,478 |
| **Ⅱ.관리운영비** | | | | - | | | - |
| **Ⅲ.비배분비용** | | | | **74,169,882,956** | | | **23,088,644,080** |
| 1.기타이전비용 | | | | 217,197,045 | | | 128,917,134 |
| 2.대손상각비 | | | | 21,082,000 | | | 412,701,420 |
| 3.이자비용 | | | | 73,659,995,011 | | | 22,531,525,266 |
| 4.기타비용 | | | | 271,608,900 | | | 15,500,260 |
| **Ⅳ.비배분수익** | | | | **4,356,087,609** | | | **4,771,629,914** |
| 1.이자수익 | | | | 592,223,591 | | | 1,108,177,827 |
| 2.기타수익 | | | | 3,763,864,018 | | | 3,663,452,087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 **2,006,425,392,818** | | | **1,718,193,983,730** |
| **Ⅵ.재정운영결과(Ⅴ-Ⅵ)** | | | | **2,006,425,392,818** | | | **1,718,193,983,730** |

에특회계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2조 2,554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2,49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2조 64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 | 주석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전기 기초순자산** | | **14,701,391,053,533** | **(11,428,128,647,701)** | **(575,833,580,553)** | **2,697,428,825,279** |
| 1. 보고금액 | | 14,701,391,053,533 | (11,428,128,647,701) | (575,833,580,553) | 2,697,428,825,279 |
| **Ⅱ.재정운영결과** | | | **1,718,193,983,730** | | **1,718,193,983,730** |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 **245,985,359,810** | | **245,985,359,810** |
| 1. 재원의조달 | | | 4,731,339,057,840 | | 4,731,339,057,840 |
| (1) 국고수입 | | | 2,026,003,520,910 | | 2,026,003,520,910 |
| (2) 부담금수익 | | | 1,215,497,693,170 | | 1,215,497,693,170 |
| (3) 제재금수익 | | | 1,046,843,760 | | 1,046,843,760 |
| (4) 무상이전수입 | | | 1,488,791,000,000 | | 1,488,791,000,000 |
| 2. 재원의이전 | | | 4,485,353,698,030 | | 4,485,353,698,030 |
| (1) 국고이전지출 | | | 4,485,353,698,030 | | 4,485,353,698,030 |
| **Ⅳ.조정항목** | | **-** | **-** | **(845,795)** | **(845,795)** |
| 1. 자산재평가이익 | | - | - | (845,795) | (845,795)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 **14,701,391,053,533** | **(12,900,337,271,621)** | **(575,834,426,348)** | **1,225,219,355,564**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 **14,701,391,053,533** | **(12,900,337,271,621)** | **(575,834,426,348)** | **1,225,219,355,564** |
| 1. 보고금액 | | 14,701,391,053,533 | (12,900,337,271,621) | (575,834,426,348) | 1,225,219,355,564 |
| **Ⅶ.재정운영결과** | | | **2,006,425,392,818** | | **2,006,425,392,818** |
|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 | **319,273,220,280** | | **319,273,220,280** |
| 1. 재원의조달 | | | 5,280,371,945,730 | | 5,280,371,945,730 |
| (1) 국고수입 | | | 2,576,932,540,770 | | 2,576,932,540,770 |
| (2) 부담금수익 | | | 1,395,988,823,310 | | 1,395,988,823,310 |
| (3) 제재금수익 | | | 74,581,650 | | 74,581,650 |
| (4) 무상이전수입 | | | 1,307,376,000,000 | | 1,307,376,000,000 |
| 2. 재원의이전 | | | 4,961,098,725,450 | | 4,961,098,725,450 |
| (1) 국고이전지출 | | | 4,961,098,725,450 | | 4,961,098,725,450 |
| **Ⅸ.조정항목** | | **-** | **-** | **(845,796)** | **(845,796)** |
| 1. 자산재평가이익 | 7, 8.3) | - | - | (845,796) | (845,796)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 **14,701,391,053,533** | **(14,587,489,444,159)** | **(575,835,272,144)** | **(461,933,662,770)** |

에특회계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4,619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1조 2,252억원 대비 1조 6,872억원(△137.7%)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국고수입·부담금수입 등 재원의 조달 5조 2,804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결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조 9,611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자산 | 부채 |
|---|---|---|
|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4,225,124,819,622** | **-** |
| 1. 국가채권현재액 | 3,872,114,202,317 | - |
| 2. 국유재산현재액 | 353,006,784,022 | - |
| 3. 물품현재액 | 3,833,283 | - |
| 4. 국가채무합계 | - | -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 **2,869,506,047,647** | **3,331,439,710,417** |
|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 **(1,355,618,771,975)** | **3,331,439,710,417**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 -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 3,310,479,000,000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1,368,170,376,945) | 20,957,553,437 |
| 4. 대상차이(D) | 12,551,604,970 | 3,156,980 |
| 5. 기타차이(E) | - |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없음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국가회계기준상 내부거래제거 기준과 각 개별법상 내부거래제거 기준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3,310,479,000,000원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 각 개별법상 결산서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작성하나, 국가 회계기준에 의한 재정상태표는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 선급금 : 525,579,090원
- 미수채권 : 5,578,861,080원
- 대손충당금 : (-)1,374,274,817,115원
- 선수수익 : 2,923,853원
- 미지급비용 : 9,742,054,354원
- 미지급금 : 11,212,575,230원

④ 대상차이 :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부채의 범위와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산・부채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 국고예금 : 33원
- 저장품 : 22,876,570,505원
- 융자금 : (-)10,381,205,418원
- 과태료채권 : 56,239,850원
- 예수금 : 3,156,980원

## 4. 검토의견

###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면밀한 수요파악을 통한 예산 불용 최소화 및 에너지절감 실효성 제고 필요

#### ① 결산 현황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5139-302)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945억 7,500만원 중 2,920억원을 집행하고 25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 294,575 | 294,575 | - | - | - | 294,575 | 292,000 | - | 2,575 | 291,03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이차보전 예산의 반복 불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동 사업 중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내역사업은 ESCO[111] 투자사업과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1)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로,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신·증설 및 개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을 수행함.

2024년 융자 예산액 2,870억원은 전액 집행된 반면, 이차보전 예산액 25억 7,5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음.

2022~2024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내역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년도 | 내역사업 | 예산 | 융자신청액 | 추천액 | 인출액 | 비율(%) | |
|---|---|---|---|---|---|---|---|
| | | | | | | 인출률 | 집행률 |
| 2022 | 절약시설 설치사업 | 264,400 | 351,400 | 299,900 | 249,000 | 83.0% | 94.2% |
| 2023 | 절약시설 설치사업 | 256,800 | 387,700 | 307,300 | 256,800 | 83.6% | 100% |
| | 이차보전 | 1,500 | - | - | - | - | 0% |
| 2024 | 절약시설 설치사업 | 287,000 | 409,000 | 354,000 | 287,000 | 81.1% | 100% |
| | 이차보전 | 2,575 | - | - | - | - | 0% |

주: 인출률 = (인출액/추천액)*100, 집행률 = (인출액/예산)*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차보전 사업은 2022년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정책융자 사업 중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연중 융자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이차보전 자금 7억 4,600만원을 전용을 통해 신규로 추진한 바 있음.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5억원과 25억 7,500만원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인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액 불용되었음.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신규

대출 조달금리는 연평균 4.5% 이상인 반면,[112]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으로 선정된 고정 이차보전 지원율은 3.79%p에 불과하여 시중 조달금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은행 및 제조업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하였으나, 고금리 기조 및 금리 변동성에 따른 장기대출 기피로 인해 보다 금리 안정성이 높은 정책융자 방식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었고, 이차보전 수요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는 애초에 구체적인 수요가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보전 사업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경우 금리 경쟁력 확보, 수요자 선호도, 금융기관 참여 가능성 등 정책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③ 에너지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필요

동 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를

112) 통계청(KOSIS) 중소기업 신규취급 대출금리 기준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통한 조달금리는 2022년 4.86%, 2023년 4.83%였으며, 2024년의 경우 한국은행 7월 기준 4.55%수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약 4.75% 내외를 기록함(2024년은 통계청 자료가 아직 집계되지 않음).

‘예산투입액에 따른 에너지절감량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4년에는 총 2,870억원 예산 집행을 통해 약 21.96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음. 또한, 동 사업은 약 59만 $tCO_2$ 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는데, 이는 국가 에너지절감목표(1,400만 toe) 대비 1.6%, 온실가스 감축목표(6,120만 $tCO_2$ ) 대비 0.96% 수준의 기여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다만, 2024년 동 사업의 자금투자 1억원당 에너지절감량(이하 “절감효율”)은 75.2 toe/억원으로 최근 5개년(2020~2024년) 평균인 80.3 toe/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113] 이는 융자지원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설비들이 상대적으로 절감효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임.

실제로, 2024년 전체 융자지원 673건 중 613건(91.1%)이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하며, 이 중 건물에너지절약 및 공조설비(36.3 toe/억원), 조명설비(25.7 toe/억원) 등은 평균 이하의 절감효율을 보임. 해당 사업은 평균 단가 2.5억원/건 수준으로 단가가 낮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다건 분산 지원되고 있음.

113) < 2020~2024년 융자지원 사업 에너지절감량>

| 구분 | 지원금액(억원) | 에너지절감량(천toe/년) | 억원당 에너지절감량(toe/억원) |
|---|---|---|---|
| 2020년 | 2,828.8 | 227.9 | 80.6 |
| 2021년 | 2,445.1 | 228.3 | 93.4 |
| 2022년 | 2,539.7 | 208.2 | 82.3 |
| 2023년 | 2,618.3 | 197.9 | 75.6 |
| 2024년 | 2,920.0 | 219.6 | 75.2 |
| **합계** | **16,175.9** | **1,299.0** | **80.3** |

자료: 「2024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성과조사」, 한국에너지공단, 2024.12.

## 2024년 세사업별 융자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 세 사 업 명 | | 지원건수 (건) | 지원금액 (억원) | 평균단가 (억원/건) | 투자 회수기간(년) |
|---|---|---|---|---|---|
| ESCO 투자사업 | | 33 | 1246.2 | 37.8 | 1.7 |
| 절약 시설 설치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613 | 1,561.2 | 2.5 | 2.1 |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 | - | - | |
|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24 | 62.6 | 2.6 | |
|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 | 3 | 50.0 | 16.7 | |
| **합 계** | | **673** | **2,920** | **4.3** | **1.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024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성과조사」 참고

## 연도별·설비별 단위 에너지 절감량 성과추이

(단위: toe/억원)

| 구 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ESCO 공정개선 | | 49.5 | 235.9 | 64.6 | 42.6 | 113.0 |
| 절약 시설 설치 사업 | 건물에너지절약 및 공조설비 | 36.0 | 14.3 | 32.4 | 106.0 | 36.3 |
| | 건조설비 | 66.7 | 75.9 | 61.9 | 51.4 | 46.9 |
| | 동력설비 | 51.2 | 57.0 | 50.4 | 52.2 | 46.9 |
| | 보일러 및 요·로 설비 | 79.2 | 90.4 | 94.7 | 65.0 | 57.7 |
| | 염색 및 제지설비 | 70.7 | 75.9 | 73.7 | 71.8 | 66.2 |
| | 온실가스·에너지저감업체 투자사업 | 184.5 | 658.8 | 316.4 | 679.1 | 104.8 |
| | 조명설비 | 23.5 | 27.4 | 14.2 | 48.8 | 25.7 |
| | 증발 및 농축설비 | 151.2 | 114.6 | 28.3 | - | - |
| | 폐열이용설비 | 100.1 | - | 117.3 | - | 113.1 |
| **합계** | | **80.6** | **93.4** | **82.3** | **75.6** | **75.2** |

자료: 「2024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성과조사」, 한국에너지공단, 2024.12.

이에 반해, ESCO 투자사업은 2024년 기준 33건(4.9%)에 불과하나, 단일 설비 중 가장 높은 절감효율(113.0 toe/억원)을 보이는 공정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균 단가도 37.8억원/건으로 대규모 고효율 설비 투자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절감 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 효율 중심이 아닌 수요 대응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온 사업 구조의 한계를 나타냄.

현재는 소규모 설비에 대한 다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절감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감효율이 높은 고효율 설비군에 대해 일정 비중 이상의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에너지바우처: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 ① 결산 현황

‘에너지바우처’(5146-301)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856억 600만원 중 5,859억원 2,700만원을 집행하고 996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에너지바우처 | 685,606 | 685,606 | - | - | - | 685,606 | 585,927 | - | 99,679 | 501,36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바우처 예산 효율성 제고 필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114]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절기바우처(7월~9월)는 여름철 냉방 등을 위한 전기요금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동절기바우처(10월~차년도 5월)는 겨울철 난방 등을 위한 연료(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구입

114) 에너지바우처의 민감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를 포함한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을 의미함.

비용을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함.

2024년에는 동절기바우처 예산 6,005억 2,100만원 중 1,103억 4,500만원(18.4%)이 전용되고 997억원(16.7%)은 불용되었으며, 2025년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801억 4,900만원(77.6%)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집행내역 ('25.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 내역사업명 | 예산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A) | 교부액 (B) | 교부율 (B/A) | 불용액 | 실집행액 (C) | 실집행률 (C/A) |
|---|---|---|---|---|---|---|---|---|
| 하절기바우처 | 60,950 | 19,500 | 80,450 | 80,450 | 100.0 | - | 79,927 | 99.3 |
| 동절기바우처 | 600,521 | △110,345 | 490,176 | 390,497 | 79.7 | 99,679 | 380,149 | 77.6 |
| 연탄쿠폰 | 21,240 | 2,238 | 23,478 | 23,478 | 100.0 | - | 22,815 | 97.2 |
| 등유바우처 | 1,023 | - | 1,023 | 1,023 | 100.0 | - | 63 | 6.2 |
| 등유·LPG 구입지원 | - | 86,016 | 86,016 | 86,016 | 100.0 | - | 78,368 | 91.1 |
| 사업운영비 | 1,872 | 2,591 | 4,463 | 4,463 | 100.0 | - | 3,626 | 81.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역사업간 조정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2024년 1월 에너지 위기 장기화로 등유·LPG 구입지원 사업을 연장하면서 860억원이 조정되었고, 2024년 8월 폭염으로 하절기바우처 단가를 인상하면서 195억원, 연탄쿠폰 단가인상에 따라 22억 3,800만원이 추가로 조정되었음.

또한, 불용의 주요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회계연도 중 지

원대상을 확대(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하고, 동절기 지원단가 인상(15.2만원→ 30.4만원)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4년도에 지출되는 2023년도 동절기바우처(2024년 1~5월 집행)의 추가소요액 2,406억 7,700만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예산 반영 당시 2024년도 1~4월 지원비율(57%)을 반영하여 70%만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1,409억 9,800만원(58.6%)에 그쳐 997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게다가, 동절기바우처는 이처럼 대규모의 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77.6%에 불과하여, 수요예측이 정교하지 못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음.

등유바우처 역시 예산액 10억 2,300만원 중 6,300만원(6.2%)만 실집행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부터 등유바우처를 에너지바우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2024년도 사업대상자를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유도한 결과, 대상자가 1,634세대('23년)에서 241세대('24년)로 감소하여 실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절기바우처의 실집행률 저조와 함께 전반적으로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절기바우처를 비롯한 주요 내역사업에서 조정 및 불용이 발생하고 실집행률도 저조했던 것은 수요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수급자의 특성, 계절별 수요 편차, 제도변경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수요예측 기반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③ 저소득층 대상 제도의 사각지대와 과소이용 문제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대상 가구의 세대원 수에 따라 정액 차등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동·하절기 포함하여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의 경우 70만 1,300원을 지원함.[115)]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급여유형별 사용현황을 보면 제도의 실질적 수혜가 가장 절실한 계층에서 오히려 이용률이 낮은 역진적 구조가 확인됨.

115)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지원액

|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4대 급여별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

| 급여 종류 | 가구수[1] (A) | 비중 | 발급 예산 (B) | 사용액 (C) | 사용률 (C/B) | 현금 지급[1] 가구수 (D) | 비중 (D/A) | 전액 사용 가구수 (E) | 비중 (E/A) |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867,625 | 69 | 278,579 | 217,611 | 78.1 | 3,580 | 0.4 | 352,910 | 40.7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54,820 | 4 | 18,585 | 15,063 | 81.1 | 172 | 0.3 | 23,190 | 42.3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314,234 | 25 | 113,009 | 96,287 | 85.2 | 688 | 0.2 | 143,995 | 45.8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21,257 | 2 | 10,621 | 10,140 | 95.5 | 15 | 0.1 | 11,931 | 56.1 |
| **합계** | **1,257,936** | **100** | **420,794** | **339,101** | **80.6** | **4,455** | **0.4** | **532,026** | **42.3** |

주1) 중복수급자는 상위 급여 수급자로 포함
주2)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5.6)

전체 수급자의 약 69%를 차지하는 생계급여 가구의 바우처 사용률은 78.1%, 전액사용률은 40.7%에 불과한 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보다 소득 관련 선정기준이 완화된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는 각각 95.5%, 56.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에너지바우처의 전액사용률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실제 에너지 수요가 더 큰 저소득층일수록 바우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과소지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정보 접근성의 제약, 신청 절차의 복잡성, 계약 명의 불일치나 에너지비용의 체납, 사용 채널의 제한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실사용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116]

또한, 바우처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급여 수급자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의 사용률과 전액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액 기준의 지원 방식이 실제 냉난방 수요나 주거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117]

결국,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가장 보호해야 할 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고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 구조상의 한계들을 감안하여 주거환경과 냉난방 수단 등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정보 접근성 개선, 신청 절차 간소화, 비정형 가구(주소·명의 불일치, 공동계량기 사용 등)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정교한 제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1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은 바우처 수급자의 상당수가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명의 불일치 및 체납 등의 사유로 실질적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특히 단열 성능이 낮거나 냉난방 설비가 부족한 가구의 경우, 정액 지원만으로는 에너지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음(「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2호, pp. 517-519).

117) 에너지경제연구원(2018)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소득과 가구원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어, 주거면적·난방 방식·단열 성능 등 실제 냉난방 수요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가구원 수라도 지역 기후나 주거형태에 따라 체감되는 지원 효과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발생한다고 평가함(『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KEEI 수시보고서, p. 61).

## (3)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실제 ODA 사업 선정 성과 저조

### ① 결산 현황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5201-306)는 한국-개도국 및 한국-국제기구 간의 에너지 분야 협력모델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시범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개도국의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4억 9,800만원이 모두 집행됨.

’24년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기후변화협약 대응 한-개도국 협력(ODA) | 2,498 | 2,498 | - | - | - | 2,498 | 2,498 | - | - | 2,39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실제 ODA 사업 선정 성과 저조

동 사업은 ‘에너지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및 ‘간접비’ 총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서 동 사업 예산을 출연받아 집행하고 있음. 이 중 간접비는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용도로 사용함.

## 2024년 내역사업별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대상국·기구 | 예산 | 지원내용 | 총사업기간 |
|---|---|---|---|---|
| 에너지 정책 컨설팅 지원 | 캄보디아 | 215 | 태양광 활용 전기이륜차 활성화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 '21년 ~'25년 |
| | 인도네시아 | 220 | 태양광 활용 전기 이륜차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 |
| | 우즈벡 | 210 | 에너지 관리자 양성 교육센터 건립 | |
| | 페루 | 246 | 건물분야 ICT 기반 에너지 효율 및 수요관리 정책수립 | |
| | 라오스 | 200 | 에너지효율시험·인증제도 구축 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 | '22년 ~'24년 |
| 국제기구 협력사업 | ADB | 210 | 동남아시아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21년 ~'25년 |
| | ACE | 150 | 아세안국가 산업/건물 분야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 |
| | UNIDO | 200 | 태국/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 | |
| | WB | 150 | 동아시아 에너지효율화 지원 | |
| | IDB | 150 | 중남미 전력보급 및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
|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 스리랑카 | 400 | 에어컨 에너지효율시험소 구축 지원 사업 | '22년 ~'26년 |
| 간접비 | - | 147 |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60), 성과평가(40), 사업관리(47)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은 외교부가 양자 무상원조 사업의 수원국 수요반영 및 효과적 시행을 위해 신규 사업 심의[118]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2019년부터 매년 1~2건 가량 수행되었음.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매년 ODA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신규 지원·협력 사업을 보다

1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주관기관(무상원조는 외교부, 유상원조는 기재부)과의 협의를 통해 매 5년마다 선정

계획적·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해당 사업은 외교부 ODA 사업 심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조사용역 10건 중 외교부 심의를 거쳐 ODA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는 2020년 및 2024년 각 1건에 그침.

**신규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외교부 심의결과**

| 연도 | 용역명 | 수행기관 | 집행액(천원) | 외교부 심의결과 |
|---|---|---|---|---|
| '18 | - | - | - | - |
| '19 | 캄보디아 미얀마 태양광에너지 보급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보성파워텍(주) | 11,000 | 제외 |
| '20 | **라오스 에너지 효율 시험인증시스템 구축사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21,900** | **선정** |
| '21 | 파키스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현대경제연구원 | 21,890 | 제외 |
| | 스리랑카 수요관리 Energy Service Platform 구축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21,890 | 신규사업 대상국 중복으로 미제출 |
| '22 | 에콰도르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소 구축 지원사업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 30,000 | 부적정 |
| | 라오스 태양광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평가 시험소 구축 지원사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30,000 | 부적정 |
| '23 | 베트남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MRV 체계 구축 | ㈜에코시안 | 30,000 | 수원국측 공문 확보 지연, 추후 제출 예정 |
| | 페루 리마지역 100kW 태양광 연계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 | ㈜건화 | 30,000 | 수원국측 공문 확보 지연, 추후 제출 예정 |
| '24 | **국제감축 기반 조성을 위한 ODA 사업모델 발굴 및 예비타당성 조사(인도네시아)**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30,000** | **선정** |
| | 인도네시아 스마트그린 농장 구축을 위한 분산전원 마스터플랜 수립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30,000 | 신규사업 대상국 중복으로 미제출 |
| '25 | - | - | - | 선정 진행 중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2021년 과제 각 1건은 기본요건 미충족, 사전심사 결과 추진 불필요 등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22년 과제 2건은 타당성 부족 등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용역결과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2023년 과제 2건도 2024년 6월말 현재까지 수원국측 공문확보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 시급성이나 현지 협조체계는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4년에는 대상국가가 인도네시아로 중복[119]되어 다른 한 건은 외교부 심의에 제출되지 않아 용역 기획 단계부터 실제 결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동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은 대부분 올해 또는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고, 2024년 발굴 결과를 2026년부터 추진하더라도 그 외 2025년 발굴 결과는 2027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동 사업은 위축될 것으로 보임.

당초 선제적으로 ODA 수요를 발굴하여 계획적·연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통상자

119) 대상국가 중복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사업수요가 많은 특정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타당성조사가 중복되는 경향성이 있으나, 외부전문가(기후변화·국제협력·ODA 등)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 중복 등의 기준을 포함하여 심의·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원부는 2026년부터 수행할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 및 국무조정실과의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사업기획 초기단계부터 국가 중복 가능성, 수원국의 협조 가능성 및 외교부 심의 가능성 등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동 ODA 사업을 계획적·연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4)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수소 수급전망 수립 예산 이월 재발 방지 필요

#### ① 결산 현황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5203-302)은 ① ‘수소 튜브트레일러 지원’, ② ‘수소 거래시스템 및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③ ‘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 ④ ‘수소 유통질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98억 3,400만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수소유통기반구축 | 9,834 | 9,834 | - | - | - | 9,834 | 9,834 | - | - | 5,86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수소 수급전망 수립 예산 이월 재발 방지 필요

내역사업인 ‘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은 ① 수소 수급 데이터 확보를 위해 매년 국내 수소산업 수급통계조사를 실시하고, ② 국내 수소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수소 수급전망을 수립하는 계속사업으로, 2024년도에 수소산업 수급통계조사 및 수소 수급전망 수립을 위한 예산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4년도 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 예산

| 2024년도 예산 | |
|---|---|
| 예산 | 산출내역 |
| 360백만원 | ○ 수소산업 수급통계조사 (135백만원)<br>○ 수소 수급전망 수립 (225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수급전망 수립은 2024년에 처음 실시된 것[120]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2024년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장기(15년) 수소 수요전망, 공급·인프라 계획, 정책제언 등을 포함한 수소 수급전망을 수립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24년도 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본예산 | 추경 (A)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360 | 360 | 360 | 360 | - | 360 | 279 | 360 | 279 | 81 | - | 77.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용역 계약의 기간이 2024회계연도를 넘어가므로 2024년도 수소 수급전망 수립 예산 2억 2,500만원 중 일부인 6,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낙찰차액을 제외한 3,09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고 2025년 6월에 최종적으로 수소 수급전망(안)이 보고되었음.

120) 내역사업 ‘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은 2022년부터 편성되었으나 매년 편성된 수소산업 수급통계조사와 달리 수소 수급전망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수소 수급계획 수립, 2023년에는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연구 용역 명목으로 각각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해당 이슈가 해결되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수소 수급계획·전망 수립을 위한 예산 2억 2,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25년도 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 예산**

| 2025년도 예산 | |
|---|---|
| **예산** | **산출내역** |
| 360백만원 | ○ 수소산업 수급통계조사 (135백만원)<br>○ 수소 수급계획·전망 수립 (225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7월 말 기준 수소 수급계획·전망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 입찰을 위한 사업공고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수소 수급전망(안) 수립 용역기간이 약 9개월임을 고려하면 연도 내 용역 수행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상반기에 용역발주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집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5)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의 신속한 추진 필요 등

### ① 결산 현황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5203-318)은 해외에서 청정에너지인 그린·블루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여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출자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0억원 중 14억원이 한국석유공사에 교부되었고 46억원이 불용되었음.

’24년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 도입기반구축사업 | 6,000 | 6,000 | - | - | - | 6,000 | 1,400 | - | 4,600 | 1,65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의 신속한 추진 필요

동 사업은 청정에너지인 수소·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고 국내로 도입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신규로 편성되어 2027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될 예정임.

동 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인 '해외 그린·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청정에너지인 그린·블루수소[121]를 생산한 후 이를 운송에 편리한 그린·블루암모니아로 전환하여 도입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해외 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개요(2023년 기준)**

| 구분 | 그린 암모니아 생산사업 |
|---|---|
| **사업개요** | -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후, 민간기업과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그린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 추진 |
| **사업규모** | - 그린암모니아 60만톤/년 이상 |
| **추진일정 및 투자규모** | - ('24년) FEED 완료,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참여 및 FID<br>('25년) 건설공사 착수<br>('27년) 4Q 생산개시.<br>→ 총 사업비 약 2.3조원 추정 |
| **2023년도 예산** | - (계획) 25억원<br>- (집행) 31억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저렴한 지역(그린암모니아)이나 천연가스 산지 인근(블루암모니아)에서 청정 암모니아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공사[122]를 착수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임.

121)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의 종류는 크게 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여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된 '그린수소'와 ②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면서 생산된 '블루수소'가 있음.

122)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설비와 같이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합성하여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설비는 플랜트의 일종으로,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크게 타당성 조사(F/S; Feasibility Study)를 포함한 개념설계 → 기본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Design) → 상세설계·구매·시공(EPC;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등의 순서로 진행됨.

그린암모니아 생산시설[123]의 경우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수전해 기술을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현지에 건설한 암모니아 생산설비로 수소를 그린암모니아로 전환한 후 선박을 통해 한국의 암모니아 터미널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한국석유공사가 민간기업인 롯데케미칼 및 삼성 E&A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2024년부터 도입될 청정수소발전시장(CHPS)에 입찰하여 사라왁에서 생산한 그린암모니아를 공급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2024년도에 출자할 예정이었던 예산 35억원은 전혀 집행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라왁 주정부와의 수력발전 전력단가 협상 과정에서 사라왁 측이 제시하는 전력판매단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그린암모니아 생산 기반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오만 정부가 추진하는 살랄라(Salalah)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사전기본설계(Pre-FEED)를 추진하는 비용으로 출자금 14억원을 집행하였음.

123) 말레이시아에서 H2biscus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그린수소 생산 사업임.

해당 프로젝트는 오만 남부 도파르주 내 태양광과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항구도시인 살랄라 자유무역지대 내에 신규 암모니아 플랜트 건설을 통해 연간 100만톤 규모의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마루베니(일본), OQ(오만), Dutco(UAE)와 함께 삼성물산이 25%의 지분을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석유공사가 동 사업을 통해 삼성물산이 가진 지분의 절반인 12.5%를 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이미 2023년에 투입한 예산 31억원은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사라왁과 살랄라 프로젝트가 모두 성공하면 청정수소발전시장 입찰 관련 계약만으로는 각 프로젝트에서 생산·도입될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프로젝트에 이미 투자된 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각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도입한 그린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판매처를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 ③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검토 필요

당초 동 사업은 ‘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과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투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그린·블루암모니아 구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석유공사가 2023년에 제출한 동 사업의 총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비로 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을 위해 35억원,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을 위해 25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2024년도 예산액인 60억원이 산출되었음.

그린·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시범사업 총사업비 계획('23～'24년)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구분 | '23 | | '24 | |
|---|---|---|---|---|---|
| 그린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시범 | 단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 | 기본설계 | |
| | 구분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 합계 | 10,000 | 3,500 | 22,900 | - |
| | 정부 | 2,500 | 3,100 | 3,500 | 1,400 |
| | 석유공사 | 2,500 | 400 | 6,200 | - |
| | 민간 | 5,000 | - | 13,200 | - |
|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시범 | 단계 | - | | 기본설계 | |
| | 구분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 합계 | 6,000 | - | 10,000 | - |
| | 정부 | 1,500 | - | 2,500 | - |
| | 석유공사 | 1,500 | - | 2,500 | - |
| | 민간 | 3,000 | - | 5,000 | - |

자료: 한국석유공사

그런데 한국석유공사가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을 위해 ADNO

C[124] 등 해외 주요기업과 공동개발을 추진하던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는 2023년과 2024년 연속하여 사업이 부진·지연되면서 정부의 출자예산 집행실적이 없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블루암모니아 생산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아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주요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이 연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루와이스 외에 북미의 루이지애나 및 휴스턴 지역 등 다른 사업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초에 크게 인상되었던 천연가스 가격은 2023년 이후 2021년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었으나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해외 주요기업의 블루수소 사업 투자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보임.

참고로, 2025년 초 착공 예정인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에서 수요 예상치를 반영하여 생산 목표량을 당초의 연간 25만톤에서 12.5만톤으로 축소하는 등 블루수소·암모니아의 국내 수요가 해외에서 블루암모니아를 도입해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124)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Abu Dabi National Oil Company)는 석유 탐사 및 채광, 정유 산업을 주도하는 UAE의 최대 국영 석유회사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편성 이후 2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시범사업’의 연도별·단계별 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재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지방비 적기 집행을 통한 센터 구축 지연 방지 필요

#### ① 결산 현황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5203-352)은 실제 운전 환경인 고온·고압 환경에서 발전용 수소터빈의 연소성능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0억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 7,000 | 7,000 | - | - | - | 7,000 | 7,000 | - | - | 6,6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정부 예산과 매칭된 지방비 적기 집행을 통한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 지연 방지 필요

동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점차 확대될 수소 혼소 또는 전소 방식의 가스터빈 상용화를 위해 수소터빈[125]의 성능평가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여 센터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3년에 신규로 편성되어 2026년까지 4년 동안 수행될 예정임.

125) 수소터빈은 LNG 가스터빈과 유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발전기 및 수소공급 보조기기 등이 핵심 구성품임

## '24년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예산 편성 내역

| 2024년도 예산 | |
|---|---|
| 예산 | 산출내역 |
| 7,000백만원 | ○ 수소터빈 시험평가 주요설비구축 (6,100백만원)<br>- 공기공급시스템 (연소공기 압축기, 연소공기 건조기, 연소공기 제어장치, 연료저장장치 5종) 선금 = 견적가 10,300백만 × 선금 60% = 6,100백만원<br><br>○ 엔지니어링 기술확보 (900백만원)<br>- (엔지니어링 기본설계) 설비구축 총예산 × 엔지니어링 설계요율 × 잔금 = 29,900백만원 × 5.450% × 39% = 630백만원<br>- (엔지니어링 실시설계) 설비구축 총예산 x 엔지니어링 감리요율 x 선금 = 29,900백만원 × 2.02% × 44.7% = 270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에 4년간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80억원으로 국비가 355억원, 지방비가 125억원 투입되는 매칭 사업이고 센터가 구축되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며 센터는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내에 구축되고 있음.

##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 연차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 1(2023년) | 1,000 | 10 | 1,010 |
| 2(2024년) | 7,000 | 490 | 7,490 |
| 3(2025년) | 6,600 | 9,000 | 15,600 |
| 4(2026년) | 20,900 | 3,000 | 23,900 |
| 합계 | 35,500 | 12,500 | 48,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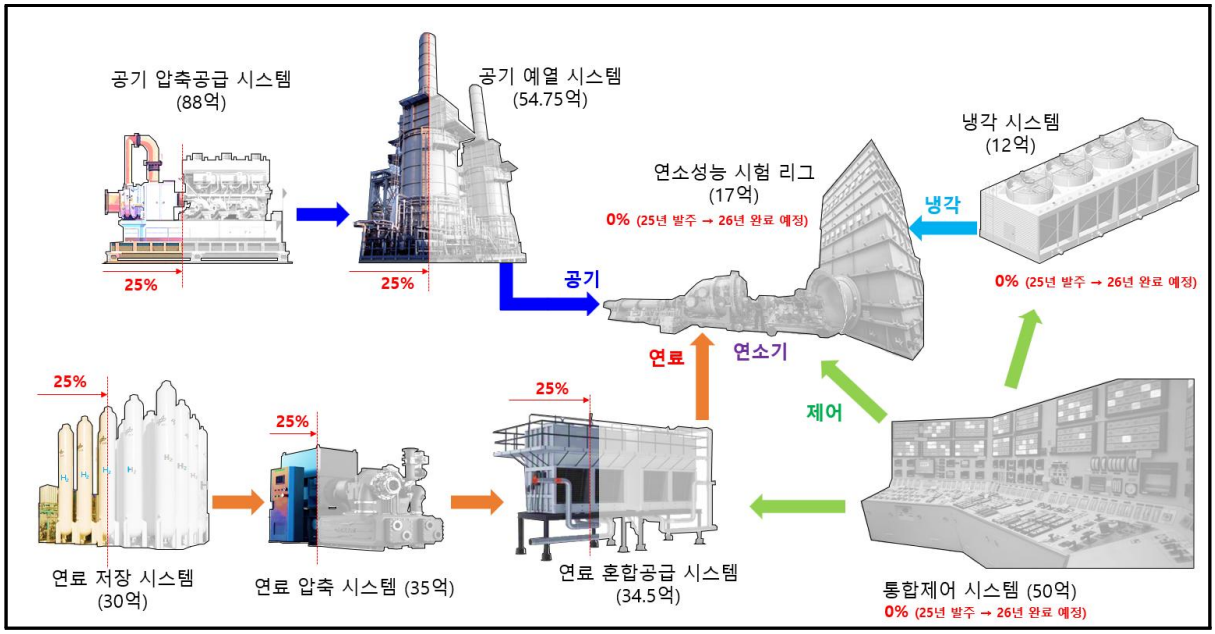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현금기준(지방비 부담 중 현물(인건비) 제외)

국비는 주로 공기 압축공급·예열 시스템, 연료저장·압축·혼합공급 시

스템, 연소성능 시험 리그 등 수소터빈 성능평가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사용하며, 지방비는 부지정비 및 센터구축에 필요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

그리고,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70억원은 연소시험용 고온 공기 및 연료 압축 공급 장치 제작·설치 선금 지급과 센터 설비구축 및 안전 제어 통합시스템 기본/실시 설계 용역 잔금 지급에 모두 실집행이 완료되었음.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 현황('24년 12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당초 보령시가 2024년도에 집행하기로 했던 지방비 4억 9,000만원 중 건축 기획설계 잔금 1,000만원만 집행[126]되었고 나머지 4억

126) 2024년에 보령시가 부담하기로 한 지방비는 현금 4억 9,000만원, 현물(인건비) 2,400만원으로 인건비는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음.

8,000만원은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2%에 불과하였음.

2024년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지방비 집행 현황

| 구분 | | 계획 | | 실적 | | |
|---|---|---|---|---|---|---|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세부내역 | 금액 (백만원) | 세부내역 | 금액 (백만원) | 잔액 (백만원) |
| 건설비 (420) | 기본조사 설계비 (01) | 건축물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 | 10 | 건축 기획 설계 (잔금) | 10 | - |
| | 실시 설계비 (02) | 건축물 실시설계 비용 | 220 | - | - | 220 |
| | | 건축물 전기설계 비용 | 260 | - | - | 260 |
| 인건비 (110) | 보수 (01) | 정규칙 참여 인력 보수 | 24 | 정규직 참여 인력 인건비 지급 | 24 | - |
| 합계 | | | 514 | 합계 | 34 | 48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령시가 센터 건축 기획을 위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센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어 부지정비를 위한 지방비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비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센터 건축은 당초 예정된 바와 같이 '26.7월까지 완료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센터 건물이 조립식 판넬을 사용하거나 단층 콘크리트 형태로 되어 있어 전체 시공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지 정비와 건축이 계획보다 지

연될 경우, 국비로 도입한 장비의 설치와 활용 시점이 늦어져 센터 운영 개시가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를 구축하는 주요 이유는 국내 기업이 수소터빈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외의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터빈 제조업체들이 수소터빈 시험을 위해 주로 의뢰하는 독일의 DLR(독일항공우주센터)[127]의 경우 시험의뢰부터 시험 시작까지 1.5년~2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시험 기간은 3~4개월 정도 걸리므로 DLR로 시험 수요가 몰려 발생하는 시험대기 기간까지 산정한다면 최대 3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특히,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2023년 이후 일부 발전소에 설치된 것을 제외[128]하면 90% 이상이 외국산으로 General Electric(미국), Siemens Energy(독일), Mitsubishi Power(일본) 등 해외 주요 터빈사의 경쟁[129]에서 뒤처질 경우 향후 확대될 수소 혼소·전소 발전 또한 외국산 기기에 의존해야 할 우려가 있음.

---

127) 해외 주요 시험기관으로는 독일의 DLR 외에도 이탈리아의 SESTA, 캐나다의 NRC 등이 있음.

128) 2019년에 두산에너빌티티가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김포열병합발전소 등 일부 발전소에 공급하였음.

129) 동 사업의 사업기획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또는 자국 내에 대형 수소터빈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지방비 집행이 지연되어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7)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석유공사 출자율 관리 강화 필요 등

#### ① 결산 현황

‘유전개발사업출자’(5444-301)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및 석유생산시설재활용사업을 지원하는 출자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81억 4,0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유전개발사업출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유전개발사업출자 | 48,140 | 48,140 | - | - | - | 48,140 | 48,140 | - | - | 837 |
| 유전개발 | 39,290 | 39,290 | - | - | - | 39,290 | 39,290 | - | - | 837 |
| 석유생산시설재활용친환경에너지사업 | 8,850 | 8,850 | - | - | - | 8,850 | 8,850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한국석유공사 출자율 관리 강화 필요

동 사업은 ‘유전개발사업’과 ‘석유생산시설재활용친환경에너지사업’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유전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라 함)의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자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국내유전개발 투자비 659억 7,700만원에 출자율 50%를 적용한 329억 8,800만원과 해외유전개발 투자비 315억 1,200만원에 출자율 20%를 적용한 63억 200만원 등 총 39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4년도 유전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예산액 | | | 집행액 | | |
|---|---|---|---|---|---|---|---|
| | | 투자비* | 정부 출자금 | 출자율 | 투자비* | 정부 출자금 | 실제 출자율 |
| 유전개발 | | 97,489 | 39,290 | 40% | 84,775 | 39,290 | 46% |
| 국내 | 6-1중동부 (탐사) | 10,666 | 5,333 | 50% | 886 | 445 | 50% |
| | 8/6-1북부 (탐사) | 2,182 | 1,091 | 50% | 18,694 | 5,979 | 32% |
| | 4·5광구 (탐사) | 466 | 233 | 50% | 565 | 233 | 41% |
| | 1·2·3광구 (탐사) | 19,111 | 9,555 | 50% | 13,772 | 9,555 | 69% |
| | 신규 물리탐사 연구선 실증 | 33,552 | 16,776 | 50% | 26,284 | 16,776 | 64% |
| | 합계 | 65,977 | 32,988 | 50% | 60,201 | 32,988 | 55% |
| 해외 | 베트남 15-1 (개발·생산) | 31,512 | 6,302 | 20% | 24,574 | 6,302 | 26% |
| | 합계 | 31,512 | 6,302 | 20% | 24,574 | 6,302 | 26% |

* 투자비는 석유공사 부담금과 정부 출자금을 합한 총 투자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석유공사의 2024년도 국내외 유전개발투자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총투자비는 당초 계획된 974억 8,900만원에서 847억 7,500만원

으로 127억 1,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정부 출자금은 당초 계획대로 392억 9,000만원이 전액 출자되어 유전개발사업의 전체 출자율은 40%에서 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국내 유전개발사업의 출자율은 50%에서 55%로, 해외 유전개발사업의 출자율은 20%에서 26%로 증가하였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전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석유공사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설정된 유전개발사업 사업의 정부 출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음.

'20년～'23년 유전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연도 | 예산편성 | | | 집행액 | | | 출자율 증가 (B-A) |
|---|---|---|---|---|---|---|---|
| | 유전개발 투자비 | 출자율 (A) | 편성액 | 유전개발 투자비 | 출자율 (B) | 집행액 | |
| 2020 | 144,985 | 9% | 13,483 | 78,841 | 17% | 13,483 | 8% |
| 2021 | 195,700 | 21% | 40,308 | 108,427 | 37% | 40,308 | 16% |
| 2022 | 242,604 | 16% | 37,609 | 134,484 | 28% | 37,609 | 12% |
| 2023 | 104,252 | 26% | 27,180 | 25,775 | 49% | 12,659 | 2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 규모가 크고 사업참여자 및 환율·유가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총투자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출자금 교부 이후에는 환수가 어려워 정부 출자율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일반출자의 경우 해당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도록 하고,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분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주체별 분담 비율에 대한 원칙 및 연차별 분담계획을 정하고 재원분담조건의 실행을 전제로 출자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출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고, 예산 편성 시 설정된 정부 출자율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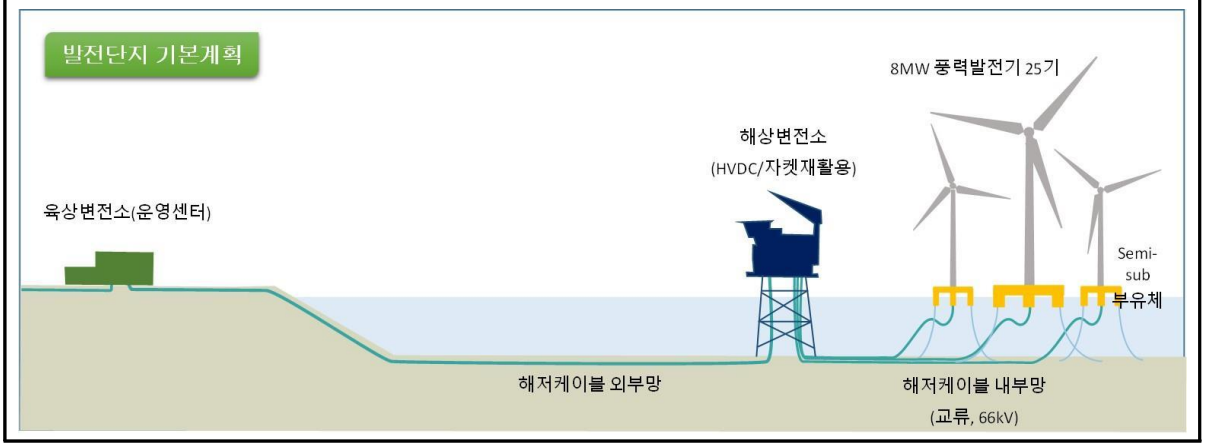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석유공사가 유전개발사업의 출자율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③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 추진 지양 필요

내역사업인 ‘석유생산시설재활용친환경에너지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을 통한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출자하는 사업임.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명 |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200MW 규모) |
| 사업 예정부지 | 울산항 58km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반경 5km 해역<br>(2021년말 생산종료된 동해-1가스전 플랫폼 하부구조물 재활용 사업) |
| 사업(추진)주체 | (2019.7~) 컨소시엄 (석유공사 35%, 동서발전 30%, 에퀴노르 35%)<br>(2024.4분기) SPC |
| 총투자비 | 1조 6,867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




자료: 석유공사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

획」[13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해상풍력 발전 방안」[131] 등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동해 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재활용을 통한 철거비용 절감,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경과**

| |
|---|
| ○ '18년 - 풍황계측장비 플랫폼 설치 및 운용<br>○ '19년 - 석유공사·에퀴노르·동서발전 컨소시엄 구성<br>○ '21년 - 에퀴노르 100% SPC 설립(2월)<br>-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5월)<br>- 발전사업허가 취득(11월)<br>○ '22년 - 석유공사·에퀴노르·동서발전 공동개발협약(JDA)체결<br>- 시설재활용 제3자(DNV)증서 확보<br>○ '23년 - 주주간협약 합의 및 출자 승인, 송전설비이용신청('24.7월)<br>○ '24년 - SPC 지분취득 완료 및 추가 출자<br>- 석유공사 인력 SPC 파견(4인) |

자료: 석유공사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67억원 중 석유공사가 978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부 출자금은 2023년 29억 5,000만원, 2024년 88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음.

130)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산업통상자원부, 2017)

131) 부유식 해상풍력(울산 1.4GW, 동남권 4.6GW) 개발계획에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포함 (부처합동, 2020)

##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 분담비 | 부담액 | 연도별 | | | | | | | 비고 |
|---|---|---|---|---|---|---|---|---|---|---|---|
| | | | | '23 | '24 | '25 | '26 | '27 | '28 | '29~'30 | |
| 자기자본 (20%) | 석유공사 | 29% | 978 | 51* | 89* | 109 | 260 | 469** | - | - | |
| | 컨소시엄 | 71% | 2,395 | 51 | 89 | 109 | 260 | 1,886 | - | - | |
| | 합계 | 100% | 3,373 | 101 | 178 | 218 | 520 | 2,355 | - | - | - |
| 타인자본(80%) | | 80% | 13,494 | - | - | - | - | 876 | 5,020 | 7,597 | PF |
| 총사업비 | | 100% | 16,867 | 101 | 178 | 218 | 520 | 3,231 | 5,020 | 7,597 | - |

* 정부출자금 '23년 29.5억원, '24년 88.5억원 집행
** '27년 기관자금 469억원 중 약 300억원은 동해 가스전 시설 현물출자로 대체
자료: 석유공사

석유공사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5호[132]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유전개발사업출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동해 부유식

132)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6.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7.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9.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지원,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석유 자원안보 강화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석유공사의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지원하려는 동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세부사업인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목적은 석유자원의 개발을 통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석유생산시설재활용친환경에너지사업'의 목적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비교**

| 구분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
| 사업명 | 유전개발사업출자 | 석유생산시설재활용친환경에너지사업 |
| 사업목적 | 우리나라의 **석유 자원안보 강화**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응** 및 동해 가스전 시설의 재활용 |
| 사업내용 | 석유공사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지원 | 석유공사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지원 |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해상 유·가스전 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해상 구조물 설치, 해양환경 대응, 유지·관리 기술 및 인프라 연계를 목적으로 유전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해 가스전 개발시설을 재활용하여 동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동해 가스전 시설의 철거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한 사업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편성 및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8)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출자 필요액을 고려한 출자금 교부 필요

#### ① 결산 현황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5440-304) 사업은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금속[133]의 비축 확대를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517억 6,2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 251,762 | 251,762 | - | - | - | 251,762 | 251,762 | - | - | 200,72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출자 필요액을 고려한 출자금 교부 필요

2024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은 ① 희소금속 비축확대 예산 2,305억 1,900만원, ②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이관 예산 25억 4,300만원, ③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예산 187억원이 편성되었음.

133) 희소금속은 철·구리 등 대량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로서, 정부는 총 35종(56원소)을 희소금속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임.

## ’24년도 예산 편성 내역

○ 비축확대 : 230,519백만원
- 리 튬 : 88.9백만원/톤 × 24.2일분 = 217,361백만원
- 희토류 : 11,844백만원
  네오디뮴 130.2백만원/톤 × 1년분 = 9,114백만원
  디스프로슘 455.0백만원/톤 × 1년분 = 2,730백만원
- 갈륨 : 437.6백만원/톤 × 60일분 = 1,314백만원

○ 비축일원화 : 2,543백만원
-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바나듐 이관 : 28.9백만원/톤 × 88톤

○ 전용 비축기지 구축 : 18,700백만원
- 부지매입비 : 12,847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 5,853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액은 707억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2,517억 6,2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이 28.1%로 저조하게 나타남.

## ’24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예산현액(A) | 실집행액(B) | 집행잔액(A-B) | 실집행률(B/A) |
|---|---|---|---|---|
| **비축확대** | 230,519 | 56,156 | 174,363 | **24.4%** |
| 비축일원화 | 2,543 | 1,597 | 946 | 62.8% |
| 전용 비축기지 구축 | 18,700 | 13,030 | 5,670 | 69.7% |
| **합계** | **251,762** | **70,783** | **180,979** | **28.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24년도 희소금속 비축확대 예산은 리튬 24.2일분, 희토류 1년분, 갈륨 60일분을 비축하기 위하여 2,305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집행액은 561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24.4%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1,743억 6,300만원에 달함.

이는 일부 비축확대 품목의 예산편성시점 대비 구매시점의 단가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134], 리튬의 구매 단가는 예산 편성 단가인 8,890만원/톤의 21.7% 수준인 1,930만원/톤으로 하락하였고, 희토류 중 네오디뮴의 구매 단가는 예산 편성 단가인 1억 3,020만원/톤의 54% 수준인 7,030만원/톤으로 하락하였으며, 디스프로슘의 구매 단가는 예산 편성 단가인 4억 5,500만원/톤의 90%수준인 4억 930만원/톤으로 하락하였음.

**'24년도 비축확대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비교**

| 2024년 예산 편성내역 | 2024년 집행내역 |
|---|---|
| ○ 비축확대 : 230,519백만원<br>-리튬 : 88.9백만원/톤 × 24.2일 = 217,361백만원<br>-희토류<br>· (Nd-Pr) 130.2백만원/톤 × 1년 = 9,114백만원<br>· (Dy) 455백만원/톤 × 1년 = 2,730백만원<br>-갈륨 : 437.6백만원/톤 × 60일 = 1,314백만원 | ○ 비축확대 : 56,156백만원<br>-리튬 : 19.3백만원/톤 × 24.2일 = 47,099백만원<br>-희토류<br>· (Nd-Pr) 70.3백만원/톤 × 1년 = 4,080백만원<br>· (Dy) 409.3백만원/톤 × 1년 =2,456백만원<br>-갈륨 : 840백만원/톤 × 60일 = 2,521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축확대 품목의 단가 하락 등을 감안한 출자 소요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출자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여 출자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임.

134) 전기차, 이차전지 소재 광물 가격이 전기차 산업 캐즘(chasm) 및 글로벌 리튬 생산 확대 등으로 크게 하락함.

## '24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출자금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 출자회차 | 시기 | 출자금액 |
|---|---|---|
| 179회 | '24.1.30. | 90,348 |
| 180회 | '24.2.27. | 100,000 |
| 181회 | '24.3.29. | 61,414 |
| 합계 | | 251,76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희소금속의 경우 세계 각국의 수요 증가 및 주요 생산국의 생산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시점의 단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리튬과 희토류의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희소금속의 구매계약 체결 후 대금지급에는 3~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한 비축확대 품목의 구매를 위한 출자액이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소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4년도 비축확대 대상 희소금속 가격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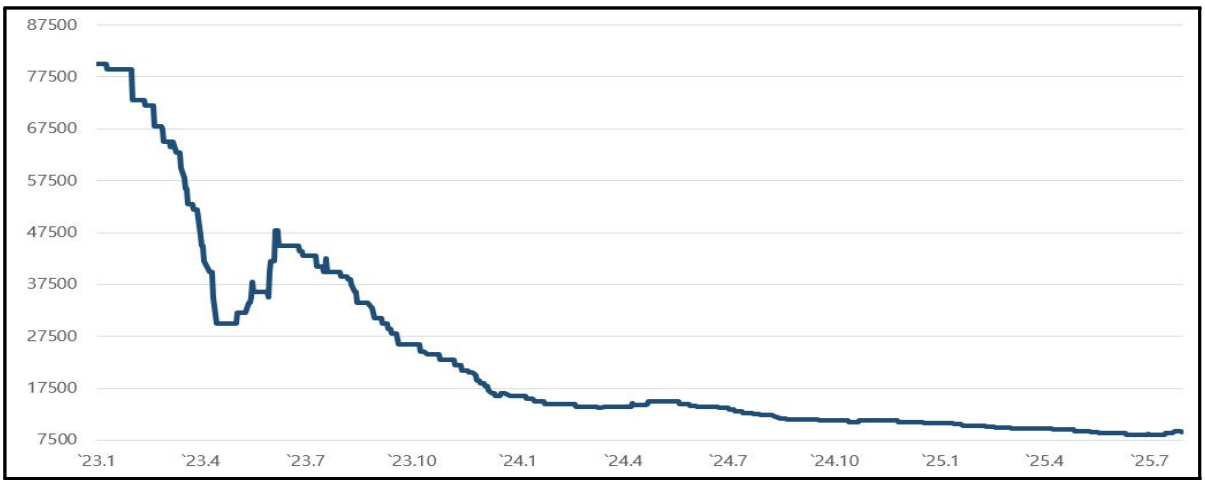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톤)

| 구분 | | 2023. 1분기 | 2023. 2분기 | 2023. 3분기 | 2023. 4분기 | 2024. 1분기 | 2024. 2분기 | 2024. 3분기 | 2024. 4분기 |
|---|---|---|---|---|---|---|---|---|---|
| 리튬 | | 69,961 | 38,250 | 35,164 | 21,071 | 14,552 | 14,389 | 12,126 | 11,142 |
| 희토류 | Nd-Pr | 97,285 | 69,103 | 67,627 | 68,378 | 53,596 | 53,053 | 54,582 | 58,155 |
| | Dy | 327,865 | 293,280 | 330,906 | 368,300 | 274,212 | 273,237 | 245,578 | 238,074 |
| 갈륨 | | 307,981 | 274,260 | 387,731 | 500,769 | 532,800 | 551,923 | 543,269 | 530,2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리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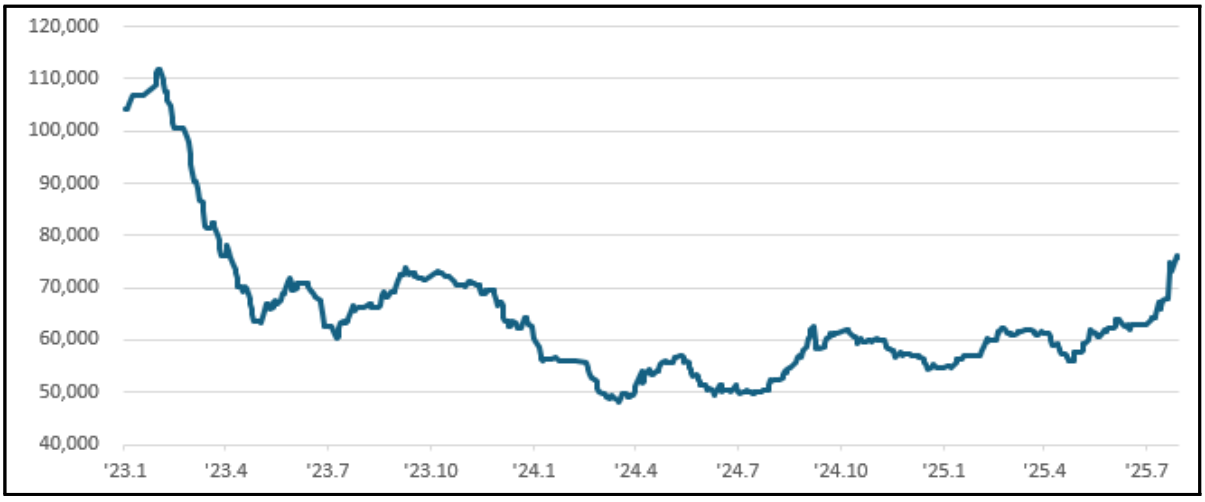
(단위: USD/톤)




출처: Fastmarkets(Lithium carbonate 99.5% battery grade, spot prices cif China, Japan & Korea)

## 희토류(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가격 추이

(단위: USD/톤)




출처: Argus Metals(Praseodymium-Neodymium oxide min 99% fob China)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1분기에 예산으로 편성된 출자금 전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배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는데[135], 출자는 국가가 공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135)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출자금 배정요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자금을 심사하여 기획재정부에 배정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사 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금을 교부함.

위하여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금전적 급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교부된 출자금은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금 교부규모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한편, 예산 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의 희소금속 국제거래가격 차이 등으로 인한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의 출자금 집행잔액은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14억 7,300만원, 134억 8,400만원이 발생한 바 있음.

**최근 3년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계 |
|---|---|---|---|---|
| 예산현액 | 48,791 | 37,232 | 251,762 | 86,023 |
| 실집행액 | 37,318 | 23,748 | 70,783 | 61,066 |
| **집행잔액** | **11,473** | **13,484** | **180,979** | **205,936** |
| 비축확대 | 11,473 | 9,779 | 174,363 | 195,615 |
| 비축일원화 | - | 3,705 | 946 | 4,651 |
| 전용 비축기지 구축 | - | - | 5,670 | 5,67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등 공급국 수출통제에 대비하여 2023년부터 전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비축광산물을 추가 구매하고 있으며, 연도별 집행잔액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희소금속 추가 구매 등의 용도로만 집행되도록 관리 중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집행방식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일반출자의 경우 출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출자금 교부 시 희소금속의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필요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출자 규모를 결정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9)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 ① 결산 현황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5447-301) 사업은 석유·가스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98억 1,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4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 39,817 | 39,817 | - | - | - | 39,817 | 39,817 | - | - | 39,000 |
| 국내외유전개발 | 38,163 | 38,163 | - | - | - | 38,163 | 39,817 | - | - | - |
| 해외광물자원 개발 | 1,654 | 1,654 | - | - | - | 1,654 | -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동 사업은 ‘국내외유전개발’ 사업과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은 해외 광물자원(유연탄·우라늄·

철·동·아연·니켈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136]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억 5,4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집행률 0%).

'24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해외광물자원 개발 | 1,654 | 1,654 | - | - | - | 1,654 | - | - | 1,654 | - |

*불용액은 전액 국내외유전개발사업으로 내역조정하여 집행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투자금 대비 적은 융자예산으로 인한 저조한 융자 수요, ② 재무상황 악화, 투자계획 철회 등 수요 제출 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융자 미신청, ③ 융자 승인 요건 미달로 인한 융자심의회 부결 등으로 융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은 2017년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 내역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7년 0%, 2018년 5.8%, 2019년 4.3%, 2020년부터

136) 동 사업은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다가 2016년 중단되었고, 2017년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융자지원비율과 감면비율이 변경되었음. 융자지원비율은 사업비의 80%에서 30%로 감소되었고, 특별융자의 감면비율은 융자금의 100%에서 70%로 감소되었음. 2024년 융자지원비율과 감면비율이 다시 변경되었는데, 융자지원비율은 정책적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50%로 상향하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30%로 적용하며, 특별융자의 감면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하였음.

2024년까지 0%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예산액 | 10,878 | 22,412 | 23,580 | 1,750 | 1,816 | 880 | 2,692 | 1,654 |
| 예산현액(A) | 10,878 | 22,412 | 23,580 | 1,750 | 1,816 | 880 | 2,692 | 1,654 |
| 집행액(B) | 0 | 1,292 | 1,023 | 0 | 0 | 0 | 0 | 0 |
| 불용액(A-B) | 10,878 | 21,120 | 22,557 | 1,750 | 1,816 | 880 | 2,692 | 1,654 |
| 집행률(B/A) | 0% | 5.8% | 4.3% | 0% | 0% | 0% | 0% | 0% |

주: 불용액 중 '18년 11억 6,900만원, '22년 8억 8,000만원, '23년 26억 9,200만원, '24년 16억 5,400만원을 국내외유전개발사업으로 내역조정하여 집행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① 정부 지원 축소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민간의 신규사업 투자 위축, ②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광물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 및 ③ 산업통상자원부의 융자수요 예측 실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연도별 집행부진 사유**

| 연도 | 집행부진사유 |
|---|---|
| 2017년 | 융자 지원비율 축소 등에 따른 기업 투자위축으로 융자 미신청 |
| 2018년 | 경제성 부족에 따른 수요기업의 신규투자 철회, 융자조건 미달 등으로 융자수요 10개 사업중 1개 사업(13억원)만 융자 집행 |
| 2019년 | 협상불발, 사업포기, 융자조건 미달 등으로 융자수요 6개 사업 중 2개 사업(10억원)만 융자 집행 |
| 2020년 |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현지조사 지연 및 경제성 부족 등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중단 등으로 융자 미신청 |
| 2021년 |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신규사업 보류 및 투자계획 철회 등으로 융자 미신청 |

| 연도 | 집행부진사유 |
|---|---|
| 2022년 | 코로나19 등 현지사정으로 사업추진 연기 및 탄소중립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보류 등으로 융자 미신청 |
| 2023년 | 사업의 경제성평가 및 심의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부족 등 융자 승인요건 불충족 |
| 2024년 | 투자금 대비 적은 융자예산으로 인해 저조한 융자 수요, 수요 제출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융자 미신청, 융자 승인 요건 미달로 인한 융자심의회 부결 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 시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137]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138]로 실제 투자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매년 집행부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137) ○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19년 결산)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중단되는 원인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 지원 수요의 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
○ 국회 산자중기위 검토보고서('20년 결산) :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의 융자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국회 결산('20년 결산) : 수요예측 실패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국회 결산('22년 결산) : 융자수요 예측실패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것
○ 국회 산자중기위 검토보고서('23년 결산) : 융자수요에 대한 예측을 보다 강화하여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138) ○ '19년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기업의 융자수요 중 협상타결, 계약체결 등 실제 투자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 수요를 반영하여 '21년 예산안 마련('21.4.30. 조치완료)
○ '20년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① 신규 융자수요 감소 등에 따른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22년 해외광물자원개발 예산 감액 편성, ② 수요기업의 융자 미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의사·시기 등을 정기적(상·하반기)으로 확인·관리, ③ 신규 융자수요 발굴을 위해 예상 수요기업 대상으로 홍보 및 융자신청 안내('22.1.31. 조치완료)
○ '22년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① 융자 실수요업체의 실질적인 자금수요와 최근 3년간 융자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4년 예산 감액 편성, ② 수요기업의 융자 미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진행현황과 융자 신청 시기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관리할 계획('24.1.11. 조치완료)

한편, 동 사업은 2024년도까지 ‘국내외유전개발’ 사업과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2개의 내역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음.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비교

| 2024년 | 2025년 |
|---|---|
| ○ **국내외유전개발** : 38,163백만원 | ○ **탐사사업** : 37,864백만원 |
| ○ **해외광물자원개발** : 1,654백만원 | ○ **개발·생산사업** : 1,136백만원 |

내역사업 통합 사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원별로 국한되게 융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국가 자원안보에 직결되는 정책적 중요사업[139]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 및 기업의 사업 추진 변동성을 고려하여 통합된 융자예산 및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2개 내역사업의 통합은 ‘국내외유전개발’ 사업에만 융자 지원이 집중되어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등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 볼 수 없고, 내역사업별 집행실적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역사업의 통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9) 운영권 확보 사업, 전략광종 및 희소금속 확보 사업, 국내 도입 가능 사업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수요에 대한 예측을 보다 강화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의 해외광물자원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0) 수소생산기지 구축: 추가적인 구축 지연 최소화 필요

### ① 결산 현황

‘수소생산기지 구축(5804-310)’은 국내 주요 거점에 수소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보조사업으로, ① ‘수전해 공급 인프라 구축’ 및 ②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현액 81억 2,000만원이 한국수소연합에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수소생산기지 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수소생산기지 구축 | 8,120 | 8,120 | - | - | - | 8,120 | 8,120 | - | - | 12,83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추가적인 구축 지연 최소화 필요

동 사업은 수소차·버스 기반 교통망 조성 등 국내 수소경제 대중교통망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역에 수소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5년 6월 기준 총 20개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2019년에 편성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수소 출하센터 구축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내역사업으로 수전해 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3년부터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수소생산기지 구축 현황('19~'25년)

| 구분 | 사업기간 | 지역 | 수소 생산규모 |
|---|---|---|---|
| 소규모(7) | '19~'20 | 경남 창원 | 330톤/年(1톤/日) (460Nm3/h) |
| | | 강원 삼척 | 430톤/年(1.3톤/日) (300Nm3/h×2기) |
| | | 경기 평택 | 2,340톤/年(7.1톤/日) (300Nm3/h+3,000Nm3/h) |
| | | 부산 기장 | 430톤/年(1.3톤/日) (300Nm3/h×2기) |
| | | 대전 동구 | 430톤/年(1.3톤/日) (300Nm3/h×2기) |
| | | 인천 중구 | 430톤/年(1.3톤/日) (300Nm3/h×2기) |
| | | 전북 완주 | 430톤/年 (300Nm3/h×2기) |
| 중대규모(3) | '20~'22 | 광주 | 1,320톤/年 (2,000Nm3/h) |
| | | 경남 창원 | 3,300톤/年 (5,000Nm3/h) |
| | | 경기 평택 | 4,950톤/年 (7,500Nm3/h) |
| 출하센터(3) | '21~'22 | 전남 여수 | 2,560톤/年 (3,600Nm3/h) |
| | | 울산 남구 | 4,950톤/年 (6,950Nm3/h) |
| | | 충남 서산 | 4,950톤/年 (6,950Nm3/h) |
| 수전해(4) | '22~계속 | 전북 부안 | 331톤/年 (466Nm3/h) |
| | | 강원 평창 | 356톤/年 (500Nm3/h) |
| | | 강원 동해 | 356톤/年 (500Nm3/h) |
| | | 충남 보령 | 356톤/年 (500Nm3/h) |
| 탄소포집(3) | '23~계속 | 충북 청주 | 990톤/年 (900Nm3/h) |
| | | 충남 당진 | 660톤/年 (1,200Nm3/h) |
| | | 인천 | 430톤/年 (602Nm3/h)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수소생산기지는 총 7개소로 2025년에 신규로 선정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2개소(당진, 인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소의 구축이 모두 지연 중인 상황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현액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16.1%임.

'24년도 수소생산기지 구축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본예산 | 추경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8,120 | 8,120 | 8,120 | 8,120 | 8,587 | 16,707 | 2,686 | 8,120 | 194 | 14,007 | 14 | **16.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먼저, 2022년부터 부안과 평창에 구축 중인 수전해 공급 인프라 기지는 수소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수전해 고압스택 장비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상황[140]이었고 이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음.

또한, 2023년에 구축을 시작한 동해와 보령의 수전해 공급 인프라 기지는 당초 구매하려던 업체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수전해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설비 도입을 다시 검토하면서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음.

140)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전해 고압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파열시험 대상에서 수전해 스택을 제외하는 규제개선 논의를 진행했으나, 규제개선 완료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였다고 설명함.

마지막으로, 청주에 건설 중인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는 당초 계획 대비 산업단지 내 부지 평탄화 및 옹벽 시공 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착공이 2025년 6월로 지연되었음.

결과적으로 2025년 5월 기준 기지별로 단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한 상황임.

**수소생산기지 설비 도입 지연 일정 상황**

| 구분 | 지역 | 내역 | 당초 계획 | 변경 |
|---|---|---|---|---|
| 수전해 | 전북 부안 | 수전해 설비 도입 | '25.6 | '25.11 (+5개월) |
| | | 출하설비, 순수제조장치 도입 | '25.6 | '25.11 (+5개월) |
| | 강원 평창 | 수전해 설비 도입, 통합 EPC | '25.9 | '25.9 |
| | 강원 동해 | 수전해 설비 도입 | '26.4 | '26.8 (+4개월) |
| | | 수전해 설치공사 완료 | '26.4 | '26.11 (+7개월) |
| | 충남 보령 | 수전해 설비 도입 | '25.10 | '25.12 (+2개월) |
| | | 설계용역 완료 | '25.10 | '26.09 (+11개월) |
| 탄소 포집 | 충북 청주 | 수소압축기 도입 | '25.7 | '25.11 (+4개월) |
| | | 탄소포집설비 도입 | '25.12 | '25.12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에 구축이 끝나야 하는 부안·평창 기지는 2025년 이후로 완료 시점이 미루어진 상황이고 아직 사업기간이 남은 기지의 경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부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집행 부진과 사업 추진 지연이 일부 기지에 국한되지 않고 구축 중인 모든 수소생산기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의 선도적인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이라는 동 사업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동 사업은 기지별 사업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연차에 따라 정액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하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마지막 3년차에 이월된 보조금을 합해 무리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집행 지연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연차별 보조금 규모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Ⅳ.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 과 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증 감 (B-A) | 증 감 사 유 |
|---|---|---|---|---|
| 합 계 | 70,818 | 87,218 | 16,400 | |
| 기타재산수입 | 4,380 | 7,680 | 3,300 | - 출연금·보조금사업 정산이자 반납금 증가 |
| 기타경상이전수입 | 66,438 | 79,538 | 13,100 | - 출연금·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2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872억 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08억 1,800만원 대비 164억원(23.2%)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출연사업 및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이 예산액보다 131억원 증가하였고, 출연사업 및 보조사업의 정산이자 반납금이 예산액보다 33억원 증가되었기 때문임.

##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불납결손 및 미수납 사유 |
|---|---|---|---|---|---|
| 합 계 | 87,218 | 86,656 | 0 | 562 | |
| 기타재산수입 | 7,680 | 7,605 | 0 | 74 | 연말 징수결정분 납기미도래, 지자체 예산미반영 등 사유 |
| 기타경상이전수입 | 79,538 | 79,051 | 0 | 488 | 연말 징수결정분 납기미도래, 지자체 예산미반영 등 사유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특회계의 2024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72억 1,800만원 대비 5억 6,200만원(0.6%)이 감소한 866억 5,600만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주로 연말 징수 결정분의 납기 미도래 및 지자체 예산 미반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2025년 세입으로 귀속 예정임.

## 2. 세출결산

###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특회계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지역자율계정 107억 8,900만원, 지역지원계정 1조 2,006억 2,0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7억 5,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8억 900만원 총 1조 2,25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4,400만원, 전용액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1조 2,264억 1,400만원이었음. 이 중 1조 2,194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43억 9,2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6억 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음.

#### ① 지역자율 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 | 전년 이월 | 변 경 | | | 예산 현액 | 지출 | 차년 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 계 | 10,789 | - | - | - | - | 10,789 | 10,686 | - | 103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 10,789 | - | - | - | - | 10,789 | 10,686 | - | 103 |
| □에너지및자원개발(115) | 10,789 | - | - | - | - | 10,789 | 10,686 | - | 103 |
| ○에너지자원정책(5100) | 10,789 | - | - | - | - | 10,789 | 10,686 | - | 103 |
|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10,789 | - | - | - | - | 10,789 | 10,686 | - | 103 |

#### ② 지역지원 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 | 전년 이월 | 변 경 | | | 예산 현액 | 지출 | 차년 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 계 | 1,200,620 | 444 | - | ±50 | - | 1,201,064 | 1,194,171 | 4,392 | 2,501 |

| 구 분 | 예산 | 전년 이월 | 변 경 | | | 예산 현액 | 지출 | 차년 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 계 | 1,200,620 | 444 | - | ±50 | - | 1,201,064 | 1,194,171 | 4,392 | 2,501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 1,153,809 | 434 | - | ±50 | - | 1,154,243 | 1,148,398 | 4,364 | 1,481 |
| □산업혁신지원(117) | 1,153,809 | 434 | - | ±50 | - | 1,154,243 | 1,148,398 | 4,364 | 1,481 |
|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2700) | 5,376 | - | - | - | - | 5,376 | 5,376 | - | - |
| · 경제자유구역지원(2733) | 5,376 | - | - | - | - | 5,376 | 5,376 | - | - |
| ○지역경제활성화(3300) | 783,193 | 434 | - | ±50 | - | 783,627 | 777,812 | 4,364 | 1,451 |
| · 기업입지환경개선(3333) | 397,197 | - | - | - | - | 397,197 | 397,197 | - | - |
| · 지방시대위원회운영(3334) | 3,946 | 434 | - | ±50 | - | 4,380 | 3,426 | 314 | 640 |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62) | 103,037 | - | - | - | - | 103,037 | 98,987 | 4,050 | - |
| · 지역투자유치활성화(3363) | 208,826 | - | - | - | - | 208,826 | 208,015 | - | 811 |
|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3365) | 70,187 | - | - | - | - | 70,187 | 70,187 | - | - |
| ○주력산업진흥(3500) | 1,378 | - | - | - | - | 1,378 | 1,378 | - | - |
| · 수송기기기술개발(3551) | 1,378 | - | - | - | - | 1,378 | 1,378 | - | - |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4900) | 363,780 | - | - | - | - | 363,780 | 363,772 | - | 8 |
|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4901) | 363,780 | - | - | - | - | 363,780 | 363,772 | - | 8 |
| ○회계기금간거래(8000) | 82 | - | - | - | - | 82 | 60 | - | 22 |
| · 회계기금간거래(8001) | 82 | - | - | - | - | 82 | 60 | - | 22 |
| <교통및물류(120)> | 46,811 | 10 | - | - | - | 46,821 | 45,773 | 28 | 1,020 |
| □물류등기타(126) | 46,811 | 10 | - | - | - | 46,821 | 45,773 | 28 | 1,020 |
|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2700) | 46,811 | 10 | - | - | - | 46,821 | 45,773 | 28 | 1,020 |
| · 경제자유구역지원(2733) | 46,811 | 10 | - | - | - | 46,821 | 45,773 | 28 | 1,020 |

## ③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 | 전년 이월 | 변 경 | | | 예산 현액 | 지출 | 차년 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 계 | 6,752 | - | - | - | - | 6,752 | 6,752 | - | -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 6,752 | - | - | - | - | 6,752 | 6,752 | - | - |
| □산업혁신지원(117) | 6,752 | - | - | - | - | 6,752 | 6,752 | - | - |
| ○지역경제활성화(3300) | 6,752 | - | - | - | - | 6,752 | 6,752 | - | - |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62) | 2,892 | - | - | - | - | 2,892 | 2,892 | - | - |
| · 지역투자유치활성화(3363) | 3,860 | - | - | - | - | 3,860 | 3,860 | - | - |

### ④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 | 전년 이월 | 변 경 | | | 예산 현액 | 지출 | 차년 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 계 | 7,809 | - | - | - | - | 7,809 | 7,809 | - | -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 7,809 | - | - | - | - | 7,809 | 7,809 | - | - |
| □에너지및자원개발(115) | 400 | - | - | - | - | 400 | 400 | - | - |
| ○에너지자원정책(5100) | 400 | - | - | - | - | 400 | 400 | - | - |
| ·에너지이용합리화(5139) | 400 | - | - | - | - | 400 | 400 | - | - |
| □산업혁신지원(117) | 7,409 | - | - | - | - | 7,409 | 7,409 | - | - |
| ○지역경제활성화(3300) | 7,409 | - | - | - | - | 7,409 | 7,409 | - | -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72) | 3,034 | - | - | - | - | 3,034 | 3,034 | - | - |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3375) | 4,375 | - | - | - | - | 4,375 | 4,375 | - | - |

## (2) 예산변경 내역

### ① 전년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합 계 | 444 | |
| 전년도 이월 | 434 | ○ 지방시대위원회지원<br>- 용역 미완료에 따른 잔금 이월 |
| | 10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br>- 용역 미완료에 따른 잔금 이월 |

전년도 이월액은 4억 4,400만원이며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사업에서 용역 미완료에 따른 잔금 4억 3,400만원 이월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사업에서 용역 미완료에 따른 잔금 1,000만원 이월이 발생하였음.

② 전 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합 계 | ±50 | |
| 전 용 | ±50 | ○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 |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음.

③ 이 체 : 해당사항 없음

④ 예비비 사용액 : 해당사항 없음

(3)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합 계 | 4,392 | |
| 차년도 이월 | 314 | ○ 지방시대위원회지원<br>- 용역 미완료에 따른 잔금 이월 |
| | 4,050 | ○ 사회적경제혁신성장<br>- 지자체(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한 이월 |
| | 28 | ○ 경제자유기획단운영<br>- 용역 미완료에 따른 잔금 등 이월 |

차년도 이월액은 43억 9,200만원으로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사업에서 용역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일반연구비 3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회적

경제혁신성장 사업에서 지자체의 지방비 비매칭 등으로 인해 40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사업에서 용역 미완료에 따른 2,800만원 잔금 등 이월이 발생하였음.

### (4)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합계 | 2,604 | |
| 불용 | 103 | ○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자율계정) 집행잔액<br>- 전남 담양군에서 사업포기로 인한 미교부(총 270백만원 중 167백만원 교부 후 사업포기하여 103백만원 불용) |
| | 430 | ○ 지방시대위원회인건비 집행잔액<br>- 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
| | 210 | ○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집행잔액<br>- 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잔액 |
| | 22 | ○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br>-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금 집행잔액 |
| | 811 | ○ 지역투자촉진 집행잔액<br>- 지방투자보조금 집행잔액 |
| | 8 | ○ 투자유치기반조성 집행잔액<br>- 보조급 지급 조건(계획 대비 고용 인원) 미충족 |
| | 20 | ○ 경제자유기획단운영 집행잔액<br>- 경제자유구역단 운영경비 집행잔액 |
| | 1,000 | ○ 주요기반시설지원 집행잔액<b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사업(자치단체 자본보조) |

불용액 26억 400만원은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자율계정) 사업의 지자체 사업포기로 1억 300만원, 지방시대위원회인건비 사업의 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4억 3,000만원,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사업의 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1,0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사업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금 미집행 2,200

만원, 지역투자촉진 사업의 시·도별 1·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 후 집행잔액 발생 등 사유로 8억 1,1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의 임대료지원 내역사업에서 보조금 지급 조건(계획 대비 고용 인원) 미충족 사유로 800만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사업의 운영경비 집행잔액 2,000만원, 주요기반시설지원 사업의 지방비 비매칭 등 사유로 10억원이 발생하였음.

# 3.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 | 주석 | 2024 | | 2023 | |
|---|---|---|---|---|---|
| **자산** | | | | | |
| **Ⅰ.유동자산** | | | **1,090,075,666** | | **10,502,257,139**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6 | | 71 |
| 2. 미수채권 | | 749,665,830 | | 10,329,813,878 | |
| 미수채권대손충당금 | | - | 749,665,830 | 876,810 | 10,328,937,068 |
| 3. 기타유동자산 | | | 340,409,780 | | 173,320,000 |
| **Ⅱ.투자자산** | | | **184,536,600,000** | | **-** |
| 1. 장기투자증권 | | | 184,536,600,000 | | - |
| **Ⅲ.일반유형자산** | | | **646,574,551,981** | | **605,977,863,605** |
| 1. 토지 | 8.3) | | 646,082,018,351 | | 605,408,388,764 |
| 2. 기계장치 | 8.3) | 37,826,810 | | 37,826,810 |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 33,206,954 | 4,619,856 | 30,795,172 | 7,031,638 |
| 3.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8.3) | 640,558,562 | | 615,306,262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 504,588,883 | 135,969,679 | 447,946,590 | 167,359,672 |
| 4. 기타일반유형자산 | 8.3) | 438,194,192 | | 438,194,192 | |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 86,250,097 | 351,944,095 | 43,110,661 | 395,083,531 |
| **Ⅳ.사회기반시설** | | | - | | - |
| **Ⅴ.무형자산** | | | **15,048,147** | | **39,181,344** |
| 1. 소프트웨어 | | | 15,048,147 | | 39,181,344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자산계** | | | **832,216,275,794** | | **616,519,302,088** |
| **부채** | | | | | |
| **Ⅰ.유동부채** | | | **16,718,193,324** | | **30,527,213,985** |
| 1. 기타유동부채 | | | 16,718,193,324 | | 30,527,213,985 |
| **Ⅱ.장기차입부채** | | | - | | - |
| **Ⅲ.장기충당부채** | | | **90,190,247** | | **44,457,841**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3 | | 90,190,247 | | 44,457,841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 **부채계** | | | **16,808,383,571** | | **30,571,671,826** |
| **순자산** | | | | | |
| **Ⅰ.기본순자산** | | | - | | -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 | **735,111,067,445** | | **506,877,186,674** |
| **Ⅲ.순자산조정** | 7 | | **80,296,824,778** | | **79,070,443,588** |
| **순자산계** | | | **815,407,892,223** | | **585,947,630,262** |
| **부채와순자산계** | | | **832,216,275,794** | | **616,519,302,08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4년도 총자산은 8,322억원으로 전기 6,165억원 대비 2,157억원(35.0%) 증가하였음.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 | 주석 | 2024 | | | 2023 |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 **985,501,700,501** | **(80,970,183,662)** | **904,531,516,839** | **818,866,432,340** | **(81,838,760,005)** | **737,027,672,335** |
| 1.에너지자원정책 | | 11,085,596,000 | - | 11,085,596,000 | - | - | - |
| 2.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 | 5,376,000,000 | (4,938,606,319) | 437,393,681 | 7,918,000,000 | (4,611,826,536) | 3,306,173,464 |
| 3.지역경제활성화 | | 611,626,672,240 | (65,478,515,615) | 546,148,156,625 | 598,057,767,239 | (46,408,089,932) | 551,649,677,307 |
| 4.주력산업진흥 | | 1,378,000,000 | - | 1,378,000,000 | 2,742,000,000 | - | 2,742,000,000 |
| 5.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 | 310,276,324,320 | (4,425,103,964) | 305,851,220,356 | 144,958,525,314 | (23,473,441,781) | 121,485,083,533 |
| 6.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 | 45,759,107,941 | (6,127,957,764) | 39,631,150,177 | 65,190,139,787 | (7,345,401,756) | 57,844,738,031 |
| **Ⅱ.관리운영비** | | | | - | | | - |
| **Ⅲ.비배분비용** | | | | - | | | - |
| **Ⅳ.비배분수익** | | | | - | | | **147,846,300** |
| 1.기타수익 | | | | - | | | 147,846,300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 **904,531,516,839** | | | **736,879,826,035** |
| **Ⅵ.재정운영결과(Ⅴ-Ⅵ)** | | | | **904,531,516,839** | | | **736,879,826,03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9,855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8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총 9,045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 | 주석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전기 기초순자산** | | - | **462,829,231,712** | **79,070,443,588** | **541,899,675,300** |
| 1. 보고금액 | | - | 462,829,231,712 | 79,070,443,588 | 541,899,675,300 |
| **Ⅱ.재정운영결과** | | | **736,879,826,035** | | **736,879,826,035** |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 **780,927,780,997** | | **780,927,780,997** |
| 1. 재원의조달 | | | 838,263,567,434 | | 838,263,567,434 |
| (1) 국고수입 | | | 837,154,160,990 | | 837,154,160,990 |
| (2) 제재금수익 | | | 977,276,370 | | 977,276,370 |
| (3) 무상이전수입 | | | 132,130,074 | | 132,130,074 |
| 2. 재원의이전 | | | 57,335,786,437 | | 57,335,786,437 |
| (1) 국고이전지출 | | | 57,221,966,190 | | 57,221,966,190 |
| (2) 기타재원이전 | | | 113,820,247 | | 113,820,247 |
| **Ⅳ.조정항목** | | - | - | - | -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 - | **506,877,186,674** | **79,070,443,588** | **585,947,630,262**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 - | **506,877,186,674** | **79,070,443,588** | **585,947,630,262** |
| 1. 보고금액 | | - | 506,877,186,674 | 79,070,443,588 | 585,947,630,262 |
| **Ⅶ.재정운영결과** | | | **904,531,516,839** | | **904,531,516,839** |
|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 | **1,132,765,397,610** | | **1,132,765,397,610** |
| 1. 재원의조달 | | | 1,219,421,195,870 | | 1,219,421,195,870 |
| (1) 국고수입 | | | 1,219,418,279,550 | | 1,219,418,279,550 |
| (2) 기타재원조달 | | | 2,916,320 | | 2,916,320 |
| 2. 재원의이전 | | | 86,655,798,260 | | 86,655,798,260 |
| (1) 국고이전지출 | | | 86,655,798,260 | | 86,655,798,260 |
| **Ⅸ.조정항목** | | - | - | **1,226,381,190** | **1,226,381,190** |
| 1. 자산재평가이익 | 7, 8.3) | - | - | 1,226,381,190 | 1,226,381,190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 - | **735,111,067,445** | **80,296,824,778** | **815,407,892,22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8,154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5,859억원 대비 2,295억원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9,045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866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조 2,194억원 및 조정항목인 자산재평가이익 12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별 첨〉 자산 · 부채조정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자산 | 부채 |
|---|---|---|
|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830,566,043,025** | - |
| 1. 국가채권현재액 | 562,750,720 | - |
| 2. 국유재산현재액 | 829,843,582,551 | - |
| 3. 물품현재액 | 159,709,754 | - |
| 4. 국가채무합계 | - | -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 **832,216,275,794** | **16,808,383,571** |
| **Ⅲ. 차이내역 (Ⅱ- Ⅰ=A+B+C+D+E)** | **1,650,232,769** | **16,808,383,571**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 -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 -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1,302,360,690 | 16,808,383,571 |
| 4. 대상차이(D) | 347,872,079 | - |
| 5. 기타차이(E) | - | - |

< 주요내역 >

① 결산조정항목차이 :

- 선급금 340,409,780원, 미수채권 186,915,110원, 유형자산 775,035,800원
- 미지급금 16,718,193,324원, 충당부채 90,190,247원

② 대상차이 :

- 국고예금 56원, 임차개량자산 347,872,023원

# 4. 검토의견

## (1)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일반연구비 이월 집행 주의 필요

### ① 결산 현황

‘지방시대위원회지원’(3334-302)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41]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7억 800만원 중 31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지방시대위원회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지방시대위원회 지원 | 3,274 | 3,274 | 434 | ±110 | - | 3,708 | 3,184 | 314 | 210 | 3,29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일반연구비 이월 집행 주의 필요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일반연구비’(260-01목) 예산액은 7억 6,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4억 3,4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1억 9,400만원 중 8억 400만원을 집행(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7억 6,0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일반연구비(260-01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일반연구비 | 760 | 760 | 434 | - | - | 1,194 | 804 | 314 | 76 | 67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일반연구비를 통해 총 13개 과제(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과제를 제외한 것임)를 시행하였는데, 이 중 1개 과제(지방 인구위기 원인 및 영향 진단과 대응 전략 연구)만이 2024년도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2개 과제는 2024년도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으로 일부 예산을 이월하였음.

# 2024년도 일반연구비 연구과제 상세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계약액 | 집행액 | 이월액 | 계약기간 | 제출일 | 수행기관 |
|---|---|---|---|---|---|---|
| 지방 인구위기 원인 및 영향 진단과 대응 전략 연구 | 40 | 40 | 0 | '24.6. ~'24.12. | '24.12.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지방대학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47 | 33 | 14 | '24.7. ~'25.2. | '25.2.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지방시대위원회 주요 정책과 연계한 비수도권 청년 지방 정착 촉진 방안 연구 | 50 | 35 | 15 | '24.7. ~'24.12. | '24.12. | (사)대한지리학회 |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50 | 0 | 50 | '24.7. ~'25.3. | '25.3. | 주식회사 아킵컴퍼니 |
|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연구 | 45 | 32 | 13 | '24.7. ~'25.2. | '25.2. | 한국교육개발원 |
|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노인성·경증질환 중심으로) | 45 | 22 | 23 | '24.7. ~'25.2. | '25.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평가 20년 고찰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 45 | 0 | 45 | '24.8. ~'24.12. | '24.12. | 산업연구원 |
| 로컬코디네이터(지역리더) 양성 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 20 | 0 | 20 | '24.11. ~'25.3. | '25.3.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20 | 14 | 6 | '24.11. ~'25.2. | '25.2. | 주식회사 써치앤델브 |
| 중앙-지방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방 R&D사업의 전주기적 성과 제고방안 연구 | 45 | 32 | 13 | '24.12. ~'25.6. | '25.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발전방안 연구 | 45 | 0 | 45 | '24.12. ~'25.6. | '25.6. |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경제특구 및 지역혁신자원 등을 활용한 기회발전특구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45 | 32 | 14 | '24.12. ~'25.6. | '25.6.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182 | 127 | 55 | '24.12. ~'25.10. | 진행중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로컬코디네이터(지역리더) 양성 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등 2개 과제는 2024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앙-지방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방 R&D사업의 전주기적 성과 제고방안 연구’ 등 4개 과제는 2024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월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임.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조[142]에서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그 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이월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의 원칙을 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연구용역비(260목)[143] 대해서는 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연말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14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43) 260목, 일반연구비(260-01) 및 정책연구비(260-02)로 구성됨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이월 관련 내용 발췌

1-5. 예산의 이월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1-1. 지출 효율성 제고

나.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는 2023년도 일반연구비 예산 7억 6,000만원 중 57.1%에 해당하는 4억 3,400만원을 이월한 데 이어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 예산 7억 6,000만원 중 41.3%에 해당하는 3억 1,4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연례적으로 상당 규모의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집행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최근 3년간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일반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이월액 제외) | 집행액 (이월액 제외)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이월액 제외) |
|---|---|---|---|---|---|---|---|---|
| 2022* | 760 | 341 | - | - | 1,101<br>(760) | 733<br>(392) | 345 | 22 |
| 2023 | 760 | 345 | - | - | 1,105<br>(760) | 572<br>(252) | 434 | 99 |
| 2024 | 760 | 434 | - | - | 1,194<br>(760) | 804<br>(370) | 314 | 76 |

* 2022년까지는 일반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이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긴급 현안 발생, 정책 제반사정 변경 등에 따라 주로 하반기에 입찰공고를 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자 선정 등 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성격이 일반적인 사업 수준 이상으로 긴급한 정책 발굴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예산의 일반 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시대위원회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연말에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용역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연구는 연초에 공고하여 발주하는 등 사업수행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일반연구비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연내 수행 필요

### ① 결산 현황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4901-301)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산학연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55억 9,600만원이 전액 교부됨.

’24년도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 5,596 | 5,596 | - | - | - | 5,596 | 5,596 | - | - | 5,03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연내 수행 필요

내역사업인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를 활성화[144]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지방비 50%)임.

14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ㅁ 개선 및 권고 사항
○ 자체평가의견에 더하여 균형발전 기여효과의 3개 사례 제시가 모두 수도권(IGC)에 치중돼 있어 비수도권 지원에 따른 우수 성과 발굴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캠퍼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조사용역 과제별로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총 2억원씩 편성하여 2023년에는 충북, 강원 경제자유구역청, 2024년에는 부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조사용역을 발주·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145](포항지역)에서 조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임.

그런데 조사용역 계약은 매년 8월 이후에 체결되어 왔으며, 2025년 6월말 현재에도 조사용역 사업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계약 체결 지연 및 사고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임.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의 계약체결현황**

(단위: 천원)

| 지역 | 계약건명 | 공고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연내 집행액) |
|---|---|---|---|---|---|
| 충북 | 오송국제학교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3.6.~'23.7. | '23.8.~'24.7. | 171,928 | 77,000 |
| 강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 - | - | - | - |
| 부산 | 명지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연구용역 | '24.9.~'24.10. | '24.11.~'25.9. | 192,500 | 125,125 |

주: * 재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자체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해당 용역은 발주하지 않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사업 전년도 2~3월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4~5월에 지원지역을 선정함. 이후 통상 사업 당해연도 4~6월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예산을 편성·확정한 후 6~8월에 국비를 교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반기에 사업공고문 게시 및 계약체결을 하

145)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 영천, 경산시 일원을 포함하나, 포항지역에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며, 통상 연구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차년도 하반기에 종료되어 왔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비 추경 시기, 사업공고 및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면 조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임.

그러나 지원지역은 사업 전년도에 선정되므로 선정지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시·도 본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 본예산 의결·확정 시점에 따라서는 국비 확보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시·도 본예산이 의결되었는데 시·도 본예산에 해당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지방자치법」[146]에 따르면 시·도는 매년 11월 11일까지 시·도의회에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12월 17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2024년도 국가 예산안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2023년 12월 21일에 의

146) 「지방자치법」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결되고 12월 26일에 정부이송되었으므로 시·도 본예산 의결 전에 조사용역 비용을 반영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2024년 12월 10일에 의결되고 12월 13일에 정부이송되었으므로, 해당 시·도에서 국가재정 확보여부를 파악하여 시·도 본예산도 확보할지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방비 반영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2024년도 예산에 따른 계약이 11월에 체결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고, 2023년 4~5월부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지역에 대한 유치타당성 조사용역이 2025년 9월에 종료되면 이를 활용하여 실제 교육연구기관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므로 사업효과가 지연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3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으므로,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이에 따라 실제 교육연구기관 유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2024년에는 9~10월에 사업이 공고되고 11월에 계약이 체결되

었는데, 우선 2024년 내 연구기간은 2개월(18%=2개월/11개월)이지만, 선금비율은 65%로 비교적 높게 설정됨.

2023년도 8월에 시작되었던 오송국제학교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구수행기간에 맞춰 선금비율을 44.8% 정도로 조정하였으므로, 계약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하면 선금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용역 지원지역 선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계획 및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용역이 연내에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투자유치기반조성: 현금지원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및 지급방식 유연화 필요

#### ① 결산 현황

‘투자유치기반조성’(4901-302)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내복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기반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579억 1,400만원 중 3,579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함.

’24년도 투자유치기반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투자유치 기반조성 | 357,914 | 357,914 | - | - | - | 357,914 | 357,906 | - | 8 | 364,24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현금지원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관리강화 및 지급방식 유연화 필요

내역사업인 ‘현금지원’은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장시설의 신·증설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자계획서를 제출

하고 평가위원회, 한도산정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간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현금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지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일정 요건[147] 충족) |
| 지원요건 |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br>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등 고려 |
| 지원자금 | 토지·건물 매입비, 임대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 등 |
| 지원한도 | 40~50% (2025년 한시 50~75%) |
| 국고<br>보조율 |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기회발전특구 80%<br>※ 첨단기술·연구개발(10%)과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분야(10%)는<br>80%의 한도 내에서 상향 가능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이후 동 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예산이 500억원으로 급증한데 비해 집행이 60억 1,800만원으로 부진하였고 253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186억원은 세수부족으로 이월함. 2020년에는 집행부진 가능성 및 재난지원금 예산확보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00억원을 감액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0억원을 증액한 후 예산현액 280억원 중 88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21년도로 191억 2,400만원을 이월한 바 있는데,

14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일 것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제1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제2호) 등
*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 감면 가능

이는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2018년 이후 현금지원 사업 결산 및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개사)

| 사업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지원 기업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2018 | 6,000 | 6,000 | - | - | 6,000 | 6,000 | - | - | 3 |
| 2019 | 50,000 | 50,000 | - | - | 50,000 | 6,018 | 18,600 | 25,382 | 2 |
| 2020 | 55,000 | 28,000 | 18,600 | - | 46,600 | 27,470 | 19,124 | - | 4 |
| 2021 | 60,000 | 60,000 | 19,124 | - | 79,124 | 79,124 | - | - | 10 |
| 2022 | 50,000 | 50,000 | - | - | 50,000 | 50,000 | - | - | 8 |
| 2023 | 50,000 | 50,000 | - | - | 50,000 | 50,000 | - | - | 7 |
| 2024 | 200,000 | 200,000 | - | - | 200,000 | 200,000 | - | - | 10 |
| 2025. 7월말 | 200,000 | 219,550 | - | - | 219,550 | 50,073 | - | - | 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148]·시행하여 첨단기술·첨단제품 사업경영을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을 위한 외국인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8월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비 분담비율을 10%p 상향하고 2025년 4월에는 현금지원 최대

148)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일부개정]
◇ 주요내용
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제14조의2제1항).

한도를 상향(5~20%p)하는 한편 비수도권·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비 분담비율을 10%p 상향하였으며, 특히 2025년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분담비율을 상향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이같은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 제고 노력에 힘입어 2021년부터 현금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매년 전액 집행되었고, 동 사업의 집행실적 및 외국인투자 신고액 실적은 매년 역대 최고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내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도착액은 여러 기간에 걸쳐 분할 도착하게 되므로, 동 사업은 특성상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구조적인 시차가 발생함. 외국인투자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계획서상 연차별 배분된 투자액이 실제로 전액 도착하고 있어 사업 관리상 차질은 없다는 설명임.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운영요령」 제18조에 따라 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149] 및 「운영요령」에 따라 허위·부당한 지원신청, 계약의무 미이행,

14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

부도·폐업 등의 경우에 취소·철회·감액 및 환수[150]를 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취소·철회 없이 감액·환수액만 발생·수납되고 있음.

**최근 5년간 현금지원 감액·환수액 발생·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7월말 |
|---|---|---|---|---|---|---|
| 환 수 | 0 | 153 | 628 | 4,050 | 463 | 12,451 |

주: 발생한 연도에 수납하여 발생액과 수납액 일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최근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도착해야 할 약정 금액 역시 크게 누적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계약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151]에 따르면 현금지원은 일시에

---

는 경우

150)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른 반환금액 기준」
1. 현금지원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의 **전액**, **투자기간 내**에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투자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에 투자이행기간의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투자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에 **투자집행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 미달률을 곱한 금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2. **사업영위기간 내에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다.
3. 현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지원계약에 따른 **추징대상 이자 및 부대비용**

1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지급방식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백억원 상당의 달러를 투자하기로 계약한 경우 투자액은 2030년까지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씩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착[152]하는 반면, 현금지원은 대부분 계약한 연도에 즉시 투자약정액 대비 최대 40~50%가량의 규모로, 그 중 국비는 통상 70% 수준으로 지급됨.

특히 2025년에는 투자약정액 대비 최대 75%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일시 지급 규모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동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국내복귀기업투자보조' 사업이나, '지역투자촉진'(3363-306) 내 내역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일시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선금 70%, 잔금 30%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153]는 동 사업의 예산액 및 향후 관리해야 할 도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유연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52) 참고로 외국자본이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써 국내에 즉시 투자되는 경우로 구분됨.

153)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약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금지원 전 담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미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업본사의 투자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현금지원금을 일시지급하여 투자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 과 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증 감 (B-A) | 증 감 사 유 |
|---|---|---|---|---|
| 합 계 | 2,165,543 | 2,196,928 | 31,385 | |
| 재산수입 | 8,374 | 42,269 | 33,895 | |
| - 정부출자수입 | 4,804 | 16,148 | 11,344 | 출자 배당금 수입 증가 |
| - 기타재산수입 | 3,570 | 26,121 | 22,551 | 발생이자 수입실적 증가 |
| 경상이전수입 | 31,806 | 29,172 | △2,634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1,806 | 29,172 | △2,634 | 사업비 회수금 수입실적 감소 |
| 전년도이월금 | - | 28 | 28 | |
| - 전년도이월금 | - | 28 | 28 | 전년도 미집행 이월금 |
| 세계잉여금 | 71,319 | 71,415 | 96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71,319 | 71,415 | 96 | 전년도 세외수입실적 증가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2,054,044 | 2,054,044 | - | |
| - 일반회계전입금 | 2,022,344 | 2,022,344 | - | |
| - 기금전입금 | 31,700 | 31,700 | -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임.

2024년도 소특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조 1,969억 2,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조 1,655억 4,300만원 대비 313억 8,500만원(1.45%) 증액되었는데, 이는 출자 배당금 수입 113억 4,400만원, 지원된 출연금 발생이자 225억 5,1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9,600만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불납결손 및 미수납 사유 |
|---|---|---|---|---|---|
| 합 계 | 2,196,928 | 2,196,928 | - | - | |
| 재산수입 | 42,269 | 42,269 | - | - | |
| - 정부출자수입 | 16,148 | 16,148 | - | - | |
| - 기타재산수입 | 26,121 | 26,121 | - | - | |
| 경상이전수입 | 29,172 | 29,172 |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9,172 | 29,172 | - | - | |
| 전년도이월금 | 28 | 28 | - | - | |
| - 전년도이월금 | 28 | 28 | - | - | |
| 세계잉여금 | 71,415 | 71,415 | - |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71,415 | 71,415 | - |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2,054,044 | 2,054,044 | - | - | |
| - 일반회계전입금 | 2,022,344 | 2,022,344 | - | - | |
| - 기금전입금 | 31,700 | 31,700 | - | - | |

2024년도 소특회계 세입 수납액은 2조 1,969억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1,969억 2,800만원 대비 100.0%가 수납되었음.

## 2. 세출결산

###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4년도 소특회계의 예산현액 1조 7,390억 2,600만원 중 1조 7,390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단위: 백만원)

|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 예산 | 전년이월 | 변 경 | | | 예산현액 | 지출 | 차년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 계** | **1,738,998** | **28** | **-** | **-** | **-** | **1,739,026** | **1,739,022** | **-** | **4** |
| □산업혁신지원(117) | 1,738,998 | 28 | - | - | - | 1,739,026 | 1,739,022 | - | 4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3200) | 1,738,998 | 28 | - | - | - | 1,739,026 | 1,739,022 | - | 4 |
| ·소재·부품·장비가술개발(3231) | 1,487,130 | - | - | - | - | 1,487,130 | 1,487,130 | - | - |
| ·소재·부품·장비기반구축(3232) | 244,868 | - | - | - | - | 244,868 | 244,868 | - | - |
| ·소재·부품·장비생태계구축(3241) | 7,000 | 28 | - | ±20 | - | 7,028 | 7,024 | - | 4 |

### (2) 예산변경 내역

#### ① 전년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다음연도<br>이 월 | 28 | ○ 일반연구계약의 계약기간 미완료 | 28 |
| **합 계** | **28** | | **28** |

2024년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800만원으로 일반연구계약의 계약기간 미완료 발생한 미지급금으로 인한 것임.

② 전 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전 용 | 20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을 위한 출장소요 증가로 여비 부족분 | 20 |
| 합 계 | 20 | | 20 |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을 위한 출장소요 증가로 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수용비에서 2,000만원을 자체 전용하였음.

③ 이 체 : 해당 없음

④ 예비비 사용액 : 해당 없음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해당 없음

## (4)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경상경비<br>집행잔액 | 4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 | 4 |
| **합 계** | **4** | | **4** |

2024년도 소특회계의 불용액은 400만원으로, 이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사업의 경상경비 집행 잔액임.

# 3.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 2024 | | 2023 | |
|---|---|---|---|---|
| **자산** | | | | |
| **Ⅰ.유동자산** | | **-** | | **74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2. 미수채권 | | - | | 681 |
| 3. 기타유동자산 | | - | | 66 |
| **Ⅱ.투자자산** | | **440,000** | | **440,000** |
| 1. 장기투자증권 | | 440,000 | | 440,000 |
| **Ⅲ.일반유형자산** | | **29** | | **30** |
| 1.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62 | | 54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33 | 29 | 24 | 30 |
| **Ⅳ.사회기반시설** | | **-** | | **-** |
| **Ⅴ.무형자산** | | **-** | | **6** |
| 1. 소프트웨어 | | - | | 6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자산계** | | **440,029** | | **440,782** |
| **부채** | | | | |
| **Ⅰ.유동부채** | | **-** | | **-** |
| 1. 기타유동부채 | | - | | - |
| **Ⅱ.장기차입부채** | | **-** | | **-** |
| **Ⅲ.장기충당부채** | | **-** | | **-**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부채계** | | **-** | | **-** |
| **순자산** | | | | |
| **Ⅰ.기본순자산** | | **-** | | **-**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 **440,029** | | **440,782** |
| **Ⅲ.순자산조정** | | **-** | | **-** |
| **순자산계** | | **440,029** | | **440,782** |
| **부채와순자산계** | | **440,029** | | **440,782** |

소득회계의 2024년도 자산은 4,400억 2,900만원임.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단위: 억원)

| | 주석 | 2024 | | | 2023 |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 **17,391** | **(474)** | **16,917** | **16,957** | **(1,018)** | **15,939** |
| 1.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 | | | | | 1,864 | (60) | 1,804 |
| 2.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 | | 17,391 | (474) | 14,135 | 15,093 | (958) | 14,135 |
| **Ⅱ.관리운영비** | | | | **-** | | | **-** |
| **Ⅲ.비배분비용** | | | | **-** | | | **-** |
| **Ⅳ.비배분수익** | | | | **234** | | | **31** |
| 1.이자수익 | | | | 5 | | | - |
| 2.기타수입 | | | | 229 | | | 31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 **16,683** | | | **15,908**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 | **16,683** | | | **15,908** |

소득회계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1조 7,391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 474억원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1조 6,683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단위: 억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전기 기초순자산 | - | 4,401 | - | 4,401 |
| Ⅱ.재정운영결과 | | 15,907 | | 15,907 |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15,914 | | 15,914 |
| 1. 재원의조달 | | 39,591 | | 39,591 |
| (1) 국고수입 | | 16,957 | | 16,957 |
| (2) 무상이전수입 | | 22,634 | | 22,634 |
| 2. 재원의이전 | | 23,677 | | 23,677 |
| (1) 국고이전지출 | | 23,677 | | 23,677 |
| Ⅳ.조정항목 | - | - | | -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 | 4,408 | | 4,408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 | 4,408 | | 4,408 |
| 1. 보고금액 | - | 4,408 | | 4,408 |
| Ⅶ.재정운영결과 | | 16,683 | | 16,683 |
|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 16,675 | | 16,675 |
| 1. 재원의조달 | | 37,930 | | 37,930 |
| (1) 국고수입 | | 17,390 | | 17,390 |
| (2) 무상이전수입 | | 20,540 | | 20,540 |
| 2. 재원의이전 | | 21,255 | | 21,255 |
| (1) 국고이전지출 | | 21,255 | | 21,255 |
| Ⅸ.조정항목 | - | - | | -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 | 4,400 | | 4,400 |

소특회계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4,400억원임.

## <별 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
|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440,021** | **-** |
| 1. 국가채권현재액 | - | - |
| 2. 국유재산현재액 | 440,000 | - |
| 3. 물품현재액 | 21 | - |
| 4. 국가채무합계 | - | -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 **440,029** | **-** |
|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 **8** | **-**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 -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 -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8 | - |
| 4. 대상차이(D) | - | - |
| 5. 기타차이(E) | - | - |

< 주요내역 >

1. 결산조정차이
   - 유형자산 8백만원

2. 대상차이
   - 자산(국고예금) 26원

# 4. 검토의견

## (1) 소재부품기술개발(R&D) 신규과제 추진일정 개선필요

### ① 결산 현황

‘소재부품기술개발(R&D)’(3231-302)은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와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R&D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1조 1,410억 4,500만원이었으며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소재부품 기술개발 (R&D) | 1,141,045 | 1,141,045 | - | - | - | 1,141,045 | 1,141,045 | - | - | 1,177,993 |
| - 소재부품 패키지형 | 829,474 | 829,474 | - | - | - | 829,474 | 829,474 | - | - | 827,200 |
| -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 186,513 | 186,513 | - | - | - | 186,513 | 186,513 | - | - | 324,040 |
| -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 118,918 | 118,918 | - | - | - | 118,918 | 118,918 | - | - | 8,903 |
|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 6,140 | 6,140 | - | - | - | 6,140 | 6,140 | - | - | 17,85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신규 R&D 과제 전부의 하반기 협약·집행

동 사업은 R&D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각 세부사업별로 R&D 예산을 교부하고(집행), 전문기관이 과제별로 각 기업 및 연구기관을 심사·선정한 후 R&D 예산을 재교부하여(실집행), 이를 교부받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실실집행) 구조임.

**R&D 사업 예산 집행구조**

- 소재부품패키지형

| 부처 | (집행) | 전문기관 | (실집행) | 사업수행자 |
|---|---|---|---|---|
| 산업통상자원부<br>(829,474백만원) | =><br>(829,474백만원) | 한국산업기술<br>기획평가원등<br>(829,474백만원) | =><br>(829,474백만원) | 1,397개<br>주관기관 |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부처 | (집행) | 전문기관 | (실집행) | 사업수행자 |
|---|---|---|---|---|
| 산업통상자원부<br>(186,513백만원) | =><br>(186,513백만원) | 한국산업기술<br>기획평가원등<br>(186,513백만원) | =><br>(186,513백만원) | 353개 주관기관 |

-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 부처 | (집행) | 전문기관 | (실집행) | 사업수행자 |
|---|---|---|---|---|
| 산업통상자원부<br>(118,918백만원) | =><br>(118,918백만원) | 한국산업기술<br>기획평가원등<br>(118,918백만원) | =><br>(118,918백만원) | 52개 주관기관 |

- 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 부처 | (집행) | 전문기관 | (실집행) | 사업수행자 |
|---|---|---|---|---|
| 산업통상자원부<br>(6,140백만원) | =><br>(6,140백만원) | 한국산업기술<br>기획평가원등<br>(6,140백만원) | =><br>(6,140백만원) | 14개 주관기관 |

2024년 정부 R&D제도 개편 및 연구개발사업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소재부품기술개발” 관련 R&D 신규과제는 전년도 150건 대비 4.7배 증가한 700건이 신설되어 전년도 1,005억 3,200만원 대비 4.3배 증가한 4,27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예산편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2 | ’23 | ’24 |
|---|---|---|---|---|
| 소재부품 패키지형 | 과제수 | 113 | 87 | 455 (+368) |
| | 예산액 | 88,624 | 63,103 | 306,413 (+243,310) |
|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 과제수 | 35 | 63 | 231 (+168) |
| | 예산액 | 17,818 | 37,429 | 114,813 (+77,384) |
|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 과제수 | - | - | - |
| | 예산액 | - | - | - |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이차전지) | 과제수 | - | - | 14 (+14) |
| | 예산액 | - | - | 6,140 (+6,140) |
| 계 | 과제수 | 148 | 150 | 700 (+550) |
| | 예산액 | 106,442 | 100,532 | 427,366 (+326,834) |

예산안편성지침 상 R&D 사업 신규과제의 경우 상반기 협약과제는 9개월분을 편성하고 하반기 협약과제는 6개월분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154].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과제 중 소재·부품·장비를 연계 개발하는 통합형 과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규모를 과제수 대비 4.7배·예산액 대비 4.3배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준비 및 컨소시엄 구성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700건 전부를 하반기 집행을 전제로 6개월 예산으로 반영하였음.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사업편**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 | '21 | '22 | '23 | '24 |
|---|---|---|---|---|---|---|
| 소재부품 패키지형 | 하반기 | 154 | 252 | 41 | 15 | - |
| | 상반기 | - | - | 72 | 72 | 455 |
| 소재부품 이종기술융합형 | 상반기 | 40 | 40 | 5 | 33 | - |
| | 하반기 | - | - | 30 | 30 | 231 |
|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 상반기 | 40 | - | - | - | - |
| | 하반기 | - | - | - | - | - |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이차전지) | 상반기 | - | - | - | - | - |
| | 하반기 | - | - | - | - | 14 |
| 계 | 상반기 | 234 | 292 | 46 | 48 | - |
| | 하반기 | - | - | 102 | 102 | 700 |
| | 하반기 협약율 | 0.0% | 0.0% | 68.9% | 68.0% | 100.0% |

154)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5.

이와 같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협약 편중은 매년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2021년 전체 신규과제 전부가 상반기 중 협약과제로 편성·집행되던 것이 2022년과 2023년에는 하반기 협약과제율이 68%정도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700건 전부가 하반기 협약과제로 편성·집행되었음.

한편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사업 등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집행하는 R&D 사업의 경우 예산액 865억 2,000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12억 2,000만원에 대해서만 하반기 협약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반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4,273억 6,600만원 전부를 하반기 협약사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 신규사업 중 하반기 협약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하반기 과제수 | | 하반기 예산액 | |
|---|---|---|---|---|
|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6건 / 56건 | 10.7% | 630 / 10,588 | 6.0% |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0건 / 74건 | - | 0 / 74,492 | - |
| 산업기술R&D연구기획 | 15건 / 20건 | 75.0% | 590 / 1,440 | 41.0% |
| 소계 | 21건 / 150건 | 14.0% | 1,220 / 86,520 | 1.4% |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700건 / 700건 | 100.0% | 427,366/ 427,366 | 100.0% |

신규사업과제의 증가와 사업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협약시기를 하반기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신규사업 전부를 하반기에 편성·집행하는 것은 R&D 사업의 선도효과를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소재부품기술개발 R&D는 소재부품산업 그 자체 뿐 아니라 이후 제조 및 첨단산업 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타 부처 소관 R&D 사업과 민간사업의 연구와 개발에도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R&D 사업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편성 시 상·하반기 신규과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R&D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적기에 R&D 예산이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① 결산 현황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3241-328)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화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인력의 기술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직자 맞춤형 기술교육 20억 3,000만원, 특화단지 재직자교육 27억원,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 5억 2,100만원 등 3개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액 52억 5,100만원 중 52억 5,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4년도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결산

(단위: 백만원)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다음년도 이월액(D) | 불용액 (E) | 예산액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5,251 | 5,251 | - | - | - | 5,251 | 5,251 | - | - | 4,73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사업운영 시 성과지표 설정의 소극성

동 사업은 소부장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초소재·응용소재 관련 핵심공정기술을 교육하는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사업과 소부장 특화단지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수요맞춤형 기술을 교육하는 “특화단지재직자교육”사업,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내역사업별 예산액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 2,250<br>(62.5%) | 2,250<br>(49.5%) | 2,250<br>(56.3%) | **2,030(△220)**<br>**(38.7%)** |
| 특화단지재직자교육 | - | 1,200<br>(26.4%) | 1,200<br>(30.0%) | **2,700(+1,500)**<br>**(51.4%)** |
|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 | 1,350<br>(37.5%) | 1,094<br>(24.1%) | 544<br>(13.6%) | **521(△23)**<br>**(9.9%)** |
| 계 | 3,600 | 4,544 | 3,994 | **5,251**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동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할 당시에는 수료자가 발생하는 사업으로는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사업만이 실시(예산비율 62.5%)되었고, 이에 따라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사업 수료생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옴.

동 사업은 2023년 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추가지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사업에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기술활용기술자문” 사업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여 세부사업을 증액・개편하였음.

이와 같은 예산 개편에 따라 전체 세부사업 중 “특화단지재직자교육”의 예산구성이 12억원(30.0%)에서 27억원(51.4%)으로 규모 및 비율 관점에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특화단지재직자교육”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 규정하고 있는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사업의 경우 2024년 내역사업 예산액이 2억 2,000만원(9.8%) 감액된 것을 이유로 수료생 수 목표를 750명에서 680명으로 하향조정하였음.

**연도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고 |
|---|---|---|---|---|---|
| 목표 | 750인 | 750인 | 750인 | 680인 | ・전년성과대비△136(△16.7%)<br>・3년평균목표대비△70(△9.3%) |
| 실적 | 801인 | 773인 | 816인 | 866인 | |
| 달성도 | 106% | 103% | 108% | 127%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이에 따른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상 예산사업과 연결되는 성과목표는 해당 관리과제의 핵심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거 3년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155].

예산개편에 따라 세부사업 중 중심과제의 변동이 있었는데도 해당 사항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지 않은 한편, 매년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되었음에도 내역사업 내 예산조정을 이유로 과거 3년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에 비해 성과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한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성과보고서 상 성과지표와 성과달성 여부는 기관 차원에서 정책평가 및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직접적인 평가자료가 되는 한편, 향후 예산 및 사업 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예산 - 집행 - 결산으로 이어지는 성과주의적 예산제도의 핵심적인 평가기준임[156].

성과주의 예산제도 상 성과지표 설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선정 시 사업구조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취지에 따라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55) 국무조정실, 「2023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3.3.

156)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Ⅵ.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 2. 세출결산

###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4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59억 2,600만원 중 159억 2,6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 및 불용은 없음.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 예산 | 전년이월 | 변 경 | | | 예산현액 | 지출 | 차년이월 | 불용 |
|---|---|---|---|---|---|---|---|---|---|
| | | | 이체 | 전용 | 예비비 | | | | |
| 합 계 | 15,926 | - | - | - | - | 15,926 | 15,926 | - | -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0)> | 15,926 | - | - | - | - | 15,926 | 15,926 | - | - |
| □무역및투자유치(113) | 2,682 | - | - | - | - | 2,682 | 2,682 | - | - |
| ○무역진흥(1100) | 2,682 | - | - | - | - | 2,682 | 2,682 | - | - |
| -수출역량강화(1139) | 2,682 | - | - | - | - | 2,682 | 2,682 | - | - |
| □산업혁신지원(117) | 13,244 | - | - | - | - | 13,244 | 13,244 | - | - |
| ○지역경제활성화(3300) | 13,244 | - | - | - | - | 13,244 | 13,244 | - | - |
| -지역산업경쟁력강화(3362) | 13,244 | - | - | - | - | 13,244 | 13,244 | - | - |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 해당 없음

② 전　용 : 해당 없음

③ 이　체 : 해당 없음

④ 예비비 사용액 : 해당 없음

(3) 다음연도 이월내역 : 해당 없음

(4) 불용내역 : 해당 없음

# 3.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원)

| | 2024 | 2023 |
|---|---|---|
| 자산 | | |
| Ⅰ.유동자산 | - | - |
| Ⅱ.투자자산 | - | - |
| Ⅲ.일반유형자산 | - | - |
| Ⅳ.사회기반시설 | - | - |
| Ⅴ.무형자산 | - | -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자산계 | - | - |
| 부채 | | |
| Ⅰ.유동부채 | - | - |
| Ⅱ.장기차입부채 | - | - |
| Ⅲ.장기충당부채 | - | -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 - |
| 부채계 | - | - |
| 순자산 | | |
| Ⅰ.기본순자산 | - | -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 | - |
| Ⅲ.순자산조정 | - | - |
| 순자산계 | - | - |
| 부채와순자산계 | - | - |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15,926,000,000** | - | **15,926,000,000** | - | - | - |
| 1.무역진흥 | 2,682,000,000 | - | 2,682,000,000 | - | - | - |
| 2.지역경제활성화 | 13,244,000,000 | - | 13,244,000,000 | - | - | - |
| **Ⅱ.관리운영비** | | | - | | | - |
| **Ⅲ.비배분비용** | | | - | | | - |
| **Ⅳ.비배분수익** | | | - | | | -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15,926,000,000** | | | - |
| **Ⅵ.재정운영결과(Ⅴ-Ⅵ)** | | | **15,926,000,000**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159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 재정운영결과 총 159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원)

| | 주석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전기 기초순자산** | | - | - | | - |
| **Ⅱ.재정운영결과** | | | - | | - |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 | | - | | - |
| **Ⅳ.조정항목** | | - | - | - | -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 - | - | - | -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 - | - | - | - |
| **Ⅶ.재정운영결과** | | | **15,926,000,000** | | **15,926,000,000** |
| **Ⅷ.재원의조달및이전** | | | **15,926,000,000** | | **15,926,000,000** |
| 1. 재원의조달 | | | 15,926,000,000 | | 15,926,000,000 |
| (1) 국고수입 | | | 15,926,000,000 | | 15,926,000,000 |
| **Ⅸ.조정항목** | | - | - | - | -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 - | - |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0원으로, 재정운영결과 159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59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Ⅶ. 전력산업기반기금

## 1. 수입결산

### (1) 기금수입 현황표

2024년도 기금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23년 실적 | '24년 | | | 증 감 | |
|---|---|---|---|---|---|---|
| | | 계획(A) | 변경(B)[1)] | 실적(C) | C-B | (%) |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55,703 | **51,402** | **51,402** | 71,598 | 20,196 | 39.3 |
| -기타민간이자수입 | 20,260 | 19,583 | 19,583 | 15,146 | △4,437 | △22.7 |
| -기타재산이자수입 | 35,443 | 31,819 | 31,819 | 56,452 | 24,633 | 77.4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 | - | - | - | - | - |
| **가산금** | 2,274 | **2,603** | **2,603** | 2,455 | △148 | △5.7 |
| -가산금 | 2,274 | 2,603 | 2,603 | 2,455 | △148 | △5.7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100,176 | **3,287,524** | **3,287,524** | 3,214,809 | △72,715 | △2.2 |
| -법정부담금 | 3,008,290 | 3,202,771 | 3,202,771 | 3,075,735 | △127,036 | △4.0 |
| -기타경상이전수입 | 91,886 | 84,753 | 84,753 | 139,074 | 54,321 | 64.1 |
| **잡수입** | 12,172 | **-** | **-** | 31,532 | 31,532 | 순증 |
| -기타잡수입 | 12,172 | - | - | 31,532 | 31,532 | 순증 |
| **융자원금회수** | 196,562 | **188,565** | **188,565** | 197,558 | 8,993 | 4.8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96,562 | 188,565 | 188,565 | 197,558 | 8,993 | 4.8 |
| **정부예금회수** | 1,106,999 | **681,844** | **681,844** | 1,449,452 | 767,608 | 112.6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14 | - | - | 313 | 313 | 순증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300,000 | 68,180 | 68,180 | 460,000 | 391,820 | 574.7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806,985 | 613,664 | 613,664 | 989,138 | 375,474 | 61.2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1,044,228 | 289,103 | 289,103 | 289,383 | 280 | 0.1 |
| -예탁원금회수 | 1,00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 | - |
| -기금예탁이자수입 | 44,228 | 9,103 | 9,103 | 9,383 | 280 | 3.1 |
| **합 계** | 5,518,114 | **4,501,041** | **4,501,041** | 5,256,786 | 755,745 | 16.8 |

주1) 최종변경

2024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 실적은 5조 2,567억 8,637만원으로 계획(4조 5,010억 4,100만원) 대비 16.8% 증가하였음.

계획 대비 수입액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1억 9,619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43억 2,096만원, 기타잡수입 315억 3,233만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9억 9,259만원, 한국은행 및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921억 3,324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754억 7,440만원, 기금예탁이자수입 2억 7,985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가산금 1억 4,849만원, 법정부담금 1,270억 3,569만원이 감소하여 총 수입은 7,557억 4,537만원 증가하였음.

세부적인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은 715억 9,819만원으로, 융자 이자수입인 기타민간이자수입은 계획 대비 44억 3,732만원 감소한 151억 4,568만원이 수납되었고, 여유자금 운용과 경상사업비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계획 대비 246억 3,351만원 증가한 564억 5,251만원이 수납됨.

법정부담금 연체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금은 계획 대비 1억 4,849만원 감소한 24억 5,451만원이 수납됨.

기타경상이전수입은 3조 2,148억 927만원으로,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 3조 757억 3,531만원과 사업비 정산환입액 1,390억 7,396만

원으로 구성됨. 법정부담금은 부담금 요율 감소로 수입액이 감소하였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 실적 감소로 수입액이 증가함.

국가 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수익금 등 기타잡수입은,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이행비율이 증대되고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 상승으로 국가소유 REC 투입요인이 발생하여 계획대비 315억 3,233만원 증가한 315억 3,233만원이 수납됨.

융자원금회수는 농어촌전화사업융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원전생태계금융지원 등 융자사업에 대한 원금회수액으로, 조기상환 발생 등으로 계획 대비 89억 9,259만원이 증가한 1,975억 5,759만원이 수납됨.

정부예금회수는 1조 4,494억 5,164만원으로, 2023년도 말 한국은행 및 통화·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되어 2024년도 수입으로 이월되는 금액임.

정부내부수입 2,893억 8,285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 2,800억원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기금예탁이자수입 93억 8,285만원임.

# 2. 지출결산

## 2024년도 기금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3년 실적 | '24년 | | | 증 감 | |
|---|---|---|---|---|---|---|
| | | 계획(A) | 변경(B)[1] | 실적(C) | C-B | (%) |
| 전기안전관리 | 129,483 | 130,761 | 130,761 | 128,849 | △1,912 | △1.5 |
| 전력수요관리 | 100,138 | 166,043 | 166,043 | 163,227 | △2,816 | △1.7 |
| 전선로지중화지원 | 49,895 | 41,984 | 41,984 | 40,574 | △1,410 | △3.4 |
| 재생에너지지원 | 1,017,627 | 638,085 | 643,241 | 642,091 | △1,150 | △0.2 |
| 에너지신산업 | 59,628 | 31,246 | 31,246 | 30,946 | △300 | △1.0 |
| 석탄수급안정및지역지원 | 19,757 | 15,911 | 15,911 | 15,911 | - |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231,023 | 226,178 | 226,178 | 223,761 | △2,417 | △1.1 |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 175,526 | 146,016 | 162,882 | 157,175 | △5,707 | △3.5 |
| 전력공급기술 | 423,033 | 461,557 | 461,557 | 461,557 | - | - |
| 전력수요기술 | 103,019 | 10,478 | 10,478 | 10,478 | - | - |
| 기술정책 | 4,938 | 4,510 | 4,510 | 4,510 | - | - |
| 기반구축 | 92,221 | 58,785 | 58,785 | 58,785 | - | - |
| 국제협력 | 21,149 | 21,149 | 21,149 | 21,149 | - | - |
| 기금운영비 | 7,319 | 7,756 | 7,756 | 7,663 | △93 | △1.2 |
| 전력산업정책개발및홍보 | 9,896 | 7,825 | 7,825 | 7,820 | △5 | △0.1 |
| 전력해외진출지원 | 7,745 | 8,463 | 8,463 | 8,463 | - | - |
| 전력산업기반조성 | 8,889 | 142,193 | 142,193 | 139,301 | △2,892 | △2.0 |
| **지출사업비 소계** | **2,461,286** | **2,118,940** | **2,140,962** | **2,122,260** | **△18,702** | **△0.9**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회계기금간거래 | 1,307,376 | 1,307,376 | 1,307,376 | 1,307,376 | - | - |
| 기금간거래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 |
| 여유자금 운용 | 1,449,452 | 774,725 | 752,703 | 1,527,150 | 774,447 | 102.8 |
| **총 계** | **5,518,114** | **4,501,041** | **4,501,041** | **5,256,786** | **755,745** | **16.8** |

주1) 최종변경

202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조 2,567억 8,637만원으로, 지출사업비는 운용규모의 40.4%인 2조 1,222억 6,041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에 각 1조 3,073억 7,600만원 및 2,000억원을 전출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0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1조 5,271억원 4,996만원은 여유자금(사업성 대기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2024년도 사업비 지출은 계획액 2조 1,409억 6,200만원 중 2조 1,222억 6,041만원을 지출함.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 운용은 계획 대비 7,744억 4,696만원이 증가한 1조 5,271억 4,996만원으로, 수입의 계획 대비 증가 등에 기인함.

# 3.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 | 2024 | | 2023 | |
|---|---|---|---|---|
| **자산** | | | | |
| **Ⅰ.유동자산** | | **20,256** | | **21,18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7,893 | | 7,715 |
| 2. 단기금융상품 | | 7,400 | | 6,800 |
| 3. 미수채권 | 3,008 | | 3,305 | |
| 미수채권대손충당금 | 4 | 3,004 | 7 | 3,298 |
| 4. 단기대여금 | 1,970 | | 3,382 | |
|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1 | 1,959 | 7 | 3,375 |
| **Ⅱ.투자자산** | | **22,208** | | **20,194** |
| 1. 장기대여금 | 26,350 | | 24,033 | |
|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4,142 | 22,208 | 3,839 | 20,194 |
| **Ⅲ.일반유형자산** | | **2** | | **2** |
| 1.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7 | | 7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6 | 1 | 5 | 2 |
| 2. 기타일반유형자산 | 1 | | 1 | |
|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1 | - | 1 | - |
| **Ⅳ.무형자산** | | **-** | | **-** |
| 1. 소프트웨어 | | - | | - |
| **Ⅴ.기타비유동자산** | | **3** | | **3** |
|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 3 | | 3 |
| **자산계** | | **42,469** | | **41,387** |
| **부채계** | | **-** | | **-** |
| **순자산** | | | | |
| **Ⅰ.적립금 및 잉여금** | | **42,469** | | **41,387** |
| **Ⅱ.순자산조정** | | **-** | | **-** |
| **순자산계** | | **42,469** | | **41,387** |
| **부채와순자산계** | | **42,469** | | **41,387**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24년도 순자산은 4조 2,469억원으로 2023년도 대비 1,082억원(2.6%)이 증가하였음.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16,954** | **(2,514)** | **14,440** | **20,476** | **(1,680)** | **18,796** |
| 1. 에너지자원정책 | 3,314 | (616) | 2,698 | 2,803 | (59) | 2,744 |
| 2.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 3,656 | (1,449) | 2,207 | 6,671 | (796) | 5,875 |
| 3. 에너지공급체계구축 | 3,994 | (177) | 3,817 | 4,284 | (393) | 3,891 |
| 4. 에너지기술개발 | 4,723 | (209) | 4,513 | 5,262 | (335) | 4,927 |
| 5. 에너지기술기반확충 | 848 | (41) | 806 | 1,186 | (94) | 1,092 |
| 6. 전력산업경쟁력강화 | 420 | (22) | 398 | 270 | (3) | 267 |
| **Ⅱ.관리운영비** | | | **28** | | | **23** |
| 1. 인건비 | | | 18 | | | 14 |
| 2. 경비 | | | 10 | | | 9 |
| (1) 복리후생비 | | | 2 | | | 2 |
| (2) 소모품비 | | | – | | | – |
| (3) 지급수수료 | | | 1 | | | 1 |
| (4) 세금과공과 | | | 2 | | | 2 |
| (5) 교육훈련비 | | | – | | | – |
| (6) 지급임차료 | | | 1 | | | 1 |
| (7) 유류비 | | | – | | | – |
| (8) 여비교통비 | | | – | | | – |
| (9) 업무추진비 | | | – | | | – |
| (10) 외주용역비 | | | 2 | | | 2 |
| (11) 감가상각비 | | | 1 | | | 1 |
| (12) 대손상각비 | | | – | | | – |
| (13) 연구개발비 | | | – | | | – |
| **Ⅲ.비배분비용** | | | **64** | | | **54** |
| 1. 기타비용 | | | 64 | | | 54 |
| **Ⅳ.비배분수익** | | | **434** | | | **678** |
| 1. 이자수익 | | | 407 | | | 668 |
| 2. 자산처분이익 | | | – | | | – |
| 3. 기타수익 | | | 27 | | | 10 |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 **14,098** | | | **18,195** |
| **Ⅵ.비교환수익 등** | | | **15,180** | | | **15,556** |
| 1. 부담금수익 | | | 30,498 | | | 30,606 |
| 2. 제재금수익 | | | 25 | | | 24 |
| 3. 기타재원조달및이전 | | | △15,343 | | | △15,074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 **(1,082)** | | | **2,639**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24년도 재정운영에 1조 7,046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1조 8,128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당기 재정운영결과 수익은 1,082억원임.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2023년 기초순자산 | - | 44,025 | - | 44,025 |
| 1. 보고금액 | - | 44,025 | - | 44,025 |
| Ⅱ.재정운영결과 | - | 2,639 | - | 2,639 |
| Ⅲ.조정항목 | - | - | - | - |
| Ⅳ.2024년 기말순자산 (Ⅰ-Ⅱ+Ⅲ) | | 41,386 | - | 41,386 |
| Ⅴ.2023년 기초순자산 | - | 41,386 | - | 41,386 |
| 1. 보고금액 | - | 41,386 | - | 41,386 |
| Ⅵ.재정운영결과 | - | (1,082) | - | (1,082) |
| Ⅶ.조정항목 | - | - | - | - |
| Ⅷ.2023년 기말순자산 (Ⅴ-Ⅵ+Ⅶ) | | 42,469 | - | 42,469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4조 2,469억원으로, 2023년도 기말순자산 4조 1,386억원 대비 1,082억원 증가함. 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수익에 기인함.

## 4. 검토의견

### (1)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문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 ① 결산 현황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5144-312)은 포항지진 피해 극복의 후속 조치로 지열발전부지에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지진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2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4년도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 2,000 | 2,000 | - | 2,000 | 2,000 | - | - | 11,32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3년까지 ①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과 ②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내역사업이 종료되어 2024년에는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의 1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②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문제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포항 지역의 지속적인 지진안전관리를 위해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축적된 지진데이터의 분석·연구, 지진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지진안전종합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사업 개요**

| |
|---|
| ○ 사업목적 : 포항 지역의 지속적인 지진안전관리를 위해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축적된 지진데이터의 분석·연구, 지진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br>○ 사업규모 : 총사업비 220억원<br>○ 사업기간 : 2022년~2026년<br>○ 사업내용<br>- (건물) 지상 2층, 연면적 약 900평 규모의 연구 및 예방교육 시설 건립<br>- (장비) 고감도 지진 데이터 관측·분석, 단층·심구조 연구설비 구축<br>- (부지) 지열발전부지 정비와 시추모형 설치 등 기념공간 조성<br>- (교육) 지진,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난 체험 및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재난 안전교육장 조성 및 운영<br>- (연계) 포항 지열발전부지 관측망, 기상청 관측망, 과기부 심부지구물리관측망(6개) 등 포항지역 심부·지표지진관측망을 연계 운영<br>- (정책) 국가 지진재해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기상청, 행안부 등 지진방재 주무 부처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공통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에는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로 사업출연금(350-02) 19억 8,100만원과 기관운영출연금(350-01)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2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4년도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 집행내역

| |
|---|
| ○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 2,000백만원<br>① 사업출연금(350-02) : 1,981백만원<br>- 설계 및 인허가,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업 평가관리 등<br>②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9백만원<br>- 공사 현장 점검, 전문가 위원회 비용 등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재정법」 제12조[157]는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음[158].

그런데 동 사업은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

157)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58)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법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1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⑤ (생 략)

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출연 근거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전기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볼 수 있으나 출연금 지원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로는 볼 수 없음.

##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관련 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3.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1. (생 략)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 8. (생 략)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업출연금(350-02)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설(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159] 및 참여기관[160]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출연금은 사용 용도가 포괄적이고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출연의 법적 근거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설 구축이라는 동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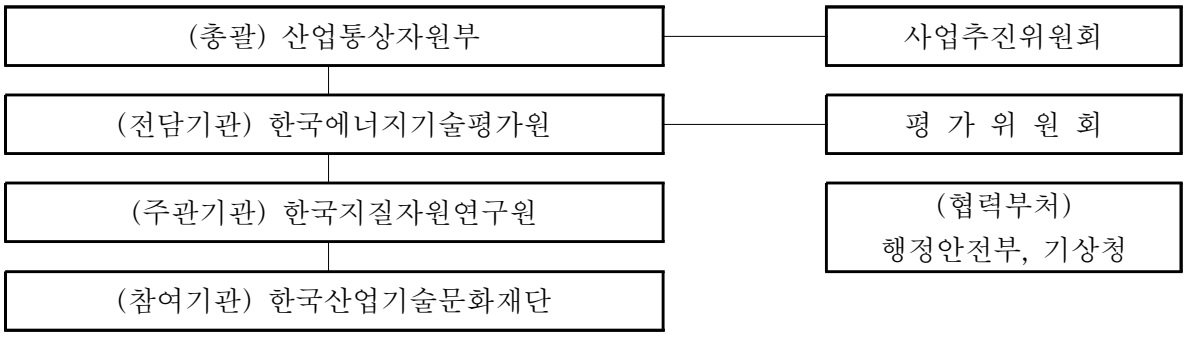
15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

160) 방송사업, 콘텐츠제작사업, 문화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 ③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22년 2차례 주관기관 공고 결과 적합기관이 없어서 기관선정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2023년 4월과 8월 2차례 공고 끝에 2023년 12월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음.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사업 수행체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주관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안전종합센터의 기획,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참여기관인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은 센터 구축 관련 사전 법적절차[161]를 위한 외부용역 추진, 재난 안전교육장 조성·운영 및 각종 행사와 홍보를 담당하게 됨.

161) 타당성조사, 공공건축기획,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 수행기관별 역할

| 주관기관<br>(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참여기관<br>(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
|---|---|
| **지진안전종합센터 기획**<br>-중장기 발전계획 수립<br>-건물, 부지 등 인프라 규모 제시<br>-핵심 시설·장비 제시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br>-사전 법적절차 관련 외부용역 추진<br>-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br>-설계 및 건축 시행 | -재난 안전교육장 조성 계획 수립<br>-모형 시추탑 제작<br>-착·준공식, 설명회 개최 등 홍보<br>-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 **지진안전종합센터 운영**<br>-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분석<br>-지진분석 기술 개선 및 지진 대응체계 고도화<br>-지진안전관리 로드맵 수립 | -재난 안전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 운영<br>-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출처: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지원 사업계획서, p.5 재구성

그런데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주관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진·지질재해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지진안전관리센터[162] 구축 관련 기획 및 공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총사업비 220억 중 센터

162) 센터 구축에는 지진 관련 연구시설(3개층 중 1개층에 지진 관측 및 연구 공간 구성 계획임)의 구축뿐 아니라, 재난 안전교육장과 공원 조성 등도 포함되어 있음.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비용이 100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참여기관인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종으로 등록된 비영리재단으로 방송사업, 콘텐츠제작사업, 문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 업무를 제외한 사업 기획, 법정 용역 추진, 재난 안전 교육장 조성·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보기 어려움[163].

2023년 실시된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164]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의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건축 관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 분야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을 참여기관으로 최종선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이 포항 지진 피해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수행역량이 부족한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163) 참고로 2022년 신규로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민간기관인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임.
164) 산학연 전문가 6인 참여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진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재선정하여 동 사업이 당초에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의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① 결산 현황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5202-304)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692억 8,000만원 중 3,623억원 6,1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369,280 | 369,280 | - | - | - | 369,280 | 362,361 | - | 6,919 | 424,3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의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동 사업은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생산 및 시설자금’, ② 관련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운전자금’, ③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신산업융자’, ④ ‘융자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 중, ‘생산 및 시설자금’ 은 2024년도 예산으로 3,61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교부되었으나 3,421억원 3,9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3,300만원(1.1%)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운전자금’은 당초 20억원이 편성·교부되었으나 9억 4,4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사업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10억 5,600만원(52.8%)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 내역사업명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당초 | 수정(A) | | | | | | | | |
| 생산 및 시설자금 | 361,280 | 361,280 | 361,280 | 361,280 | - | 361,280 | 342,139 | 15,308 | 3,833 | 94.7 |
| 운전자금 | 2,000 | 2,000 | 2,000 | 2,000 | - | 2,000 | 944 | - | 1,056 | 47.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생산 및 시설자금’은 에너지원별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소수력, 연료전지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 3,612억 8,000만원 중 태양광 사업에 2,952억 9,000만원(81.7%)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특히, 산업시설 태양광 비중은 전년(46.3%) 대비 2024년 55.6%로 증가한 반면, 농촌 태양광은 33.3%에서 14.7%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농촌

태양광의 운영 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 농지법 위반, 무등록 업체 지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전환의 결과로 보임.[165]

**태양광 유형별 생산 및 시설자금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지원유형 | | 사업기관 실집행 | | | |
|---|---|---|---|---|---|
| | | 2023 | | 2024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농촌 태양광 | 농촌형 태양광 | 152,093 | 33.3 | 53,215 | 14.7 |
|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 | - | - | - |
| | 햇빛두레 발전소 | - | - | - | - |
| | **소계** | **152,093** | **33.3** | **53,215** | **14.7** |
| 산업시설 태양광 | 산업단지태양광 | 211,612 | 46.3 | 119,531 | 33.1 |
| | 공장태양광 | | | 81,390 | 22.5 |
| | **소계** | **211,612** | **46.3** | **200,921** | **55.6** |
| 도심 태양광 | 건축물태양광 | 40,605 | 8.9 | 40,021 | 11.1 |
| | 시설물태양광 | - | - | 829 | 0.2 |
| | **소계** | **40,605** | **8.9** | **40,850** | **11.3** |
| 재생에너지사용 확인 (RE100) 태양광 | 자가소비 | - | - | 304 | 0.1 |
| | 전력구매계약(PPA) | - | - | - | - |
| | 신재생e 공급인증서(REC) | - | - | - | - |
| | **소계** | **-** | **-** | **304** | **0.1** |
| **합계** | | **404,310** | **88.4** | **295,290** | **81.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지원유형별로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시설 태양광, 농촌 태양광 순으로 공사지연, 대출 심사 지연, 사용 전 점검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65) 2022년 국무조정실 운영실태 점검 결과, 농촌태양광에 운영관련 다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3중 진위여부 확인 체계 구축, 세부 공사비 확정 이후 자금 신청, 공사 착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계획 신고필증 확인,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 지원 배제 등의 조치가 있었음.

## 지원유형별 실집행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원유형 | | 2023 | | | 2024 | | |
|---|---|---|---|---|---|---|---|
| | | 예산액 | 연말 집행액 | 이월액 | 예산액 | 연말 집행액 | 이월액 |
| 시설 자금 | 농촌 태양광 | 457,170 | 123,308 | 40,496 | 361,280 | 52,291 | 1,896 |
| | 산업시설 태양광 | | 160,655 | 60,089 | | 189,504 | 12,432 |
| | 도심 태양광 | | 29,870 | 13,335 | | 39,892 | 980 |
| | RE100 태양광 | | - | - | | 304 | - |
| | 풍력 및 기타 | | 30,786 | 7,795 | | 57,149 | - |
| 생산자금 | | | 380 | - | | 2,999 | - |
| 합 계 | | 457,170 | 344,999 | 121,715 | 361,280 | 342,139 | 15,30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시설 유형별 생산 및 시설자금 이월 사유

(단위: 백만원)

| 생산 및 시설자금 | 이월 사유 | 사업기관 실집행 이월액 | | |
|---|---|---|---|---|
| | | 융자건 | 총융자액 | 이월액 |
| 농촌 태양광 | 계통연계 지연 | 1 | - | 95 |
| | 공사 지연 | 6 | 724 | 1,440 |
| | 대출심사 지연 | 1 | 96 | 96 |
| | 사용전 검사 지연 | 3 | 322 | 265 |
| 산업시설 태양광 | 계통연계 지연 | 1 | 1,104 | 259 |
| | 공사 지연 | 66 | 12,248 | 8,520 |
| | 대출심사 지연 | 10 | 3,085 | 1,899 |
| | 사용전 검사 지연 | 11 | 5,054 | 1,754 |
| 도심 태양광 | 공사 지연 | 11 | 1,521 | 831 |
| | 대출심사 지연 | 1 | 114 | 23 |
| | 사용전 검사 지연 | 2 | 199 | 126 |
| RE100 태양광 | - | - | - | - |
| 풍력 및 기타 | - | - | - | - |
| 생산자금 | - | - | - | - |
| 합 계 | | 113 | 24,467 | 15,308 |

※ 총융자액= 연내 인출액 + 이월 인출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이월 건수 113건 중 산업시설 태양광 분야에서만 공사 지연

66건, 대출 심사 지연 10건, 사용전 검사 지연 11건이 집계되었으며 총 이월액 153억원 중 약 124억원(81.2%)을 차지함.

이는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이 시공 지연, 사업자의 실제 이행 역량 부족, 대출심사 절차의 지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특히, 산업시설 태양광은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공 지연, 인허가 및 계통연계 지체 등 현실적인 변수들이 사전에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방식으로 융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순한 집행률 관리 수준을 넘어서 대출 심사 기준의 표준화와 신속화, 사전 점검 및 계통연계 절차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 구축 등 보다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 추진 정도를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 진행된 사업자에 한하여 자금 인출을 허용하는 조건부 집행 체계를 도입하는 등, 이월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예산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체계 이행 등

#### ① 결산 현황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5202-315)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지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0억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 8,000 | 8,000 | - | - | - | 8,000 | 8,000 | - | - | 11,0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연차별 집행관리 미흡과 개선 필요

동 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입지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적합입지 발굴’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지개발 비용을 3년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단지개발 지원’으로 구성됨.

2024년에는 ‘적합입지 발굴’ 의 1차년도 사업비 35억원과 ‘단지개발 지원’의 계속사업(3개지역)과 신규사업(2개지역) 예산 45억원이 각각

사업출연금으로 편성,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단지개발 지원’ 사업에서 7억 7,500만원이 이월되고 5,1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함.

’24년도 내역사업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내역사업명 | 신규 출연금 교부액 (A)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실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 | | | | | 예산 현액 | 실집행액 (C) | | | |
| 적합입지 발굴 | 3,500 | - | 3,500 | 3,500 | 3,500 | 3,500 | - | - | 100.0 |
| 단지개발 지원 | 4,500 | 748 | 5,248 | 4,422 | 4,500 | 3,725 | 775 | 51 | 82.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포항시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신안군은 기상악화로 인한 어업피해영향조사 지연, 인천·여수의 경우 사업공고가 6월에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일정 지연 등의 사유에 기인함.

한편, ‘단지개발 지원’ 사업은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3년간 분할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구조이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비가 1차년도에 적시에 확보되지 않고 2~3차년도에 집중 편성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실제 2023~2026년 단지개발 지원의 국비, 지방비 편성 현황을 보면,

여수시와 인천시는 1차년도(2024년)에 지방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나, 2차년도(2025년)에는 각각 4억원, 8억 7,000만원이 투입되고, 3차년도(2026년)에는 여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인천은 지방비 없이 민자만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신안군 역시 2023년 1억 5,000만원에서 2025년 4억원으로 지방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다수 지자체에서 지방비가 뒤늦게 매칭되는 경향이 있음.

2023~2026년 단지개발 지원 국비, 지방비 등 편성 상세

(단위: 백만원)

| 지역 | 2023 | | | 2024 | | | 2025 | | | 2026 | | |
|---|---|---|---|---|---|---|---|---|---|---|---|---|
| | 국비 | 지방비 | 민자 | 국비 | 지방비 | 민자 | 국비 | 지방비 | 민자 | 국비 | 지방비 | 민자 |
| 군산시청 | 800 | 890 | - | 800 | 690 | - | - | - | - | - | - | - |
| 포항시청 | 1,050 | 253 | 604 | 1,050 | 253 | 1,876 | 1,050 | 253 | 1,196 | - | - | - |
| 신안군청 | 1,050 | 150 | 352 | 1,050 | 250 | 1,068 | 1,050 | 400 | 2,630 | - | - | - |
| 인천시청 | - | - | - | 725 | - | 1,850 | 725 | 870 | 950 | 725 | - | 2,200 |
| 여수시청 | - | - | - | 725 | - | 700 | 725 | 400 | 1,813 | 725 | 400 | 2,51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2~2023년 '적합입지 발굴' 사업을 거쳐 2024년 '단지개발 지원' 사업에 응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에 지방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는 일정 지연의 복합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지방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가 먼저 투입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방의 책임 분담이 왜곡되어 제도운영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집행률 저조, 민간투자 유치 불확실성, 단지개발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저해될 수 있음.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추진 여건 미비로 인한 지연과 국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연도별 투자계획과 지방비 확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③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체계 이행과 기존 사업의 연계 검토 필요

동 사업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부처 간 규제 문제 혹은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지연을 방지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지역 주민과 산업 등의 수용성, 환경성, 공익성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선계획-후개발 방식의 계획적 단지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이 해상풍력 개발에 적합한 입지인지 검토하거나, 단지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제정된「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방식은 정부가 직접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될 예정임.

동 법에 따라 환경성 및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를 일괄 의제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기존의 민간 자율개발 중심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중심으로 구조가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동 사업 또한 지방자치단체 신청 기반의 운영 방식에서 정부 직접 수행방식으로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음.

**< 현행 vs 해상풍력법 절차비교 >**

| | | | | |
|---|---|---|---|---|
| **현행** | **발전사업 준비**<br>입지분석, 풍황계측,<br>기본설계 등 | ⇨ **발전사업허가** | ⇨ **각종 인허가**<br>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br>매장유산지표조사,<br>공유수면점사용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 |
| **해상풍력법** | **입지발굴 및 지구지정**<br>(**예비지구**) 입지분석, 기본설계<br>(**발전지구**) 환경성·수용성 확보, 민관협의회 운영 | ⇨ **사업자 공모** | ⇨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처리**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 적합

입지 발굴사업은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단지개발 지원사업(5개)는 사업 종료연도인 2026년(2개), 2027년(3개)까지 지원하여 해상풍력법 제14조에 따라 예비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아울러, 2026년부터는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신규 공모를 중단하고, 정부가 입지 발굴을 통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 수립 및 해양환경적 영향조사 등에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할 계획임.

그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을 통해 전북 군산, 전남 영광, 인천광역시, 강원 강릉, 전남 고흥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풍황자원 조사, 계측기 설치·인허가, 입지평가 공동연구 등이 이루어졌는바, 이 같은 기초조사 결과는 향후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 정부의 계획입지 지정 절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축적된 기초조사 결과를 「해상풍력법」에 따른 해상풍력입지 정보망 구축·운영 및 기본설계 수립 등 계획입지 지정 과정에 연계·활용함으로써, 중복 조사를 방지하고 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4) 해상풍력산업지원: 해상풍력지원센터 구축 지연 및 예산 이월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① 결산 현황

‘해상풍력산업지원’(5202-318)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물류시스템 운영, 부유식 설계지원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4억 8,300만원 중 69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4년도 해상풍력산업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해상풍력 산업지원 | 8,483 | 8,483 | - | - | - | 8,483 | 6,934 | 1,549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① 해상풍력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지원센터’(군산시 새만금), ② 부품 제작·선조립·하역 등 물류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목포시), ③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평가지원 및 검증 장비를 구축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울산광역시)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당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지방비 확

보 차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하였고, 2025년 6월 현재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종합지원콤플렉스'만이 준공된 상태임.

### ②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차질 없는 해상풍력지원센터 구축 필요

'해상풍력지원센터'는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및 인허가 지원, 어민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지원기관으로, 2020년 사업계획 승인 후 부지매입(2022년), 설계용역(2023년)을 거쳐, 건축비 상승에 따른 지방비 증액, 건축면적 조정 등으로 한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2024년)한 후 2025년 4월에 착공하였음.

**해상풍력지원센터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 2023년 사업계획 | 2024년 사업계획 | 비 고 |
|---|---|---|---|
| 기 간 | 2020~2024년 | 2020~2025년 | 1년 연장 |
| 예 산 | 420억원 | 477억원 | 57억원 증액 |
| 국비 | 220억원 | 216억원 | |
| 지방비 | 200억원 | 261억원 | |
| 연면적 | 8,351㎡ | 6,979.32㎡ | 일부 축소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 및 착공 일정이 일부 지연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연도 예산 60억원 전액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교부하였으며, 이 중 15억 3,200만원(25.5%)은 집행되지 못하고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2020~2024년도 해상풍력지원센터 국비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사업경비 | 50 | 37 | 0 | 0 | 16 | 4 | 45 | 22 | 155 | 14 |
| 협력사업비 | 1,950 | 1,950 | 2,000 | 2,000 | 3,385 | 3,385 | 6,405 | 6,405 | 4,360 | 4,360 |
| 연구개발비 | - | - | - | - | - | - | 1,750 | 933 | 835 | 105 |
| 자산취득·관리비 | - | - | - | - | - | - | - | - | 650 | 0 |
| 계 | 2,000 | 1,987 | 2,000 | 2,000 | 3,401 | 3,389 | 8,200 | 7,360 | 6,000 | 4,479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특히, 연구개발비는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집행률이 12.6%에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자산취득·관리비 역시 센터 준공 이후에 자산 구입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집행되므로 당해연도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더욱이 2025년 6월 현재, 해상풍력지원센터는 연약지반에 따른 건축공법 변경 등을 검토 중으로, 절대적인 건축 공기 확보 및 구조 안전 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 기간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내역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립·관리하여 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불용 또는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감독과 관리가 요구됨.

###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비 교부기준 강화 필요

#### ① 결산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5203-322)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융복합단지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성과관리 등을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지원센터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5억원 중 32억원이 집행되고 3억원은 불용되었음.

’24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 3,500 | 3,500 | - | - | - | 3,500 | 3,200 | - | 300 | 2,83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비 교부기준 강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석유·가스·석탄·열·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괄)과 에너지연관산업(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부품·장비·서비스 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6개(지자체 8개)를 지정·운영 중에 있음.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24년 11월 기준)

| 구분 | 새만금(전북) | 광주·전남 | 경북 | 충북 | 경남 | 부산·울산 |
|---|---|---|---|---|---|---|
| 위치 | 전북 새만금 일원 |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 광주·전남(나주, 장성, 목포) 일원 |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포항시 지곡동 일원 | 충북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2$ 이내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 부산·울산 일원 |
| 지정일 | 2019.11.06 | | 2020.08.19 | | | |
| 면적 | 23.90km$^2$ | 18.92km$^2$ | 10.47km$^2$ | 27.77km$^2$ | 28.08km$^2$ | 20.03km$^2$ |
| 중점산업 |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 스마트그리드 풍력 에너지효율 | 풍력 (리파워링) |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 가스복합발전 원자력(제조) | 원자력(해체) |

자료: 제2차 에너지산업융합단기 기본계획('24～'28), 2024.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특화기업 143개를 선정하고, 지역 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8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지역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실증·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5년간 약 285억원 규모의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융복합단지의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강화함.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또한 이러한 지역 에너지산업의 역량 결집 및 혁신 주도를 위한 방안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2024년까지 새만금, 광주·전남, 경북 등 3곳에 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경남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임.

2024년도 예산에는 경남 종합지원센터 구축비 32억원과 충북 종합지원센터 설계비 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충청북도에서 지방비(국비

40% 매칭) 및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센터 건립이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충북 센터 설계비 3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한편, 경남 종합지원센터는 애초 2023년도에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여 2024년 건축, 2025년 내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창원시의 부지 변경[166]으로 인해 협약 체결(2023년 10월)과 지방비 교부(2023년 12월)가 지연되면서 2024년에 이르러서야 증축설계가 본격 착수되었고, 이후 내진 설계 등 기술적 사유로 설계 변경이 발생하여 2025년 8월에서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임.

이처럼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2차년도) 예산 32억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교부하였음.

**경남 종합지원센터 국비 교부액 및 실집행액 ('25.6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 1차년도 ('23.10~'24.09) | 2차년도 ('24.10~'25.09) | 3차년도 ('25.10~'26.09) | 합계 |
|---|---|---|---|---|
| 예산액(국비) | 240 | 3,200 | 2,830 | 6,270 |
| 교부액 | 240 | 3,200 | 2,300 | 5,740 |
| 실집행액 | 240 | - | - | 240 |

주: 3차년도인 2025년도 보조사업비 28억 3,000만원 중 5억 3,000만원은 4분기 교부 예정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66) (기존) 진해연구자유지역 내 신축
(변경) 창원산업기술단지 내 수직 증축

그 결과, 2025년도 현재까지 총 국비 62억 70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을 확인한 후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교부하도록[167]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종합지원센터 건설은 2024년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한 상황에서 국비가 전액 교부된 것으로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예산의 반복적 이월 및 불용을 초래하고 국고보조금의 계획적 집행과 회계연도 내 성과 달성이라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전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 착공 가능성, 지방비 확보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167)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하며,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5)

부분 교부 또는 감액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경남 종합지원센터 건설에 대한 국비 교부가 2025년에 종료되는 만큼, 종합지원센터가 계획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잔여기간 동안 사업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 (6) 농어촌전기공급: 과도한 자체변경으로 인한 불용 재발 방지 필요 등

### ① 결산 현황

‘농어촌전기공급’(5457-301) 사업은 ①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② 농어촌전기공급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1,628억 8,200만원 중 1,571억 7,500만원을 한국전력공사에 교부하고, 57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4년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146,016 | 162,882 | - | 162,882 | 157,175 | - | 5,707 | 115,03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과도한 자체변경으로 인한 불용 재발 방지 필요

동 사업은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전기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려운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전기공급을 안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연말인 2024년 12월 27일에 도서자가발전

시설운영지원 사업의 계획액이 1,445억 6,300만원에서 1,614억 2,900만원으로 168억 6,600만원 증액되는 내용으로 계획이 자체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유는 연료비 변동으로 인한 부족분 반영임.

'24년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자체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 2024년 계획액 | | | |
|---|---|---|---|---|
| | 당초 | 제1·2회 추경 증감분 | 자체변경 증감분 | 수정 |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 1,453 | - | - | 1,453 |
| -민간경상보조(320-01) | 1,453 | - | - | 1,453 |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44,563 | - | 16,866 | 161,429 |
| -민간경상보조(320-01) | 144,563 | - | 16,866 | 161,429 |
| 합계 | 146,016 | - | 16,866 | 162,88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사업은 도서에서 운영하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결손(수익-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높아서 디젤 등을 사용하는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연료비 구매단가가 상승하였고, 운영비용이 증가하면서 운영결손을 지원해주는 동 내역사업의 증액이 필요해 자체변경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2024년 이전에도 매년 연례적으로 계획 자체변경이 이루어져 왔고 매년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요인만으로 자체변경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19～’24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자체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자체변경 내역 | 14,400 | 13,961 | 25,268 | 63,326 | 42,888 | 16,86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2024년도 계획액 편성 당시 전기사업자 관리도서 결손지원의 기준연료비는 리터당 525.1원이었으나 같은 해 실제 연료 구매단가는 연평균 리터당 1,063.7원으로 기준연료비 대비 약 203% 수준이었는데, 국제정세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더라도 2023년 실제 연료 구매단가가 연평균 리터당 1,076.5원이었음을 고려하면 계획액을 과소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관리도서 결손지원 산출근거 및 결산

| 연도 | 2023결산 | 2024예산 | 2024결산 |
|---|---|---|---|
| 연료사용량(A) | 84,296,450ℓ | 84,237,823ℓ | 79,846,858ℓ |
| 연료단가(B) | 1,076.5원/ℓ | 525.1원/ℓ | 1,063.7원/ℓ |
| 연료비(A×B) | 90,744백만원 | 44,231백만원 | 85,113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러한 과소편성이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항상 연말에 자체변경을 통해 부족한 연료비 결손을 충당하였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음.

다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에는 연료비 단가를 상향 편성('24년 525.1원→'25년 826.3원) 하는 등 재정당국과 함께 연료비가 계획액에 과소 편성 되지 않도록 노력해오고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2024년에는 연료비가 부족하여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에서 168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음에도 2024년 결산내역을 보면 같은 내역사업에서 77억 5,000만원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자체변경이 이루어졌음.

'24년도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 본예산 | 추경 (A) |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C) | | | |
| 144,563 | 161,429 | 157,011 | 157,011 | - | 157,011 | 149,306 | 157,011 | 149,306 | - | 7,705 | 95,16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전기판매수입이 7억원 증가하였고 수선유지비에서 45억원, 투자비에서 13억원 지출이 감소하는 등 비용의 감소가 있어 불용이 발생하였고, 자체변경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여 상대적으로 긴급한 지출이 아닌 수선유지비를 연료비로 전용하고자 집행을 보류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자체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은 12월 27일로 사실상 그 해의 수입과 비용이 이미 모두 발생하였음에도 77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자체변경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2024년 실제 연료사용량은 당초 계획 대비 약 27% 증가하였고, 연료 구매단가 역시 계획단가(ℓ당 525.1원)보다 약 2배 높은 ℓ당 1,063.7원으로 나타나 전체 연료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이 이루어졌음.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 제44조,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금융성 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주요 항목(장·관·항)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의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 절차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함.

동 사업 자체변경의 경우 국회 제출 절차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심의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준연료비 산정할 때 향후 연료 구매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이를 계획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액이 과소하게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7) 표준가스복합발전모델및테스트베드구축기술개발사업(R&D): 사업기간 내 과제완료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① 결산 현황

‘표준가스복합발전모델및테스트베드구축기술개발사업(R&D)’(5703-328)은 국내 가스발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가스복합발전 플랜트 모델 개발 및 Test Bed 구축을 위한 출연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35억 2,300만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표준가스복합발전모델및테스트베드구축기술개발사업(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표준 가스복합발전 모델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개발 사업 (R&D) | 3,523 | 3,523 | - | 3,523 | 3,523 | - | - | 2,92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사업기간 내 과제완료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동 사업은 가스복합발전 상용화에 필요한 설계·제작기술 자립 및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표준 가스복합발전 플랜트 모델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이 건설 중인 신규 발전소를 대상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1년에 신규 편성되어 2025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수요기업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지연, 팬데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준공 일정이 2024년 12월에서 2025년 6월로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2월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연도 과제 종료기간을 2025년 6월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전체 사업기간도 2026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음.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가스복합화력발전소로 대체하고 있으나, 핵심 기기인 가스터빈과 관련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 모델 개발과 주기기 국산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개발된 가스터빈 실증 기반도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동 사업은 총 5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모두 2021년에 시작하여 2024년은 과제연도 4년차임.

**표준가스복합화력시스템 및 Test-bed구축 기술개발 과제 현황**

| 과제명 | 주관기관 | 2024년 정부 지원금 (백만원) | 총 정부 지원금 (백만원) |
|---|---|---|---|
| 표준 가스복합발전 시스템 표준화 및 최적모델개발 | 한국전력기술 | 578 | 3,528 |
| 표준 가스복합발전용 주기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 두산에너빌리티 | 1,006 | 9,186 |

| 과제명 | 주관기관 | 2024년 정부 지원금 (백만원) | 총 정부 지원금 (백만원) |
|---|---|---|---|
| 표준 가스복합 발전플랜트 친환경 설비 기술개발 | 두산에너빌리티 | 542 | 2,583 |
| 표준가스복합발전 플랜트 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 한국전력공사 | 738 | 3,823 |
| 표준 가스복합화력 플랜트용 초초임계압 배열회수보일러 기술개발 | 비에이치아이(주) | 659 | 3,04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8월 초 기준 연구비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연구비 77억 1,800만원(국비 35억 2,300만원, 민간부담 41억 9,500만원) 중 54억 5,16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6%이며, 국비 기준으로는 총 35억 2,300만원 중 25억 8,432만원이 집행되어 73.3%임.

RCMS 기준 집행률은 ’22년 69%, ’23년 86%로 지속적인 부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수행기관의 집행률이 여전히 낮거나(일부 과제 집행액 ‘0’), 주요 장비·설비 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일정 관리 실패 시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특히 대규모 장비 도입 과제의 경우 계획 차질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함.

## 표준가스복합화력시스템및Test-bed구축기술개발(R&D) 과제별 집행현황

(단위: 원)

| 과제명 | 수행기관 | 예산액 | RCMS 집행액 | RCMS 잔액 |
|---|---|---|---|---|
| 표준가스복합발전 플랜트 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 대한전기협회 | 69,623,000 | 66,457,585 | 3,165,415 |
| | 더블유에이테크놀러지(주) | 205,187,000 | 143,461,238 | 61,725,762 |
| | 두산에너빌리티(주) | 15,845,000 | - | 15,845,000 |
| | 주식회사 오션소프트 | 154,491,000 | 154,491,000 | 0 |
| | 한국전력공사 | 292,854,000 | 280,610,343 | 12,243,657 |
| 표준 가스복합발전용 주기기 설계 및 제작 기술개발 | 터머솔 | 31,334,000 | 8,419,012 | 22,914,988 |
| | 두산에너빌리티(주) | 974,666,000 | 700,833,980 | 273,832,020 |
| 표준 가스복합발전 시스템 표준화 및 최적모델개발 | 두산에너빌리티(주) | 77,000,000 | - | 77,000,000 |
| | (주)한울전력기술 | 104,000,000 | 104,000,000 | 0 |
| | (주)이앤씨코리아 | 63,000,000 | 60,205,285 | 2,794,715 |
| | 한국전력기술(주) | 334,000,000 | 319,582,104 | 14,417,896 |
| 표준 가스복합화력 플랜트용 초초임계압 배열회수보일러 기술개발 | 두산에너빌리티(주) | 6,542,000 | 136,807 | 6,405,193 |
| | (주)피레타 | 76,560,000 | 75,467,662 | 1,092,338 |
| | 비에이치아이(주) | 575,898,000 | 251,689,736 | 324,208,264 |
| 표준 가스복합 발전플랜트 친환경 설비 기술개발 | 한국기계연구원 | 194,880,000 | 182,879,197 | 12,000,803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08,800,000 | 208,799,966 | 34 |
| |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 20,880,000 | 20,880,000 | 0 |
| | (주)대일아쿠아 | 16,452,000 | 4,134,804 | 12,317,196 |
| | 한국서부발전 | 15,428,000 | - | 15,428,000 |
| | 두산에너빌리티(주) | 85,560,000 | 2,270,611 | 83,289,389 |
| 합계 | | 3,523,000,000 | 2,584,319,330 | 938,680,670 |

주: 예산액, RCMS 집행액 및 잔액 각각 정부출연금('25.06.) 기준 작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국내 가스터빈 설계·제작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표준 가스복합발전 플랜트 모델 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가스터빈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발전 부문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실증지 일정에 맞춰 과제별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비 도입·인허가·계약 절차를 사전에 관리하며, 잔여 기간 동안 계획된 예산과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8) 원전수출보증: 실제 보증 수요를 고려한 출연금 규모 조정 필요

#### ① 결산 현황

‘원전수출보증’(7403-315)은 원전 수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입찰·이행·선급금·하자 등)을 지원하고자 해외원전 사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250억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전액 교부되었음.

’24년도 원전수출보증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원전수출보증 | 25,000 | 25,000 | - | 25,000 | 25,000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실제 보증 수요를 고려한 출연금 규모 조정 필요

동 사업은 해외에 원전 기자재·부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수출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수출보증보험보다 특별지원하는 원전기업 대상 수출보증보험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단년도 금융성 기금 출연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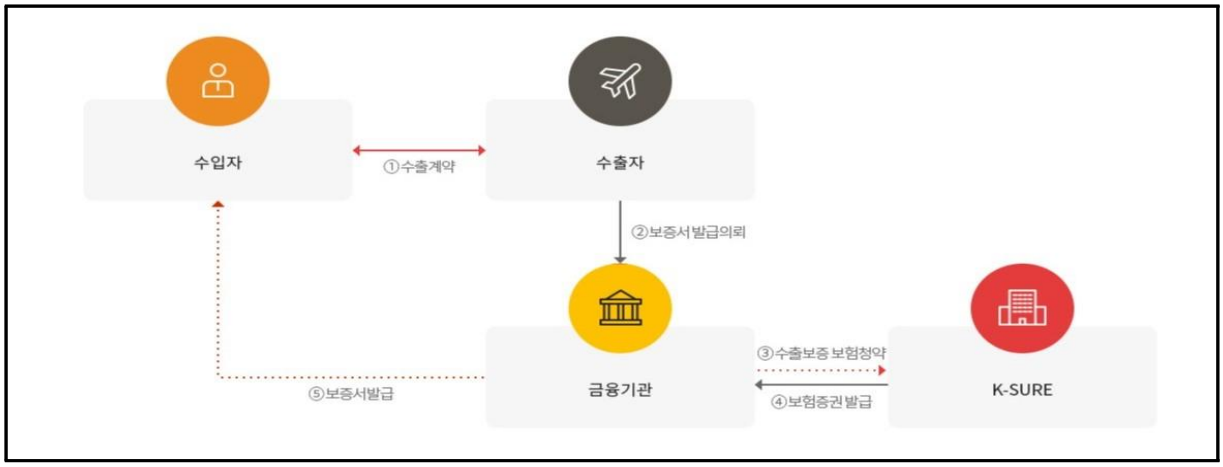
국제거래에서 수입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수출기업의 수출이

행에 대한 담보로서 수출기업에게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168]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리고, 수출기업이 정해진 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수입기업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금융기관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반회계에서 출연[169]받아 무역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보증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수출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수출보증보험 구조**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168) 보증수익자가 수출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을 요청하면 보증서 발행기관은 보증서에 정해진 금액을 수출계약과 독립적으로 지급을 하게 됨

169) 무역보험기금출연(1138-881)

정부는 2024년부터 국내 원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원전 프로젝트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증보험의 보험료 할인 및 한도 우대를 적용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예산 250억원을 편성하였음.

## '24년도 원전수출보증 예산 편성 근거

| 2024년도 예산 | |
|---|---|
| **예산** | **산출내역** |
| 25,000백만원 | ○ 금융성 기금 출연금(350-03) : 25,000백만원<br>- 125,000백만원 공급 ÷ 운용배수(5배) = 25,000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보증한도는 2024년 해외 원전설비 수주목표인 8,000억원에 예상 보증비율 15%를 적용하여 도출하였고 운용배수는 수출보증보험 사고율 20%를 가정하여 5배로 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증수요 전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보증한도를 산출하였고 ①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②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 ③ 튀르키예 아큐 원전 설비수출 등에 대하여 각각의 예상 국내기업 수주율과 선금비율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함.

## '24년도 원전수출 보증수요 전망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사업규모 (기자재) | 국내기업 수주율 | 선금 비율 | 보증수요 |
|---|---|---|---|---|
| 한수원*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 6,900 | 80% | 15% | 828 |
| 한수원*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 1,100 | 80% | 15% | 132 |
| 튀르키예 아큐 원전 설비수출 등 | 982 | 100% | - | 360 |
| 계 | 8,982 | - | - | 1,320 |

* 한수원이 수주한 사업으로 한수원은 잠재공급사 조사 시 국내기업 수주율을 80%로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24년에 실시한 사업공고에 따르면, 원전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170]을 대상으로 ① 인수한도 책정 없는 신속지원, ② 인수한도 우대, ③ 특례심사 우대 중 하나를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보험료 20% 할인을 적용함.

## '24년도 원전수출보증보험 지원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공 통 사 항 |
|---|---|---|
| Fast Track | - U$2백만內 인수한도 책정 없이 신속지원 | - 보험료 20% 추가 할인<br>- 부보율 90% 이내 |
| | - 수출자 공사등급 G급 제외<br>- 자기자본 1.0배 이내 | |
| 인수한도 우대 | - 원전수출 첫걸음기업, 원전유자격인증업체(한수원 원자력분야 유자격 공급자 등)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 |
| | - 수출자 공사등급 G급 제외<br>- 수출자별 U$10백만內 | |
| 특례심사 우대 | - 특례심사위원회 심의건 책정가능한도 최대 3.0배 이내 우대 | |
| | - 수출자별 U$15백만 이내 |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170) 직접 수출 및 1·2차 하도급 업체

그런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24년 2월에 사업을 공고한 이후 실제 원전 수출 건으로 해당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전혀 없어 보증실적이 0원이었음.

2024년에 보증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① 한수원 이집트 엘다바 건과 루마니아 사업 건은 발주사와 기자재 사양 결정 등의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중소·중견 하도급 계약이 지연되었고, ② 튀르키예 아큐 원전 설비수출 등 중소·중견기업의 직접 수출 건의 경우 기업들이 수주는 하였으나 원청자가 러시아 업체로 경제제재 관련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 발급회피 등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다만, 한수원의 이집트, 루마니아 기자재 공급 건은 발주가 모두 완료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어 근시일 내 상당한 보증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타 유사 보증사업의 경우에도 상품 출시 후 2년여간 수요가 없었으나, 이후 수요가 크게 발생하면서 사업규모도 확대한 사례가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증사업은 긴 호흡을 갖고 관리할 필요도 있음.

한편, 동 사업의 운용배수는 5배로 이는 사업 예산 편성 당시 일반적인 보증 건의 5년 사고율인 27.9%[171]에 근거하여 사고율을 약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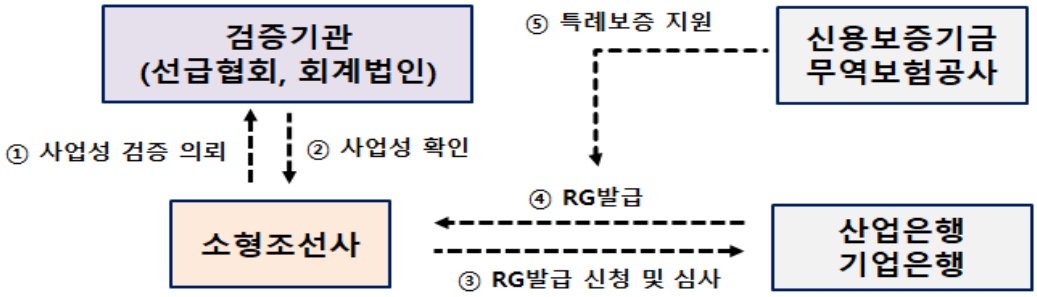
171) 사고율이 높았던 선박 RG 및 사고율이 낮은 대기업 중심 방산 분야 실적을 제외한 수출보증보

로 예상하고 운용배수 5배수를 적용하였음.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실시하고 있는 중소조선사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 보증) 특례 보증규모 산출 시 투입되는 운용배수 5배를 참고하였음. 이는 과거 원전 수출 대상 전용 한도가 운영되지 않아 운용배수의 적정 수준 산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바, 정부 출연 지원 사업의 유사 사례를 참고한 것임.

**'24년도 중소조선사 RG 특례 보증**

○ RG 특례보증 지원 (40,000백만원)
- 선박건조 시 필요한 중소형 조선사의 RG를 공사가 보증함으로써 국내 조선산업수출 경쟁력 확보
- 400억원(예산) × 5배(운용배수) = 2,000억원(보증한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만 보더라도 원전수출은 대부분 공공기관인 한수원을 통해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직접 마중물 역할을 하여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수출보증

---

험 건의 5년('18~22) 사고율 수치

건 대비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반면 동 사업의 리스크는 원청사 직접 수주 업체를 포함한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신용위험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사고율 산정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

또한, 해외 원전 수주 사례가 많지 않고 한전과 한수원의 UAE 바라카 원전 사례가 있더라도 아직 중소·중견기업의 보험 부보 사례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 사고율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결과적으로, 보증수요 전망이 실제 보증 지원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운용배수 산정을 위한 보험 사고율 도출 또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바,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실제 보증수요와 사고율 추이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보험의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향후 실제 발생하는 보증수요와 수출보증보험 사고율 추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사업 운영·관리가 필요함.

## (9)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원전 기자재 업체 선금 보증보험 지원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① 결산 현황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7403-317)은 신한울 3·4호기 기자재를 공급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납부금 선금 신청 시 필요한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57억 8,500만원 중 28억 9,300만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교부되었음.

’24년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 5,785 | 5,785 | - | 5,785 | 2,893 | - | 2,892 | 3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동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선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되어 2026년까지 3년 동안 수행될 예정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기재부의 특례 승인을 거쳐 2023년 12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급사와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직후(공급사 청구한 후 14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기존에는 한수원이 공급사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이후 2~3년이 지나 공급사가 기자재를 납품하는 연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당해연도 납품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

그런데, 한수원이 기자재 공급사에 선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에 대하여 보증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공급사에게 보증수수료가 발생하게 됨.

영업이익률이 낮은 원전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보증수수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121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인 88개사는 보증수수료를 선금 신청에 대한 제약사항이라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2024년에 동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한수원에 기자재 선금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보험 발급수수료의 50%를 보조하기 시작했음.

당초 예산 규모는 한수원이 2023년에 발주한 보조기기와 2024년에 발주할 보조기기의 계약 규모를 1조 196억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선금 지급률(30%), 예상 평균 수수료율(1.5%), 예상 보증기간(2.5년)을 곱한 선금 보증수수료 규모 추정액에 보조율 50%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 '24년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예산 편성 근거

| 2024년도 예산 | |
|---|---|
| 예산 | 산출내역 |
| 5,785백만원 | ○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5,735백만원)<br>- 2024년 신한울 3·4 기자재 예상 계약금(10,196억원) × 선금지급율(30%) × 수수료율(1.5%) × 보증기간(2.5년) × 보조율(50%) = 5,735백만원<br>○ 운영비 (50백만원)<br>- 정규직 1명(5백만원 × 30% × 12개월) + 신규 계약직 1명(2.67백만원 × 100% × 12개월) = 50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 대비 50%인 28억 9,300만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교부되었고 실집행액은 그 절반 수준인 14억 4,0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5.1%에 불과하였음.

### '24년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실집행률 (C/A) |
|---|---|---|---|---|---|---|---|---|---|---|---|
| 계획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B) | 전년도 이월액 제외 | | 이월액 | 불용액 | |
| 당초 | 수정 (A) | | | | | | 계획 현액 | 집행액 (C) | | | |
| 5,785 | 5,785 | 2,893 | 2,893 | - | 2,893 | 1,440 | 2,893 | 1,440 | - | 1,453 | 25.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신청이 사전 수요조사 대비 낮아 2024년 5월 31일에 사업공고를 변경하여 보조기기가 아닌 주기기를 공급하는 업체까지 사업대상으로 추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음.

'24년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대상 변경 내역

| 사업공고 변경 전(2024.2.8.) | 사업공고 변경 후(2024.5.31.) |
|---|---|
| ○ 신한울 3·4 보조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 ○ 신한울 3·4 기자재(주기기, 보조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보조기기 공급계약 업체들을 살펴보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해외기업의 규모가 5,923억 4,1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기기 발주 규모 1조 806억 4,000만원의 54.8%를 차지하여 지원대상 자체가 예산 편성 시 추정한 수준의 절반 이하이고,

보조기기 선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대기업·해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받은 선금은 보조기기 선금 전체 규모 1,980억 500만원 중 52.9%인 1,047억 1,900만원으로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선금 보증수수료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음.

'24년도 기업 유형별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액 및 선금 청구 현황

| | 중소·중견기업 | 비중(%) | 대기업·해외기업 | 비중(%) | 합계 |
|---|---|---|---|---|---|
| 계약액<br>(단위 : 백만원) | 488,299 | 45.2 | 592,341 | 54.8 | 1,080,640 |
| 선금<br>(단위 : 백만원) | 93,286 | 47.1 | 104,719 | 52.9 | 198,00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자재 일감을 발주하는 계약 방식의 특성, 한수원의 보조기기 협력기업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한수원이 계획하는 발주 규모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보조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모두 선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이 수주한 전체 보조기기 발주 규모 4,882억 9,900만원 중 64.4%인 3,144억 4,100만원만 한수원에 선금 지급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공급사가 한수원으로부터 선금을 받으면 이는 선수금으로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으로 잡히는데 일부 기업은 재무상황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부채한도를 넘어서게 되어 선금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음.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대금을 미리 선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

자재 제작기간(2~3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기자재 납품 시 대금 수령을 선호하였으며, 기자재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선금 수령의 실익이 없어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① 사업대상이 아닌 대기업·해외기업의 높은 수주 비중, ② 중소·중견기업의 저조한 선금 신청으로 인해 사업대상을 주기기 공급계약까지 확대하였음에도 집행이 부진하였음.

한수원이 원전 기자재 업체에게 기기 발주에 대한 선금을 특례로 지급하는 취지가 공기가 긴 원전 공사의 특징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으로 겪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것임을 고려하면 대기업·해외기업 비중이 중소·중견기업 비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은 특례 도입의 본질적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게다가, 부채가 많아 재무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오히려 선금을 받으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차라리 선금을 신청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선금 지급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상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미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024년에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7403-313)을 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은 원전 중소·중견기업 중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선금 특례 및 보증보험 지원과 중복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일부 기업[172]은 융자지원과 선금 특례, 보증보험 지원을 모두 적용받았음.

즉, 원전 기자재 선금 특례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확보되기 어렵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크지 않은데 이미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유사한 융자사업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자재 선금에 대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수요, 집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72) 2024년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은 69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동 사업을 통해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를 지원받았음.

# Ⅷ.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 수입결산

### (1) 기금수입 현황표

'24년도 기금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년 결산 | 2024년 | | | 증 감 | |
|---|---|---|---|---|---|---|
| | | 계획(A) | 변경(B) | 실적(C) | C-B | (%) |
| **재산수입** | **125,718** | **130,336** | **130,336** | **201,320** | **70,984** | **54.5** |
| -기타재산이자수입 | 125,718 | 130,336 | 130,336 | 201,320 | 70,984 | 54.5 |
| **경상이전수입** | **796,261** | **955,280** | **955,280** | **805,173** | **△150,107** | **△15.7** |
| -법정부담금 | 787,785 | 921,391 | 921,391 | 792,903 | △128,488 | △13.9 |
| -기타경상이전수입 | 8,476 | 33,889 | 33,889 | 12,270 | △21,619 | △63.8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55,889** | **74,543** | **74,543** | **65,897** | **△8,646** | **△11.6** |
| -기타잡수입 | 55,889 | 74,543 | 74,543 | 65,897 | △8,646 | △11.6 |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 **3,995,570** | **5,130,082** | **5,130,082** | **4,405,977** | **△724,105** | **△14.1**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489,794 | 323,263 | 323,263 | 373,263 | 50,000 | 15.5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3,505,776 | 4,806,819 | 4,806,819 | 4,032,714 | △774,105 | △16.1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2,984,831** | **3,000,417** | **3,000,417** | **3,492,249** | **491,832** | **16.4** |
| -기금예탁원금회수 | 2,880,000 | 2,880,000 | 2,880,000 | 3,367,000 | 487,000 | 16.9 |
| -기금예탁이자수입 | 104,831 | 120,417 | 120,417 | 125,249 | 4,832 | 4.0 |
| **합 계** | **7,958,269** | **9,290,658** | **9,290,658** | **8,970,616** | **△320,042** | **△3.4** |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 실적은 8조 9,706억 1,600만원으로 계획(9조 2,906억 5,800만원) 대비 3,200억 4,200만원(△3.4%) 감소하였음.

계획대비 수입액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재산이자수입 709억 8,400만원 증가, 법정부담금은 1,284억 8,800만원 감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16억 1,900만원 감소, 기타잡수입은 86억 4,600만원 감소,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7,241억 500만원 감소하였고,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4,918억 3,200만원 증가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 2,013억 2,000만원은 기금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고,

경상이전수입 중 법정부담금 7,929억 300만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징수한 것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 122억 7,000만원은 출연금 정산잔액 등이며,

기타잡수입 658억 9,700만원은 방사성폐기물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인도 시 납부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수납액임.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4조 4,059억 7,700만원은 2024년도 여유자금 예치금 회수액으로,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3,732억 6,3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4조 327억 1,400만원의 합계이고,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조 4,922억 4,9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탁원금회수 3조 3,670억원과 예탁이자수입 1,252억 4,900만원의 합계임.

## 2. 지출결산

### '24년도 기금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023년 실적 | 2024년 | | | 증 감 | |
|---|---|---|---|---|---|---|
| | | 계획(A) | 변경(B) | 실적(C) | C-B | (%)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 89,291 | 121,219 | 121,219 | 121,219 | - | - |
| 사용후핵연료관리 | 2,798 | 5,482 | 5,482 | 5,482 | - | - |
| 방사성폐기물정책지원및홍보 | 2,384 | 2,082 | 2,082 | 2,082 | - |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 26,598 | 34,567 | 34,567 | 34,567 | - | - |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 2,300 | 2,300 | 2,300 | 2,300 | - |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원 | 60,515 | 54,773 | 61,263 | 61,263 | - | - |
| **사업비 소계** | **183,886** | **220,423** | **226,913** | **226,913** | **-** | **-** |
| 방폐기금운영인건비 | 900 | 923 | 923 | 923 | - | - |
| 방폐기금운영관리비 | 506 | 481 | 481 | 481 | - | - |
| **기금운영비 소계** | **1,406** | **1,404** | **1,404** | **1,404**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3,367,000** | **3,760,000** | **3,888,700** | **3,888,700**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373,263** | **337,435** | **337,435** | **337,435**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4,032,714** | **4,971,396** | **4,836,206** | **4,516,164** | **△320,042** | **△6.6** |
| **합 계** | **7,958,269** | **9,290,658** | **9,290,658** | **8,970,616** | **△320,042** | **△3.4** |

202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8조 9,706억 1,600만원으로, 지출사업비는 운용규모의 2.5%인 2,269억 1,300만원임.

2024년도 사업비 지출은 2,269억 1,300만원으로, 중·저준위방폐물관리 1,212억 1,900만원, 사용후핵연료관리 54억 8,200만원, 방사성폐기물정책

지원및홍보 20억 8,200만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345억 6,700만원,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23억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원 612억원 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음.

기금운영비는 14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조 8,887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음. 여유자금운용은 계획액 5조 1,736억 4,100만원 대비 3,200억 4,200만원이 감소한 4조 8,535억 9,900만원임.

# 3.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 | 2024 | | 2023 | | |
|---|---|---|---|---|---|
| **자산** | | | | | |
| **Ⅰ.유동자산** | | **93,964** | | **82,364**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5,763 | | 5,947 | - (△184억원) |
| 2. 단기금융상품 | | - | | 500 | - (△500억원) |
| 3. 단기투자증권 | | 44,784 | | 37,934 | - (6,850억원) |
| 4. 미수채권 | | 4,530 | | 4,312 | - (224억원) |
| 5. 단기대여금 | | 38,887 | | 33,670 | - (5,217억원) |
| 6. 기타유동자산 | | - | | 1 | - (△1억원) |
| **Ⅱ.투자자산** | | **-** | | **-** | |
| 1. 장기대여금 | | - | | - | |
| **Ⅲ.일반유형자산** | | **-** | | **-** | |
| 1. 기타일반유형자산 | | 17 | | 17 | |
|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17 | | 17 | | |
| **Ⅳ.무형자산** | | **-** | | **-** | |
| 1. 소프트웨어 | | - | | - | |
| **Ⅴ.기타비유동자산** | | **10,123** | | **12,934** | |
| 1. 장기미수채권 | | 11,512 | | 15,033 | - (△3,521억원) |
|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 1,389 | | 2,099 | | |
|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자산계** | | **104,087** | | **95,298** | |
| **부채** | | | | | |
| Ⅰ.유동부채 | | - | | - | |
| 1. 기타유동부채 | | - | | - | |
| **부채계** | | **-** | | **-** | |
| **순자산** | | | | | |
| **Ⅰ.적립금 및 잉여금** | | **102,077** | | **94,979** | |
| **Ⅱ.순자산조정** | | **2,010** | | **319** | |
| **순자산계** | | **104,087** | | **95,298** | |
| **부채와순자산계** | | **104,087** | | **95,298** | |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순자산은 10조 4,087억원으로 2023년도 대비 8,789억원(9.2%) 증가한 규모임.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2,167** | **(689)** | **1,478** | **1,745** | **(571)** | **1,174** |
| 1. 방사성폐기물관리 | 2,167 | (689) | 1,478 | 1,745 | (571) | 1,174 |
| **Ⅱ.관리운영비** | | | **14** | | | **14** |
| 1. 인건비 | | | 9 | | | 10 |
| 2 .경비 | | | 5 | | | 4 |
| (1) 복리후생비 | | | - | | | - |
| (2) 소모품비 | | | - | | | - |
| (3) 인쇄비 | | | - | | | - |
| (4) 지급수수료 | | | - | | | - |
| (5) 세금과공과 | | | - | | | - |
| (6) 수도광열비 | | | - | | | - |
| (7) 지급임차료 | | | 1 | | | 1 |
| (8) 수선유지비 | | | 1 | | | - |
| (9) 여비교통비 | | | 1 | | | 1 |
| (10) 업무추진비 | | | - | | | - |
| (11) 외주용역비 | | | 2 | | | 2 |
| **Ⅲ.비배분비용** | | | **-** | | | **-** |
| **Ⅳ.비배분수익** | | | **3,957** | | | **3,166** |
| 1. 이자수익 | | | 2,010 | | | 2,030 |
| 2. 자산처분이익 | | | 1,947 | | | 1,136 |
| 3. 기타수익 | | | - | | | - |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 **(2,464)** | | | **(1,978)** |
| **Ⅵ.비교환수익 등** | | | **4,634** | | | **3,783** |
| 1. 부담금수익 | | | 4,634 | | | 3,783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 **(7,098)** | | | **(5,761)** |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재정운영에 2,181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9,28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7,098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2023년 기초순자산 | - | 89,217 | (1,936) | 87,281 |
| 1. 보고금액 | - | 89,217 | (1,936) | 87,281 |
| Ⅱ.재정운영결과 | - | (5,761) | - | (5,761) |
| Ⅲ.조정항목 | - | - | 2,256 | 2,256 |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2,256 | 2,256 |
| Ⅳ.2023년 기말순자산 (Ⅰ-Ⅱ+Ⅲ) | - | 94,978 | 320 | 95,298 |
| | | | | |
| Ⅴ.2024년 기초순자산 | - | 94,978 | 320 | 95,298 |
| 1. 보고금액 | - | 94,978 | 320 | 95,298 |
| Ⅵ.재정운영결과 | - | (7,098) | - | (7,098) |
| Ⅶ.조정항목 | - | - | 1,691 | 1,691 |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1,691 | 1,691 |
| Ⅷ.2024년 기말순자산 (Ⅴ-Ⅵ+Ⅶ) | - | 102,076 | 2,011 | 104,087 |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0조 4,087억원으로, 2023년도 기말순자산 9조 5,298억원 대비 8,798억원이 증가함. 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한 것에 기인함.

## <별 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
|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6,314,748 | - |
| 1. 국가채권현재액 | 1,836,339 | - |
| 2. 국유재산현재액 | 4,478,409 | - |
| 3. 물품현재액 | - | - |
| 4. 국가채무합계 | - | -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 10,408,705 | - |
| Ⅲ. 차이내역(Ⅱ-Ⅰ=A+B+C+D+E) | 4,093,957 | -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 -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3,888,700 | -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132,182) | - |
| 4. 대상차이(D) | 337,439 | - |
| 5. 기타차이(E) | - | - |

□ 차이내역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 없음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3,888,700백만원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 미수이자수익 10,950백만원, 기타미수금 10,434백만원,
  미수채권 할인차금 △14,712백만원, 장기기타미수금 20백만원,
  장기미수채권 할인차금 △138,874백만원

④ 대상차이

- 한국은행 국가예금 337,435백만원, 일반유무형자산 4백만원

⑤ 기타차이 : 장기미수부담금수익과 실징수액 간 원단위 절사금액 차이

## 4. 검토의견

### (1)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고준위방폐물 인력양성사업의 운영현황 및 과제

#### ① 결산 현황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5632-302)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4억 8,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조성 | 5,482 | 5,482 | - | - | - | 5,482 | 5,482 | - | - | 3,59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고준위방폐물 인력양성사업의 운영현황 및 과제

동 사업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안정적 이행과 중장기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관리방안 수립’, ‘관리현황 및 기술조사’, ‘영구처분 기반구축’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중 ‘관리방안 수립’에 포함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이하 “인력양성사업”)은 기술·정책·소통 분야 전반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3년부터 추진되었음.

2024년에는 인력양성사업예산으로 16억원이 편성·집행되었으며, 사업 시행 2년차인 만큼 추진 현황과 운영상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인력양성사업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내 방폐물기술인력개발원이 주관하며, ① 학사급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지원사업', ② 석·박사급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연합대학원 지원사업', ③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심화교육인 '종사자 마스터 양성사업', ④ 'R&D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① 대학지원사업은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사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제 기반 학습(PBL)을 도입한 실험·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됨. 현재 세종대, 조선대, 강원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학사 70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② 연합대학원 지원사업은 기술 간 융합형, 공학-인문 융합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기술적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석·박사급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2024년에는 포항공과대학교 -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 - 경희대학교 컨소시엄이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공동교과과정 개설, 연구 프로젝트 수행, TA(Teaching Assistant) 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2027년까지 총 25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③ 종사자 마스터 양성사업은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정책·법제도, 행정 분야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집체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2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④ R&D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은 고준위방폐물관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R&D 전문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2024년의 경우 핀란드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

다만, 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남.

먼저, '대학지원사업'은 석·박사 멘토의 역량 편차에 따라 교육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혜인원, 논문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로 인해[173] 산업·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특히, 동 사업은 고준위방폐물 분야의 신규인력 유입을 주요 목표로 하는 만큼,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 분야로의 진출로 연계되는 것이 핵심이므로, 산업계 수요와의 연계 강화, 진로 추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음, '종사자 마스터 양성사업'은 단기 집체교육 위주로 운영되어

173) 대학지원사업 성과측정 평가항목
○ 인력양성 성과 : 수혜인원, 배출인원, 취업 및 진학, 취업률
○ 활동성과 : 관련 행사(대회, 세미나 등) 참여 수(건), 학위 논문(게재, 발표)
○ 만족도 조사 :수혜 학생의 프로젝트 만족도, 배출 학생 고용기업 만족도

교육 효과의 지속성과 업무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실제 참여자 196명 중 대학 소속이 54명(27.6%)에 달해,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괴리가 있음.

2024년도 종사자 마스터 양성사업 교육 실시내역

| 구분 | 기초1 | 기초2 | 기초3 | 심화 |
|---|---|---|---|---|
| 일시/장소 | 6.26~28./서울 | 9.25~27./대전 | 11.5~7./부산 | 11.20~22./서울 |
| 주제 | 사용후핵연료 개론, 운반·저장 개론, 관리정책 등 | 사용후핵연료 특성평가, 처분공학 등 | 부지조사, 심부시추, 부지특성화 등 | 운반·저장 설계/안전성평가/ 인허가 |
| 강사 | 정○○ 외 8명 | 국○○ 외 6명 | 한○○ 외 5명 | 두○, N○○ Int. |
| 신청/참여 | 72/50 | 111/70 | 61/40 | 36/36 |
| 만족도 | 97% | 99% | 100% | 99% |

* 참석현황(총 196명) : 공공기관(28명), 공기업(36명), 연구기관(14), 대학(54), 민간기업(6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교육 신청자 280명 중 196명(70%)만 수료하는 등 수료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 일정, 운영방식 등에 있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이러한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관리 체계 마련, 참여대상 적정성 확보, 교육방식 개선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1. 수입결산

### (1) 기금수입 현황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2014.12.)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던 기술료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통합하여 2015년 신설한 기금으로서, 산업기술혁신계정 및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24년도 기금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 2023년 결산 | 2024년 결산 | | | | |
|---|---|---|---|---|---|---|
| | | 계획(A) | 변경(B) | 실적(C) | 증감 (C-B) | 증감률 (%) |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1,998 | 981 | 981 | 1,072 | 91 | 9.3 |
| 기타민간이자수입 | 29 | 16 | 16 | 138 | 122 | 762.5 |
| 기타재산이자수입 | 1,969 | 965 | 965 | 934 | △31 | △3.2 |
| 기타경상이전수입 | 68,183 | 57,845 | 57,845 | 60,159 | 2,314 | 4.0 |
| 법정부담금 | 1,663 | 2,053 | 2,053 | 1,991 | △62 | △3.0 |
| 기타경상이전수입 | 66,520 | 55,792 | 55,792 | 58,168 | 2,376 | 4.3 |
| 융자원금회수 | 1,648 | 1,425 | 1,425 | 2,106 | 681 | 47.8 |
| 정부예금회수 | 56,735 | 69,614 | 69,614 | 56,454 | △13,160 | △18.9 |
| 예수금 | - | 60,000 | 60,000 | 60,000 | - | - |
| 예탁원금회수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 | - |
| 예탁이자수입 | 352 | 485 | 485 | 446 | △39 | △8.0 |
| 합계 | 140,916 | 202,350 | 202,350 | 192,237 | △10,113 | △5.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수입 실적은 1,922억 3,700만원으로 계획(2,023억 5,000만원) 대비 101억 1,300만원(△5.0%) 감소하였음.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은 신규사업에 따른 융자이자 발생으로 계획액 9억 8,100만원 대비 9.3% 증가한 10억 7,2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법정부담금’이 규제물질 추가에 따라 제조·수입업자 부담금이 변동하여 계획액 20억 5,300만원 대비 3.0% 감소한 19억 9,1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계획액 557억 9,200만원 대비 4.3% 증가한 581억 6,800만원임.

‘융자원금회수’는 융자잔액의 조기회수 증가로 계획액 14억 2,500만원 대비 47.8% 증가한 21억 600만원, ‘정부예금회수’는 전년도말 여유자금 운용의 감소에 따라 계획액 696억 1,400만원 대비 18.9% 감소한 564억 5,400만원임.

‘예수금’은 사업비 지급 등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예수한 것으로 600억원임.

또한 ‘예탁원금 회수’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120억원임.

## 2. 지출결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액은 2,023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22억 3,700만원으로 계획 대비 5.0% 감소하였음.

### '24년도 기금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2023 실적 | 2024 | | | 증 감 | |
|---|---|---|---|---|---|---|
| | | 계획(A) | 변경(B) | 실적(C) | (C-B) | (%)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 38,390 | 110,876 | 110,876 | 110,876 | - | - |
| 산촉기금운영인건비 | 661 | 678 | 678 | 678 | - | - |
| 산촉기금운영관리비 | 319 | 303 | 303 | 303 | - | - |
| 대체물질활용지원 | 1,926 | 850 | 850 | 850 | - | - |
| 인건비(산촉기금-특물계정) | 160 | 164 | 164 | 164 | - | - |
|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 44 | 42 | 42 | 42 | - | - |
| **사업비 소계** | **41,500** | **112,913** | **112,913** | **112,913** | **-** | **-** |
| **회계기금간거래** | **30,962** | **19,668** | **20,123** | **20,116** | **△7** | - |
| **기금간거래(예탁금)** | **12,000** | **11,000** | **11,000** | **11,000**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 (산촉기금-혁신계정)** | **51,480** | **43,986** | **43,531** | **38,632** | **△4,899** | △11.3 |
| **통화금융기관예치 (산촉기금-특물계정)** | **4,974** | **14,783** | **14,783** | **9,576** | **△5,207** | △35.2 |
| **합계** | **140,916** | **202,350** | **202,350** | **192,237** | **△10,113** | **△5.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지출액 중 사업비는 총 운용규모의 58.7%인 1,129억 1,300만원이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16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38억 1,600만원 등 311억 1,600만원을 전출하였고 482억 800만원은 여유자금(사업성 대기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2024년도 사업비 지출은 계획액 1,129억 1,300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통화금융기관예치는 계획(583억 1,400만원) 대비 101억 600만원이 감소한 482억 800만원으로, 2024년 여유자금회수 등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임.

# 3.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 | 2024 | 2023 |
|---|---|---|
| **자산** | | |
| **Ⅰ.유동자산** | **646** | **76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90 | 567 |
| 2. 단기금융상품 | - | - |
| 3. 단기투자증권 | - | - |
| 4. 미수채권 | 37 | 68 |
| 5. 단기대여금 | 119 | 130 |
| **Ⅱ.투자자산** | **845** | **30** |
| 1. 장기대여금 | 845 | 30 |
| 2. 장기투자증권 | - | - |
| **자산계** | **1,491** | **795** |
| **부채** | | |
| **Ⅰ.유동부채** | **3** | **1** |
| 1. 기타유동부채 | 3 | 1 |
| **Ⅱ.장기차입부채** | **1767** | **1,167** |
| 1. 장기차입금 | 1,767 | 1,167 |
| **부채계** | **1,770** | **1,169** |
| **순자산** | | |
| **Ⅰ.적립금 및 잉여금** | **(279)** | **(374)** |
| **Ⅱ.순자산조정** | **-** | **-** |
| **순자산계** | **(279)** | **(374)** |
| **부채와순자산계** | **1,491** | **795** |

산촉기금의 2024년도말 자산은 1,491억원, 부채는 1,770억원으로 순자산은 △279억원임. 순자산은 2023년도 대비 95억원 증가한 규모임.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304** | **(31)** | **273** | **393** | **(16)** | **377** |
| 1. 주력산업진흥 | 9 | (1) | 8 | 9 | (3) | 6 |
| 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 295 | (30) | 265 | 384 | (13) | 371 |
| **Ⅱ.관리운영비** | | | **12** | | | **12** |
| 1. 인건비 | | | 8 | | | 8 |
| 2. 경비 | | | 4 | | | 4 |
| (1) 복리후생비 | | | - | | | - |
| (2) 소모품비 | | | 2 | | | 2 |
| (3) 광고선전비 | | | - | | | - |
| (4) 지급수수료 | | | - | | | - |
| (5) 세금과공과 | | | - | | | - |
| (6) 지급임차료 | | | - | | | - |
| (7) 수선유지비 | | | - | | | - |
| (8) 여비교통비 | | | - | | | - |
| (9) 업무추진비 | | | - | | | - |
| (10) 연구개발비 | | | 2 | | | 2 |
| **Ⅲ.비배분비용** | | | **40** | | | **22** |
| 1. 이자비용 | | | 40 | | | 22 |
| **Ⅳ.비배분수익** | | | **562** | | | **670** |
|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 | | 542 | | | 647 |
| 2. 이자수익 | | | 19 | | | 21 |
| 3. 자산처분이익 | | | - | | | - |
| 4. 기타수익 | | | 1 | | | 2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238)** | | | **(259)** |
| **Ⅵ.비교환수익 등** | | | **(143)** | | | **(271)** |
| 1. 부담금수익 | | | 20 | | | 16 |
| 2. 기타재원조달및이전 | | | (163) | | | (288)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 **(95)** | | | **12** |

산촉기금은 2024년도 재정운영에 프로그램총원가 304억원, 관리운영비 12억원 등을 투입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 31억원, 비교환수익 143억원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9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2023년 기초순자산 | | (362) | 1 | (362) |
| 1. 보고금액 | | (362) | 1 | (362) |
| Ⅱ.재정운영결과 | | 12 | | 12 |
| Ⅲ.조정항목 | | - | (1) | (1) |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1) | (1) |
| Ⅳ.2023년 기말순자산 | | (374) | - | (374) |
| Ⅴ.2024년 기초순자산 | | (374) | - | (374) |
| 1. 보고금액 | | (374) | - | (374) |
| Ⅵ.재정운영결과 | | (95) | | (95) |
| Ⅶ.조정항목 | | - | - | - |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 - |
| Ⅷ.2024년 기말순자산 | | (279) | - | (279) |

산촉기금의 2024년 기말 순자산은 △279억원으로, 2023년 기말순자산 △374억원 대비 95억원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95억원의 손익 감소가 발생한 것에 기인함.

## 4. 검토의견

###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술료 등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재정안전성 제고 필요

#### ① 결산 현황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은 산업기술개발사업(R&D)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비 정산, 이자 등의 정산환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액은 557억 9,2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계획액의 104.3%인 581억 6,8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기술료수입 등)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이체등 증감액 | 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 수납액 | 불납 결손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 55,792 | 55,792 | - | 55,792 | 58,168 | 58,168 | - | - | 5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기술료 등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재정안전성 제고 필요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581억 6,800만원 중 96.8%(563억 2,400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료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이하 “실시기업”)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징수된 기술료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174] 및 제37조의2[175]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중 ‘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귀속되고 있음.

산촉기금은 기존 산업기술 R&D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애로사항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신설된 기금으로,

산업기술혁신계정(이하 “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2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산촉기금 수입 규모 총 1,922억원 중 혁신계정 1,706억원(88.8%),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216억원(11.2%)이 각각 편성되었음.

---

17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024년 산업기술진흥기금 및 사업화촉진기금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산업기술혁신계정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 합 계 |
|---|---|---|---|
| 2024 | 170,605 | 21,632 | 192,23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중 혁신계정은 주로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협력사업 지원, 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등 산촉기금의 설치 목적인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주요 재원인 정부 납부 기술료는 산촉기금의 88.8%를 차지하는 혁신계정 규모의 약 1/3(33.0%)을 차지하고 있어 산촉기금 내에서 추진하는 R&D 사업 등에 있어서 기술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2024년 산업기술혁신계정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4년도 결산 | 비율 |
|---|---|---|---|
| 산업기술 혁신계정 | 기타민간이자수입 | 115 | 0.1%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918 | 0.5% |
| | 기타경상이전수입<br>(기술료) | 58,092<br>(56,324) | 34.1%<br>(33.0%) |
| | 정부내부수입<br>(공자기금예수금) | 60,000<br>(60,000) | 35.2%<br>(35.2%) |
| | 통화하금융기관<br>예치금회수 | 51,480 | 30.1% |
| | 합계 | 170,605 | 1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산촉기금 혁신계정 주요 재원 및 용도

| 계정 | 주요 재원 | 용도(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4와 5) |
|---|---|---|
| 산업기술<br>혁신계정 | 기타경상이전수입<br>(정부 납부 기술료 등) |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협력사업 지원<br>·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br>·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기술료 수입은 2019년 881억 2,900만원에서 2022년 688억 8,200만원, 2024년 563억 2,4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4년도의 경우 2019년 대비 기술료가 318억 500만원(약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국고 납입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기술료 | 88,129 | 88,604 | 71,745 | 68,882 | 65,228 | 56,32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같이 기술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종전에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액기술료'[176]와 '경상기술료'[177] 중 실시기업[178]이 기술료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신규과제부터 경상기

176) 매출 발생과 상관없이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기술료

177) 연구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사업화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하는 기술료

178)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기업

술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일원화[179]되면서 정액기술료 수입이 감소[180]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2025년부터는 기업 규모별 경상기술료 납부비율이 현행보다 50% 인하되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181]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기술료 수입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임.

**기술료 제도 변화에 따른 기술료 징수액 추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기술료 징수액 추계 | 54,614 | 46,889 | 39,221 | 31,310 | 34,01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같은 기술료의 감소는 산촉기금을 통한 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산촉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R&D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위축[182]되는

179) 기술료 제도 변화에 따른 납부한도 및 비율 변동 추세

| 구분 | | 2021년 이전 | | | 2021년 이후 | | | 25년 이후* | | |
|---|---|---|---|---|---|---|---|---|---|---|
| | | 대기업 | 중견 | 중소 | 대기업 | 중견 | 중소 | 대기업 | 중견 | 중소 |
| 정액기술료 | | 정부출연금 40% | 20% | 10% | | | | | | |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 4% | 2% | 1% | | | | | | |
| | 매출정률기술료 | 매출액 4% | 2% | 1% | 매출액 20% | 10% | 5% | 매출액 10% | 5% | 2.5% |
| | 납부한도 | 정부출연금 48% | 24% | 12% | 정부출연금 40% | 20% | 10% | 정부출연금 40% | 20% | 1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80) 2024년 기준 납부건당 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평균액
- 정액기술료 : 41백만원 / - 경상기술료 : 8백만원

18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호의 개정(2024. 12. 31.)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비율이 각각 매출액의 20%/10%/5% 기준에서 → 10%/5%/2.5%로 인하되었음.

182) 산촉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출연·보조 사업인 경상사업비(출연금을 통한 R&D 수행사업 등)의 지출 규모가 2021년 402억 6,800만원에서 2024년 208억 7,6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비하여 2024년도부터는 융자금 회수를 통해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 융자사

등 산촉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촉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 매출액 실태점검 강화를 통한 기술료 징수율 제고 및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등 다양한 기술료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료 외에 산촉기금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자체 수입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업비(융자를 통한 R&D 수행사업)를 추가 신설하였다고 설명함.

**2021~2025년 산촉기금(혁신계정) 지출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
| 경상사업비* | 40,268 | 38,951 | 38,390 | 20,876 |
| 융자사업비** | - | - | - | 90,000 |

* 경상사업비: '기술성과활용촉진(R&D)', '산업기술혁신문화환경조성' 등 출연·보조 사업
** 융자사업비: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사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X. 무역보험기금

## 1. 수입결산

### (1) 기금수입 현황표

'24년도 기금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 실적 | 2024 | | | 증 감 | |
|---|---|---|---|---|---|---|
| | | 계획(A) | 변경(B)[1] | 실적(C) | C-B | (%) |
| 재산수입 | 209,897 | 166,407 | 166,407 | 429,428 | 263,021 | 158.1 |
| 경상이전수입 | 235,809 | 212,534 | 212,534 | 338,030 | 125,496 | 59.0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746,952 | 630,240 | 630,240 | 707,274 | 77,034 | 12.2 |
| 정부내부수입 | 50,000 | 70,000 | 70,000 | 70,000 | - | - |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 3,338,731 | 4,471,804 | 4,471,804 | 3,621,921 | △849,883 | △19.0 |
| 합 계 | 4,581,389 | 5,550,985 | 5,550,985 | 5,166,653 | △384,332 | △6.9 |

주1): 최종변경

무역보험기금의 2024년도 수입실적은 5조 1,666억 5,300만원으로 계획액(5조 5,509억 8,500만원) 대비 3,843억 3,200만원(△6.9%)이 감소하였음.

'재산수입'은 관유물대여료(사옥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당초 계획액(1,664억 700만원) 대비 2,630억 2,100만원(158.1%) 증가한 4,294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음.

‘경상이전수입’은 지급보험금 회수금 및 환변동보험 환수금, 기타영업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당초 계획액(2,125억 3,400만원) 대비 1,254억 9,600만원(59.0%) 증가한 3,380억 3,000만원이 수납되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수입보험료’, ‘헷지거래이익’, ‘채권회수대행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당초 계획액(6,302억 4,000만원) 대비 770억 4,000만원(12.2%)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보험료가 당초 계획액(6,189억 7,800만원) 대비 803억원 7,100만원(13.0%) 증가하였기 때문임.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현황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획(A)[1] | 실적(B) | 증감(B-A) | 증감률 |
|---|---|---|---|---|
| 수입보험료 | 618,978 | 699,349 | 80,371 | 13.0 |
| 헷지거래이익 | 9,966 | 6,448 | 3,518 | △35.3 |
| 채권회수대행수입 등 | 1,296 | 1,418 | 122 | 9.4 |
| 합 계 | 630,240 | 707,274 | 77,034 | 12.2 |

주1) 최초계획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24년도 예산 450억원 및 기금전입금으로 250억원 등 총 700억원 수납되었음.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3조 6,219억 2,1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4조 4,718억 400만원) 대비 8,498억 8,300만원(△19.0%) 감소하였는데, 이는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및 기타유가증권매각대가 계획 대비 감소한 것에 기인함.

## 2. 지출결산

### '24년도 기금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 실적 | 2024 | | | 증 감 | |
|---|---|---|---|---|---|---|
| | | 계획(A) | 변경(B)[1] | 실적(C) | C-B | (%) |
| 무역보험지원운영 | 334,593 | 584,822 | 584,822 | 402,950 | △181,872 | △31.1 |
| 무역보험환급금등 | 12,934 | 34,044 | 34,044 | 12,816 | △21,228 | △62.4 |
| 기금운영비 | 129,290 | 128,003 | 154,431 | 151,732 | △2,699 | △1.7 |
| 여유자금운용 | 4,104,572 | 4,804,116 | 4,777,688 | 4,599,155 | △178,533 | △3.7 |
| 지출 합계 | 4,581,389 | 5,550,985 | 5,550,985 | 5,166,654 | △384,331 | △6.9 |

주1) 최종변경

2024년도 무역보험기금 지출규모는 5조 1,666억 5,400만원으로 계획액(5조 5,509억 8,500만원) 대비 3,843억원 3,100만원(△6.9%)이 감소하였음.

사업비 지출은 무역보험 사고발생시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금인 '무역보험지원운영'과 무역보험 해지·해제에 따른 '무역보험환급금등'으로 구성되며, 무역보험지원운영 4,029억 5,029만원 및 무역보험환급금등 128억 1,600만원을 지출함.

기금운영비는 계획액(1,544억 3,100만원) 대비 26억 9,900만원(△1.7%) 감소한 1,517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운용은 계획액(4조 7,776억 8,800만원) 대비 1,785억 3,300만원(△3.7%) 감소한 4조 5,991억 5,500만원임.

# 3.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 | 2024 | | 2023 | | |
|---|---|---|---|---|---|
| **자산** | | | | | |
| **Ⅰ.유동자산** | | **6,993,648** | | **5,379,977**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99,695 | | 136,643 | - 기타 현금성 자산 감소 등 |
| 2. 단기금융상품 | | 1,840,000 | | 1,660,000 | - 정기예금 증가 등 |
| 3. 단기투자증권 | | 4,226,948 | | 2,843,900 | - 단기성 지분증권 투자규모 증가 등 |
| 4. 미수채권 | | 770,270 | | 713,904 | - 미수보험수익 증가 등 |
| 5. 단기대여금 | | 67 | | - | - 단기대여금 발생 |
| 6. 기타유동자산 | | 57,343 | | 25,663 | - 파생상품자산 증가 등 |
| **Ⅱ.투자자산** | | **430,213** | | **1,007,240** | |
| 1. 장기투자증권 | | 426,011 | | 914,845 | - 채무증권 투자규모 감소 등 |
| 2. 장기금융상품 | | - | | 90,000 | - 장기금융상품 유동성 대체 |
| 3. 장기대여금 | | 253 | | 402 | - 임직원 대여금 감소 |
| 4. 기타투자자산 | | 3,949 | | 1,993 | - 파상생품자산 증가 등 |
| **Ⅲ.일반유형자산** | | **189,396** | | **187,274** | |
| 1. 토지 | | 155,197 | | 155,265 | |
| 2. 건물 | 38,818 | | 36,748 |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0,050) | 28,768 | (9,069) | 27,679 | |
| 3.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34,693 | | 31,720 |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 (29,262) | 5,431 | (27,390) | 4,330 | |
| **Ⅳ.무형자산** | | **12,154** | | **13,794** | |
| 1. 기타무형자산 | | 12,154 | | 13,794 | |
| **Ⅴ.기타비유동자산** | | **121,239** | | **131,353** | |
| 1. 장기미수채권 | 136,395 | | 144,414 | | |
|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 (134,450) | 1,945 | (143,909) | 505 | |
|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 119,294 | | 130,848 | |
| **자산계** | | **7,746,651** | | **6,719,638** | |
| **부채** | | | | | |
| **Ⅰ.유동부채** | | **126,757** | | **58,107** | |
| 1. 기타유동부채 | | 126,757 | | 58,107 | - 파생상품부채 증가 등 |

| | 2024 | 2023 | |
|---|---|---|---|
| **Ⅱ.장기충당부채** | **619,739** | **759,104** |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29,260 | 27,042 | |
| 2. 보험충당부채 | 560,299 | 641,885 | - 보험 지급준비금 환입 |
| 3. 기타장기충당부채 | 30,180 | 90,177 | - 보증 지급준비금 환입 |
| **Ⅲ.기타비유동부채** | **2,224,595** | **1,983,740** | |
|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 2,224,595 | 1,983,740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전입 등 |
| **부채계** | **2,971,091** | **2,800,951** | |
| **순자산** | | | |
| **Ⅰ.기본순자산** | **1,780,135** | **1,780,135** |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 **2,865,341** | **1,985,771** | - 재정운영결과로 인한 증가 등 |
| **Ⅲ.순자산조정** | **130,084** | **152,781** | - 투자증권평가손익 감소 등 |
| **순자산계** | **4,775,559** | **3,918,687** | |
| **부채와순자산계** | **7,746,651** | **6,719,638** | |

무역보험기금의 2024년도 순자산은 4조 7,755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68억원 7,200만원(22%) 증가하였음.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백만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프로그램순원가 | 1,042,753 | (1,461,371) | (418,618) | 1,261,499 | (1,478,012) | (216,513) |
| 1.무역보험지원 | 1,042,753 | (1,461,371) | (418,618) | 1,261,499 | (1,478,012 | (216,513)) |
| Ⅱ.관리운영비 | | | 47,050 | | | 46,570 |
| 1.인건비 | | | 24,340 | | | 23,846 |
| 2.경비 | | | 22,710 | | | 22,723 |
| (1)복리후생비 | | | 3,524 | | | 3,957 |
| (2)소모품비 | | | 279 | | | 292 |
| (3)광고선전비 | | | 328 | | | 323 |
| (4)교육훈련비 | | | 640 | | | 687 |
| (5)업무추진비 | | | 397 | | | 371 |
| (6)외주용역비 | | | 7,344 | | | 6,756 |
| (7)여비교통비 | | | 604 | | | 577 |
| (8)수선유지비 | | | 2,703 | | | 2,998 |
| (9)수도광열비 | | | 262 | | | 262 |
| (10)지급보험료 | | | 166 | | | 159 |
| (11)지급수수료 | | | 900 | | | 870 |
| (12)지급임차료 | | | 1,583 | | | 1,593 |
| (13)유류비 | | | 54 | | | 57 |
| (14)인쇄비 | | | 134 | | | 140 |
| (15)피복비와급량비 | | | 3 | | | 3 |
| (16)세금과공과 | | | 1,339 | | | 1,316 |
| (17)감가상각비 | | | 2,451 | | | 2,362 |
| **Ⅲ.비배분비용** | | | **61,136** | | | **56,488** |
| 1.평가손실 | | | 2,804 | | | 185 |
| 2.자산처분손실 | | | 11,211 | | | 35,827 |
| 3.기타비용 | | | 47,121 | | | 20,476 |
| **Ⅳ.비배분수익** | | | **435,938** | | | **148,913** |
| 1.이자수익 | | | 383,210 | | | 132,141 |
| 2.자산처분이익 | | | 44,549 | | | 14,674 |
| 3.기타수익 | | | 8,178 | | | 2,098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 **(746,370)** | | | **(262,368)** |
| **Ⅵ.비교환수익 등** | | | **-** | | | **-** |
| 1.기타재원조달및이전 | | | - | | | -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 **(746,370)** | | | **(262,368)** |

무역보험기금은 2024년도 재정운영에 1조 1,509억 3,8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1조 8,973억 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7,463억 7,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백만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계 |
|---|---|---|---|---|
| Ⅰ.2023년 기초순자산 | 1,780,135 | 1,669,402 | (37,690) | 3,411,847 |
| 1. 보고금액 | 1,780,135 | 1,669,402 | (37,690) | 3,411,847 |
| Ⅱ.재정운영결과 | - | (262,368) | - | (262,368) |
| Ⅲ.조정항목 | - | 54,000 | 190,471 | 244,471 |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190,762 | 190,762 |
| 2. 자산재평가이익 | - | - | (291) | (291) |
| 3. 기타순자산의증감 | - | 54,000 | - | 54,000 |
| Ⅴ.2023년 기말순자산 (Ⅰ-Ⅱ+Ⅲ) | 1,780,135 | 1,985,771 | 152,781 | 3,918,687 |
| Ⅴ.2024년 기초순자산 | 1,780,135 | 1,985,771 | 152,781 | 3,918,687 |
| 1. 보고금액 | 1,780,135 | 1,985,771 | 152,781 | 3,918,687 |
| Ⅵ.재정운영결과 | - | (746,370) | - | (746,370) |
| Ⅶ.조정항목 | - | 133,200 | (22,697) | 110,503 |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 - | (22,602) | (22,602 |
| 2. 자산재평가이익 | - | - | (95) | (95) |
| 3. 기타순자산의증감 | - | 133,200 | - | 133,200 |
| Ⅷ.2024년 기말순자산 (Ⅴ-Ⅵ+Ⅶ) | 1,780,135 | 2,865,341 | 130,084 | 4,775,559 |

무역보험기금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4조 7,755억 5,900만원으로, 2023년도 기말순자산 3조 9,186억 8,700만원 대비 8,568억원 7,26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결과 7,464억원 감소 등에 기인함.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
|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 - | - |
| 1. 국가채권현재액 | - | - |
| 2. 국유재산현재액 | - | - |
| 3. 물품현재액 | - | - |
| 4. 국가채무합계 | - | -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 **7,746,651** | **2,971,091** |
|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 **7,746,651** | **2,971,091**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7,746,651 | 2,971,091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 -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 | - |
| 4. 대상차이(D) | - | - |
| 5. 기타차이(E) | - | - |

* 무역보험기금은 I.개별법 자산부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1.보고대상기관차이로 차이내역을 분류

# 4. 검토의견

## (1) 무역보험환급금등: 환급수요 예측 방식 고도화 필요

### ① 결산 현황

‘무역보험환급금등’(1532-400)은 보험관계가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340억 4,400만원 중 128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12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4년도 무역보험환급금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본예산 | 수정 | | | | | | | | |
| 무역보험환급금등 | 34,044 | 34,044 | - | - | - | 34,044 | 12,816 | - | 21,228 | 17,2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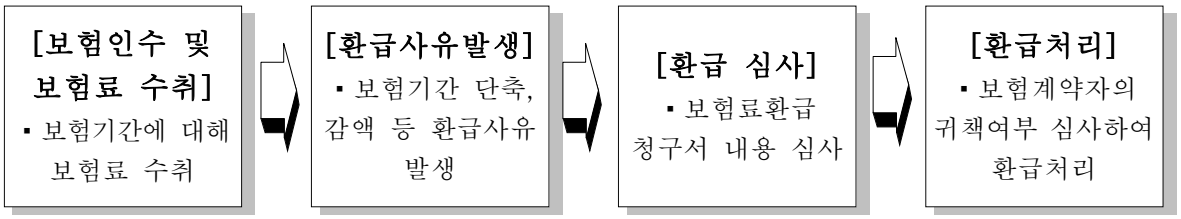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환급수요 예측 방식 고도화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중도해지·해제되거나 수출입·공사계약이 조기완료되어 보험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 및 환급사유 등에 따라 기납부한 보험료 중 전부 또는 일부[183]를 환급하고, 보험계약자측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일부 감액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있음.

183) ① 무효, 해제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
② 실효, 해지의 경우에는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환급보험료

## 보험금 환급 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최근 5년간 사유별 환급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환급건수는 5,799건, 환급액은 128억 1,600만원으로 나타나 5년전에 비해 환급건수는 8.8배 증가한 반면, 환급액은 0.4배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환급건수 증가의 경우 주로 단기성보험 중 수출통지 오류[184]에 따른 환급건수가 2020년 321건에서 2024년 4,732건으로 4,400여건 이상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185]하여 총 환급건수 역시 660건에서 5,799건으로 5,100여건 이상 증가하였고,

환급액 감소의 경우 중장기성보험 중 보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액이 2020년에 일시적으로 319억 4,600만원으로 크게 나타났다가 2024년 32억 600만원으로 287억 4,000만원 감소하면서 총 환급금액 역시 342억 9,900만원에서 128억 1,600만원으로 214억 8,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보

184) 주로 수출자가 선적 후 보험 부보를 위해 수출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통지 건이 보험관계 성립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관계 취소 후 환급하고 있음.
* 불성립 사유 : ①수출자가 통지기일을 지연하여 수출통지 한 경우, ②수입자의 신용등급 하락 등

185)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지 오류에 따른 환급은 연도별로 편차가 큰데, 2022년에는 단기수출보험 거액 보험료 취소(3건, 5억 3,000만원)가 발생했고, 2024년에는 지역기반 고객관리 등을 위해 기존 인수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단체보험 1건, 2.4억원)하면서 일시적으로 거액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설명임.
특히 2024년 환급건수는 기존 인수계약 취소·재계약에 따른 재심사건인 4,355건이 포함되어 급증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377건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임.

임[186].

## 최근 5년간 사유별 환급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환급사유 | 2020(A) | | 2021 | | 2022 | |
|---|---|---|---|---|---|---|---|
| | | 환급건 | 환급액 | 환급건 | 환급액 | 환급건 | 환급액 |
| 단기성보험 | 수출통지 오류에 따른 환급 | 321 | 88 | 1,885 | 700 | 896 | 1,100 |
| | 무사고 보험료 환급 | 56 | 192 | 140 | 432 | 114 | 398 |
| | 포괄보험 사후 정산 | 4 | 31 | 17 | 658 | 1 | 21 |
| | 보험 중도해지 | 20 | 15 | 55 | 250 | 50 | 27 |
| | 소 계 | 401 | 326 | 2,097 | 2,040 | 1,061 | 1,546 |
| 중장기성보험 | 보험 중도해지 | 38 | 31,946 | 32 | 9,826 | 62 | 8,296 |
| | 보험료 정산 | 26 | 1,749 | 15 | 487 | 14 | 4,992 |
| | 공사 조기완료에 따른 정산 | 4 | 80 | 23 | 119 | 13 | 429 |
| | 소 계 | 68 | 33,775 | 70 | 10,432 | 89 | 13,718 |
| 기타 | 지자체 보험료 지원 등에 따른 수출업자에 대한 환급 | 191 | 198 | 428 | 227 | 502 | 337 |
| 합 계 | | 660 | 34,299 | 2,595 | 12,699 | 1,652 | 15,601 |

| 구분 | 환급사유 | 2023 | | 2024(B) | | 배율(B/A) | |
|---|---|---|---|---|---|---|---|
| | | 환급건 | 환급액 | 환급건 | 환급액 | 환급건 | 환급액 |
| 단기성보험 | 수출통지 오류에 따른 환급 | 234 | 532 | 4,732 | 710 | 14.7 | **8.1** |
| | 무사고 보험료 환급 | 131 | 769 | 107 | 910 | 1.9 | 4.7 |
| | 포괄보험 사후 정산 | 6 | 488 | 7 | 902 | 1.8 | 29.1 |
| | 보험 중도해지 | 35 | 105 | 77 | 120 | 3.9 | 8.0 |
| | 소 계 | 406 | 1,894 | 4,923 | 2,642 | **12.3** | **8.1** |
| 중장기성보험 | 보험 중도해지 | 22 | 1,734 | 32 | 3,206 | 0.8 | 0.1 |
| | 보험료 정산 | 50 | 8,633 | 6 | 4,048 | 0.2 | 2.3 |
| | 공사 조기완료에 따른 정산 | 5 | 94 | 28 | 2,257 | 7.0 | 28.2 |
| | 소 계 | 77 | 10,461 | 66 | 9,511 | **1.0** | **0.3** |
| 기타 | 지자체 보험료 지원 등에 따른 수출업자에 대한 환급 | 617 | 579 | 810 | 663 | **4.2** | **3.3** |
| 합 계 | | 1,100 | 12,934 | 5,799 | 12,816 | **8.8** | **0.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86) 한편, 단기성 보험 중 포괄보험 사후 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환급액 증가배율이 29.1배로 나타나 급증했는데, 이는 해당 사유에 따른 환급건수는 6~17건 가량으로 적게 발생하는데 2024년 일부 환급건에서 고액의 환급이 발생했기 때문이므로 일반적인 증가추세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재조정·사후정산 상위 3건: 티○ 406백만원, 엘○○○ 141백만원, 심○ 138백만원).
다만, 그 외 무사고 보험료 환급도 최근 5년간 환급액 증가배율이 4.7배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실제 리스크가 낮은 기업들도 수출입보험 가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동 사업은 보험종목, 환급사유 및 장기적 추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수입에 최근 5년간 누적 환급률을 적용하여 환급액을 추산하면서 계획안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보임.

**2024년 환급액 산출근거**

| |
|---|
| 예상 보험료 수입(6,189억 7,800만원) × 예상환급률(5.5%*) = 340억 4,400만원<br>* 최근 5년(2018~2022년)간 누적 환급률<br>= 누적 환급액(1,413억원) / 누적 보험료수입 총액(2조 5,698억원) = 5.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환변동보험의 경우 환변동보험 약관에 따라 공사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무효, 해제, 실효되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입자 임의 변경·해지[187] 등은 불가능하여 최근 5년간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0원으로 나타남.

그런데 계획안 산정시에는 환변동보험 보험료 수입 전망에 대해 전체 보험종목의 환급률을 일괄적용하여 환급액을 추산하고 있었음. 환변동보험료 수입 전망(21억 4,200만원) 및 이에 따른 환급액 전망(1억 1,800만원)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환급률이 매우 낮은 보험종목에 대해서도 전체 보험종목의 환급률을 일괄적용하여 추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87) 참고로 환변동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변경/해지 불가
Q. 환변동보험 가입 후 금액이나 만기연장이 가능한가요?
A. 보험가입 후에는 금액 변경, 만기일 연장 등 보험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청약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료: 무역보험제도 안내(2024. 9.)

다음으로, 중장기성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액 전망에 환급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효계약에 따른 누적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현재 산정방식이 실제 지급방식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중장기성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환급이 발생하면 한번에 거액이 지급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연차별 보험료 수입 및 잔여 보험기간 등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안 산출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계획안 산출시 최근 5년(2018~2022년)간 누적 환급률(5.5%)을 기준으로 전망[188]하다 보니 최근 환급률 인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지연되었고 환급률을 반복적으로 과다추산하게 되었음.

**최근 5년간 환급률**

(단위: 억원,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보험료 | 4,029 | 4,603 | 4,361 | 7,327 | 6,993 |
| 환급액 | 343 | 127 | 156 | 129 | 128 |
| 환급률 | 8.5 | 2.8 | 3.6 | 1.8 | 1.8 |
| 편성시 환급률 전망 | 3.515 | 4.817 | 6.020 | 4.968 | 5.500 |
| 전망시 기준 | 최근 3년 | 최근 5년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88)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예산안 심사시 예산정책처 지적사항('과거 높은 환급률 특이치가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을 고려하여 2020년 계획안 편성시에는 특이치(2016년 환급률 10%)를 제외하고, 2021년 계획안부터는 환급률 전망시 고려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환급률 전망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임.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수출입업체들이 무역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중도해지 등을 자제함에 따라 환급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종료 이후에도 최근 국가별 관세 정책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중도해지율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같은 추세를 보다 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전망할 필요가 있음. 수출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수 및 예산액[189]이 확대되고 있는데, 통상 지방자치단체는 3월부터 사업집행을 개시하므로 1~3월 보험가입분은 사후 환급됨. 이에 따라 환급금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추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종목별 특성과 최근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 및 지원정책 확대 추세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환급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산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189) 수출입 보험료 지원 지자체 수(예산)
- ('21) 47개(71.6억) → ('22) 51개(79.5억) → ('23) 51개(86.2억) → ('24) 50개(87.8억)

### (2) 기타경비: 이월결손금 소진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지방소득세 편성 필요

#### ① 결산 현황

‘기타경비’(1677-200)는 무역보험기금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2024년도 계획현액 615억 5,300만원 중 605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4년도 기타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본예산 | 수정 | | | | | | | | |
| 기타경비 | 35,125 | 61,553 | - | - | - | 61,553 | 60,550 | - | 1,003 | 33,720 |
| 공공요금 및 제세 | 5,513 | 29,846 | - | - | - | 29,846 | 29,810 | - | 36 | 5,58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② 이월결손금 소진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지방소득세 편성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타경비’ 사업 중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비목으로 ① 사옥 운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우편 등 공공요금과 ② 재산세·종부세 등의 제세금, ③ 신원보증보험료, 자동차·화재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료, ④ 검사비, 협회비·분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결과 당초 계획(55억 1,300만원)

과 달리 제세금이 298억 1,000만원 집행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9월 3일에 244억 2,800만원을 자체변경[190]하였음.

**'24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분 류 | | 편성내역 | 집행내역 |
|---|---|---|---|
| 공공요금 | 전기료 | 710 | 641 |
| | 가스료 | 30 | 25 |
| | 수도료 | 100 | 88 |
| | 우편요금 | 70 | 60 |
| | 전신·전화요금 | 986 | 904 |
| | 회선·망사용료 | 120 | 112 |
| | 소계 | 2,016 | 1,830 |
| 제세금 | | 2,437 | 26,899 |
| 각종 보험료 | | 540 | 551 |
| 각종 부담금 | | 520 | 530 |
| **합 계** | | 5,513 | 29,81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당초 2024년도 계획안 편성시에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법인세 228억 6,500만원, 지방소득세 40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임.

그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타경비 계획안 편성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2020년까지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결정되고 기존 원천납부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190) 자체변경('24.9.3.): 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1)에서 변경

그런데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 증가 추세에 따라 2021년부터는 실제 결정세액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21~2022년까지는 중간예납·원천납부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이를 환급받아오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순납부세액이 150억원 이상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순납부세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법인세 부과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사업연도 소득(A) | △1,943 | 1,907 | 426 | 4,567 | 8,192 |
| 이월결손금(B) | 0 | 1,144 | 256 | 3,654 | 6,031 |
| 과세표준(C=A-B) | △1,943 | 763 | 171 | 913 | 2,161 |
| 산출세액 | 0 | 164 | 34 | 188 | 450 |
| **결정세액(총부담세액)** | 0 | 161 | 33 | 188 | 450 |

주: 1. 과거 15년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2. 2021, 2022년에는 세액공제(상가임대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2억원, 1억원씩 발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최근 5년간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예상하지 못한 거액 보험금 지급 등으로 사업연도 소득이 적자여서 법인세·지방소득세 모두 부과되지 않았고, 이후 사업연도 소득은 발생했지만 기존 이월결손금[191]이 차감·공제되면서 과세표준 및 산출·결정세액[192]이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왔음.

19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92) 지방세의 여러 세목 중에서 지방소득세로 인해 계획변경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 세율의 10%를 부과함.
❑ 지방소득세 개요
○ 부과기준 : 「지방세법」§103의19 ~ §103의32
○ 산정방식 :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의 1/10 (「지방세법」§103의20①1)
○ 신고·납부 : 「지방세법」§103의23①, 4월말까지 신고·납부

그리고 법인세는 이자수익의 14%를 원천징수하므로 원천납부액은 기타경비 지출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년 8~9월에 1~6월분의 예상세액을 중간예납[193]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액은 기타경비로 집행됨.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매년 원천납부 및 중간예납으로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해오고 있었으며 2022년 및 2023년에는 원천납부 및 중간예납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차년도 4월에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환급받았음.

**최근 5년간 법인세 중간예납·원천납부 및 순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법인세 부과액 | 0 | 16,157 | 3,342 | 18,762 | 44,958 | 미정 |
| 중간예납 | 0 | 20,482 | 7,320 | 728 | 7,861 | -* |
| 원천납부 | 2,579 | 1,507 | 1,886 | 3,040 | 2,243 | 675 |
| 중간예납 및 원천납부 | 2,579 | 21,989 | 9,206 | 3,768 | 10,105 | 675 |
| 순납부세액 | △2,579 | △5,832 | △5,864 | 14,995 | 34,854 | 675 |

주: 1. 음영처리한 금액이 2024년 기타경비 지출액 해당
* 2025년도 중간예납세액 21,358백만원은 8~9월에 걸쳐 분할 납부 예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도 일부분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 2021년 및 2022년에도 각각 204억 8,200만원 및 73억 2,000만원 규모의 계획변경이 발생함.

193) 직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원천납부세액" 50%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상 과세표준에 따른 예상 결정세액의 50% 중 선택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

그리고 2024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78억 6,100만원, 2023년도 법인세 순납부세액 149억 9,950만원 및 지방소득세 순납부세액 15억 7,200만원, 총 244억 2,8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계획변경하였고,

2025년에는 2024년도 지방소득세 순납부세액으로 결정된 42억 7,100만원[194], 2024년도 법인세 순납부세액으로 결정된 348억 5,400만원과 2025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액으로 전망되는 214억원, 총 605억 2,800만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025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계획안 산출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올해도 이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변경이 발생하게 됨.

이와 같이 기타경비 지출이 부정확하게 계획되어 연례적으로 계획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비 집행과정에서의 합리성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책무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95]에서도 공공요금 및

194) 법인세 부과액의 10%는 44억 9,580만원이나, 원천납부액(법인세 원천징수액 10%)을 제외하고 42억 7,100만원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됨.

195)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18쪽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 2. 세부지침
□ 예비비, 이·전용액 등 '22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편성

제세 비목은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동안 당기손익의 변동성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점(5월)에 당해연도 법인세 및 차년도 중간예납세액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도까지는 법인세·지방소득세를 계획안 편성시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 계획변경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속되는 추세이고 2025년부터는 공제가능한 누적 이월결손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법인세·지방소득세 납부의 정기화가 예상되고 있어 2026년 계획안부터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임.

최근 순이익 증가 추세 및 이월결손금 소진 등으로 인해 각종 세금 및 이에 따른 기타경비 계획변경 규모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향후 계획안에 법인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정확한 최종 결정세액을 전망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국회에 계획안을 제출(9월)할 때에는 이미 중간예납액이 산정[196]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예정인(8~9월 납부)한 상황임.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

196) “직전연도의 (결정세액 - 원천납부) 50%” 또는 “해당연도의 예상과세표준에 따른 예상결정세액 50%” 중 선택

의·의결 단계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한 예상결정세액 등의 전망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금액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향후 수입·지출 전망을 고도화하고 납세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한 연례적인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허청 소관

# Ⅰ. 특허청 결산 개요

## 1. 총 괄

### (1) 세 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불납결손액 (D) | 미수납액 (B-C-D) | 증 감 (C-A) |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특허청계정 | 792,258 | 730,122 | 727,180 | - | 2,942 | △65,078 |
| 합 계 | 792,258 | 730,122 | 727,180 | - | 2,942 | △65,078 |

최근 5년간 세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불납결손액 (D) | 미수납액 (B-C-D) | 증 감 (C-A) |
|---|---|---|---|---|---|---|
| 2020 | 635,405 | 682,419 | 682,419 | - | - | 47,014 |
| 2021 | 639,308 | 723,333 | 723,333 | - | - | 84,025 |
| 2022 | 794,587 | 843,539 | 843,539 | - | - | 48,952 |
| 2023 | 867,220 | 851,542 | 851,542 | - | - | △15,678 |
| 2024 | 792,258 | 730,122 | 727,180 | - | 2,942 | △65,078 |

## (2) 세 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A) | 예산변경(B) | | | | 예산현액 (C=A+B) | 지출액 (D) | 다음연도 이월 (E) | 불용액 (F=C-D-E) |
|---|---|---|---|---|---|---|---|---|---|
| | | 전년 이월 | 예비비 | 전 용 | 이용 (초과 승인액) | | | |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특허청계정 | 792,258 | - | - | ±322 | ±1,644 | 792,258 | 714,531 | - | 77,727 |
| 합 계 | 792,258 | - | - | ±322 | ±1,644 | 792,258 | 714,531 | - | 77,727 |

### 최근 5년간 세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A) | 예산변경(B) | | | | 예산현액 (C=A+B) | 지출액 (D) | 다음연도 이월 (E) | 불용액 (F=C-D-E) |
|---|---|---|---|---|---|---|---|---|---|
| | | 전년 이월 | 예비비 | 전 용 | 이용 (초과 승인액) | | | | |
| 2020 | 635,405 | - | - | ±2,747 | - | 635,405 | 629,057 | - | 6,348 |
| 2021 | 639,308 | - | - | ±1,900 | - | 639,308 | 623,573 | - | 15,735 |
| 2022 | 794,587 | - | 2,379 | ±111 | (2,344)* | 799,310 | 786,627 | - | 12,683 |
| 2023 | 867,220 | - | - | ±423 | - | 867,220 | 834,888 | - | 32,332 |
| 2024 | 792,258 | - | - | ±322 | ±1,644 | 792,258 | 714,531 | - | 77,727 |

* 초과수입금(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실사용금액): 1,268백만원

## 2. 세입 결산

###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 관 | 예산액 (A) | 징수 결정액 (B) | 증 감 (B-A) | 증 감 사 유 | |
|---|---|---|---|---|---|
| **총 계** | 792,258 | 730,122 | △62,136 | **예산 대비 7.8% 감소** | |
| **< 손익계정 >** | 654,725 | 630,297 | △24,428 | | |
|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 640,038 | 604,240 | △35,798 | 출원료 감소 | △564 |
| | | | | 심사청구료 감소 | △17,335 |
| | | | | 설정등록료 감소 | △962 |
| | | | | 연차등록료 감소 | △19,018 |
| | | | | 기타 수수료 증가 | 2,081 |
| ○ 재산수입 | 2,112 | 3,857 | 1,745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실시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수입 등 증가 | |
| ○ 경상이전수입 | 2,519 | 5,225 | 2,706 | 과태료 징수결정액 증가 |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1 | 2 | 1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입 등 수입 증가 | |
| ○ 수입대체경비수입 | 342 | 325 | △17 | 연수원 교육비 수입 감소 |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 9,593 | 16,528 | 6,935 | 23년 결산상 잉여금 증가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120 | 120 | - | - | |
| **< 자본계정 >** | 137,533 | 99,825 | △37,708 |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137,490 | 99,698 | △37,792 | 이자 수입 및 계정간 거래액 감소 |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 43 | 127 | 84 | 23년 결산상 잉여금 증가 | |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액 7,922억원 5,800만원 대비 621억 3600만원(△7.8%)이 감소한 7,301억 2,200만원이며 과태료 징수결정액을 제외하고 전액 수납되었음.

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연차등록료 등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이 예산액 6,400억 3,800만원 대비 357억 9,800만원(5.6%)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이 예산액 25억 1,900만원 대비 27억 600만원(107.4%) 증가하였음.

2024년도 전년도 세계잉여금 손익계정 수납액은 예산액 95억 9,300만원 대비 69억 3,500만원(72.3%) 증가하였음.

###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관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미수납액 (B-C) | 초과수납액 (C-A) |
|---|---|---|---|---|---|
| **합 계** | 792,258 | 730,122 | 727,180 | - | △65,078 |
| **<손익계정>** | 654,725 | 630,297 | 627,356 | - | △27,369 |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640,038 | 604,240 | 604,240 | - | △35,798 |
| 재산수입 | 2,112 | 3,857 | 3,857 | - | 1,745 |
| 경상이전수입 | 2,519 | 5,225 | 2,283 | 2,942 | △236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1 | 2 | 2 | - | 1 |
| 수입대체경비 수입 | 342 | 325 | 325 | - | △17 |
| 전년도 세계잉여금 | 9,593 | 16,528 | 16,528 | - | 6,935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120 | 120 | 120 | - | - |
| **<자본계정>** | 137,533 | 99,825 | 99,825 | - | △37,708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137,490 | 99,698 | 99,698 | - | △37,792 |
| 전년도 세계잉여금 | 43 | 127 | 127 | - | 84 |

# 3. 세출 결산

##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A) | 예산변경(B) | | | | 예산현액 (C=A+B) | 지출액 (D) | 다음연도 이월 (E) | 불용액 (F=C-D-E) |
|---|---|---|---|---|---|---|---|---|---|
| | | 전년이월 | 예비비 | 전용 | 이용 (초과승인액) | | | | |
| 합 계 | 792,258 | - | - | ±322 | ±1,644 | 792,258 | 714,531 | - | 77,727 |
| <손익계정> | 654,725 | - | - | ±322 | ±1,644 | 654,725 | 614,740 | - | 39,985 |
| 1.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 95,982 | - | - | ±118 | △431 | 95,551 | 94,831 | - | 721 |
| - 심사·심판처리지원 | 83,027 | - | - | △118 | △238 | 82,671 | 82,033 | - | 638 |
| - 심사·심판역량강화 | 660 | - | - | - | - | 660 | 658 | - | 2 |
|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5,305 | - | - | - | △193 | 5,112 | 5,051 | - | 61 |
| - 특허고객서비스지원 | 6,990 | - | - | 118 | - | 7,108 | 7,089 | - | 19 |
| 2. 지식재산창출기반 강화 | 129,640 | - | - | - | △432 | 129,208 | 128,754 | - | 454 |
| -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 44,734 | - | - | - | △98 | 44,636 | 44,552 | - | 85 |
| -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62,193 | - | - | - | △334 | 61,859 | 61,694 | - | 164 |
| - 지식재산 인력양성 | 22,371 | - | - | - | - | 22,371 | 22,227 | - | 144 |
| - 지식재산교육확산 (수입대체경비) | 342 | - | - | - | - | 342 | 281 | - | 61 |
| 3.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시장 활성화 | 52,787 | - | - | - | △567 | 52,220 | 52,012 | - | 208 |
| - 지식재산 활용촉진 | 52,787 | - | - | - | △567 | 52,220 | 52,012 | - | 208 |
|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 36,863 | - | - | - | △214 | 36,649 | 36,269 | - | 379 |
|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36,863 | - | - | - | △214 | 36,649 | 36,269 | - | 379 |
|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40,269 | - | - | - | - | 40,269 | 40,105 | - | 164 |
|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40,269 | - | - | - | - | 40,269 | 40,105 | - | 164 |
| 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189,950 | - | - | ±204 | 1,644 | 191,594 | 190,941 | - | 653 |
| 7.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 18,755 | - | - | - | - | 18,755 | 18,378 | - | 377 |
| 8. 계정간 거래 (자본계정 전출) | 90,479 | - | - | - | - | 90,479 | 53,450 | - | 37,029 |

| 구분 | 예산액 (A) | 예산변경(B) | | | | 예산 현액 (C=A+B) | 지출액 (D) | 다음 연도 이월 (E) | 불용액 (F=C-D-E) |
|---|---|---|---|---|---|---|---|---|---|
| | | 전년 이월 | 예비비 | 전용 | 이용 (초과 승인액) | | | | |
| <자본계정> | 137,533 | - | - | - | - | 137,533 | 99,792 | - | 37,741 |
| 1. 지식재산창출기반 강화 | 670 | - | - | - | - | 670 | 666 | - | 4 |
|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자본) | 507 | - | - | - | - | 507 | 503 | - | 4 |
|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 163 | - | - | - | - | 163 | 163 | - | 0 |
| 2. 지식재산행정정보화 | 1,465 | - | - | - | - | 1,465 | 1,439 | - | 26 |
|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본) | 1,465 | - | - | - | - | 1,465 | 1,439 | - | 26 |
| 3.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904 | - | - | - | - | 904 | 900 | - | 4 |
| 4. 회계간 거래(전출금) | 115,374 | - | - | - | - | 115,374 | 77,666 | - | 37,708 |
| 5.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 19,000 | - | - | - | - | 19,000 | 19,000 | - | - |
| 6. 계정간 거래 (손익계정 전출) | 120 | - | - | - | - | 120 | 120 | - | - |

2023년도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7,922억 5,800만원이었고, 이 중 7,145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77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 (2) 예산변경 내역

### ① 전년도 이월: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전년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이월액 | - | - | - | - | - |

### ② 이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 1,644 | -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전문임기제 추가 채용 등 인건비 부족분 재원 마련 |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이용액 | - | - | - | - | 1,644 |

### ③ 전용(이체 실적 없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 55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환경개선비용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 87 | - 청년인턴 인건비 부족분 충당 |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 14 | - 2024년 특허청 자체 업무노하우 경진대회 우수자 국외출장 지원 |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 40 | - 직책수행경비 및 기타운영비예산 부족분 충당 |
|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118 | - 지식재산권 관리 건수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충당 |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 8 | - 청년인턴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
| 합 계 | 332 | |

##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전용액 | 2,747 | 1,900 | 111 | 423 | 332 |

## ④ 초과수입지출: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초과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초과수입 지출액 | - | - | 2,339* | - | - |

* 초과수입금(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실사용금액): 1,263백만원

## (3) 다음연도 이월내역: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연도별 다음년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이월액 | - | - | - | - | - |

## (4)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세부금액 |
|---|---|---|---|
| ○ 주요사업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6 | 심판처리지원 | 480 |
| | |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 199 |
| |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378 |
|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137 |
| | | 기타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832 |
| ○ 기본경비 집행 잔액 | 482 | 여비, 급식비 등 미집행액 | 482 |
| ○ 인건비 집행 잔액 | 105 |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 105 |
| ○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 377 |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 377 |
| ○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 37,708 |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액 | 37,708 |
| ○ 자본계정 전출금 집행잔액 | 37,029 | 자본계정 전출금 미집행액 | 37,029 |
| 합 계 | 77,727 | | 77,727 |

### 최근 5년간 연도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불용액 | 6,348 | 15,735 | 12,683 | 32,332 | 77,727 |

# 4. 재무제표

##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 | 2024 | | 2023 | | 비 고 |
|---|---|---|---|---|---|
| 자산 | | | | | |
| Ⅰ. 유동자산 | | 58,735 | | 61,801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12,649 | | 16,654 | - 결산잉여금 40.1억원 감소 |
| 2. 미수채권 | | 3,862 | | 2,125 | - 미수제재금수익 등으로 17.4억원 증가 |
| 3. 단기대여금 | | 37,874 | | 42,826 | - 공자기금예탁금 유동성대체 49.5억원 감소 |
| 4. 기타유동자산 | | 4,350 | | 196 | - 보험료 등 선급비용 7.8억원 증가<br>-선급금 29억 8천만원 증가<br>- 장기지급보증금(임차보증금) 4억원 증가 |
| Ⅱ. 투자자산 | | 353,163 | | 360,293 | |
| 1. 장기대여금 | | 91,489 | | 109,830 | - 공자기금예탁금 유동성대체 183.4억원 감소 |
| 2. 장기투자증권 | | 261,400 | | 250,000 | - 출자금 114억원 추가 출자로 증가 |
| 3. 기타투자자산 | | 274 | | 464 | - 기타투자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 초과분) 1.9억원 감소 |
| Ⅲ. 일반유형자산 | | 92,460 | | 91,067 | |
| 1. 토지 | | 64,899 | | 64,899 | |
| 2. 건물 | 15,739 | | 15,652 | | -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0.9억원 증가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755 | 13,985 | 1,166 | 14.485 | - 감가상각누계액 5.9억원 증가 |
| 3. 구축물 | 378 | | 332 | | - 구축물의 설치로 0.5억원증가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267 | 112 | 149 | 183 | - 감가상각누계액 1.2억원 증가 |
| 4. 기계장치 | 4,330 | | 3,937 | | - 기계장치 취득 등 3.9억원 증가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2,434 | 1,896 | 2,240 | 1.697 | - 감가상각누계액 1.9억원 증가 |
|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36,468 | | 34,201 | | - 비품 취득 등 22.7억원 증가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27,787 | 8,680 | 25,135 | 9.066 | - 감가상각누계액 26.5억원 증가 |
| 6. 기타일반유형자산 | 4,062 | | 1,973 | | - 기타일반유형자산 취득 등 20.9억원 증가 |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173 | 2,889 | 1,235 | 738 | - 처분 등으로 0.6억원 감소 |

| | | | |
|---|---|---|---|
| **Ⅳ. 무형자산** | **13,244** | **15,396** | |
| 1. 소프트웨어 | 13,244 | 15,396 | - 특허넷 시스템 개발 상각 등 21.5억원 감소 |
| **Ⅴ. 기타비유동자산** | **40** | **579** | |
|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40 | 579 | - 숙소 전세권 5.4억원 감소 |
| **자산계** | **517,642** | **529,137** | |
| **부채** | - | | |
| **Ⅰ. 유동부채** | **249,268** | **231,318** | |
|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3,695 | 4,423 | - 유동성 금융리스부채 7.3억원 감소 |
| 2. 기타유동부채 | 245,573 | 226,896 | - 특허심사료 선수수익 등 186.8억원 증가 |
| **Ⅱ. 장기차입부채** | **4,495** | **5,399** | |
| 1. 장기차입금 | 4,495 | 5,399 | - 금융리스부채 유동성 대체 및 상환 등으로 9억원 감소 |
| **Ⅲ. 장기충당부채** | **16** | **40** |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퇴직연금 가입으로 충당부채 없음. |
| 2. 기타장기충당부채 | 16 | 40 | - 소송충당부채 0.4억원 감소 |
| **부채계** | **253,779** | **236,757** | |
| **순자산** | | | |
| **Ⅰ. 기본순자산** | **229,492** | **229,492** |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 **-14,717** | **13,792** | - 재정운영결과 314.7억원 감소 |
| **Ⅲ. 순자산조정** | **49,088** | **49,097** | - 재평가이익 0.09억원 감소 |
| **순자산계** | **263,863** | **292,380** | |
| **부채와순자산계** | **517,642** | **529,137** | |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자산은 5,176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인 114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음. 주요 계정과목별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음.

유동자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음. 주요 감소 원인으로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일반회계전출 등으로 40억원 500만원 감소, ② 장기대여금(공자기금예탁금)의 단기대여금으로 유동성 대체 부분이 49억 5,200만원 감소 등이 있음.

투자자산은 전년도 대비 7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증감 원인으로 ① 장기대여금(공자기금예탁금)의 유동성 대체 부분이 183억 4,100만원 감소, ② 출자금(한국모태펀드) 114억원 증가하였음.

일반유형자산은 기계장치·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의 취득 및 감가상각, 처분 결과 전년도 대비 13억 9,300만원 증가하였음.

무형자산은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인해 54억 8,000만원 증가하였고, 감가상각 및 폐기 등으로 76억 3,200만원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1억 5,200만원 감소하였음.

기타비유동자산은 전세금의 유동성대체로 장기임차보증금 5억 3,900만원 감소하였음.

부채는 2,537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인 170억 2,200만원 증가하였음. 주요 계정과목별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음.

유동부채는 전년도 대비 179억 5,000만원 증가하였음. 주요 증감 원인으로 ①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유동성 금융리스부채 7억 2,800만원 감소 ② 기타유동부채의 선수수익[197] 등 177억 3,900만원 및 기타의미

197) 선수수익 :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으로 당기에는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차기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면 귀속될 수익을 말함. 특허청의 경우 출원인으로부터 받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에 해당하는 심사건을 심사관이 처리하지 않은 상태

지급비용 9억 3,800만원 증가가 있음.

장기차입부채는 전년 대비 9억 400만원 감소하였음. 주요 감소 원인으로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및 상환 등으로 36억 8,900만원 감소와 신규 리스 27억 8,500만원 증가가 있음.

장기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400만원 감소하였음.

순자산은 2,638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인 285억 1,700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재정운영결과 285억 900만원 등에 기인함.

---

인 경우, 심사청구료 등을 부채로 인식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심사관이 해당 출원건을 처리한 시점에서 특허청 수입으로 계상

##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백만원)

| | 2024 | | | 2023 | | |
|---|---|---|---|---|---|---|
|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수익 | 순원가 |
| **Ⅰ. 프로그램순원가** | **536,967** | **-592,925** | **55,958** | **535,354** | **-605,214** | **-69,861** |
| 1.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 260,354 | -588,947 | -328,894 | 251,478 | -604,109 | -352,630 |
|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142,939 | -1,834 | 141,105 | 147,849 | -575 | 147,274 |
| 3.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41,093 | -356 | 40,737 | 42,785 | -485 | 42,300 |
| 4.지식재산행정정보화 | 43,265 | -1,607 | 41,657 | 46,716 | - | 46,716 |
| 5.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49,617 | -179 | 49,437 | 46,526 | -46 | 46,481 |
| **Ⅱ. 관리운영비** | | | **14,538** | | | **13,279** |
| 1.인건비 | | | 11,364 | | | 10,212 |
| 2.경비 | | | 3,174 | | | 3,067 |
| (1)복리후생비 | | | 1,747 | | | 1,685 |
| (2)소모품비 | | | 160 | | | 135 |
| (3)인쇄비 | | | 40 | | | 40 |
| (4)광고선전비 | | | 3 | | | 2 |
| (5)지급수수료 | | | 49 | | | 37 |
| (6)세금과공과 | | | 35 | | | 50 |
| (7)수도광열비 | | | - | | | - |
| (8)지급보험료 | | | 2 | | | 1 |
| (9)피복비와급량비 | | | 5 | | | 5 |
| (10)교육훈련비 | | | 5 | | | 4 |
| (11)지급임차료 | | | 473 | | | 424 |
| (12)유류비 | | | 1 | | | 1 |
| (13)수선유지비 | | | 14 | | | 25 |
| (14)여비교통비 | | | 91 | | | 78 |
| (15)업무추진비 | | | 80 | | | 76 |
| (16)외주용역비 | | | 402 | | | 436 |
| (17)보전비 | | | 7 | | | 4 |
| (18)보조비 | | | - | | | - |
| (19)감가상각비 | | | 58 | | | 58 |
| (20)평가손실 | | | - | | | - |
| (21)연구개발비 | | | 3 | | | 4 |
| (22)기타비용 | | | - | | | - |
| **Ⅲ. 비배분비용** | | | - | | | - |

| | | |
|---|---|---|
| **Ⅳ. 비배분수익** | 3,892 | **3,755** |
| 1.이자수익 | 3,749 | 3,719 |
| 2.평가이익 | - | - |
| 3.기타수익 | 143 | 37 |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45,311** | **-60,337** |
| **Ⅵ. 비교환수익등** | **-73,820** | **-139,580** |
| 1.제재금수익 | 2,978 | 229 |
| 2.기타재원조달및이전 | -76,797 | -139,809 |
| **Ⅵ. 재정운영결과** | **28,509** | **79,243** |

프로그램총원가는 전년 대비 16억 1,300만원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수익은 전년 대비 122억 9,000만원 감소하여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 대비 139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음.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억 5,200만원 증가, 기타경비 1억 700만원 증가로 전년 대비 12억 5,900만원 증가하였음.

비배분수익은 전년 대비 1억 3,600만원 증가하였음. 주요 증감 원인은 이자수익 3,000만원 증가, 기타수익 1억 600만원 증가 등이 있음.

비교환수익은 전년 대비 65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 일반회계전출금 630억 1,100만원 감소, 제재금수익 27억 4,900만원 증가 등이 있음.

##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백만원)

| | 기본순자산 | 적립금 및 잉여금 | 순자산조정 | 합 계 |
|---|---|---|---|---|
| Ⅰ. 전기 기초순자산 | 229,492 | 93,035 | 49,105 | 371,632 |
| 1. 보고금액 | 229,492 | 93,035 | 49,105 | 371,632 |
| Ⅱ. 재정운영결과 | | 79,243 | | 79,243 |
|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 | - | | - |
| Ⅳ. 조정항목 | | | -9 | -9 |
| 1. 자산재평가이익 | | | -9 | -9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229,492 | 13,792 | 49,097 | 292,380 |
| Ⅵ. 당기 기초순자산 | 229,492 | 13,792 | 49,097 | 292,380 |
| 1. 보고금액 | 229,492 | 13,792 | 49,097 | 292,380 |
| Ⅵ. 재정운영결과 | | 28,509 | | 28,509 |
| Ⅶ. 재원의조달및이전 | | - | | - |
| Ⅷ. 조정항목 | | | -9 | -9 |
| 1. 자산재평가이익 | | | -9 | -9 |
| Ⅸ.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229,492 | -14,717 | 49,088 | 263,86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2,638억 6,300만원으로, 2023년도 기말순자산 2,923억 8,000만원 대비 285억 1.700만원이 감소함. 순자산 감소는 재정운영결과 285억 900만원에 기인함.

## 5. 검토의견

### (1) 기타재산이자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적기 수입조치 필요

#### ① 결산 현황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198]은 국고보조금 정산금 이자수입 등으로, 2024년 예산액은 1억 8,300만원이고, 13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음.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 당초 | 추경 | | | |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183 | 183 | - | 183 | 1,391 | 1,391 | - | - | 195 |

자료: 특허청

#### ②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적기 수입조치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99]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198)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예: 국고보조금예치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말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19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이후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받아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및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에 따라 특허청은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및 수익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당해연도 실적보고에 맞추어 반납을 완료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조사업 완료 다음해 말까지 반납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특허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관련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 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

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특허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 **집행잔액 등 반납 처리**

o **(보조사업자)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반환토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도 **반납 처리**(완료시)(통합지침 제26조)

- 집행잔액: 보조금시스템 상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으로 산정 (보조금시스템 미이용시 국고보조금 비율 등으로 산정)
- 이자: 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연 5%, 지자체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에 따라 산정
- 수익금: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
-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외수입으로 계상함이 원칙, 단 재투자시에는 사업계획에 반영 또는 사업계획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예탁된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수익금을 예탁기관이 반납하도록 할 수 있음

o **(담당부서)**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에 맞추어 반납을 완료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조사업 완료 다음해 말까지** 완료토록 할 것(~차년도말)(통합지침 제26조)

그런데,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상세 결산내역을 살펴 보면 총 13억 9,129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에는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사업(80만원),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2개 사업(1억 424만원)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4개 사업(2억 1,516만원) 등 각각 2022년에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정산 및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상세 결산내역

(단위: 원)

| 세부 사업명 | 사 유 |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 사업 연도 | 비 고 |
|---|---|---|---|---|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 2022년 발명교육활성화 사업 이자 및 수익금 징수 | 797,310 | 2022년 | 국고보조 정산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의 정산시스템(에듀파인) 불연동에 따라 수기 정산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연 |
|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 2022년 IP나래 프로그램 보조금 반납 징수(이자 및 수입) | 72,200,030 | 2022년 | 일부 하위보조사업자에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차질 및 행정오류 등의 사유로 반납 지연(2023.12.28.) 이후 행정절차로 기간이 소요 |
| | 2022년 IP디딤돌 프로그램 보조금 반납 징수(이자 및 수입) | 32,043,830 | 2022년 | |
| 지식재산 창출지원 | 2022년 소상공인IP역량강화 보조금 반납 징수(이자 및 수입) | 34,502,410 | 2022년 | |
| | 2022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보조금 반납 징수(이자 및 수입) | 144,394,910 | 2022년 | |
| | 2022년 IP협력기반 강화 보조금 반납(이자 및 수입) | 3,084,890 | 2022년 | |
| | 2022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이자 및 수익금 반납 | 33,177,410 | 2022년 | |
| 여성발명진흥 | 2023년 여성발명진흥 사업 이자 반납 | 8,645,800 | 2023년 | - |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 2023년 발명교육 활성화(청소년 발명기자단 등) 보조금 이자 세입 | 514,880 | 2023년 | - |
|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 2023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반납 | 36,679,150 | 2023년 | - |
| 지식재산 창출지원 |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 수익금 및 이자 징수 | 6,413,810 | 2023년 | - |
| | 2023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이자및 수익금반납 | 74,334,790 | 2023년 | - |
| | 2023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이자및 수익금반납 | 218,209,450 | 2023년 | - |
| |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이자및 수익금반납 | 48,279,780 | 2023년 | - |
| | 2023년 IP협력기반강화 이자 및 수익금 반납 | 5,910,390 | 2023년 | - |

| 세부 사업명 | 사 유 |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 사업 연도 | 비 고 |
|---|---|---|---|---|
|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 2023년 지식재산 평가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및 수익금 수입(징수) | 179,442,890 | 2023년 | - |
| | 2023년 IP제품혁신 지원 사업 이자정산 및 수익금 징수 | 57,079,530 | 2023년 | - |
| 특허전략 개발원 이전 | 특허전략개발원 이전 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 4,593,370 | 2023년 | - |
|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 이자수입금 반납 | 24,388,300 | 2023년 | - |
| | 지식재산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금 등 징수 | 90,314,570 | 2023년 | - |
|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 2023년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사업 발생 이자 징수 | 87,211,830 | 2023년 | - |
|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 2023년 IP나래프로그램 이자및 수익금반납 | 154,355,930 | 2023년 | - |
| | 2023년 IP디딤돌 프로그램 이자및 수익금반납 | 55,490,850 | 2023년 | - |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2023년도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재권 보호지원 수익금 및 이자 징수 | 3,382,400 | 2023년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 | 국가채권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이자액 징수 | 2,589,280 | 2024년 | 재임용 직위 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이자액 징수 |
| 기관운영 기본경비 | 2012년 창의자본기반 조성사업 이자발생액 징수 | 9,532,980 | 2011~2017년 | 24년 5월 상환금 납부 완료에 따른 누적 이자 발생액 반납 |
| - | 국고예금이자 | 3,726,930 | 2024년 | 국고(특허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
| 합 계 | | 1,391,297,700 | | |

자료: 특허청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발명교육활성화(초·중·고)’ 사업의 경우 2차 보조사업자인 발명교육센터 및 학교 등에서 국고보조금 이자의 반납 절차를 위해서는 시·도별 정산절차를 통해 1차 보조사업자(한국발명진흥회)에게 반납이 진행되나, 국고보조 정산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의 정산시스템(에듀파인) 불연동에 따라 수기 정산 과정에서 지연이 불가피하고,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보조사업자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행정오류 등의 사유로 반납이 지연되어 2024년도에 수입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임.[200]

보조금에 대해서 잔액과 이자를 늦어도 다음 연도까지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므로 보조금 사용의 투명한 결산을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조속히 정산이 완료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4년 반납조치가 완료된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정산금(합계 3억 1,940만원)의 경우 정산 과정의 지체, 행정처리 미숙 등이 지연 반납의 원인이므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진 경우 2023년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특허청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과정에서 보조금 정산의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행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재정적 책임성을 높이고,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결산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0) 하위보조사업자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차질 및 행정오류 등의 사유로 반납이 2023. 12. 28.에 이루어졌고 이후 행정절차로 추가 기간이 소요되어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수입조치가 2024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것임.

## (2)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 ① 결산 현황

‘가산금’(58-581)[201]은 납부기한을 초과한 과태료에 부과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수입으로, 2024년 예산액은 0원이고, 78,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음.

2024년도 가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 가산금 | - | - | - | - | 0[202] | 0[203] | - | - | - |

자료: 특허청

### ②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현행 「변리사법」은 등록된 변리사에 대해서 대한변리사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2년 간 24시간 이상,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 받도록 하면서(제15조[204]), 이를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201)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예: 국고보조금예치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말함(기획재정부의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 원 단위 표기 시 78,000원

203) 원 단위 표기 시 78,000원

204)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지 아니한 변리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제27조[205]), 동 과태료는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입 과목 '과태료'(56-563)의 주된 세입원으로 작용하고 있음.[206]

**변리사 의무 연수교육 개요**

| |
|---|
| ○ 근거: 「특허법」 제15조 |
| ○ 목적: 변리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 |
| ○ 교육주관: 대한변리사회 |
| ○ 교육대상: 등록 변리사 |
| ○ 교육시간: 2년 24시간 이상(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 |
| ○ 도입시기: 2011년 11월 |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207]에 따라 가산

---

② ~ ④ (생 략)

205) 「변리사법」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06) 그 밖에 동 세입과목에는 「변리사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제17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20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금(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부과,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 및 중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부과,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이 부과됨.

그런데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것임. 이하 같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과태료'(56-563) 세입 과목에 부과·징수하여 왔고, 2024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동 가산금을 과태료와 함께 '과태료'(56-563) 과목으로 편성하였음[208].

최근 5년간 과태료(56-563)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 | 25 | 25 | - | 25 | 65 | 65 | 260.0 | 100.0 | - | - |
| '21 | 36 | 36 | - | 36 | 23 | 23 | 63.9 | 100.0 | - | - |
| '22 | 36 | 36 | - | 36 | - | - | - | - | - | - |
| '23 | 44 | 44 | - | 44 | 42 | 42 | 95.5 | 100.0 | - | - |
| '24 | 30 | 30 | - | 30 | 2,972*,** | 31 | 103.3 | 1.0 | 2,942 | - |

* 당해연도에 부과된 과태료 498백만원과 이전연도에 부과되어 이월된 과태료 2,47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허청은 그동안 '당해연도에 납부된 과태료 액수'를 징수결정액으로 표기하여 오다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2023. 8.)에 따라 '당해연도 과태료 납부가 필요한 금액(당해연도 부과 과태료 및 이월된 미납 과태료 합계)'을 징수결정액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결산자료 표기 방식을 변경함

주: 이전연도에 부과된 미납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당해연도에도 유효하므로 당해연도에 납부받을 금액을 뜻하는 징수결정액에는 당해연도 부과 과태료 및 이월된 미납 과태료 금액 합계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특허청

208) 다만, 특허청은 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 이후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사례에서 추가 중가산금(78,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가산금'(58-581) 과목으로 세입처리하였다고 설명함.

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 이후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사례에서 추가 중가산금(78,000원)[209]이 발생되어 이를 '가산금'(58-581) 과목으로 세입처리하였음.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세입 과목으로 '과태료'(56-563)[210]와 '가산금'(58-581)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계·기금의 운용주체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는 '과태료'(56-563) 과목으로 관리하고, 해당 과태료의 납부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가산금은 '가산금'(58-581) 과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회계 원칙 및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임.

특히, 현재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56-563) 과목(징수결정액 기준 29억 7,200만원)에는 21억 7,300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7억 9,900만원 상당의 가산금이 포함되어 가산금 비중(26.9%)이 상당하므로 가산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특허청은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금을 '가산금'(58-581) 과목으로 편성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9) 연초 납부 독촉 이후 실제 납부가 행해진 시점(2024년 6월)까지 추가로 발생한 중가산금을 뜻함.

210)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법령상 이행강제금 포함)

## (3) 심판처리지원: 일반용역비 계획적 편성·집행 필요

### ① 결산 현황

‘심판처리지원’(1031-308)은 심판부 운영 및 특허소송수행 지원, 패소비용 부담금 및 승소포상금 지원, 특허심판원 이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52억 2,100만원이고, 예산 조정(증액 1억 5,000만원, 감액 5억 4,6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48억 2,500만원 중 43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심판처리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심판처리지원 | 5,221 | 5,221 | - | +150<br>△546 | - | 4,825 | 4,345 | - | 480 | 1,608 |
|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 1,365 | 1,365 | - | +55<br>△121 | - | 1,300 | 1,248 | - | 51 | 1,357 |
| 패소비용부담금 등 | 251 | 251 | - | - | - | 251 | 110 | - | 141 | 251 |
| 심판원 이전 | 3,605 | 3,605 | - | +95<br>△425 | - | 3,275 | 2,988 | - | 288 | - |

자료: 특허청

### ② 일반용역비 계획적 편성·집행 필요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내역사업은 특허심판원 심판부 운영 및 심판연구, 속기사 운영,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인 특허청장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전용 등을 반영한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원 중 1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 1,365 | 1,365 | - | +55<br>△121 | - | 1,300 | 1,248 | - | 51 | 1,357 |
| 상용임금(110-03) | 409 | 409 | - | - | - | 409 | 407 | - | 2 | 422 |
| 일반수용비(210-01) | 427 | 427 | - | △105 | - | 322 | 322 | - | - | 407 |
| 특근매식비(210-05) | 10 | 10 | - | | - | 10 | 10 | - | - | 10 |
| 임차료(210-07) | 14 | 14 | - | △9 | - | 5 | 5 | - | - | 14 |
| 복리후생비(210-12) | 7 | 7 | - | | | 7 | 2 | | 5 | 7 |
| 일반용역비(210-14) | 44 | 44 | - | +55 | | 99 | 99 | | - | 64 |
| 국내여비(220-01) | 43 | 43 | - | △7 | | 36 | 35 | | - | 43 |
| 국외업무여비(220-02) | 7 | 7 | - | - | | 7 | 7 | | - | 7 |
| 사업추진비(240-01) | 45 | 45 | - | - | | 45 | 45 | | - | 45 |
| 특정업무경비(250-03) | 137 | 137 | - | - | | 137 | 129 | | 7 | 159 |
| 고용부담금(320-09) | 80 | 80 | - | - | | 80 | 80 | | - | 82 |
| 공사비(420-03) | 105 | 105 | - | - | | 105 | 70 | | 35 | - |
| 자산취득비(430-01) | 38 | 38 | - | - | | 38 | 38 | | - | 98 |

자료: 특허청

동 사업의 비목 중 일반용역비(210-14)는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관리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음.

그런데, 특허청은 2024년에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 지원(증액) 500만원, 한·유럽 상표디자인심판 협력회의 개최 지원(신규) 2,200만원, 특허심판원 홍보영상 제작(신규) 1,200만원, 2023 특허심판원 연보 발간(신규) 1,600만원 등 총 4건에 걸쳐 5,500만원(당초 예산의 125% 규모)을 일반수용비로부터의 세목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일반용역비 세목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에서 (세목) | ~으로 (세목) | 금액 | 세목조정 사유 |
|---|---|---|---|---|
| 세목조정 ('24.4.) | 일반수용비 (210-01) | 일반용역비 (210-14) | 5 |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의 온라인 병행 개최 지원 |
| 세목조정 ('24.7.) | | | 22 | 한·유럽 상표디자인심판 협력회의 개최 지원 |
| 세목조정 ('24.8.) | | | 12 | 특허심판원 홍보영상 제작 |
| 세목조정 ('24.9.) | | | 16 | 2023 특허심판원 연보 발간 |

자료: 특허청

## 2024년도 일반용역비 집행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 항 목 | 예산액 | 세목 조정 | 집행액 | 세 부 내 용 |
|---|---|---|---|---|
|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 | 44 | 5 | 49 | ◦ 시기: 2024년 6월 11일 ~ 12일<br>◦ 장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및 한국지식재산센터 19F 대회의실<br>◦ 참가현황: IP5 특허심판원장, 온라인 참석자, 국내변리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30명 참석<br>◦ 논의사항: 각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과 관심 사항, 특허심판분야 AI 활용 및 심판시스템 디지털화 동향 등<br>◦ 담당업체 역할: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관리 |
| 한·유럽 상표디자인심판 협력회의 개최 | - | 22 | 22 | ◦ 시기: 2024년 9월 2일 ~ 3일<br>◦ 장소: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대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서울)<br>◦ 참가현황: 특허심판원장, 유럽상표디자인심판원장 대행 등 대표단 14명, 변리사·변호사, 기업 지재권 담당자 등 120여명 참석<br>◦ 논의사항: 각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심판환경, 행정개선 계획 등 공유<br>◦ 담당업체 역할: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관리 |
| 특허심판원 홍보영상 리뉴얼 제작 | - | 12 | 12 | 지재권 분야 심판이 생소한 일반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원 견학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교실 운영에 활용 |
| 2023 특허심판원 연보 발간 | - | 16 | 16 | ◦ 매년 특허심판원 연보 발간<br>◦ 담당업체 역할: 원고 기획 및 구성, 편집·디자인, 인쇄·제작, 사진 촬영 등 기타 특허심판원 2023년 연보 제작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직후 참여국에서 하이브리드 회의(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실시)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장비 임차료,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500만원 증액이 필요하였고,

‘한·유럽 상표디자인심판 협력회의 개최’의 경우 2023년 회의(2023. 6. 26.) 시 유럽측에서 한국에서의 대면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여 2024년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으나, 이미 예산요구 시기가 경과한 상태였으며,

‘특허심판원 홍보영상 리뉴얼 제작’은 2024년 7월 특허심판원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이전에 따라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한 사업으로,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비용이었다고 설명함.

다만, ‘2023 특허심판원 연보 발간’의 경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 조정을 통해 일반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최근 4년간 일반용역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2021 | - | - | - | - | - | - |
| 2022 | - | 84 | 84 | 84 | - | - |
| 2023 | - | 52 | 52 | 52 | - | - |
| 2024 | 44 | 55 | 99 | 99 | - | - |

자료: 특허청

따라서 특허청은 일반용역비 편성·집행을 보다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세목조정을 통해 일반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4)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발명교원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등

#### ① 결산 현황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1235-302)는 초·중·고 발명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준별·학교급별 특화된 발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발명 기반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3억 4,800만원 중 103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 10,348 | 10,348 | - | - | - | 10,348 | 10,343 | - | 5 | 10,448 |
|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 5,134 | 5,134 | - | - | - | 5,134 | 5,129 | - | 5 | 4,734 |

자료: 특허청

#### ② 발명교원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내역사업인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은 광역자치단체에 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신규 설치, 발명교원 역량 관리(발명교사 인증제도·종합교육연수원·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 등),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등 발명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발명교사 인증제도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 제9조제4항[211]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212] 등에 근거하여,

초·중등 학교 교육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보조사업 방식으로 발명교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할 것
2.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3.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실무경력을 갖출 것(명인 또는 1급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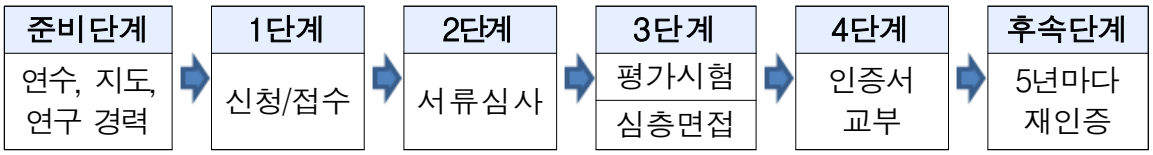
## 발명교사 인증제도 주요 현황

○ **(제도 현황)**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등급 | 필수요건 | | | | 선택요건(2항목 충족) | | | | 비고 |
|---|---|---|---|---|---|---|---|---|---|
| | 정교사 자격증 | 발명교육 이수실적 | 발명교육 실무경력 | 선행등급 | 발명대회 입상지도 | 발명교육 강의실적 | 연구발명 실적 | 지식재산 능력시험 | 평가시험 |
| 명인 | 1급 | 180시간 (집합교육 90시간 이상) | 7년 | 1급 발명교사 | 30점 | 40시간 | 30점 | 700점 | 구술 |
| 1급 | 2급 | 120시간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 3년 | - | 15점 | 20시간 | 15점 | 600점 | 필기 |
| 2급 | 2급 (소지 예정자) | 60시간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 - | - | - | 필기 |

○ **(법적 근거)** 발명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 **(심사과정)** 등급별로 발명교사 인증제 요건(연수시간, 지도경력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평가시험(명인의 경우 심층면접)을 통해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5년간 발명교사 인증 자격 부여




자료: 특허청

한편 정부는 2022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미래사회의 혁신을 견인하는 장기적인 '지식재산(IP)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추진 방향

□ (초중고) 발명교육을 비교과활동 중심에서 정규교육化

○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內로 편입하고, 타 교과목과 발명교육의 연계·융합을 강화

○ 발명교육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발명교원 양성체계를 다각화 하고, 전국 어디서나 체험·심화교육이 가능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

□ (대학·연구자) IP 융합역량 함양을 위한 보편교육化

○ 다양한 전공 및 기술분야에서 IP 소양 및 융합역량을 갖춘 (예비)연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IP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IP교육 환경을 조성

○ IP교육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유망분야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IP 기술·융합교육 추진

□ (기업·국민) 모두가 IP 소양을 체득하는 평생교육化

○ 수요자에게 유용한 분야별·목적별 IP콘텐츠를 제작·확산시키고, 교육 활동 주체의 다변화* 를 통한 전 국민 IP 인식 제고 추진

* 정부 중심 → 지자체·평생교육기관·민간(기업・전문가) 등 지역・민간의 활동 기반 강화

○ 수준별·분야별 교육 훈련 로드맵을 통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 과정을 자기주도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양성기반)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교육化

○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IP교육, 교육 콘텐츠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추진

○ 사회 전반에 발명·IP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자료: 특허청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의 발명교육은 발명교육센터 중심으로 학교 정규교육 과정 외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발명교육의 수급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음. 동 비전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의 발명·IP교육 반영을 확대[213]하고 다

213) 2006년까지 발명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특별활동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5·6학년 실과 생활과 기술 단원에 반영('09년 교육과정, '15년 적용)되었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기술·가정 중 '기술과 발명' 과정에 반영('07년 교육과정, '10년 적용)되었으며,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지식재산 일반'이 독립교과(선택과목)로 반영('15년 교육과정, '18년 적용)되었음.

른 정규교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발명교육전문가 양성경로를 다양화하고 발명교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각국이 IP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을 정규화하고 이를 강화·전문화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며 「발명교육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발명교사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2013년 동 제도가 시행된 이래 누적 995명(명인 29명, 1급 53명, 2급 913명)의 교사 발명교사로 인증을 받았고, 이들은 발명교육센터, 영재교육, 정규교과 지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

**발명교사 인증제도 취득 현황**

(단위 : 명)

| 인증년도 | 명인 | 1급 | 2급 | 계 |
|---|---|---|---|---|
| 2013~2017 | 11 | - | - | 11 |
| 2018 | 4 | 4 | 174 | 182 |
| 2019 | 3 | 19 | 169 | 191 |
| 2020 | 4 | 6 | 139 | 149 |
| 2021 | 2 | 13 | 119 | 134 |
| 2022 | 2 | 6 | 157 | 165 |
| 2023 | 3 | 2 | 89 | 94 |
| 2024 | (신청자 없음) | 3 | 66 | 69 |
| **합계** | **29** | **53** | **913** | **995** |

자료: 특허청

그런데,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 숫자가 2019년 191명에서 2022년 165명, 2023년 94명, 2024년 69명 등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4년에는 인증제도 중 최상위급인 '명인'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발명교사 인증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물건교과서 등 발명 관련 내용을 필수과목화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7종 신설을 반영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에 발명교과를 다수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원은 전체 초·중·고 교원(44.1만 명)의 0.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실천하고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발명교사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발명교사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제도화된 혜택은 없는데[214],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사가 적극적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

214) 특허청에 따르면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제도화된 혜택은 없고, 일부 지역 교육청에 따라 인증 교사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가 초·중·고등학교의 발명교육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③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 지연 방지 필요 등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의 내내역사업인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는 교육현장에서 체험형 발명교육의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검증된 체험형·심화형 발명교육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215]를 중부권에 설치하는 사업임.

특허청은 지난 2023년 3월 중부권 지역의 시·도교육청[216]을 상대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를 공모하였고, 2023년 5월 충청북도 교육청이 최종 선정되어 충북 충주시 탄금공원 일대에 충북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동 사업에 대해 특허청이 분담하는 총 사업비는 53억원[217][218]이고, 2024년(2년차)에는 구축·운영비로 약

215)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16)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217) <중부권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신규 설치 소요기간에 따라 연차별 투입예산 요구예정>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배정된 예산은 전액 집행(실집행)되었음.

**<충북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

○ 위치: 충북 충주시 남한강로24(탄금공원), 세계무술박물관 및 인근부지
○ 시설 규모: 연면적 8,561㎡, 부지면적 8,546㎡
○ 설치 형태: 신축(창의나래 교육관) 및 리모델링(상상나래 체험관)
○ 총 사업비: 349억원(특허청 53억, 충청북도 교육청 296억)




자료: 특허청

앞서 2022년 3월에 제1호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로서 '경주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개관하였는데, 매년 10만명 이상[219]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경주 센터의 성공 사례[220]를 참고할 때, 지역 경제 및 산업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중심 발명교육의

1년차: 6억(설계준비비) → 2년차: 10억(구축운영비) → 3년차: 10억(구축운영비) → 4년차: 10억(구축운영비) → 5년차: 17억(구축운영비)

218)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는 특허청이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한국발명진흥회(1차 보조사업자) 및 충청북도교육청(2차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예산을 교부하면 충청북도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19) **<경주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구분 | 2022.3~12. | 2023 | 2024 | 2025.1~6. | 누계 |
|---|---|---|---|---|---|
| 방문객수(명) | 115,078 | 166,275 | 137,216 | 72,702 | 491,271 |

220) 쿠키뉴스, "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방문객 27만명 돌파, 전국 핫플레이스 부상", 2023.11.20.

권역별 거점으로서 충북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 추진 기관인 특허청(및 충청북도교육청)은 설립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주시로부터 설립부지 및 세계무술박물관의 무상사용허가(약 27억원 상당)를 받는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예산 절감의 성과를 달성한 측면이 있음.

다만, 특허청은 다년도 사업인 충북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충북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 | 일시 | 내용 |
|---|---|---|
| **사업 추진 경과** | '23. 3.<br>'23. 5.<br>'23. 7.<br>'24. 5.<br>'24.10.<br>'25. 4.<br>'25. 7. | 사업 공고<br>충청북도교육청 선정<br>업무협약 체결<br>자체투자심사 통과<br>행안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br>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br>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 **사업 추진 계획 (안)** | '25. 9.<br>'25.10.<br>'26. 1.<br>'26. ~<br>**'28. 8.**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br>설계 공모<br>실시설계<br>공사발주 및 계약, 착공<br>**센터 완공 및 개관** |

자료: 충청북도교육청

먼저, 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하여 원래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이 2023년 7월에 수립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추진 계획」을 보면 당초 2027년 1월에 센터를 개관할 계획이 있었으나, 2025년 8월 현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2028년 8월에 신축 건물 완공 및 개관이 예상[221]되고 있음.

특히 동 사업은 2023년 7월 업무협약 이후 자체투자심사, 행정안전부·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법령상[222] 거쳐야 하는 행정 심사를 통과하는데 다소 많은 시일이 경과하였고, 특히 공동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사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서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길어질 가능성, 설계 및 공사 계약 발주시 유찰 가능성, 동 사업은 건물의 신축 공사인바 공사 기간 자체가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 등 다양한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청은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사업 지연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충북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특허청 예산(2023년: 6억, 2024년: 10억)은 계속해서 전액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특허청은 센터 건축기획 용역 및 설립준비에 3억 4,100만원을 사용하

221)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구두 문의

222)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였고, 미디어월 설치 및 콘텐츠 제작에 12억 5,9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함.

미디어월 설치 사업은 당초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사 건축기획 용역에서 미디어월 설치 제안이 있었고('24.1.),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추진 운영협의회를 통해 미디어월 설치 필요성이 논의되어('24.5.), 미디어월을 설치('24.6.~'24.12.)하였음. 현재 미디어월에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및 발명교육에 대한 홍보 콘텐츠 등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음.

**미디어월 설치 현장 및 상영 콘텐츠**




자료: 특허청

미디어월 설치를 통해 발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충북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당초의 예산이나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국가재정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이라는 원칙과는 맞지 않고, 미디어월 설치

시점은 2024년인데 충북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예상 개관 시점은 2028년이므로 양자의 시간적인 간격이 커서 국민이 체감하는 미디어월 설비의 효용성 및 사업의 시급성은 높지 않은 측면이 있음[223].

현재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각 연도 예산은 총액 53억원을 산술적으로 5년에 나누어 배분[224]하는 방식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 기관이 사업성 내지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다는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임의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에 배정된 예산(10억원)의 경우에도 센터의 공사 비용 및 신축·리모델링 건물에 연계된 발명교육 시설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었지만 심의 및 공사 지연에 따라 적정한 집행이 곤란하였고, 2025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예산 사용처를 발굴해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임[225].

따라서, 특허청은 2025년 8월 현재 시점에서 개발 예정인 발명교육 콘텐츠가 센터의 개관 시점인 2028년에도 충분히 효용성을 가질 수

223) 다만, 특허청은 미디어월 운영비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부담하고 2028년까지 무상 AS가 가능하여 특허청이 미디어월 운영에 있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함.

224) <중부권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신규 설치 소요기간에 따라 연차별 투입예산 요구예정>
1년차: 6억(설계준비비) → 2년차: 10억(구축운영비) → 3년차: 10억(구축운영비) → 4년차: 10억(구축운영비) → 5년차: 17억(구축운영비)

225) 특허청은 2025년에 배정된 예산(10억원)의 경우 2025년 8월까지 집행액이 없는 상황이고, 향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충청북도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콘텐츠를 선정한 후 이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함.

있도록 하고, 다년도 사업인 동 사업의 향후 예정된 예산액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센터설치 사업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 특정업무경비 현실화 필요 등

### ① 결산 현황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531-301)는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미스터리 수사지원단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26억 500만원 중 124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12,605 | 12,605 | - | - | - | 12,605 | 12,468 | - | 137 | 12,782 |
|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 4,642 | 4,642 | - | - | - | 4,642 | 4,539 | - | 103 | 6,247 |
| 영업비밀 보호 기반 구축 | 3,196 | 3,196 | - | - | - | 3,196 | 3,194 | - | 2 | 2,214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 4,355 | 4,355 | - | - | - | 4,355 | 4,348 | - | 7 | 4,109 |
| 미스터리 수사 지원단 운영 | 412 | 412 | - | - | - | 412 | 386 | - | 26 | 212 |

자료: 특허청

### ②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 특정업무경비 현실화 필요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내역사업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활동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상표권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사업은 예산액 46억 4,200만원 중 45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실적**

| |
|---|
| ㅇ **예산집행: 4,539백만원**<br>- 수사 및 조사업무 수행 : 968백만원(3개과 × 323백만원)<br>-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 18백만원(4건 × 4.5백만원)<br>-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 3,553백만원 |
| **o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형사입건 307명, 지자체 위조상품 시정권고 824명**<br>**o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개최(9회)**<br>**o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 형사입건 356명, 검찰송치 241명**<br>**o 신고포상금 실적: 지급 4건(18백만원), 740억원 상당 위조상품 적발** |

자료: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226], 2024년 ‘특별사법

2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

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형사입건 307명, 지자체 위조상품 시정권고 824명),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형사입건 356명, 검찰송치 241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특히, 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7월 이차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여 수조원대의 피해를 예방하고, 2025년 6월 3,4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대형 사건 수사 사례**

| |
|---|
| o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차단:** 특허청과 대전지검이 공조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술(영업비밀)을 해외 유출하려는 대기업 전직 팀장 등 3명 기소(1명 구속). 이차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유출 직전 차단하여, 수조원대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25.7.) |
| o **340억원대 기업형 디자인범죄조직 검거:** 디자인보호법·부경법위반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 전액(24.3억원) 추징보전 및 유명 SNS 인플루언서 대표 구속 등 법인과 임직원 7명 기소의견 송치('23.9.).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신종 범죄 수법 전파를 위한「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발부('23.12.) |
| o **역대 최대 규모 위조 악세서리 유통·판매업자 단속:** 부산의 대형 매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써지컬 스틸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도·소매로 판매한 피의자 송치('25.6). 위조 명품 악세서리 등 총 39,380점을 압수하였음.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사건 기준 정품가액 기준 최대 규모(3,400억원 상당)의 단속 성과 |

자료: 특허청

---

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한, 특허청은 상품·영업표지 혼동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부정경쟁행위 조사 제도(부정경쟁조사팀)를 운용하고 있는데[227], 부정경쟁행위 조사 접수 및 종결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실적이 준수한 상황임.

**최근 5년간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조사 접수 및 종결 실적**

(단위: 건)

| 구분 | | '20 | '21 | '22 | '23 | '24 |
|---|---|---|---|---|---|---|
| 접수 | 부정경쟁행위 | 113 | 113 | 123 | 175 | 161 |
| | 국기·국장 등 상표사용행위 | 1 | 20 | 29 | 2 | 9 |
| | 지리적 표시의 사용행위 | - | - | - | - | 10 |
| | 소계 | **114** | **133** | **152** | **177** | **180** |
| 종결 | 부정경쟁행위 | 71 | 107 | 111 | 119 | 170 |
| | 국기·국장 등 상표사용행위 | - | 20 | 18 | 12 | 7 |
| | 지리적 표시의 사용행위 | - | - | - | - | - |
| | 소계 | **71** | **127** | **129** | **131** | **177** |

자료: 특허청

한편, 특정업무경비(250-03목)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고[228], 특허청도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조사관 등)** ①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조사와 관련하여 영 제1조의4 제1항의 조사방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출석 요청, 자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228)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p.183

특허청은 2024년에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8,27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이는 58명[229]에게 매월 한 사람당 119,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임[230].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 특정업무경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12,605 | 12,605 | - | - | - | 12,605 | 12,468 | - | 137 | 12,782 |
|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 4,642 | 4,642 | - | - | - | 4,642 | 4,539 | - | 103 | 6,247 |
| 특정업무경비 | 83 | 83 | - | - | - | 83 | 83 | - | 0 | 83 |

자료: 특허청

최근 5년간 특허청 수사·조사 특정업무경비 지급 현황 등

| 기준 지급월 | | '21.12 | '22.12 | '23.12 | '24.12 | '25.6 |
|---|---|---|---|---|---|---|
| 지급인원 (명) | 기술경찰 | 22 | 22 | 22 | 25 | 26 |
| | 상표경찰 | 25 | 24 | 27 | 28 | 30 |
| | 조사관 | 7 | 7 | 7 | 10 | 10 |
| 합계 | | 54 | 53 | 56 | 63 | 66 |
| 개인별 월지급액 (원) | 기술경찰 | 103,000 | 130,000 | 123,000 | 109,000 | 105,000 |
| | 상표경찰 | 103,000 | 130,000 | 123,000 | 109,000 | 105,000 |
| | 조사관 | 103,000 | 130,000 | 123,000 | 109,000 | 105,000 |
| 예산액 | | 67,000,000 | 82,708,000 | 82,708,000 | 82,708,000 | 82,708,000 |

주: 25.7. 기준 정원 총 60명(기술경찰과 25명, 상표경찰과 28명, 부정경쟁조사팀 7명)
자료: 특허청

229) 특허청은 2022년 예산 추계 당시 수사 및 조사 업무 담당자의 정원인 58명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함.

230) <2024년 특허청 특정업무경비 예산 산출 근거>

| 8,270만원 = 58명(인원) × 119,000원(월별 지급액) × 12월 - 116,000원(단가조정) |
|---|

그런데,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에게 실제로 매월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109,000원이고, 2025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하여 105,000원에 불과함.

2021년에 103,000원을 지급한 뒤 특정업무경비 현실화를 위해 예산액을 증액하여 2022년에는 1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수사 및 조사 담당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춰 특정업무경비 예산액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아[231], 개인에게 배분이 가능한 지급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232].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p.246), 특정업무경비 중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 경비는 '인원 × 단가 × 기간'으로 산출하는데 현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금액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에 맞는 정원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다른 기관의 소속으로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현황을 보면 매월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31)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예산안 작성시 재정당국에 수사 및 조사 업무 담당자 인원의 증가와 액수 현실화를 고려하여 특정업무경비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매년 동액(82,708,000원)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설명함.

232)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따르면(p.183),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의 산출 기준 액수(119,000원) 및 실제 지급된 액수(109,000원)는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음.

**각 기관별 특정업무경비 지급 사례**

| 구분 | 내용 |
|---|---|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수사 담당자에게 월 **25만원** 지급 |
| 관세청 | 관세법 위반 관련 범죄 수사 담당자에게 월 **20만원** 지급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범죄 수사 담당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수사 담당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자료: 특허청

최근 전자상거래, SNS, 글로벌 물류망의 발달로 위조상품·불법복제품의 국경 간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범죄의 전문화로 조직적·전문적 위조·도용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 등의 전문 수사 역량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하여, 특별사법경찰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의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과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위조상품 방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특정업무경비 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③ 온라인플랫폼 통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위한 법률 개정 노력 필요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적발하고 이의 판매를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의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제공하면 관세청의 경우 국경단계에서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해당 플랫폼에서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현황**

□ 관련 예산: 16억 900만원

□ 인원: 위조상품의 증거를 수집하는 재택인력 및 증거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관리인력으로 구성

- (’24년) 152명(재택 145명, 관리 7명)

□ 업무방식: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위조상품 정보를 관세청*·방심위 등 유관부처에 제공하여 차단조치**

* (2024.4~12) 특허청 2,772건 정보제공 → 관세청 7,018건(물품) 통관보류

** (관세청) 국경단계 통관 직권보류 / (방심위・플랫폼) 판매페이지 접속 차단

| 재택인력 | 관리인력 | | |
|---|---|---|---|
| 정보수집·채증 | 유효성 검증 | 판매중지 요청 | 처리확인 |
|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정보 조사 및 증거 확보 | ▪ 사이트 재확인 및 채증 적합성 확인<br>▪ 재택인력에 확인 결과 통지 및 보완 요청 | ▪ 온라인 사업자에 판매중지 요청 | ▪ 최종 제재 여부 확인 및 DB구축 |

□ 단속실적: (’20) 12.7만건 → (’22) 18.1만건 → (’24) 22.6만건

자료: 특허청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차단 실적은 특허청이 동 업무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에 12만 9,538건을 단속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2024년의 경우 2023년도(238,021건)에 비해 14.7%가 증가한 27만 2,948건을 적발하였음.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 실적 | | | |
|---|---|---|---|---|---|---|
| | | | 판매중지* | 사이트폐쇄** |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 합 계 |
| 2019년 | 2,491 | 2,457 | 7,662 | 340 | 121,536 | 129,538 |
| 2020년 | 2,491 | 2,476 | 10,446 | 394 | 126,542 | 137,382 |
| 2021년 | 3,041 | 3,025 | 16,846 | 451 | 171,606 | 188,903 |
| 2022년 | 3,052 | 3,018 | 24,687 | 355 | 181,131 | 206,173 |
| 2023년 | 3,052 | 3,041 | 38,867 | 301 | 198,853 | 238,021 |
| 2024년 | 3,102 | 3,099 | 46,637 | 470 | 225,841 | 272,948 |

주: 해당 예산 내 온라인 모니터링 외에 특사경 수사지원, 지자체 합동단속(시정권고 지원) 등 오프라인 단속 지원 및 권리자/플랫폼 간담회 등 대내외 협력 예산 등 포함

* 온라인플랫폼(예. 쿠팡, 네이버 등) 내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한 건에 대한 삭제 조치 실시

** 개인쇼핑몰 등 별도 홈페이지에서 여러 위조상품 의심 물품들을 판매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자체에 대해 접속 차단, 이용 해지 조치 등 실시

자료: 특허청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일상화되고,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증가[233]함에 따라,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도 증가 추세에 있음.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가상의 공간이나 서버 등 거래 중개수단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역할이 중요할 것임.

233) 연간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액(통계청 자료)
('22) 5조 9,454억원 → ('23) 6조 6,819억원 → ('24) 7조 9,583억원

그런데,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위조상품을 통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 규정[234]은 있으나, 온라인 상품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235]

이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개수단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음.

참고로 해외 주요국(EU, 일본, 중국 등)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시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notice)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조치(take down)를 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신고에 기반한 조치의무(notice&take down)'를 도입하여 이를 위조상품 책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234)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생 략)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5) 다만, 판례(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등)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제760조) 등에 근거하여 오픈마켓이 위조상품 유통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 방지 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주요국 입법례

□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발효('22. 11. 16), EU 회원국 전체 적용('24. 2. 17))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위조상품 신고**시, **신속하게 해당 콘텐츠 차단 등 조치를 하면 상표권 침해 책임 면제**

* 오픈마켓, 망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포함

- **(특징)** 일반적·사전적인 모니터링 의무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

□ **(일본)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통칭: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 **특정전기통신제공자***는 **위조상품 신고시**, **상당한 소명**에 기초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면 **손해배상 책임 면제**

* 방송, 1대1 통신(이메일) 등을 제외한 특정전기통신의 송신이 규율대상이며, **웹 호스팅**, **제3자가 자유롭게 쓰기 가능한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이에 해당

- **즉시 삭제의무는 아니며**, **제3의 공적 판정기관**(상표권관계신뢰성확인단체)의 **판정서**가 상당한 소명 판단에 **핵심적인 자료**로 기능

□ **(중국) 전자상무법**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위조상품 신고시**, **차단 등 조치의무**가 있으며, **미조치시 연대책임**

*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쌍방 또는 복수의 당사자에게 네트워크상의 거래장소 제공, 거래 중개, 정보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

□ **(미국) 샵 세이프 법안**(SHOP SAFE Act, '23년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전·사후조치, 침해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 **모두 이행**해야만 **책임 면제**

* 판매자로 하여금 미국 내에서 소비자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허용, 촉진, 가능하게 하고, 1인 이상의 판매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전자 기반 또는 전자적 접근이 가능한 소비자 지향 플랫폼(법안 §32④H)

자료: 특허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신고에 기반한 조치의무(notice&take down)'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36]되어 상임위원회 전체회

236) 의안번호 제2205684호(2024. 11. 19.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802호(2024. 11. 22.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에 상정 및 소위원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6)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및 사회복무요원운용: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① 결산 현황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7011-261)은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8,900만원, 이·전용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억 9,400만원이며 이 중 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복무요원운용’(7011-260)은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6,600만원이고, 이 중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사회복무요원운용 (총액인건비) | 289 | 289 | - | △95 | - | 194 | 187 | - | 7 | 265 |
| 사회복무요원운용 | 66 | 66 | - | - | - | 66 | 40 | - | 26 | 46 |

자료: 특허청

### ②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237],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임.

2025년 8월 기준으로 특허청 사회복무요원의 현원은 16명으로, 운영지원과 등 9개 부서에서 우편물 및 문서 수발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2025년 8월 기준 특허청 사회복무요원 운용 현황

| 계 | 운영지원과 |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 산업재산등록과 | 산업재산출원과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 상표심사정책과 | 특허심판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
| 16(명) | 6 | 1 | 2 | 1 | 2 | 1 | 1 | 1 | 1 |

자료: 특허청

그런데, 2024회계연도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세부사업의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4회계연도 동 사업의 예산액 2억 8,900만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을 위해 집행된 비용은 1억 8,7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집행액/예산액)이 64.7%에 그치고 있음.

237)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또한,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2021년 및 2022년의 집행률은 75.2%, 81.4%에 그치고, 2023년에는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등 계획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7011-261)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A) | 집행액(B) | 집행률(B/A) |
|---|---|---|---|
| 2021 | 155 | 117 | 75.2 |
| 2022 | 177 | 144 | 81.4 |
| 2023 | 177 | 185 | 105.1 |
| 2024 | 289 | 187 | 64.7 |

자료: 특허청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7011-261) 사업의 예산 추계 부정확성은 관련 사업인 사회복무요원운용(7011-260)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집행률이 55%~70%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률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사회복무요원운용(7011-260)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A) | 집행액(B) | 집행률(B/A) |
|---|---|---|---|
| 2021 | 68 | 41 | 60.3 |
| 2022 | 74 | 45 | 70.3 |
| 2023 | 74 | 41 | 55.4 |
| 2024 | 66 | 40 | 60.6 |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사회복무요원운용 관련 사업의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변경[238]으로 인한 추가 전입, 분할복무자[239]

복귀, 결근 사용으로 인한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 소요 예산 예측이 어려워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여유 있게 예산을 추계할 필요가 있는데, 2024년의 경우 변동가능성을 대비해 30명을 기준[240]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실제 근무 인원인 17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특허청의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운용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17명에서 2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과 같이 예상 인원을 30명으로 추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특허청 사회복무요원 운용 현황**

| 특허청 사회복무요원 운용 현황(명)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17 | 19 | 20 | 17 | 20 |

주: 현원 수는 각 연도 1월 1일 기준
자료: 특허청

238) 「병역법」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39) 「병역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240) <2024년 특허청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예산 산출 근거>

| 2억 8,900만원 = **30명**(예상 인원) × **803,000원**(월별 보수) × 12월 |
|---|

다만, 2025년의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예산은 2024년 예산인 2억 8,900만원보다 2,400만원(△8%) 감액한 2억 6,500만원을 편성[241]하였고, 2025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2024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의 경우 불용액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024년 및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비교**

(단위: 천원)

| 복무기간 | 2024년 | 2025년 | 보수 인상률 |
|---|---|---|---|
| 소집월 ~ 2개월 | 640 | 750 | +17% |
| 3개월 ~ 8개월 | 800 | 900 | +12% |
| 9개월 ~ 14개월 | 1,000 | 1,200 | +20% |
| 15개월 ~ 21개월 | 1,250 | 1,500 | +20% |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보면(p.10), 상용임금과 관련하여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원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요구”하라거나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에 현 인력 운영현황, 호봉제 운영 여부 및 기본급·수당 등 보수 기초자료를 입력”하라고 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정확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책임감 있는 집행을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예산 분배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241) <2025년 특허청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예산 산출 근거>

| 2억 6,500만원 = **17명**(예상 인원) × **1,299,000원**(월별 보수) × 12월 |
|---|

따라서, 특허청은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7011-261) 및 사회복무요원운용(7011-260) 사업과 관련하여, 예상 인원 및 보수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률 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7) 일반회계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위탁: 여유재원의 규모 축소 및 활용방안 강구 필요

#### ① 결산 현황

‘일반회계 전출’(8010-800)은 책임기관특별회계 내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153억 7,400만원 중 776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3%)되고, 377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510-850)은 잉여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금을 운용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9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일반회계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4년 | | | | | | | 2025년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일반회계 전출 | 115,374 | 115,374 | - | 115,374 | 77,666 | - | 37,708 | 102,579 |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 19,000 | 19,000 | - | 19,000 | 19,000 | - | - | 18,725 |

자료: 특허청

#### ② 여유재원의 규모 축소 및 활용방안 강구 필요

특허청 매년 발생하는 손익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을 자본계정으로 전출[242]하고, 자본계정 내 ‘일반회계 전출’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42) 자본계정 전출(9330-820) 사업

사업을 통하여 여유재원(자본계정의 세입·세출 차액)을 활용하고 있음.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주요 세입원으로서 수수료 수입이 많이 발생하여 자체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전액 편성한 후에도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 재원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과 일반회계 전출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특허청 사업 수입(수수료 수입)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수료 유형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출원료 | 25,051 | 27,243 | 25,359 | 24,315 | 23,538 |
| 심사청구료 | 106,522 | 114,650 | 96,172 | 98,964 | 102,309 |
| 설정등록료 | 69,075 | 78,081 | 76,386 | 84,170 | 75,651 |
| 연차등록료 | 292,595 | 311,320 | 339,050 | 343,265 | 343,233 |
| 기타수수료 | 54,662 | 60,767 | 59,524 | 63,109 | 59,509 |
| 계 | 547,905 | 592,060 | 596,490 | 613,824 | 604,240 |

자료: 특허청

여유재원의 규모는 사업수입의 규모에 따라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여유재원의 총 규모가 9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여유재원 예탁 및 전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여유재원 | 공자기금 예탁금 | 1008 | 285 | 412 | 530 | 428 | 379 | 63 | 300 | 300 | 190 |
| | 일반회계 전출금 | - | 757 | 918 | 1,064 | 861 | 732 | 566 | 1,060 | 1,405 | 777 |
| | 소계 | 1,008 | 1,042 | 1,330 | 1,594 | 1,289 | 1,111 | 629 | 1,360 | 1,705 | 967 |

자료: 특허청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자금이 부족한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융통할 수 있게 하면 전체 국가 재정자원의 관리 관점에서 비효율을 방지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통해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회계·기금간 자금의 전출입이 반복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게 되어 특별회계가 가진 자율성과 정책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있음.

특히, 책임운영기관[243]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그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고,

24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특허·상표 및 디자인 실용신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 등의 사업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

연례적으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유재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일반회계 전출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본래 목적의 고유사업에 관한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44].

예컨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술안보 강화 속에서 주요국들이 기술 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을 늘리면서 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정 심사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244) 지난 국회 예산·결산 심사에서 유사한 취지의 지적으로, 「2023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23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이 있음.

## 특허 심사관 및 심사 처리기간 등 주요국 비교

| 구 분 | 한국('23) | 일본('23) | 미국('23) | EU('23) | 중국('23) |
|---|---|---|---|---|---|
| 특허심사관 수 | 980명 | 1,663명 | 8,237명 | 3,987명 | 13,704명('20) |
| 1인당 처리건수 | 186건 | 177건 | 67건 | 59건 | 91건('20) |
| 심사 처리기간 | 16.1개월 | 9.5개월 | 20.5개월 | 5.0개월 | 13.2개월 |

주: 1. 심사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은 특허심사 착수(FA)기준
2. 중국은 2020년 이후 심사관 수를 공표하지 않음.
자료: 특허청

경쟁 국가와 비교하여 특허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 보면 일본 9.5개월, 중국 13.2개월인 반면 우리나라는 16.1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특허처리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에서도 일본 177건, 중국 91건에 비해 우리나라는 186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특허청 심사관 수 변동 현황을 보면 특허청 심사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처리기간 지연을 해소할 만큼 심사관 추가 충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특허청 심사관 수 변동 현황

| 연도 | '20 | '21 | '22 | '23 | '24 |
|---|---|---|---|---|---|
| 인원(명) | 1,130 | 1,147 | 1,192 | 1,193 | 1,276 |

주: 특허청 심사관 수에는 ① 특허 심사관, ② 상표 심사관, ③ 디자인 심사관이 포함
자료: 특허청

또한, 2003년~2006년 매년 100명 이상 채용된 전문 심사관들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2028년~2034년 간 연평균 100명 이상의 인력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245] 심사관의 대규모 퇴직으로 인한 심사처리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심사관 전반의 저경력화로 인한 심사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선제적 증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여유재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일반회계 전출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특허청 심사관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등 여유재원을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5) '특허청, 심사관 대거 퇴직…인력확보 고심', 디지털타임스, 2025. 4. 28.